

서울시 Seoul

Universal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Seoul Universal Design Guidelines

적용지침 design

Guidelines





# 서울시

#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Seoul Universal Design Guidelines

# 적용지침



---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소개

본 적용지침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적용지침을 고도화하고, 이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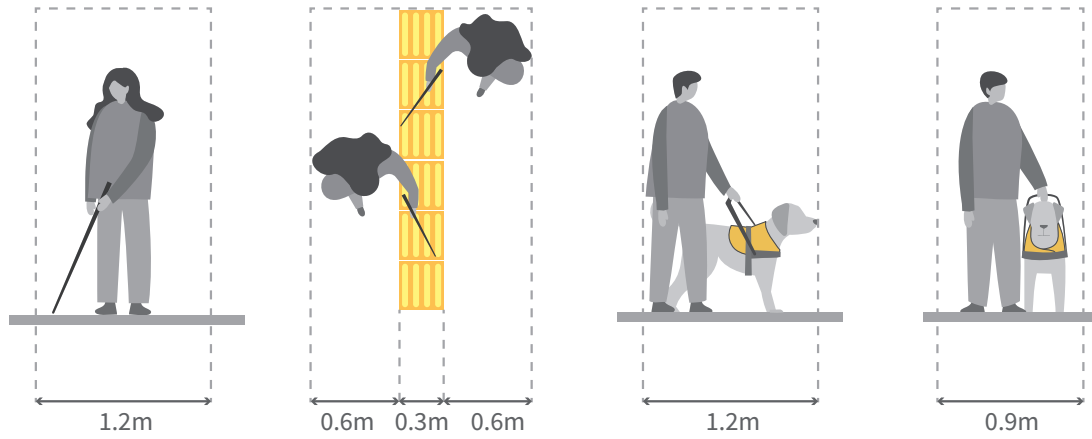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개정 및 신설 2021.7.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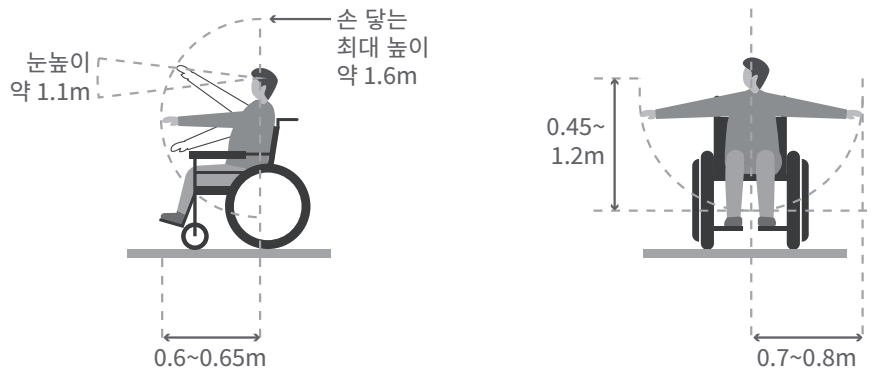
-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 외에도 세부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 본 지침은 2017년 5월 개발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의 고도화된 버전으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관련 법·규정 확인 및 비교’, ‘컨설팅 적용을 위한 위계 반영’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음
- 지침 재정비 기준은 아래와 같음(2021.9.)
  - 1. 공간별 위계에 따른 적용 체계 확립
  - 2. 조례, 시행규칙 문구를 최대한 반영
  - 3.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된 문구 삭제
  - 4. 기본지침은 원칙 중심으로 정비하여, 적용을 위한 이해와 노력을 유도
  - 5. 기본지침에 대한 세부 수치, 법규정의 내용 보완을 통해 지침 이해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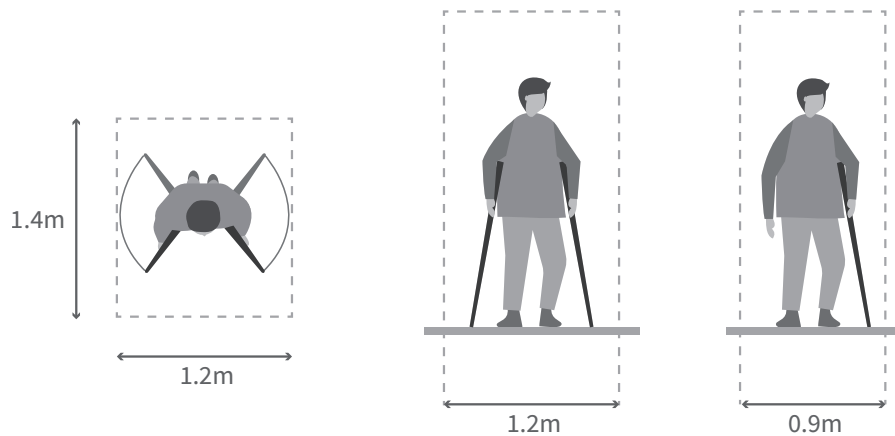
## 1. 시각장애인



## 2. 휠체어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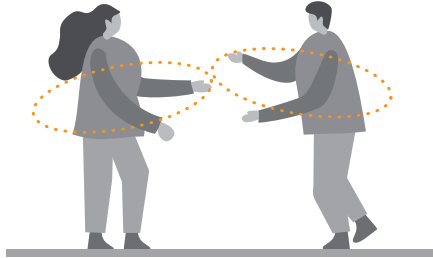


## 3. 목발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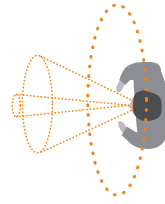


## 4. 청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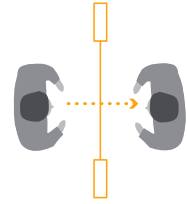
청각장애인의 인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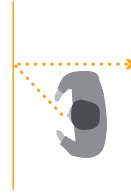
수어 사용을 위한 행동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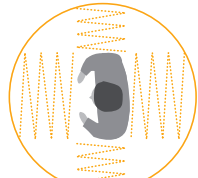
시각과 후각



투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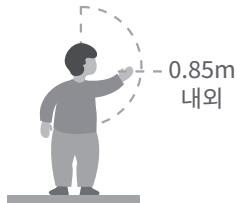


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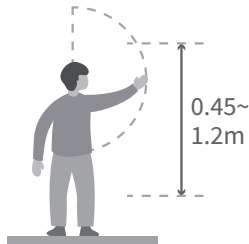


진동

## 5. 어린이 · 저신장 장애인



저신장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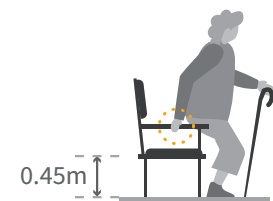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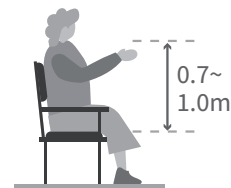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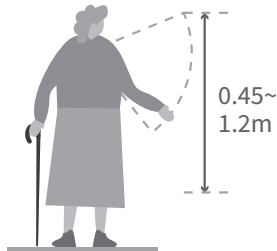


어린이(3~1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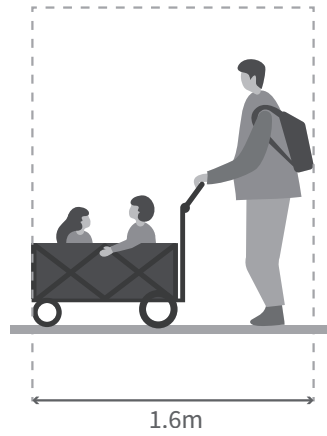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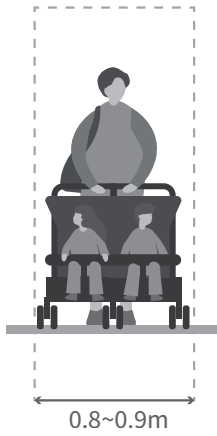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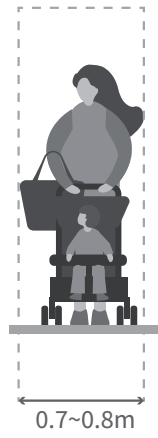


어린이(3~1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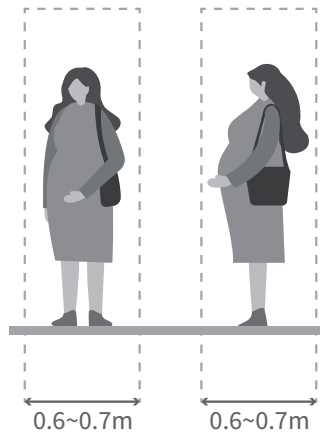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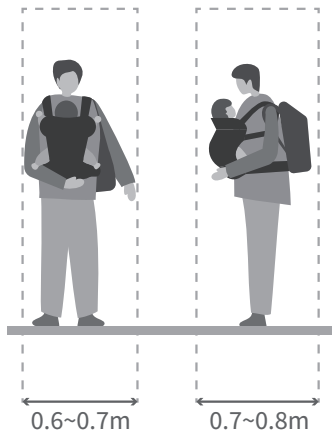
## 6. 노인



## 7. 유아차 · 쌍둥이 유아차 · 유아워건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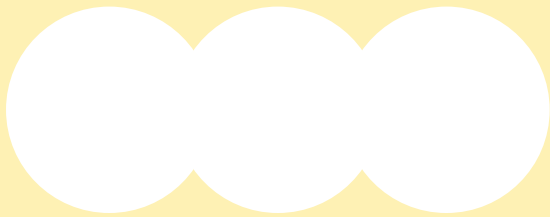


## 8. 아기띠 사용자 · 임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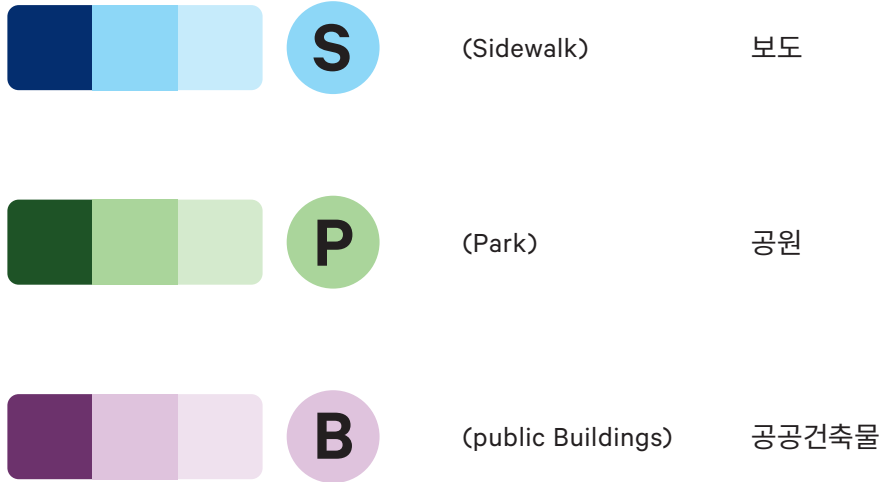
**활용방법**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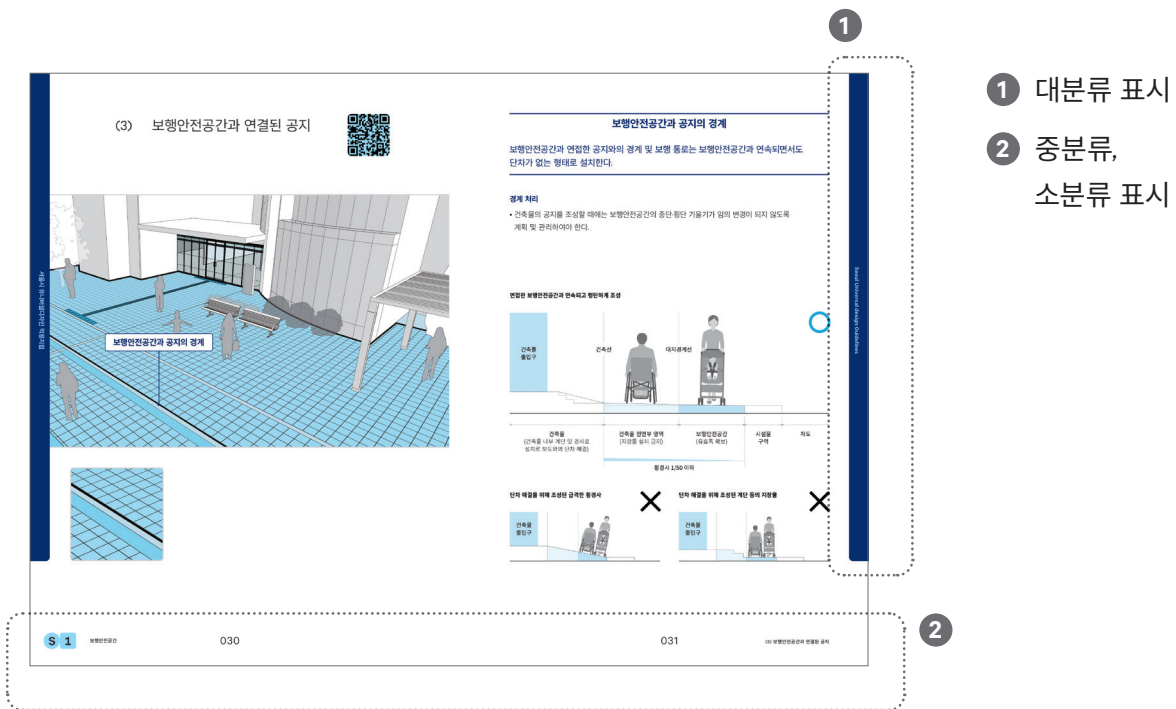
## 분류별 다른 색상과 문자로 표현하여 인지성을 높였습니다.

대분류 항목에 따라 대표할 수 있는 문자를 설정하고, 색상을 분류하여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색약자가 인지가 가능한 색상 선택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페이지별로 위치를 알 수 있는 색면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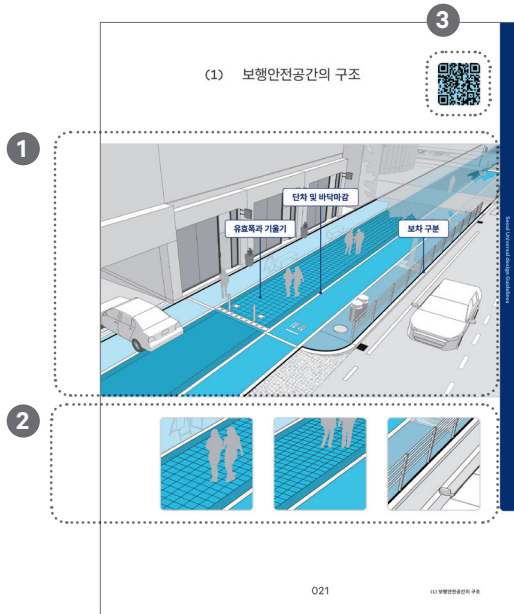
측면 색상을 통해 대분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쪽 번호 외 중분류와 소분류까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먼저, 전체를 이해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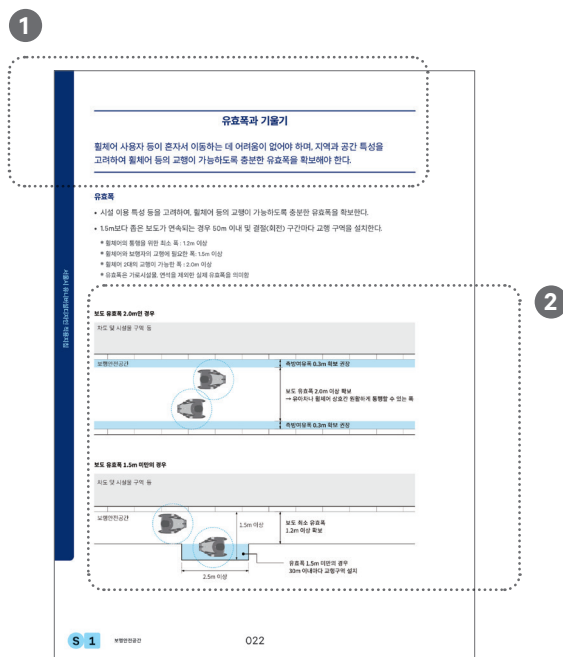
소분류 첫 페이지에 위치한 이미지를 통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계획 시 필요한 상세 요점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1 소분류 전체 이미지
- 2 상세 요점 부분
- 3 웹페이지 연결 QR 코드

## 그 다음, 자세히 살펴봐요.

부문별 상세 이미지를 통해 세부적인 기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글과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세부 수치 및 기술적인 내용 외에도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주변 상황과의 관계 등을 통해 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 1 상세 타이틀 및 기본지침
- 2 일러스트를 통한 심도 있는 이해

S



# 보도 Sidewalk

017

<b>S 1</b>	<b>보행안전공간</b>	<b>019</b>
(1)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021
(2)	보행 유도 및 경고시설	027
(3)	보행안전공간과 연결된 공지	030
(4)	보행 공간의 조도	033
(5)	자전거 도로 접점 구간	035
<b>S 2</b>	<b>보차교행구간</b>	<b>041</b>
(1)	차량 진출입구	043
(2)	횡단보도	046

<b>S 3</b>	<b>보행자 우선도로, 생활도로 등</b>	<b>057</b>
(1)	보행자 우선도로	059
(2)	생활도로(이면도로)	064
(3)	보행 안정성 확보	066
<b>S 4</b>	<b>보도상의 시설물 등</b>	<b>071</b>
(1)	시설물 구역	073
(2)	보도 시설물	075
(3)	보행 편의시설	080
(4)	가로수 등	083
(5)	교통 관련 시설	087
(6)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094
(7)	기타 시설	096
<b>S 5</b>	<b>안내시설</b>	<b>099</b>
(1)	안내시설	101



# 공원 Park

## 105

<b>P 1</b>	<b>접근 공간</b>	<b>107</b>
(1)	보행 접근	109
(2)	공원 출입구	113
(3)	차량 접근	117
<b>P 2</b>	<b>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b>	<b>125</b>
(1)	내부 이동 공간	127
(2)	내부 이용 공간	136

<b>P 3</b>	<b>위생 공간</b>	<b>143</b>
(1)	설치 위치	145
(2)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	147
(3)	모두를 위한 화장실	149
(4)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159
<b>P 4</b>	<b>안전 환경</b>	<b>161</b>
(1)	주의·경고시설 설치	163
(2)	안심, 안전 보행공간 확보	165
(3)	안심, 안전 화장실 공간 확보	167
<b>P 5</b>	<b>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b>	<b>169</b>
(1)	방문자센터 및 종합안내소	171
(2)	종합안내시설	173
(3)	방향 안내	175
(4)	편의시설	177

# B



# 공공건축물

# public

# Building

#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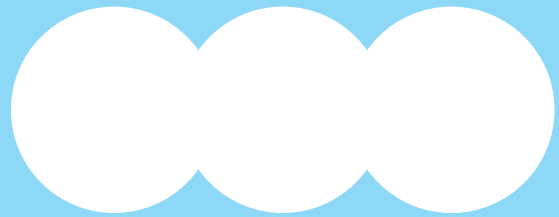
<b>B 1</b>	<b>보도와 대지의 접점 공간(공지)</b>	<b>183</b>
(1)	대지와의 경계	185
(2)	대지 출입구	188
(3)	공지	192
<b>B 2</b>	<b>접근 공간</b>	<b>197</b>
(1)	보행 접근	199
(2)	차량 접근	212
(3)	주출입구(문)	222

<b>B 3</b>	<b>내부 이동 공간</b>	<b>229</b>
(1)	로비와 홀	231
(2)	수평 이동 공간	233
(3)	수직 이동 공간	241
<b>B 4</b>	<b>위생 공간</b>	<b>253</b>
(1)	화장실의 기본 구성	255
(2)	모두를 위한 화장실	262
<b>B 5</b>	<b>피난 및 대피</b>	<b>271</b>
(1)	피난 및 대피 시설	273
<b>B 6</b>	<b>안내 및 기타 이용 시설</b>	<b>277</b>
(1)	안내시설	279
(2)	기타 이용 시설	284
(3)	기타 이용 설비	295





# 보도 Sidew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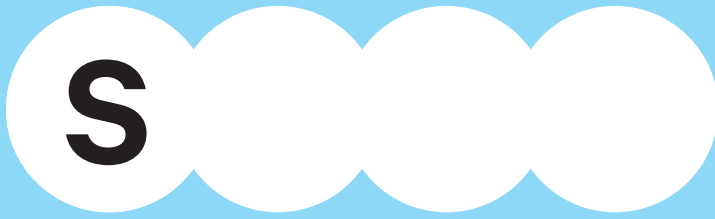


##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아래 내용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에 적용한다.
- 도로(보도 포함) 또는 그 부속물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 버스 터미널과 정류소, 이에 부가된 표지판, 안내 표지 등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2조 제3호 가목~마목)

위 내용 외에도 관련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본 지침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단, 고속도로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형 등의 조건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S 1**

**보행안전공간**

**019**

**S 2**

**보차교행구간**

**041**

**S 3**

**보행자 우선도로, 생활도로 등**

**057**

**S 4**

**보도상의 시설물 등**

**071**

**S 5**

**안내시설**

**099**



## 보행안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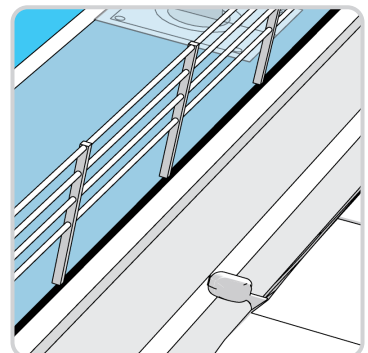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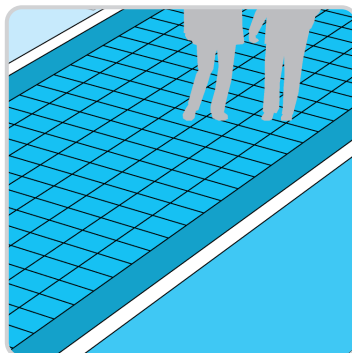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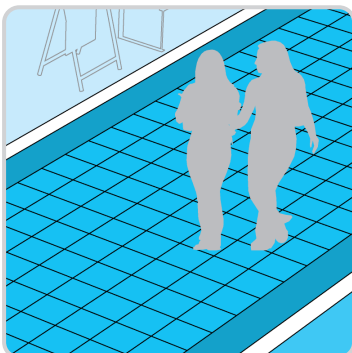
(1)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021
(2)	보행 유도 및 경고시설	027
(3)	보행안전공간과 연결된 공지	030
(4)	보행 공간의 조도	033
(5)	자전거 도로 접점 구간	035

### 계획원칙

- 시민과 서울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짐을 운반하는 사람 등 누구나 안전하고 연속된 보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도의 일정 폭은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공간으로 조성한다.
- 보도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은 보행안전공간 외 시설물 구역 등에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교통시설과 공지 등의 공공공간, 자전거 도로와 차도 등을 종합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 보차교행구간(횡단보도 등) 발생 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와 같은 보행자 우선 계획을 적용한다.
- 보행공간의 바닥재는 평탄성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우수 및 결빙 시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투수, 표면처리 등을 고려한다.
- 어린이, 노인과 같은 이동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보도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한다.



# (1)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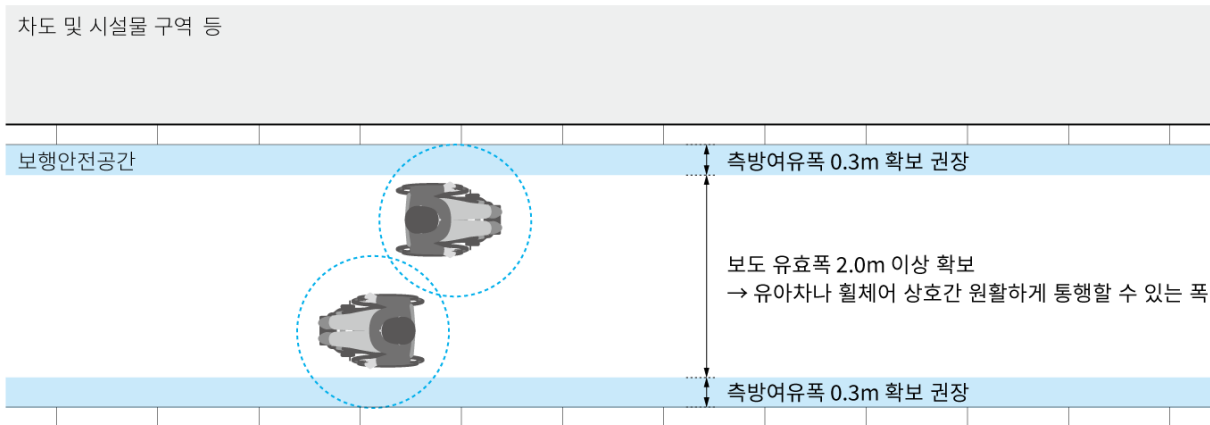
## 유효폭과 기울기

휠체어 사용자 등이 혼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지역과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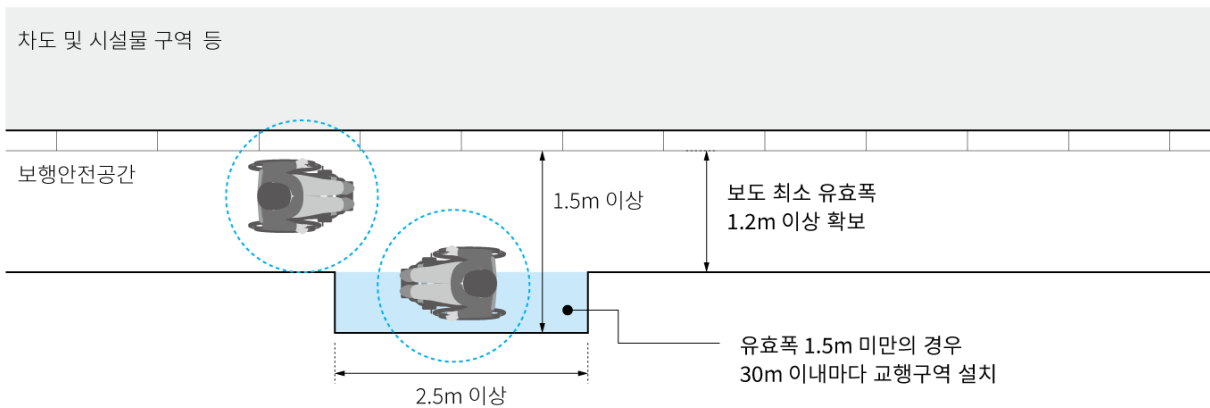
### 유효폭

- 시설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 1.5m보다 좁은 보도가 연속되는 경우 50m 이내 및 결절(회전) 구간마다 교행 구역을 설치한다.
  - \* 휠체어의 통행을 위한 최소 폭 : 1.2m 이상
  - \* 휠체어와 보행자의 교행에 필요한 폭: 1.5m 이상
  - \* 휠체어 2대의 교행이 가능한 폭 : 2.0m 이상
  - \* 유효폭은 가로시설물, 연석을 제외한 실제 유효폭을 의미함

#### 보도 유효폭 2.0m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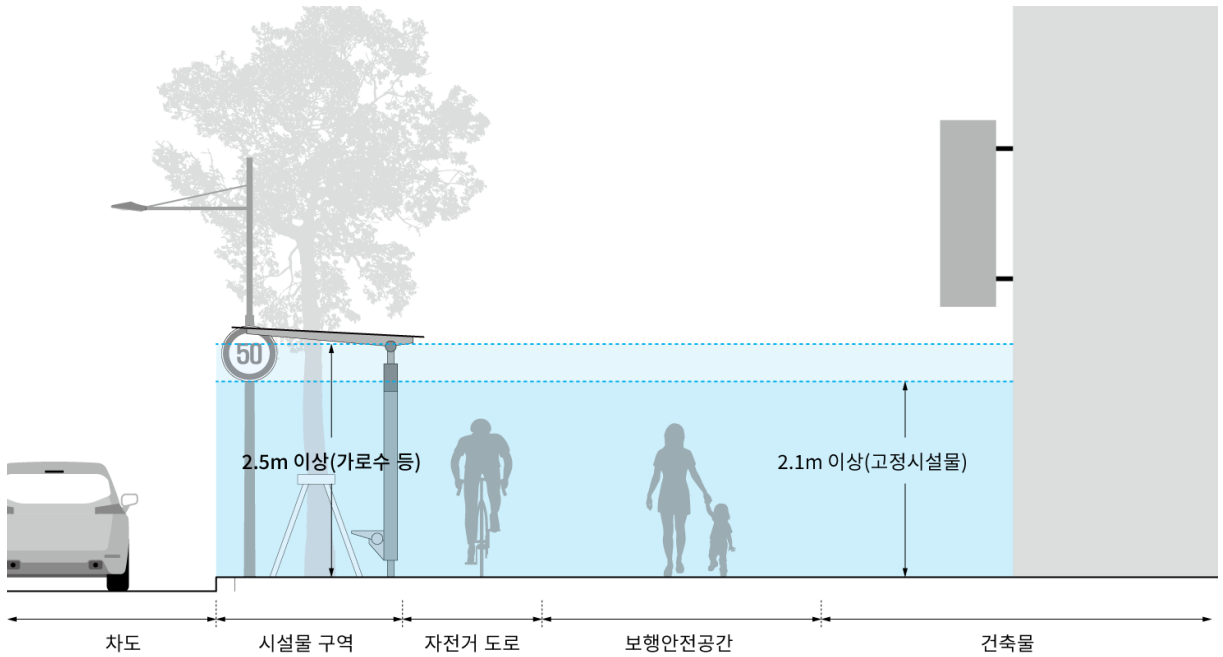


#### 보도 유효폭 1.5m 미만의 경우



## 수직안전높이

- 보행 시의 충돌 예방을 위한 수직안전높이를 확보한다.
- 고정 시설물 등은 하단이 바닥에서 최소 2.1m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 등은 바닥에서 2.5m 이상부터는 가지치기가 되도록 한다.
- 키가 큰 사람이나 우산을 쓰고 이동하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바닥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유효안전높이 확보를 권장한다.
- 유효안전높이의 확보는 보행안전공간 및 인접 구역(공개공지 및 시설물 구역)까지 포함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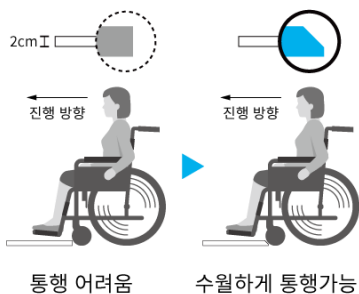


## 기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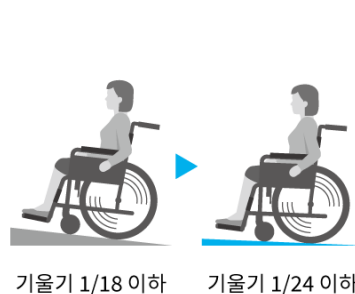
- 기울기는 종단 1/24, 횡단 1/50 이하로 확보한다.
- 보행안전공간은 종·횡단 기울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적합한 기울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근 가능한 우회동선이나 이동약자의 보행 어려움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법적 최소 기준 : 종단 기울기 1/18 이하, 횡단 기울기 1/25 이하가 되도록 하며, 경사진 보도의 연장 30m 이내마다 1.5m × 1.5m 이상의 수평 휴식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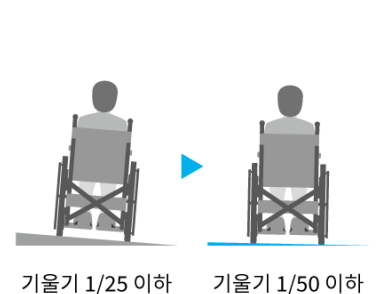
### 단차 모따기 시공



### 진행방향의 종단기울기



### 진행방향의 횡단기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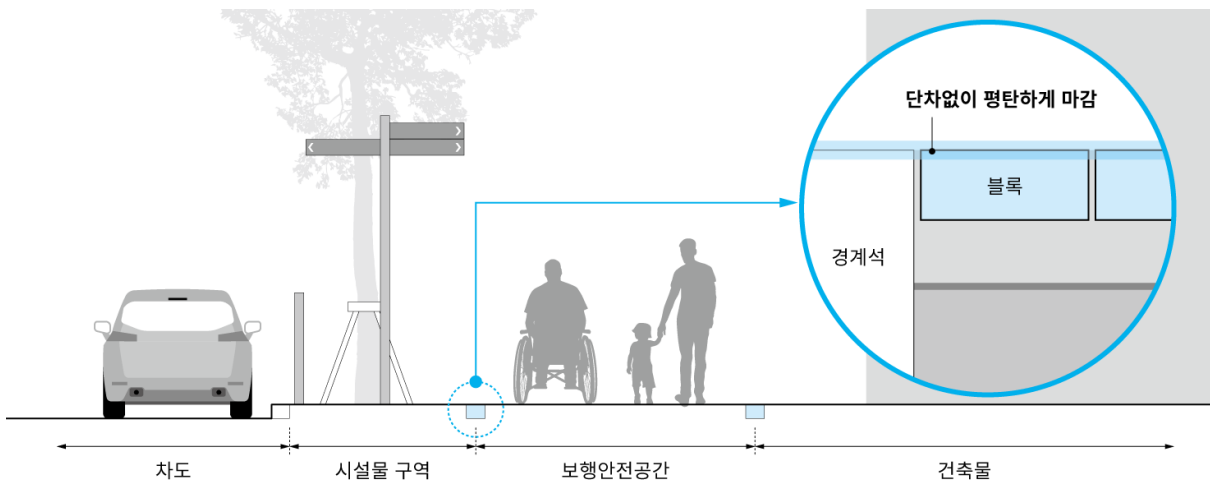


## 단차 및 바닥마감

우천 시에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경사 구간인 경우에는 더 강한 미끄럼 방지 성능이 있어야 한다.

### 단차

- 블록 포장, 각종 덮개, 재료 분리구간과 보행안전공간 바닥과의 경계 등은 무단차로 처리한다.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될 경우에는 진행 방향으로 모따기 처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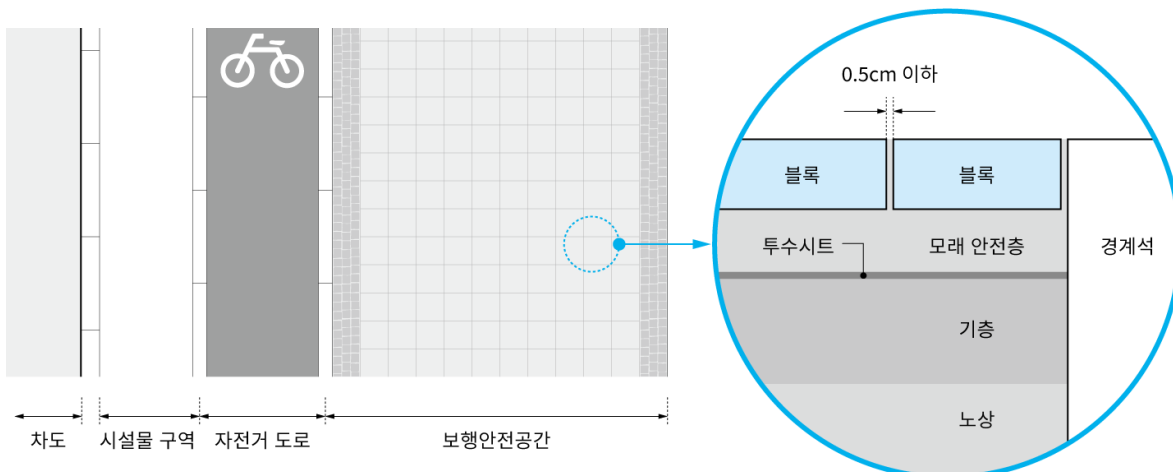
### 바닥재질

- 연석,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우천 시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 습윤으로 인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배수가 용이한 투수블록 등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다.
- 타일, 블록 설치 시 줄눈 및 이음새 등의 간격은 0.5cm 이하로 한다.

\* 미끄럼 방지 성능 확보

성능(건조 시): 평지 기준 40BPN, 경사로 기준 45BPN 확보

성능(습윤 시): 평지 기준 45BPN, 경사로 기준 50BPN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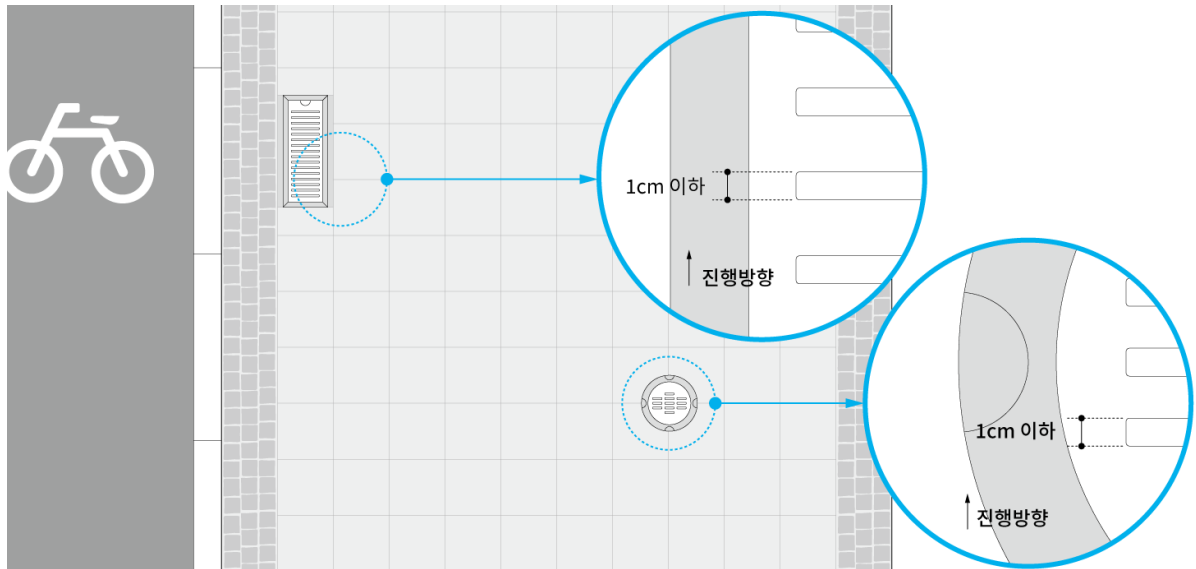


## 맨홀·배수구 덮개 등

- 배수구 덮개 등은 보행안전공간이 아닌 차도나 식재·시설물 구역 등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보행안전공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구 틈새 간격을 1cm 이하로 하여 보도와 단차 없이 마감한다.
- 맨홀 덮개 등은 보도와 단차 없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며, 보도 재질과 유사 재질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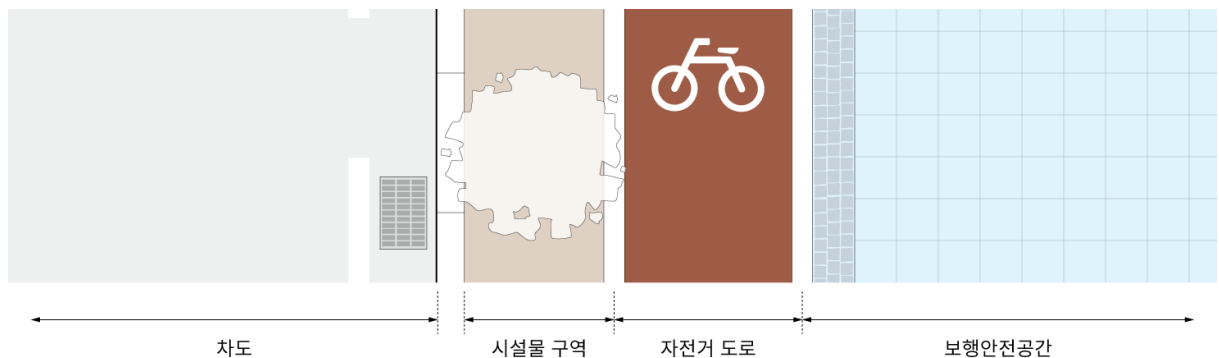
\* 덮개의 틈새, 그레이팅 간격 1cm 이하는 보도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

\*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하는 배수로 덮개의 틈새 간격은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설치



## 바닥재 색상 및 패턴

- 보행안전구역과 그 외 구역(시설물 및 장애물 구역, 자전거 도로, 보차교행구간 등)은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이 차이 나도록 계획한다.
-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경고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마감재 색의 명도를 4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유도안내 관련 배색을 할 경우에는 마감재 색의 명도를 3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시·지각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조잡한 패턴의 사용은 지양한다.
  - \* 색상과 패턴 적용 시에는 현장의 조도, 음영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반영하도록 함.
  -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시에는 표면휘도 LRV(Light Reflectance Value)가 최소 30 이상 차이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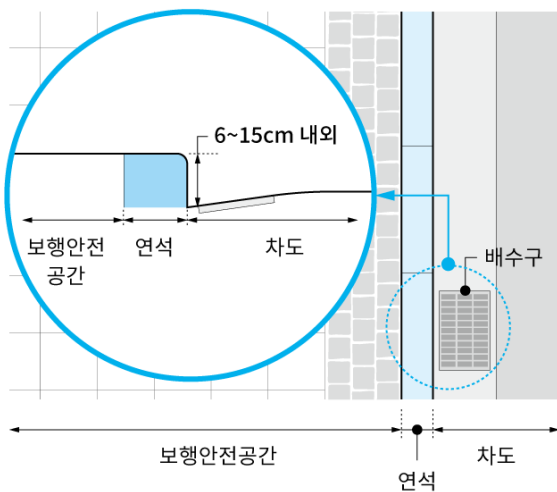


## 보차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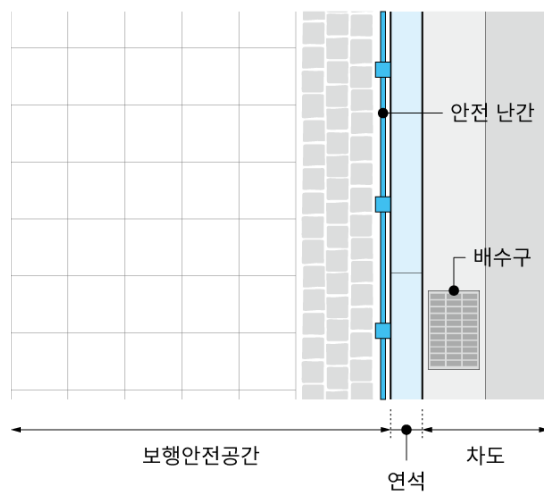
보행안전공간과 차도 경계는 시설물 구역, 안전 난간, 연석과 같은 물리적 구분을 통해 보행자의 보행안전성을 확보한다.

- 보행안전공간과 차도 사이에 시설물 구역, 안전 난간 등의 완충·분리 공간 설치를 통해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 보도와 차도 구분을 위해 보도 연석(경계석)의 높이는 차로의 설계 속도에 따라 달리하되, 저속 차로의 경우 6~15cm 내외의 높이로 설치한다. (완충 공간 설치 또는 간선 도로 제외)
  - 보도 높이는 연석(경계석)과 같도록 설치한다.
  - 연석(경계석)의 질감과 색상은 접근로 등의 색상과 다르게 하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한다.
- \* 시설물 구역의 세부 내용은 '보도-보도상의 시설물-시설물 구역' 기준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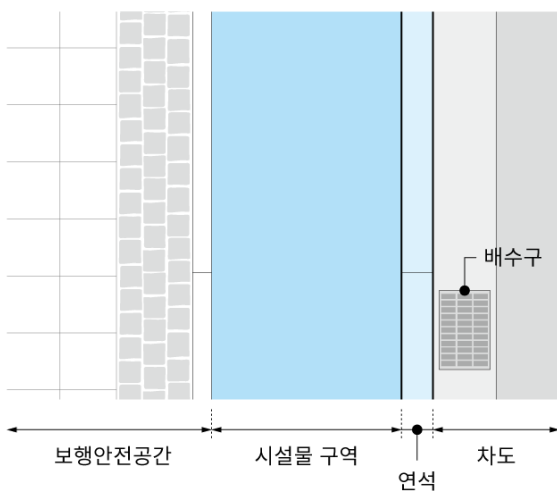
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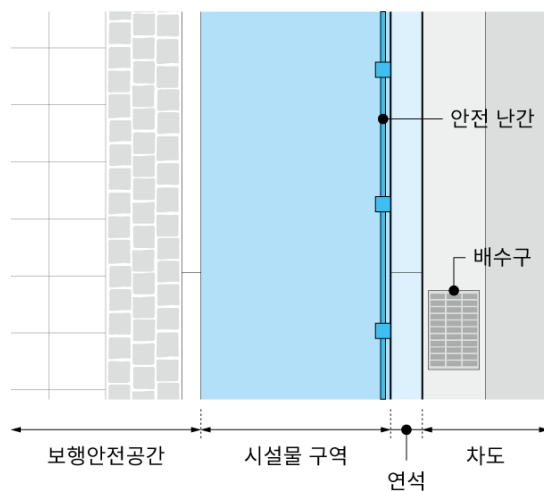
연석+안전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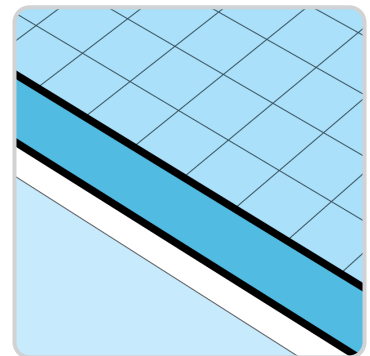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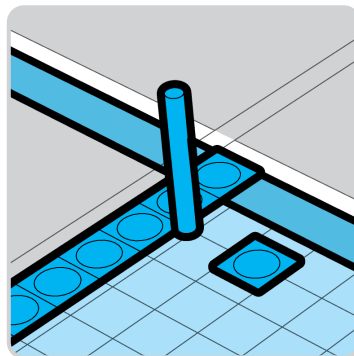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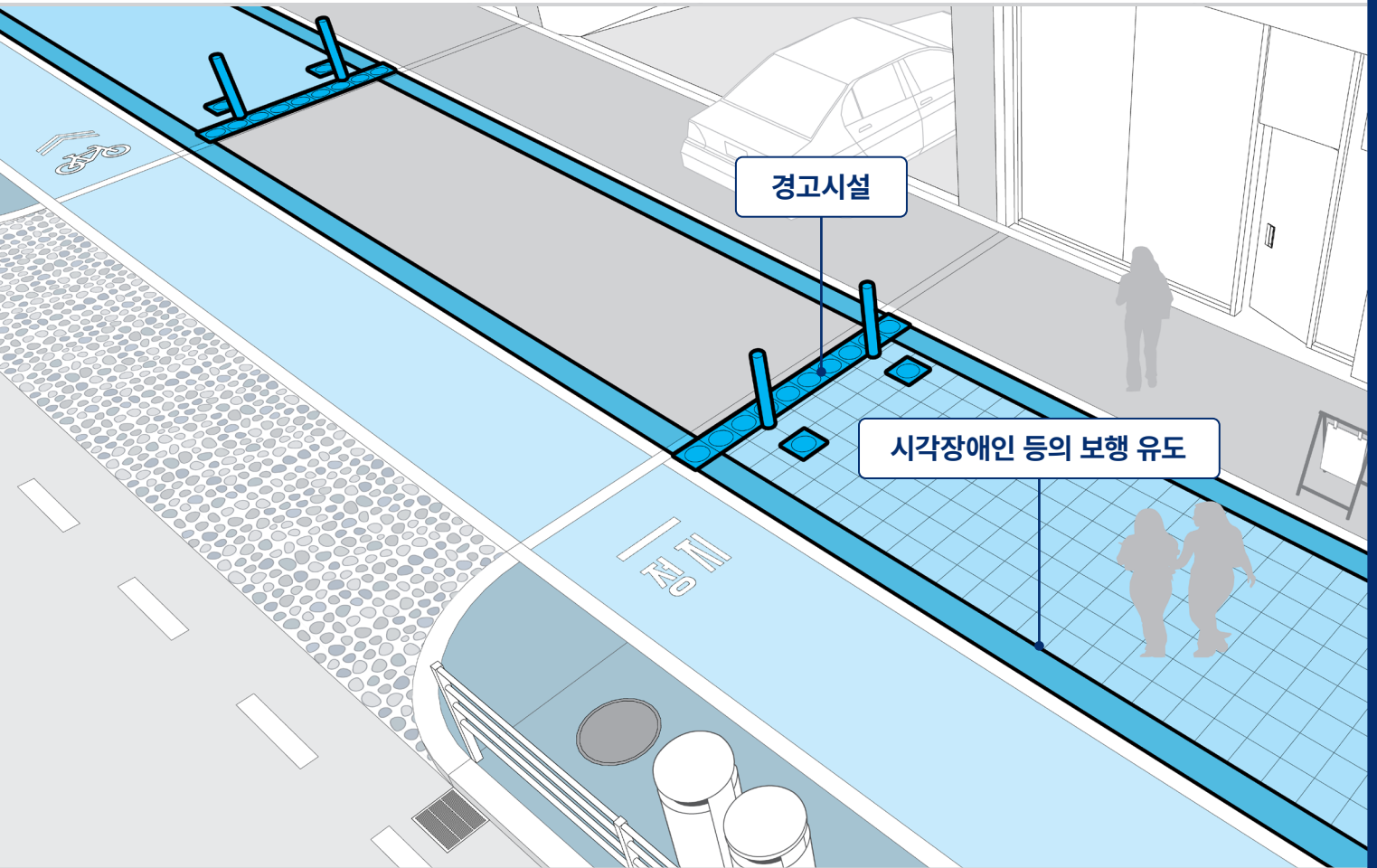
연석+시설물 구역



연석+시설물 구역+안전 난간



## (2) 보행 유도 및 경고시설



##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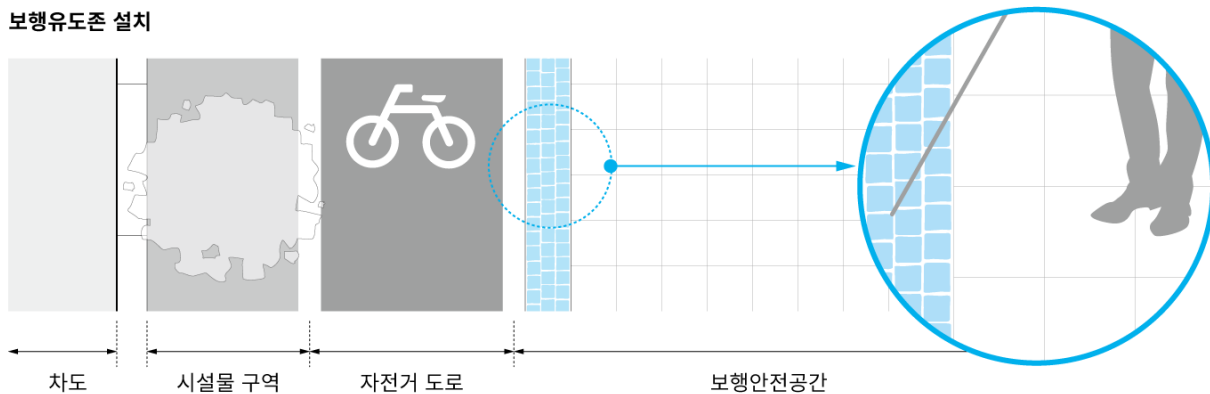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이 연속적이고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가능하도록 보행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되, 주변과 조화로워야 한다.

###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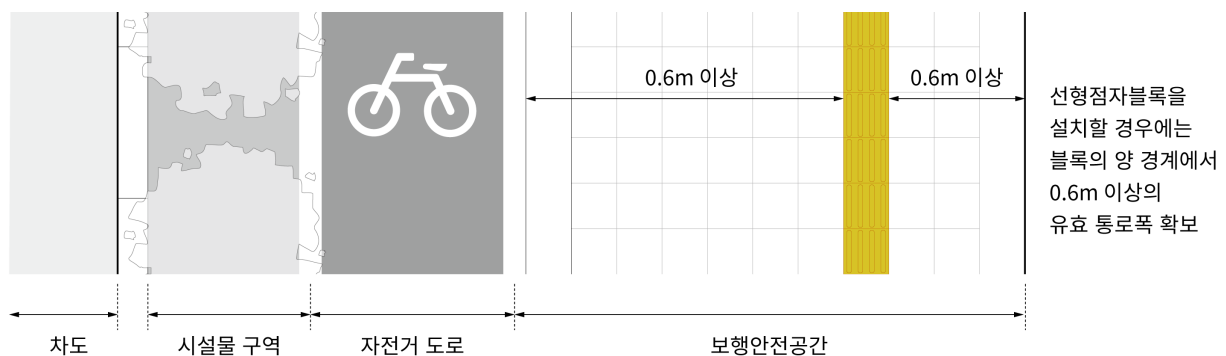
- 보행안전공간의 양 경계에 폭 0.3m 이상의 보행 유도존을 선형으로 연속하여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의 유효폭이 3m 이상인 경우에는 선형 점자블록 설치를 고려한다.
- 광장 등 경계 설정이 어려운 구간에서 보행 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자블록 설치를 고려한다.
- 선형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양 경계에서 0.6m 이상의 유효 통로 폭을 확보한다.
- 선형 점자블록은 보행자의 이동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직선의 선형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세부 설치기준은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참고

#### 보행유도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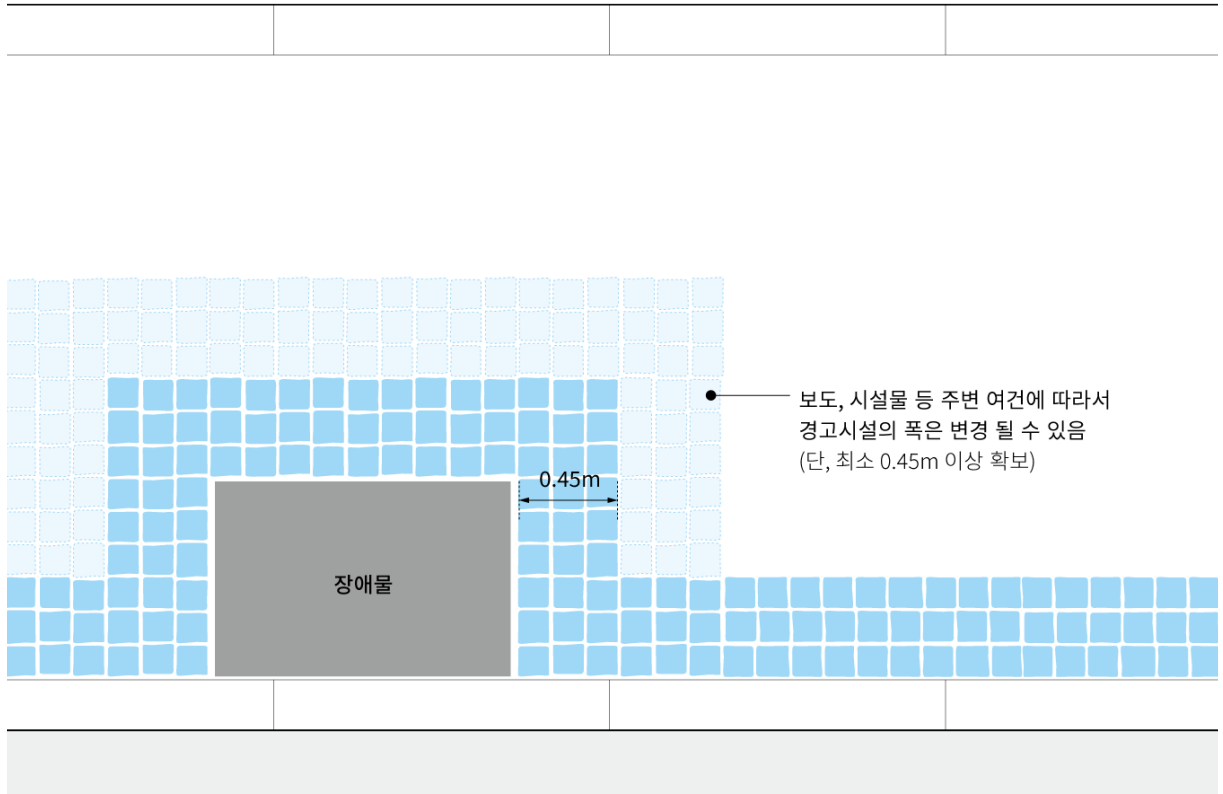
#### 선형점자블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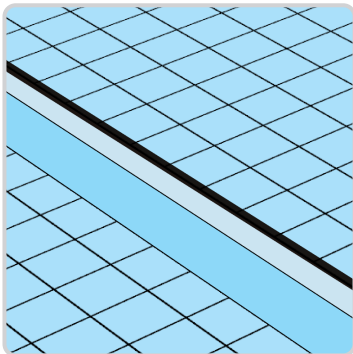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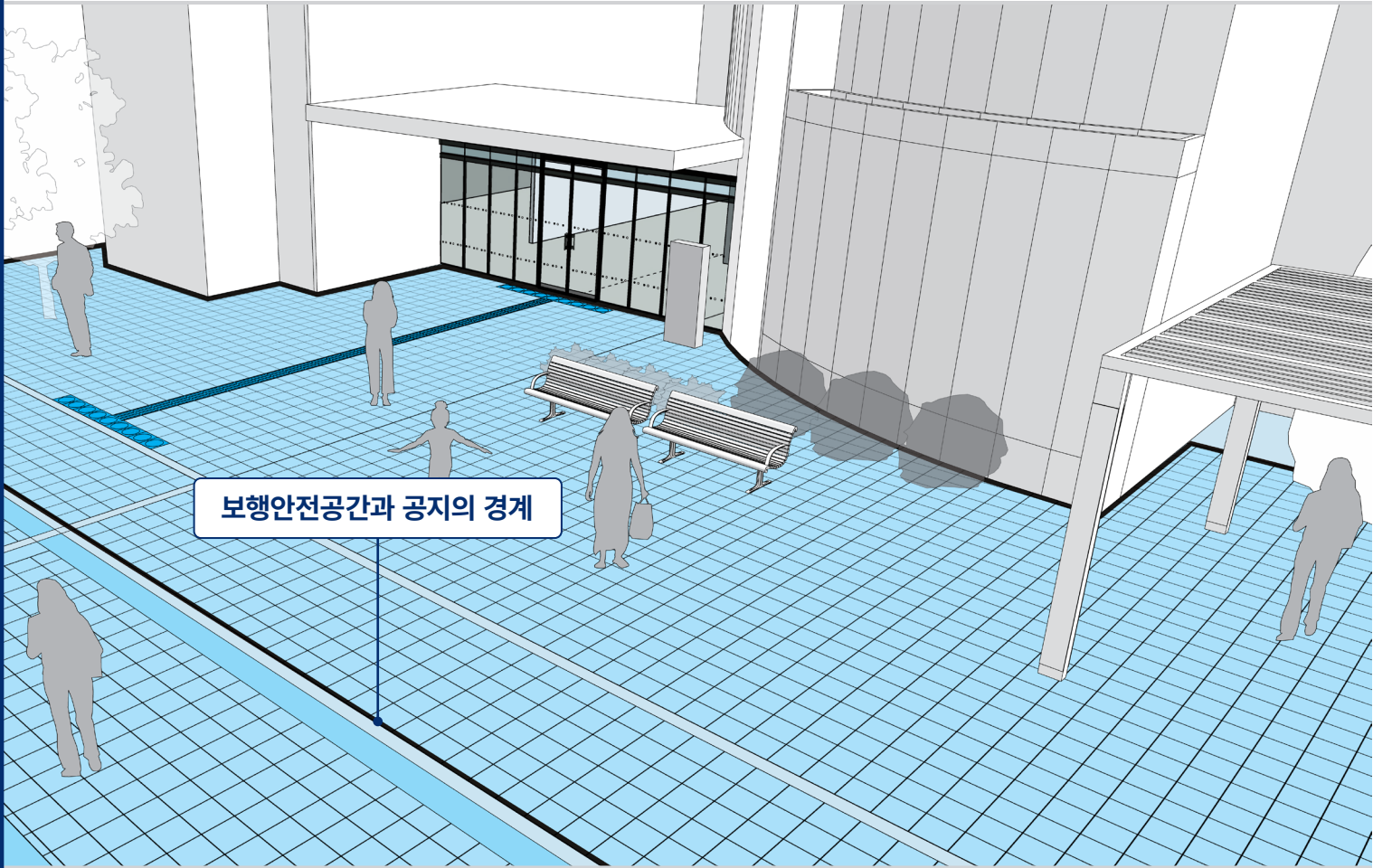
## 경고시설

- 주의, 경고가 필요한 구간에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 내 부득이하게 단독 설치물, 보차교행구간 전후 경계 구간 등에 주의·경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행안전구역에 장애물이 위치한 경우



### (3) 보행안전공간과 연결된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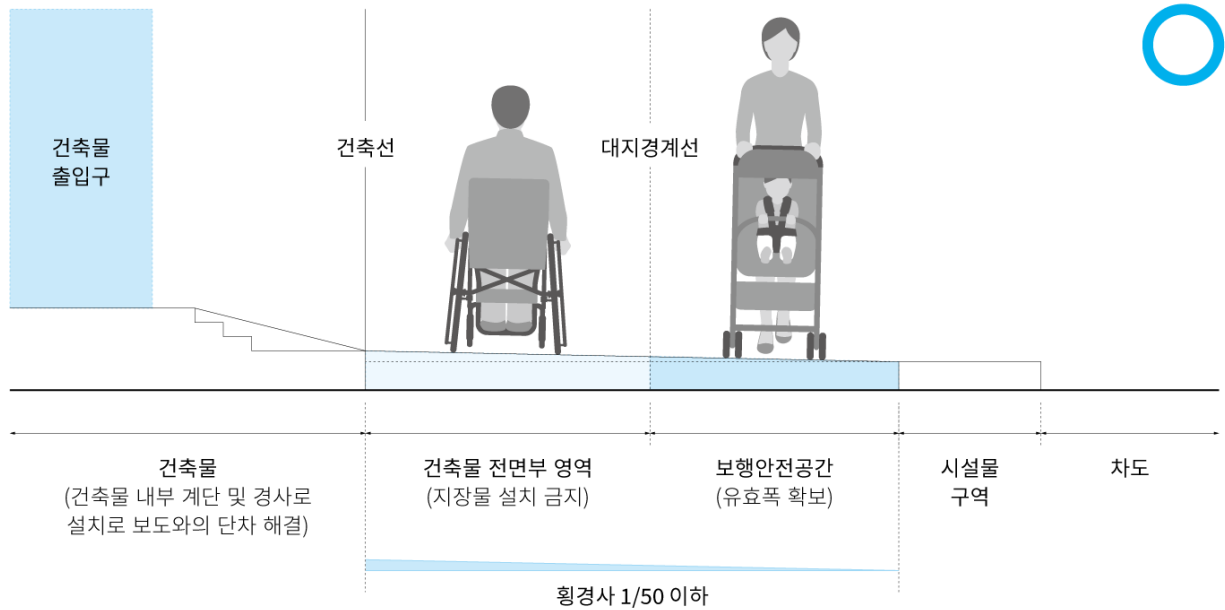
## 보행안전공간과 공지의 경계

보행안전공간과 연접한 공지와 경계 및 보행 통로는 보행안전공간과 연속되면서도 단차가 없는 형태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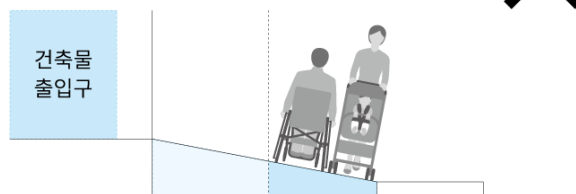
### 경계 처리

- 건축물의 공지를 조성할 때에는 보행안전공간의 종단·횡단 기울기가 임의 변경되지 않도록 계획 및 관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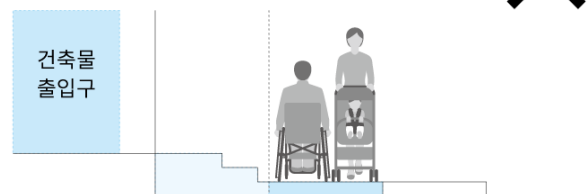
연접한 보행안전공간과 연속되고 평탄하게 조성



단차 해결을 위해 조성된 급격한 횡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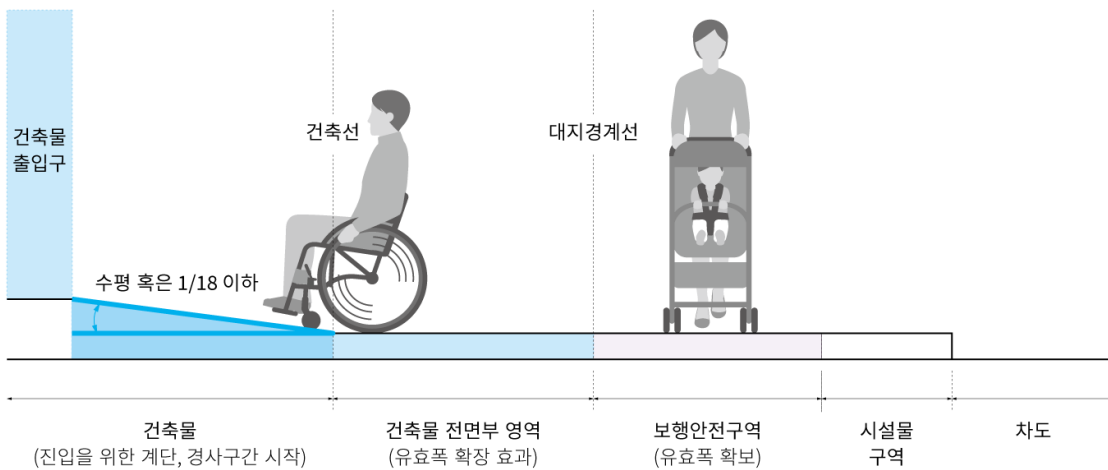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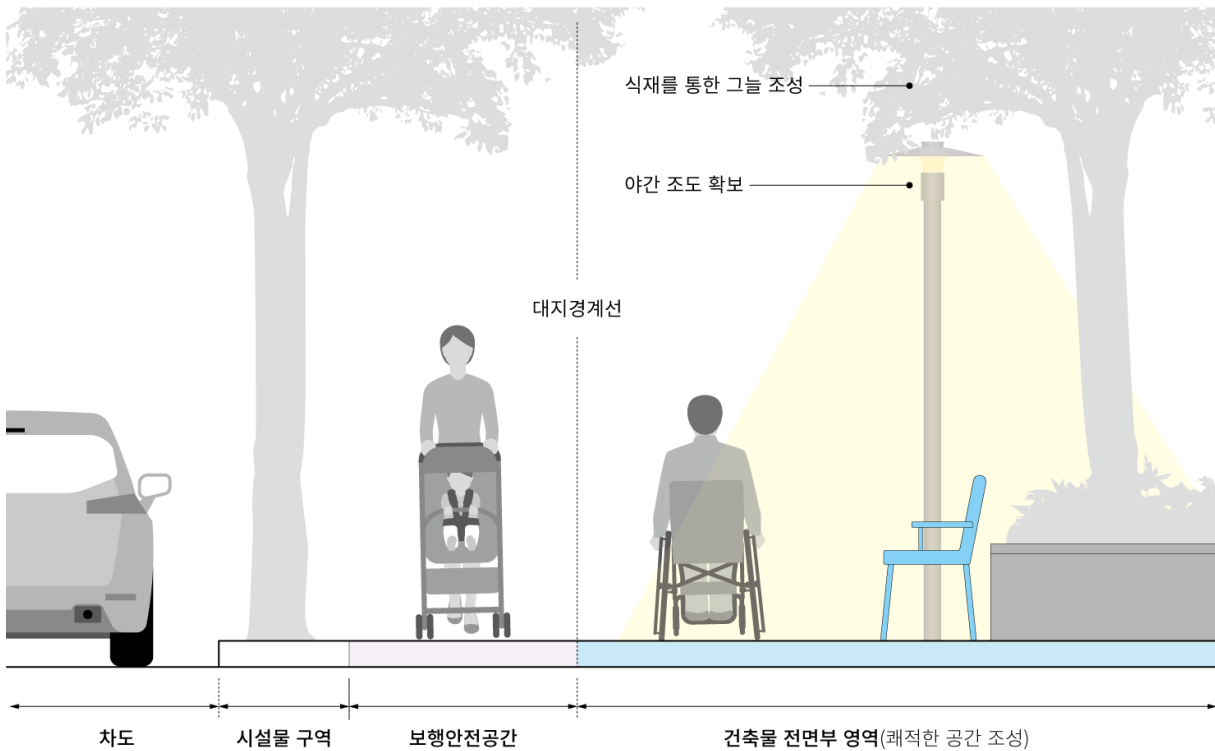


단차 해결을 위해 조성된 계단 등의 지장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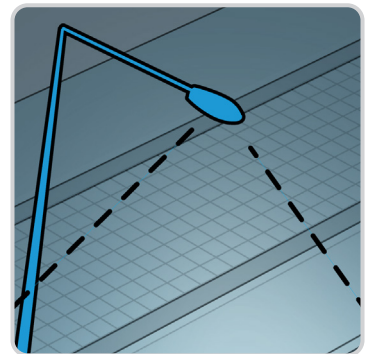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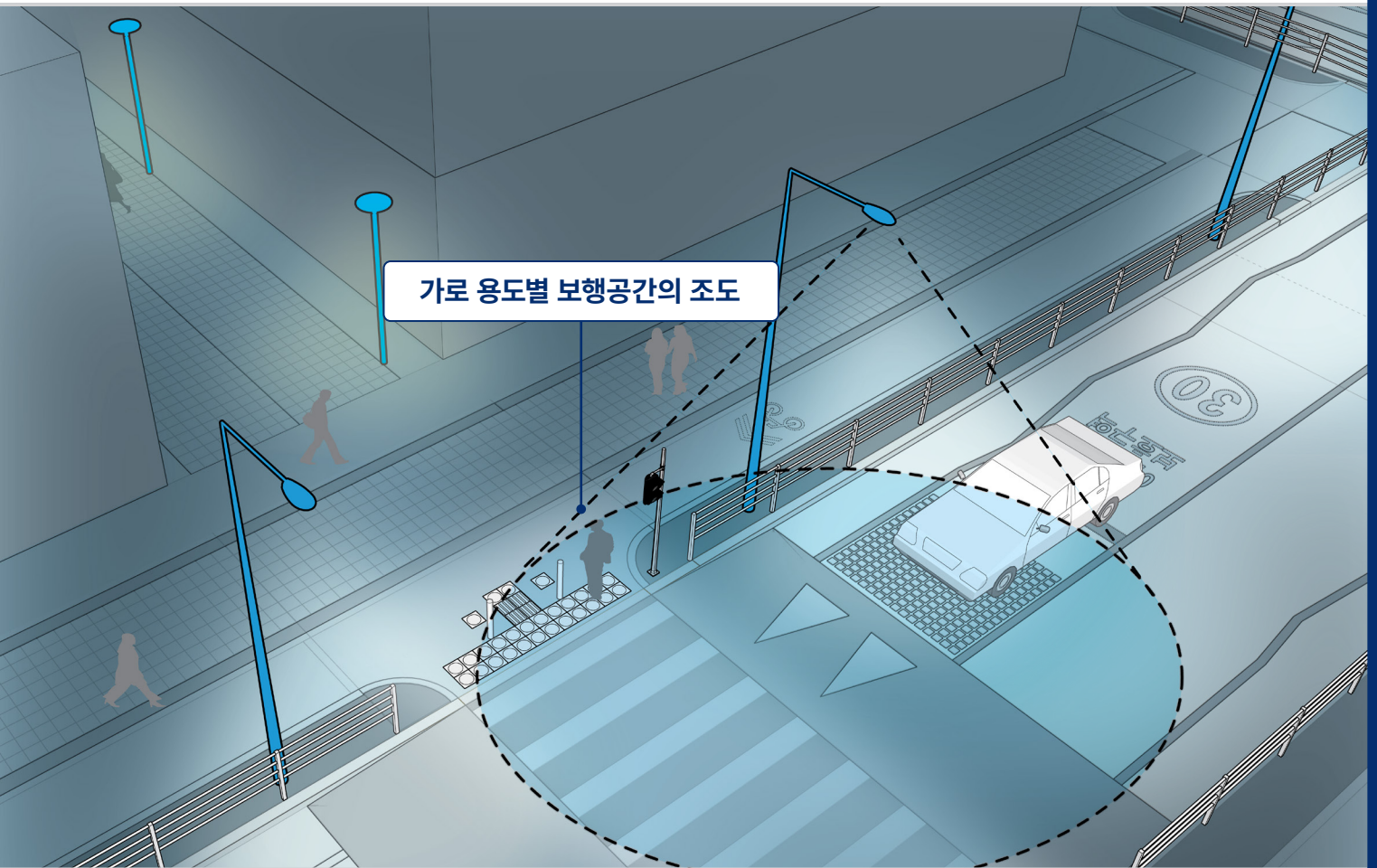
## 공지 연결 구간

- 보도와 인접한 공지에 보행 편의공간(휴게공간, 소공원 등) 조성을 고려한다.
- 보행안전공간과 공지의 경계에 화분 혹은 화단 등을 설치할 때에는 기존 보행안전공간에서 공지로 접근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에서 공지나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높이 차이 없이 수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공간에서 공지 내의 보행 통로까지 불가피하게 단차가 발생할 때에는 기울기 1/18 이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등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기준을 준수한다.





## (4) 보행 공간의 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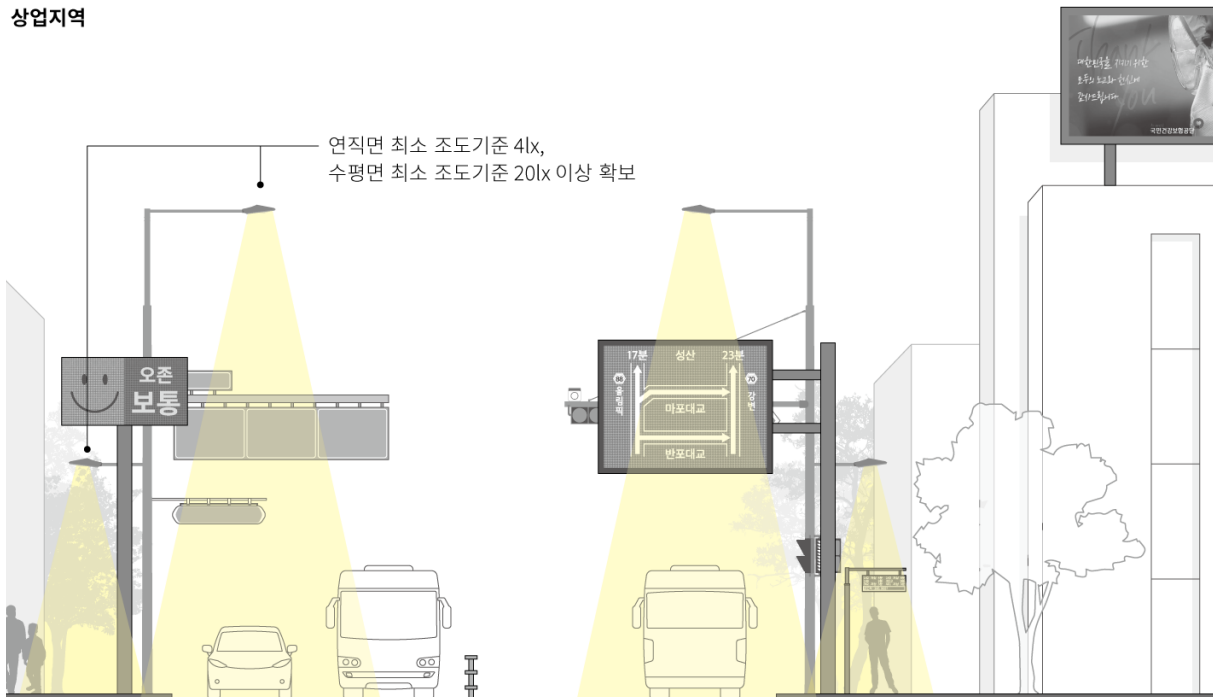


## 가로 용도별 보행 공간의 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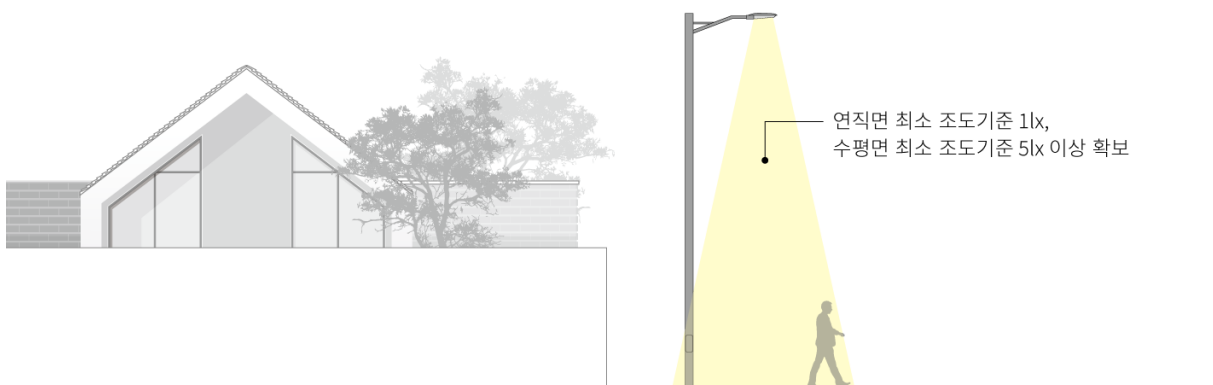
야간이나 날씨가 흐릴 때에도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구역 및 가로 용도별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

- 가로 용도별 적정 조도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한다.
  - 상업 지역: 연직면 최소 조도 기준 4lx, 수평면 최소 조도 기준 20lx 이상 확보
  - 주택 지역: 연직면 최소 조도 기준 1lx, 수평면 최소 조도 기준 5lx 이상 확보
- 조명은 눈부심을 최소화하도록 설치(간접 조명 방식 등)하며,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조도 확보는 지양한다.
- 자전거 도로와 인접한 보행공간에서는 야간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
- 야간의 자전거 이용자 통행이 많은 구간에는 야간 안전시설(조명, 발광형 표지병 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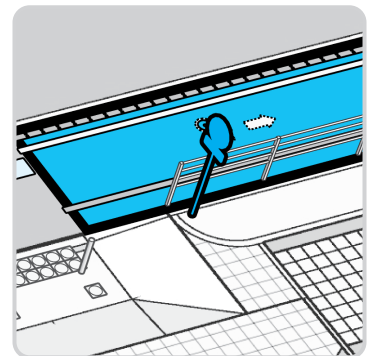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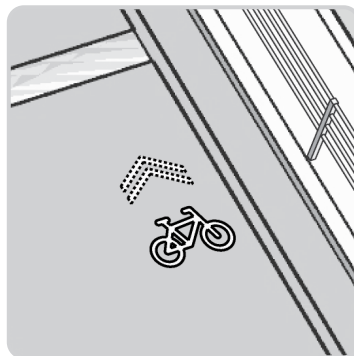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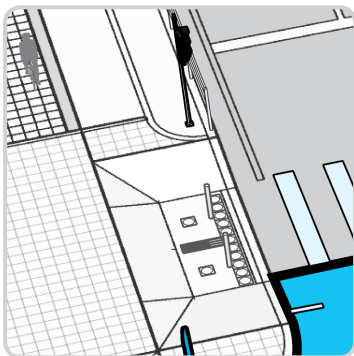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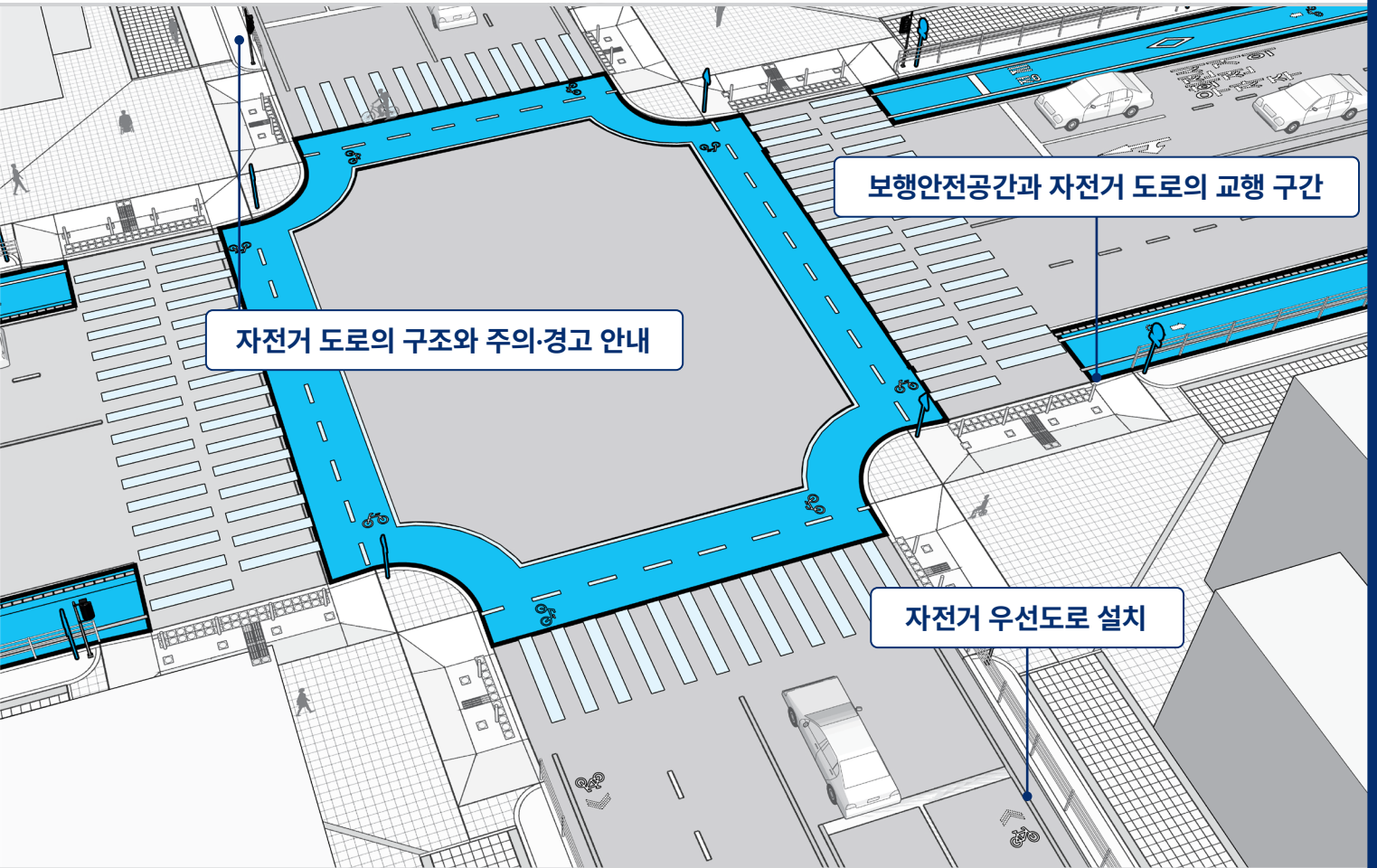
### 상업지역



### 주택지역



## (5) 자전거 도로 점점 구간



## 자전거 도로의 구조와 주의·경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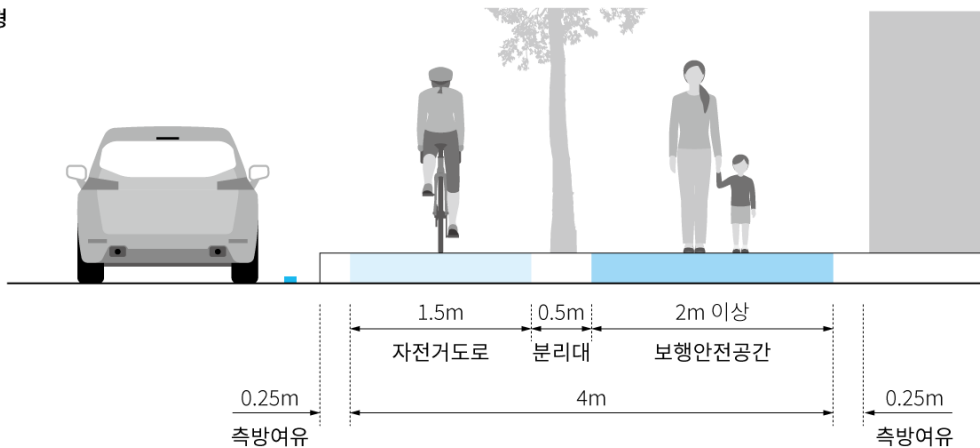
자전거 도로는 보행안전공간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 차도와 보행안전공간을 화단, 식재, 자전거 도로 및 안전 난간 등으로 물리적으로 구분한다.
- 보도 상에 설치하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분리형)’ 설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자전거 도로 외 보행안전공간에 유효폭 2.0m 이상을 확보
  - 일방통행의 자전거 도로는 차로의 차량과 통행 방향이 일치하게 설치
  - 자전거 도로는 차도 쪽에 설치하며, 보행안전공간과 색상, 재질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
  -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공간의 경계 및 교행 구간은 보행 공간과 색상 및 재질이 차이 나도록 설치
  - 교행 구간에는 보도 바닥재를 적용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자전거 도로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교행 구간은 기존 자전거 도로와 차이 나는 색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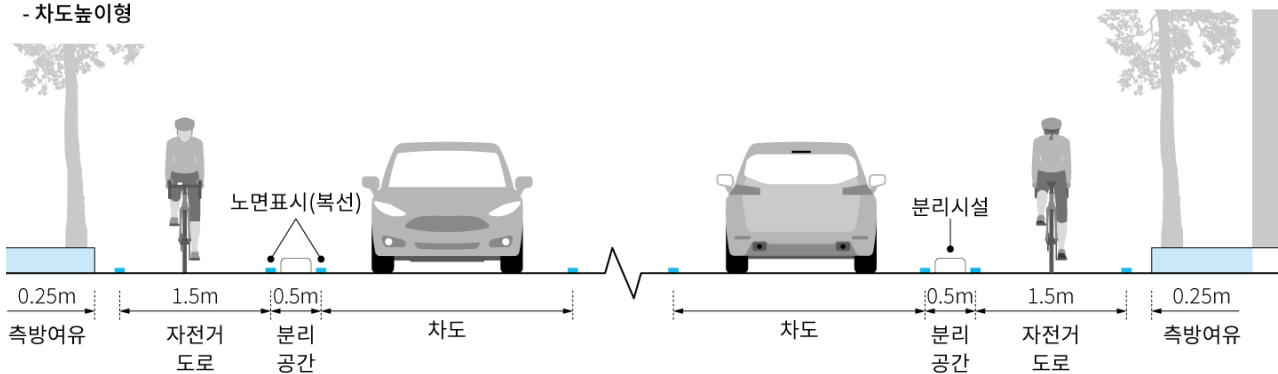
\* 자전거 도로 설치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서울형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참조

### 자전거 전용도로

- 보도높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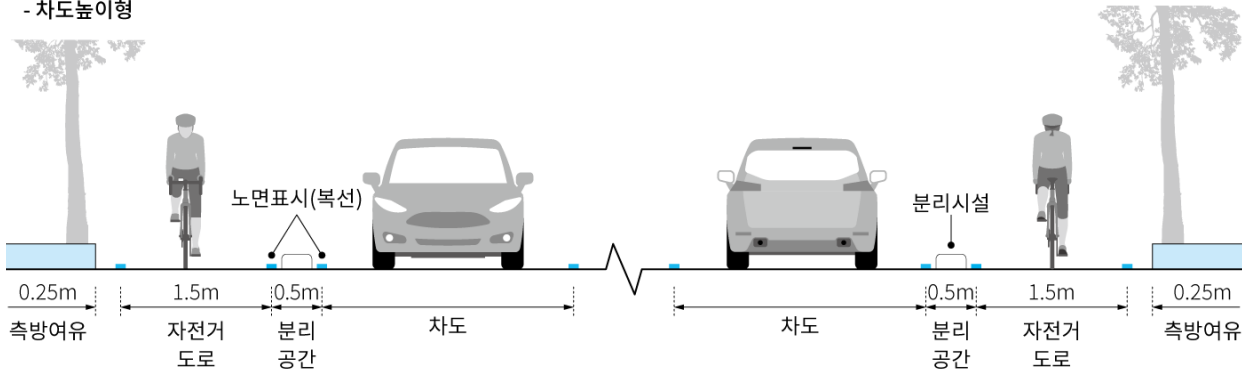


- 차도높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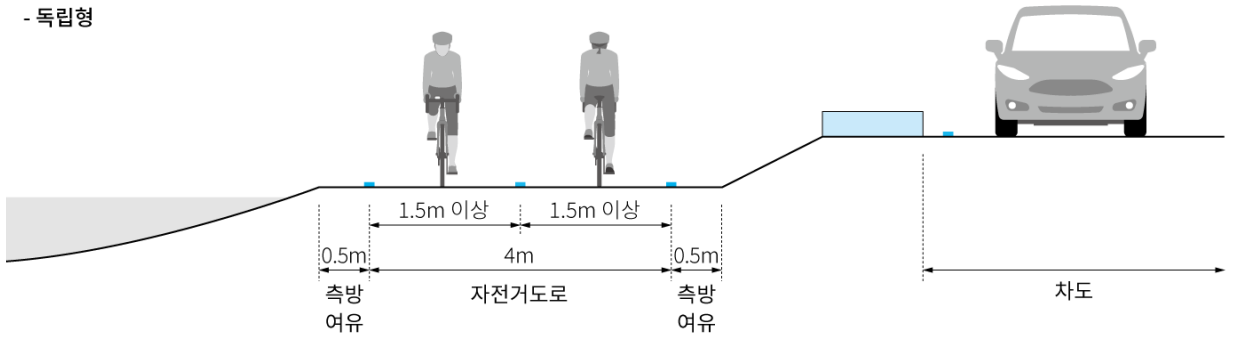




- 차도높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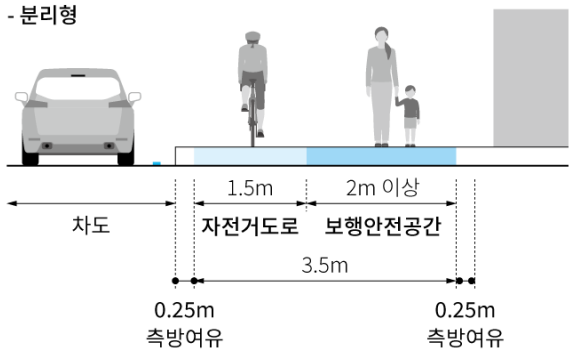


- 독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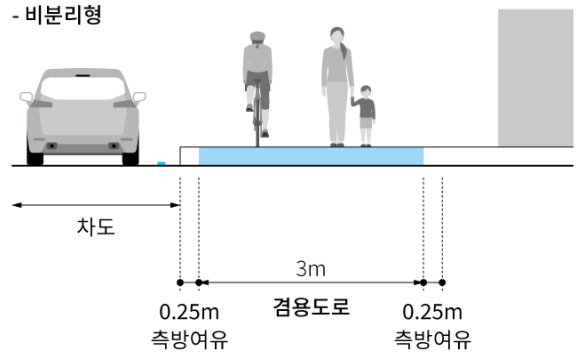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 분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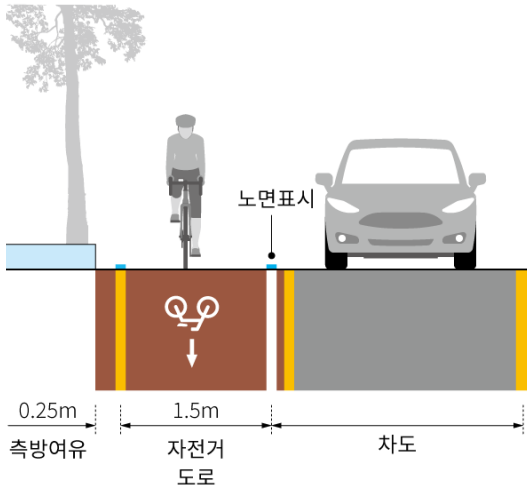


- 비분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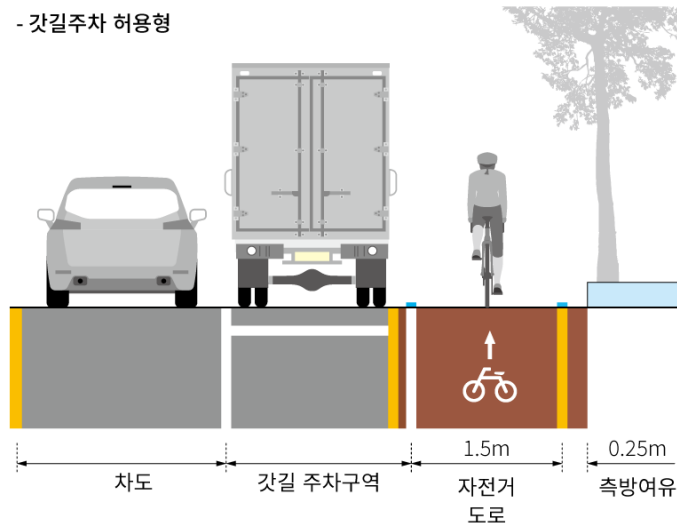


자전거 전용차로

- 일반형



- 갓길주차 허용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 종류

- 주의표지



**134 자전거 표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경우에 설치
-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및 구역 전 50미터~200미터 사이의 도로우측에 설치

- 지시표지



**302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우측에 설치



**318 자전거 전용차로 표지**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 하는 것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
- 자전거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를 50미터~100미터 앞에 설치할 수 있다



**325 자전거 횡단도 표지**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자전거 우선도로 표지**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 우선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우측에 설치

- 규제표지



**210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도로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
-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 및 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320 자전거주차장 표지**  
자전거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표지 종류

- 규제표지



**205의 2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지시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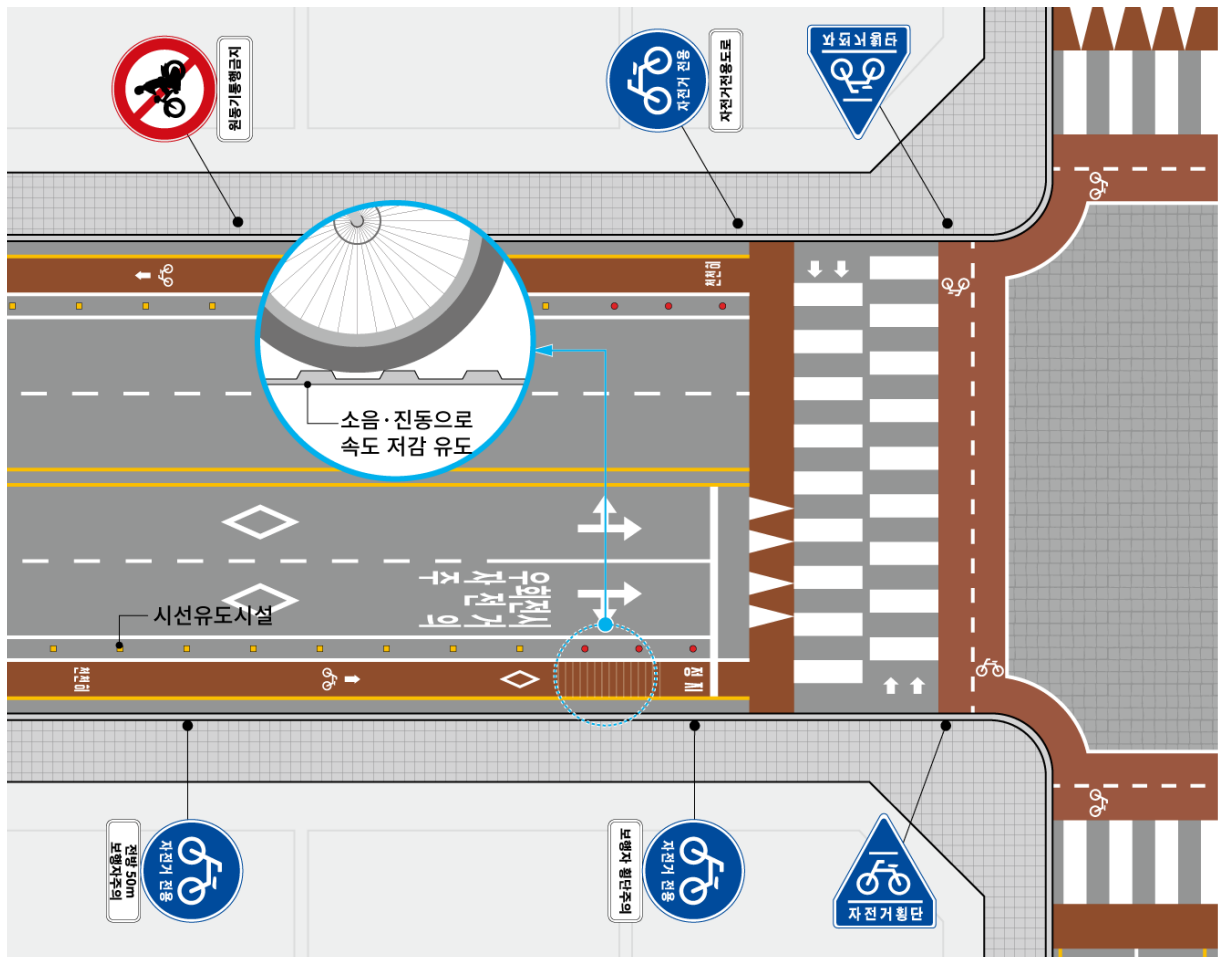
**320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 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주차구역은 백색실선으로 설치

## 보행안전공간과 자전거 도로의 교행 구간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공간의 교행 구간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교행 구간 발생 시에는 보행자 주의, 경고 및 자전거 속도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공간의 교행 구간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한다.
- 속도저감시설 설치 시에는 다음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 교행 구간 양 경계 10m 이전부터 주의 경고 표시를 설치
  - 보행자 횡단 및 충돌 주의 안내를 표시 (바닥 표시 및 시설물 구역 등에 입식 안내판 설치)
  - 자전거의 속도저감을 위한 방지턱 등 속도저감 장치를 설치



##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보도 상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로의 최하위 차로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통행 가능하도록 한다.







## 보차교행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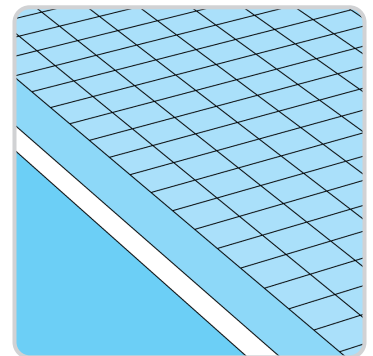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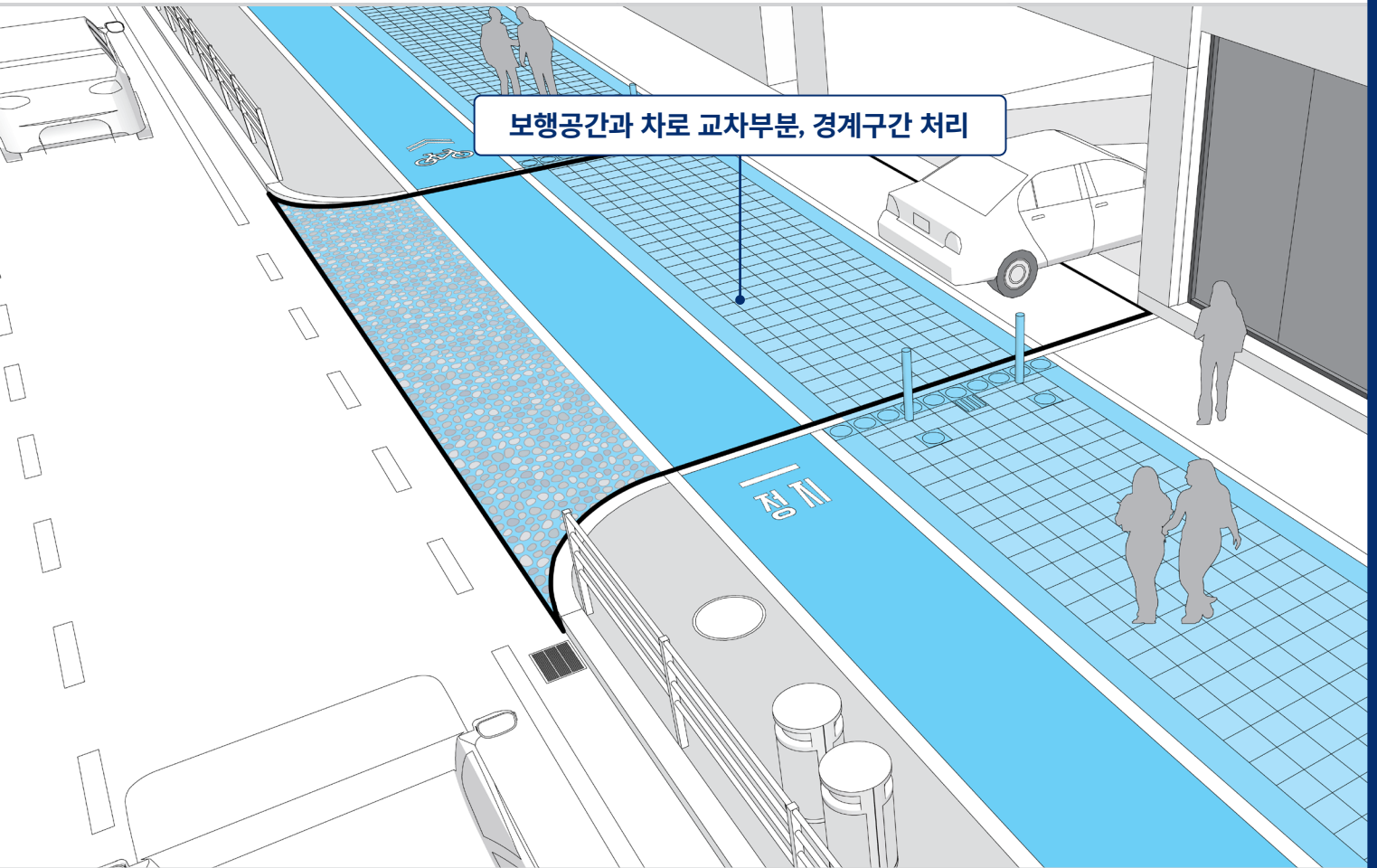
(1)	차량 진출입구	043
(2)	횡단보도	046

### 계획원칙

- 차도의 횡단구역,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되는 보도상의 차량 진출입구역은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차로 횡단구역에서는 차로의 수,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형태와 구조를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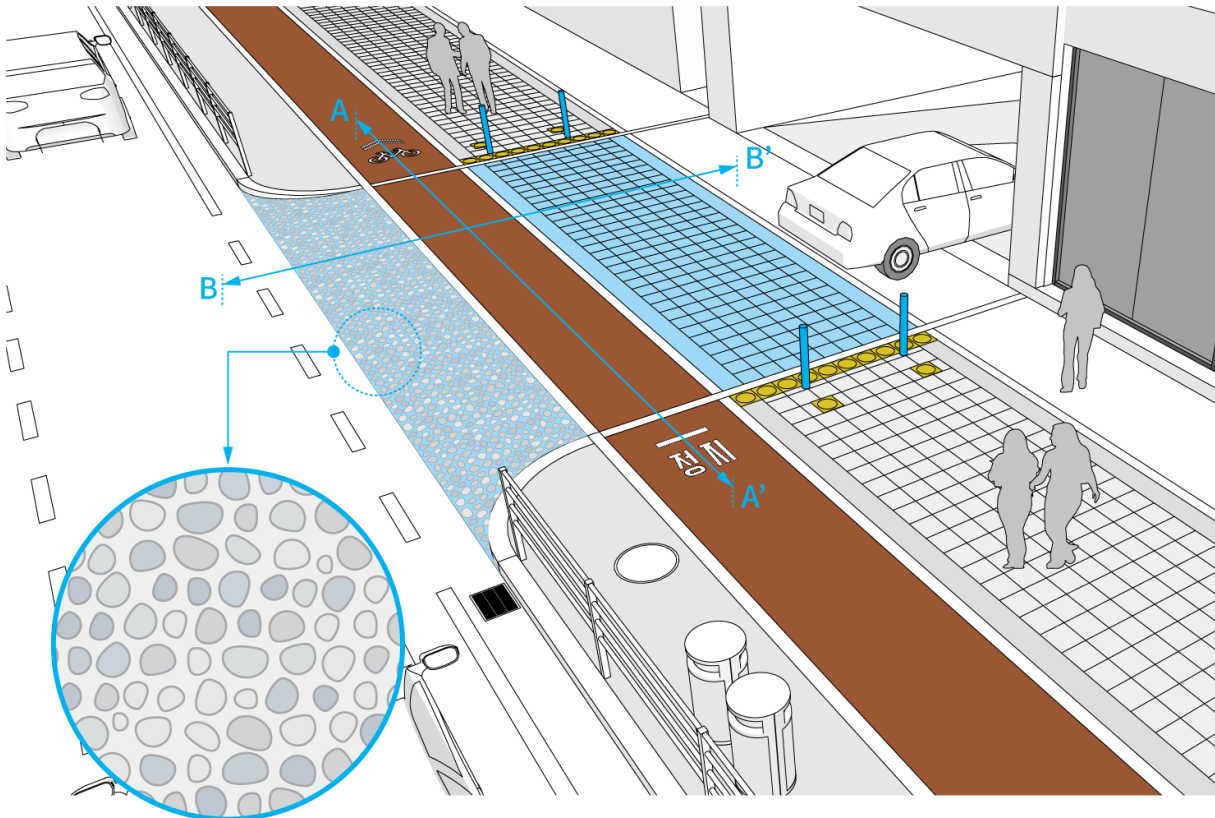
# (1) 차량 진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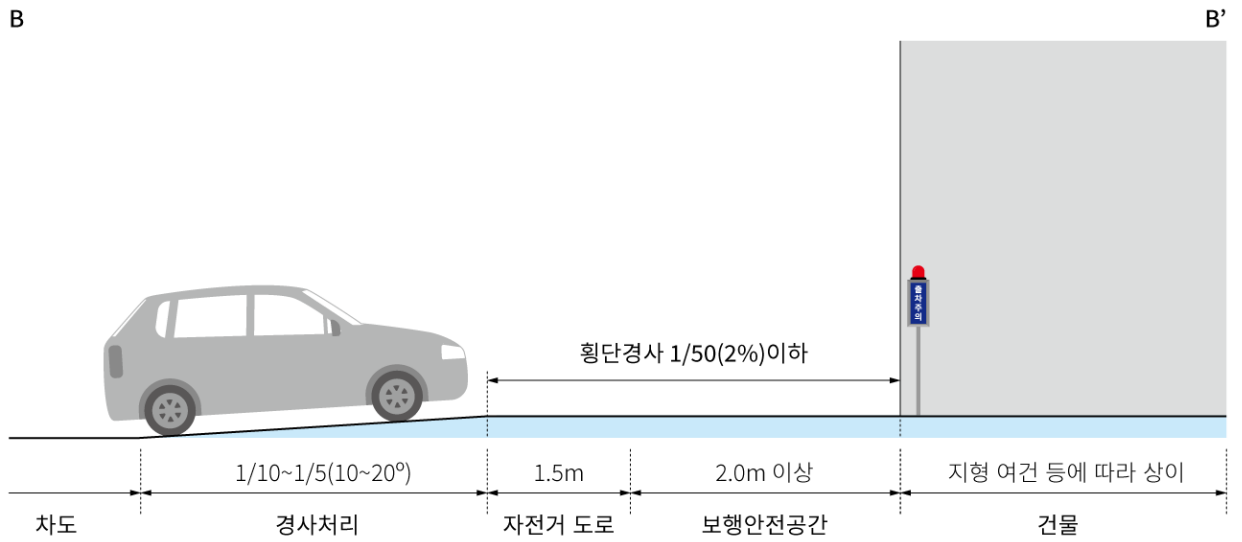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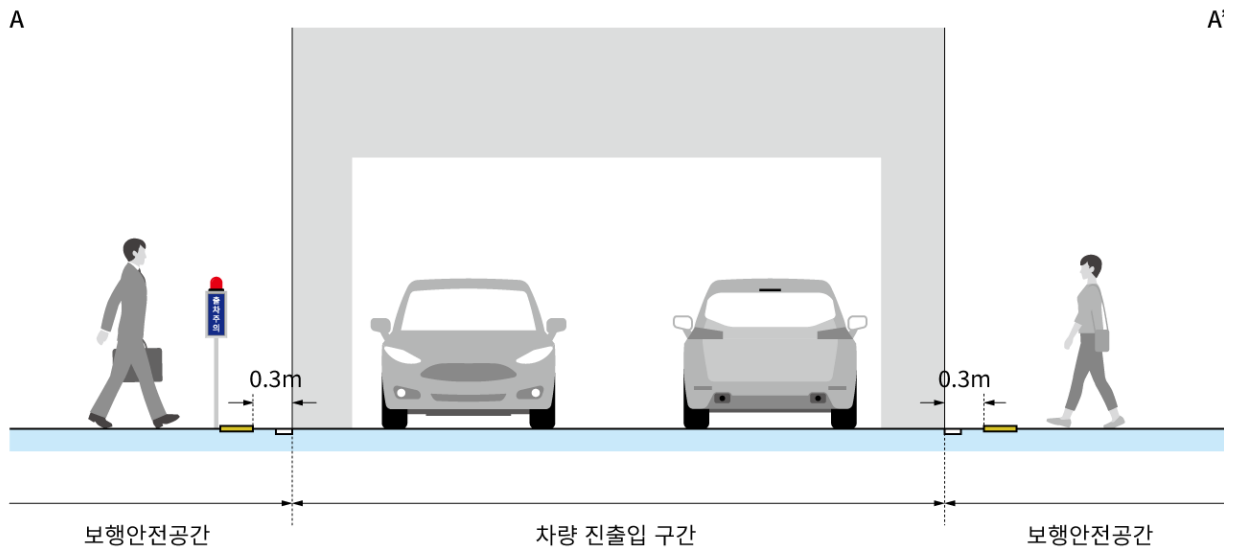


## 보행공간과 차로 교차부분, 경계구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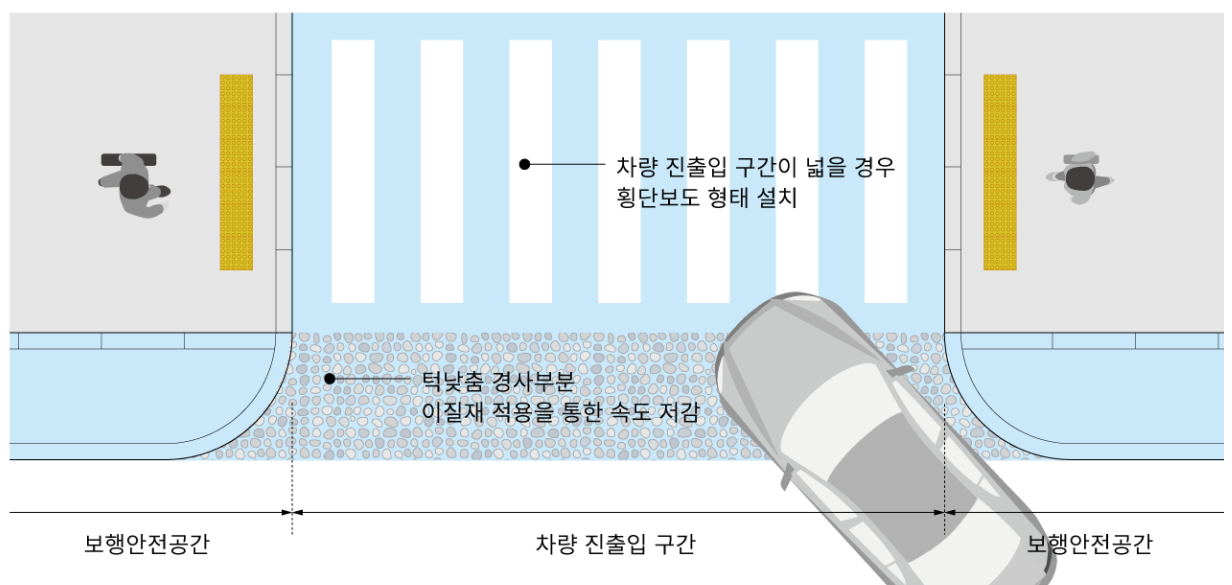
보행안전공간과 차량 진출입구의 경계 전후에는 재질, 색상 등을 달리하여 주의·경고 표시를 하며, 보도는 단절 없이 연속되도록 계획한다.

- 차도에서 차량 진출입구 방향으로 단차 발생 시에는 시설물 구역 또는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경사 처리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의 횡단 경사는 1/5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다.
- 차량 진출입구 경계에는 시각장애인 및 인지 능력이 낮은 보행자를 고려하여 주의·경고 표시 시설을 설치하며, 차량 진출입구 전후에는 차량 속도저감을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 차량 진출입구역은 바닥 재료·마감을 주변과 달리하여 차량 진출입구역임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 2대의 동시 진출입 등 차량 진출입 구간이 넓게 형성되어 보행안전공간의 연속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횡단보도 형태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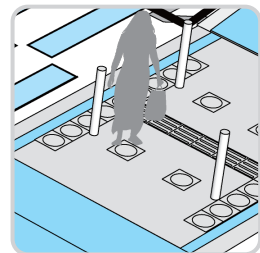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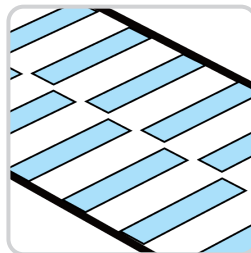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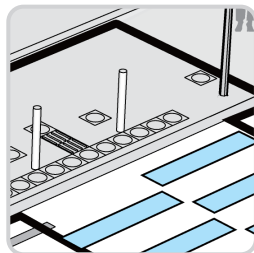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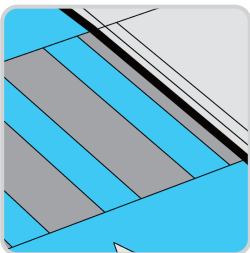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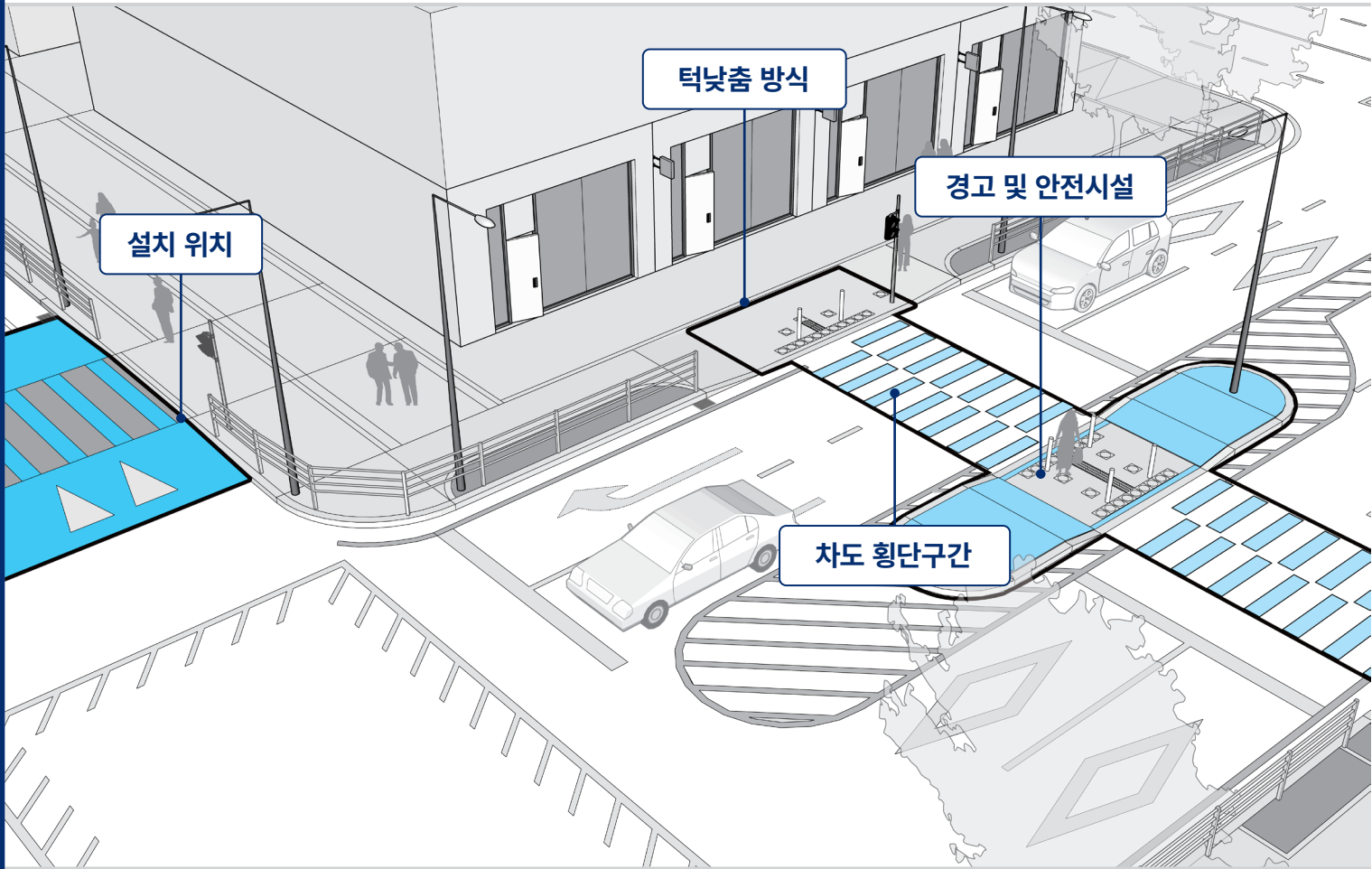




TOP VIEW



## (2) 횡단보도



## 설치 위치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구간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턱낮춤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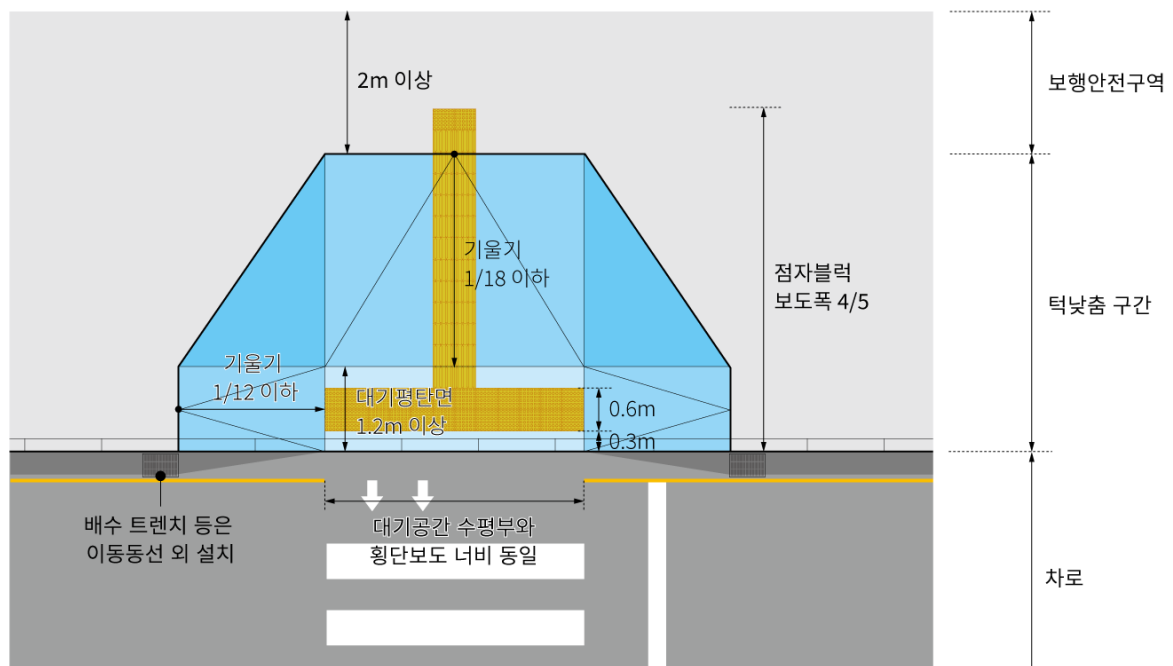
횡단보도의 대기공간, 차도와의 경계, 차도 횡단 구간은 누구나 안전한 대기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차로 수, 차량 이동량, 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에 턱낮춤 방식을 적용한다.

### 턱낮춤 적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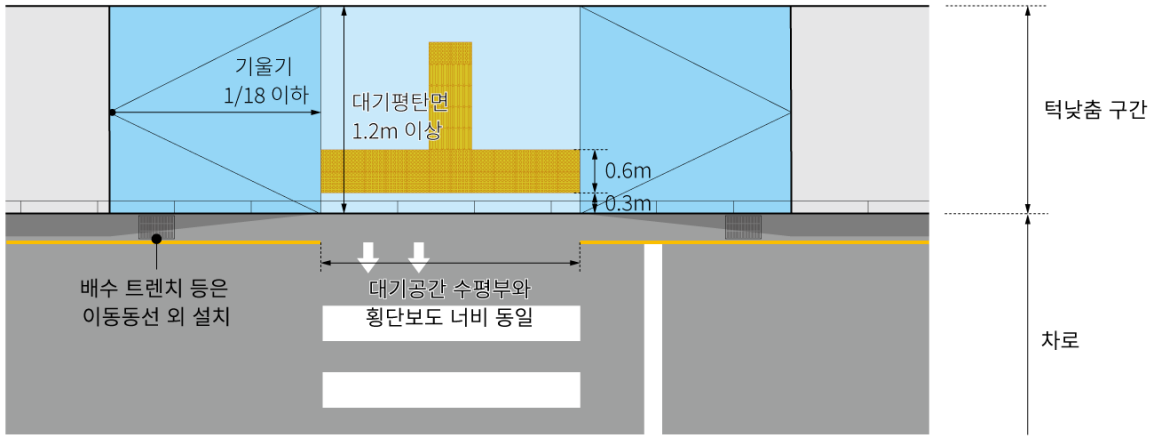
- 횡단보도의 전체 턱낮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차도와의 경계부는 무단차 처리
  - 턱낮춤 구간을 제외한 대기공간 유효폭 1.2m 이상 확보
  - 턱낮춤 기울기 1/18 이하, 측면 경사 1/12 이하
  - 대기공간 수평부와 횡단보도 너비를 같게 설치
  - 횡단보도 대기 및 이동 동선 상 배수 트렌치, 덮개 등 미설치

\* 횡단보도 진입부 세부 기준은 「가로 설계 매뉴얼」 pp.160~16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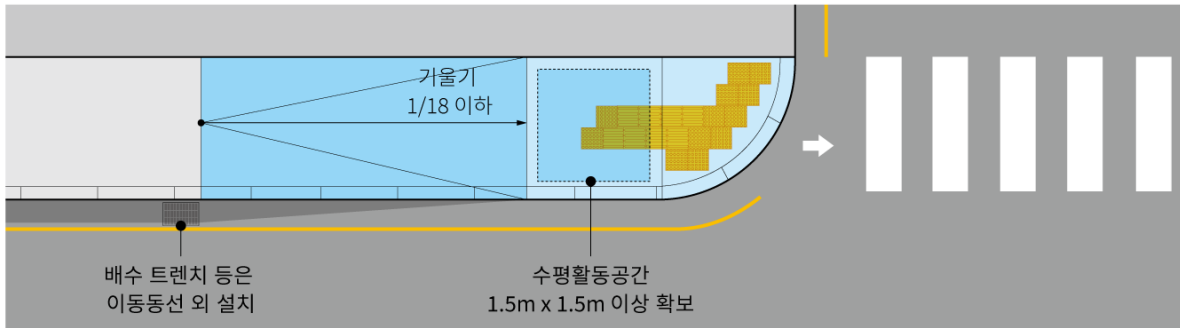
### 보도 폭이 넓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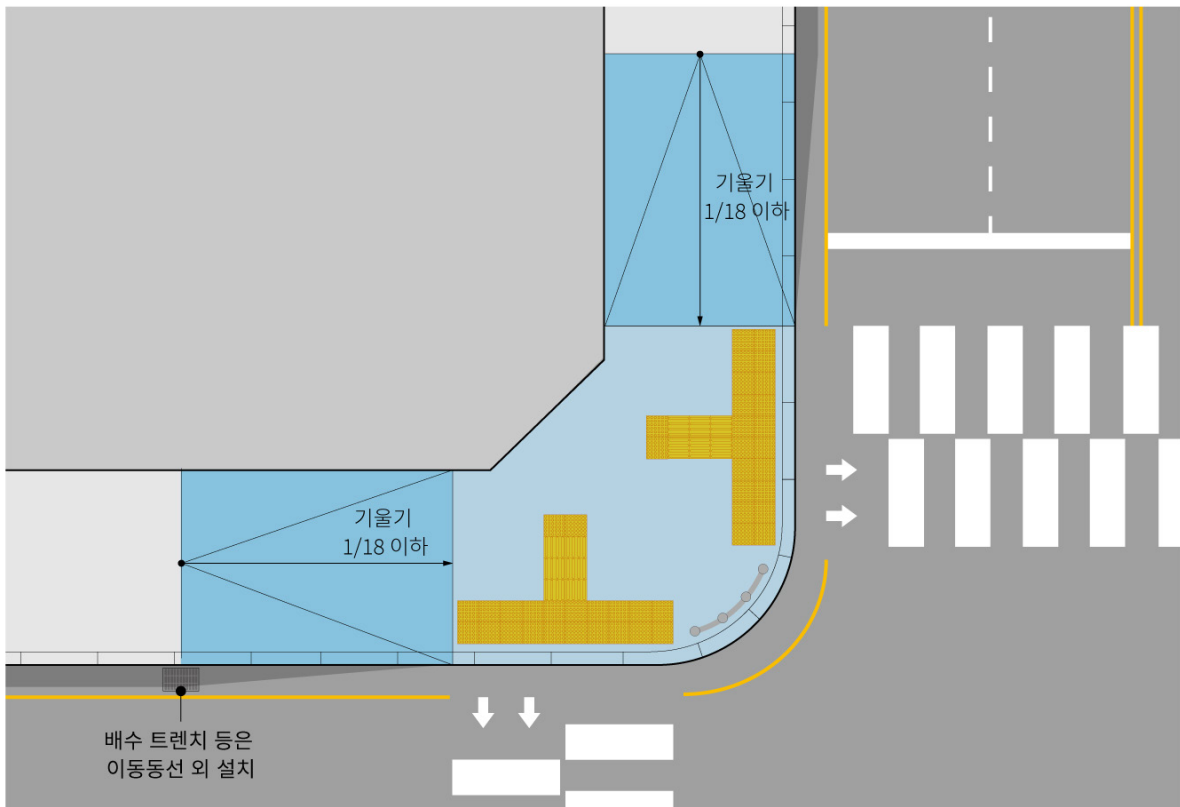
보도 폭이 좁은 경우



횡단보도 진입부가 곡선인 경우



교차로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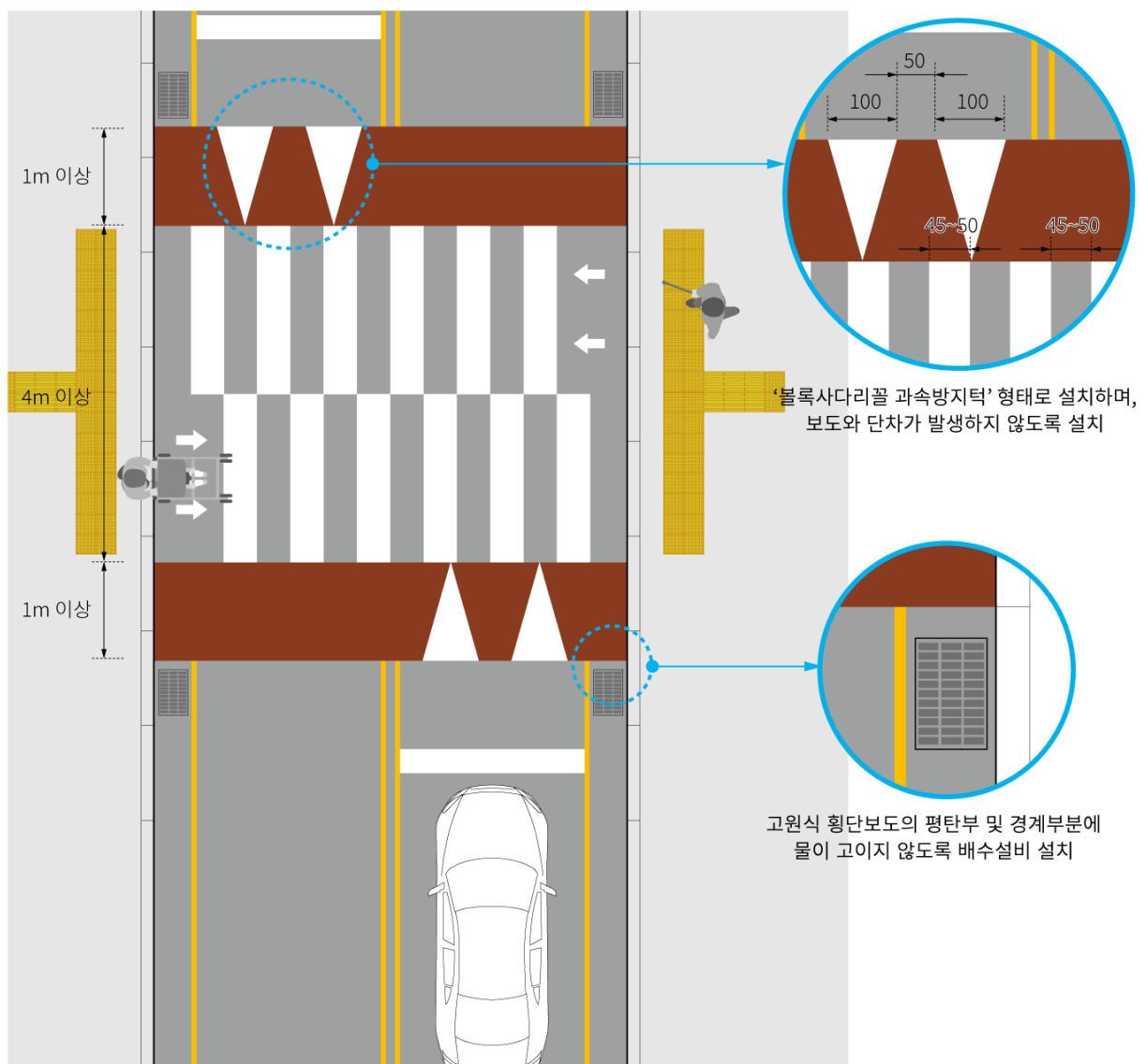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기준

- 횡단보도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편도 2차로 이하 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적용
  - 보도 높이가 높여진 횡단보도 면 전체에 주변 도로와 구분되는 포장재 적용 및 배수 설비 확보
  -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에는 가급적 설치 지양

\* 고원식 교차로의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158~15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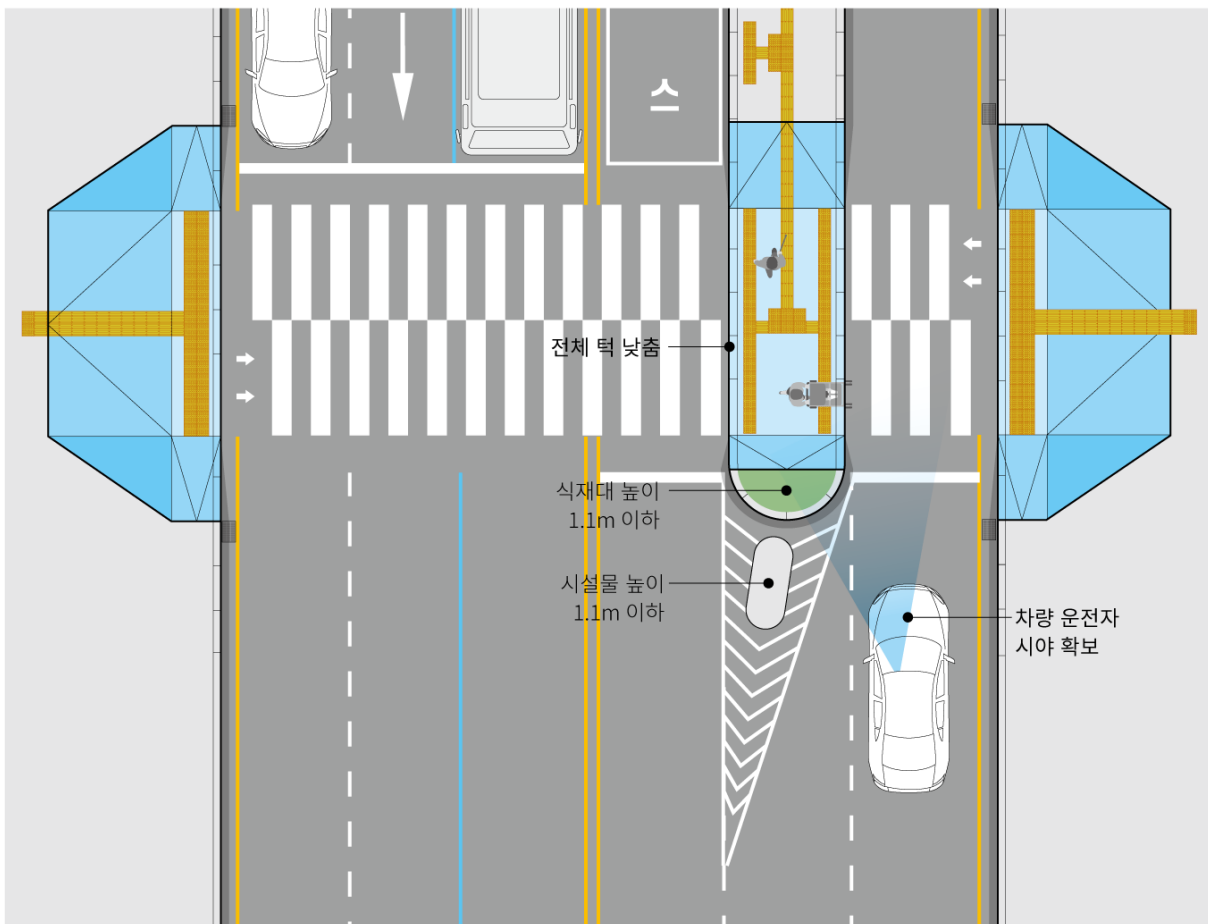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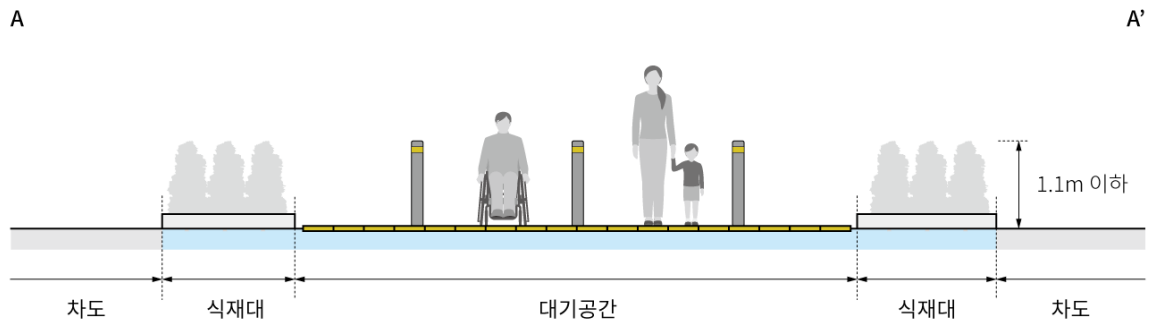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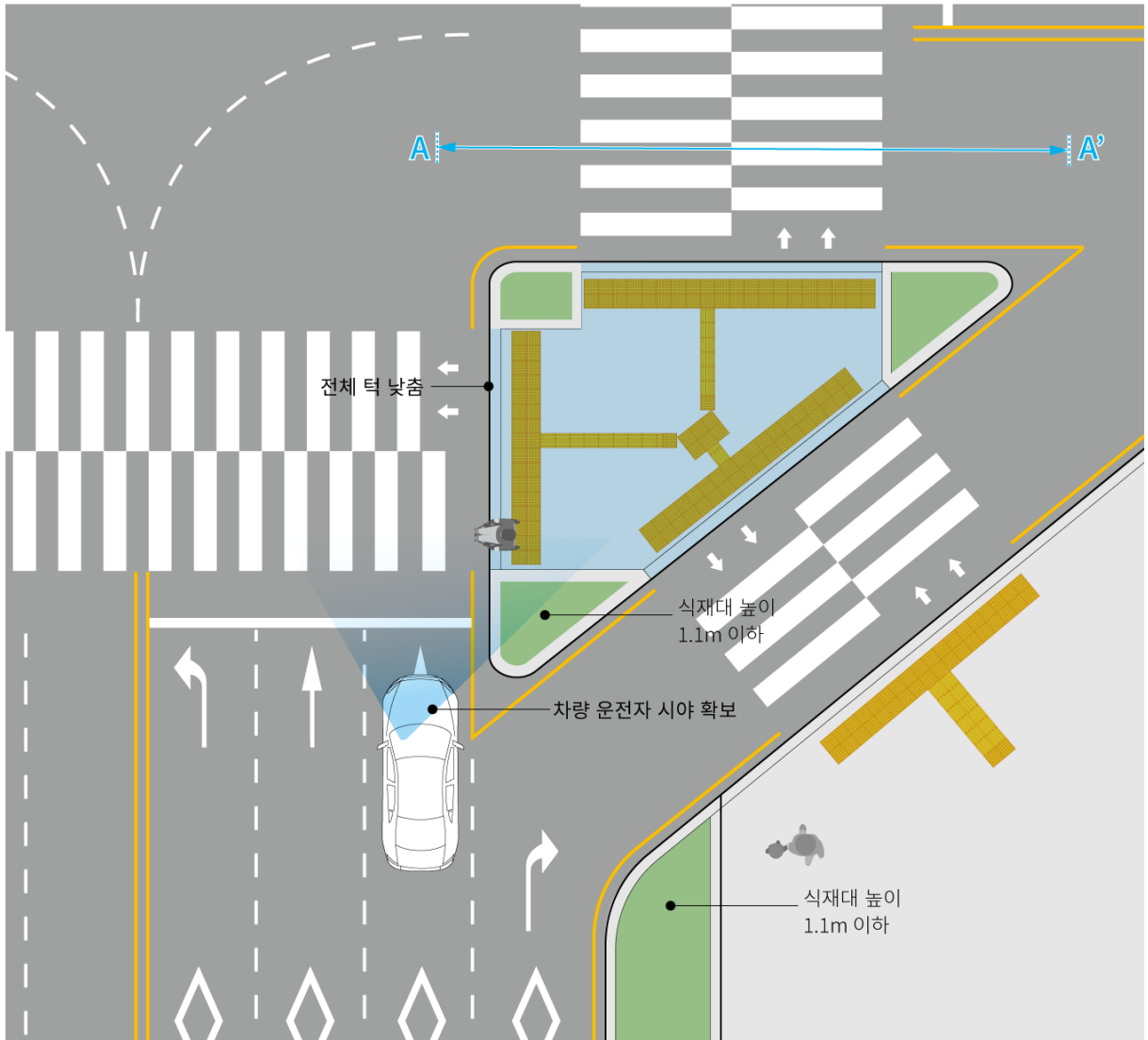
## 교통섬식 횡단보도 설치기준

- 교통섬식 횡단보도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도로와 단차 없이 설치, 조경 설치 부분은 연석 높이를 올려 설치
  - 최소 1.5m 이상 보행자 대기공간 확보(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교통섬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최소 1m 이상 보행자 대기공간 확보)
  - 차량 운전자가 교통섬 및 교통섬 내 보행자를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
  - 교통섬 대기공간 전후 차도 경계에 0.3m 이격하여 점자블록 설치
  - 횡단보도 보도부 대기공간은 전체 턱낮춤 전용 기준 준수

\* 교통섬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116~117 참조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교통섬식 횡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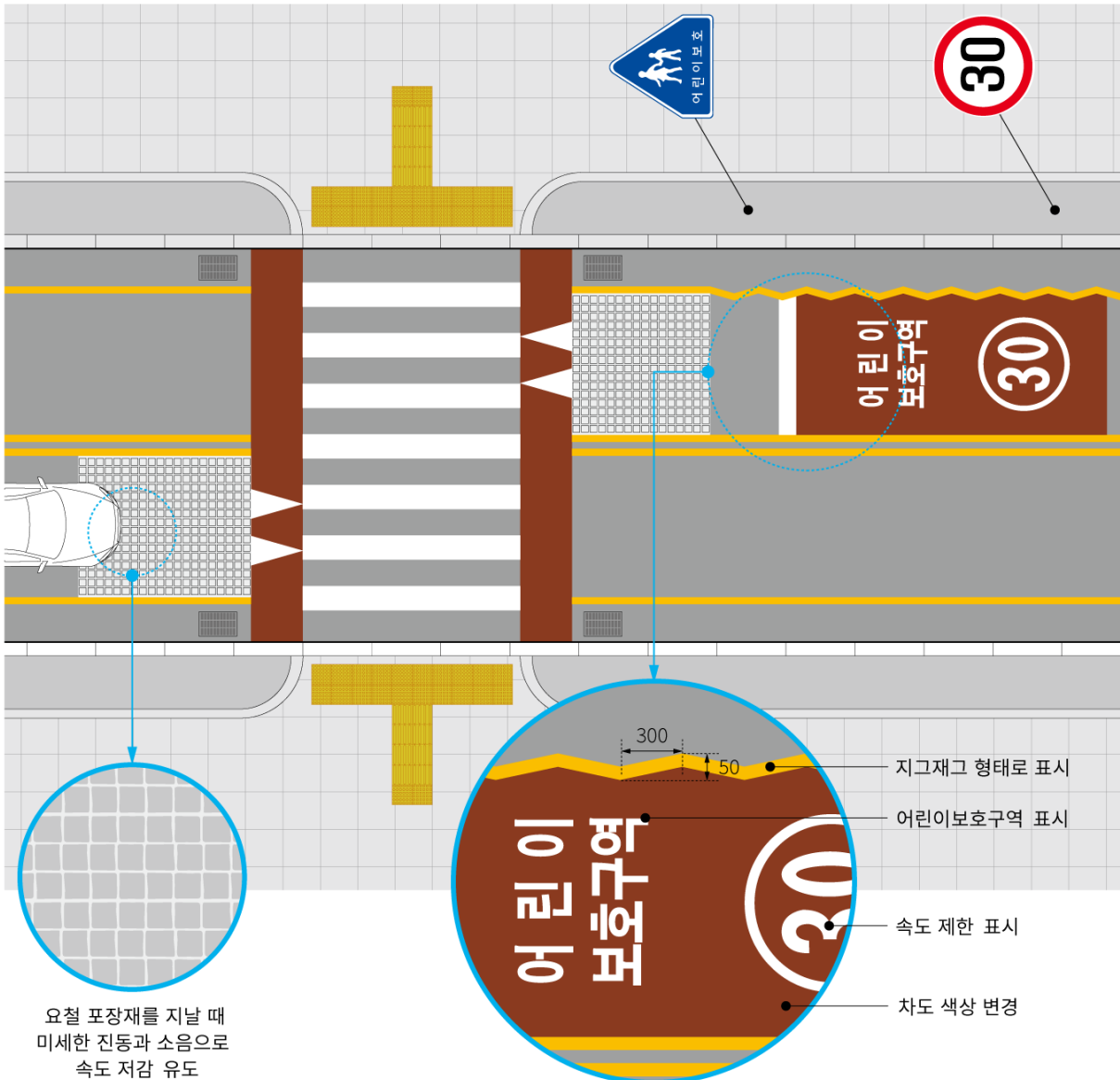


## 차도 횡단구간

차도 횡단구간은 보행자의 안전한 차도 횡단을 위해 차량의 속도저감 및 보행자 인지성이 강화되도록 설치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의 차도 횡단구간은 차도와 포장 재질을 달리하여 운전자에게 주의·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한다.
- 차도 횡단구간 내 운전자의 시각적 인지성 향상을 위해 고휘도 반사 재료(발색 도료)를 사용하여 노면 표시를 한다.

\* 횡단 구간의 세부 기준은 「교통 노면 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도로교통법 관련 시행규칙」 참조



## 경고 및 안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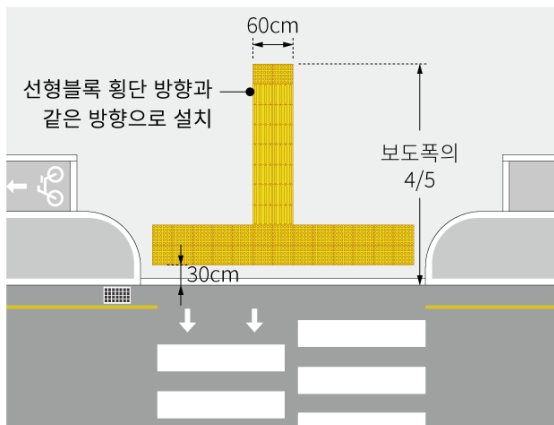
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의 경계 등에는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과 횡단 대기를 위한 경고 및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 및 안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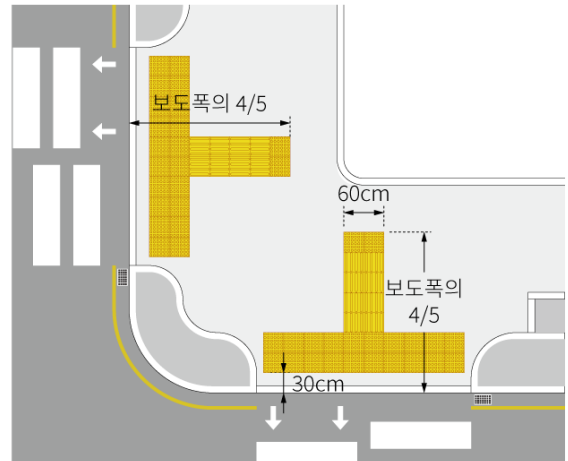
- 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의 경계에 횡단보도의 폭만큼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 및 안내시설(점자블록 등)을 설치한다.
- 기존 보도 상에 선형 유도블록이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 내 점자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한다.
- 교통신호기 설치 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음향 신호기와 기호 또는 숫자로 잔여 횡단 시간이 표시되는 보행자용 교통 신호기를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음성 신호기, 보행자 조작 신호기 등의 조작 버튼 전면 0.3m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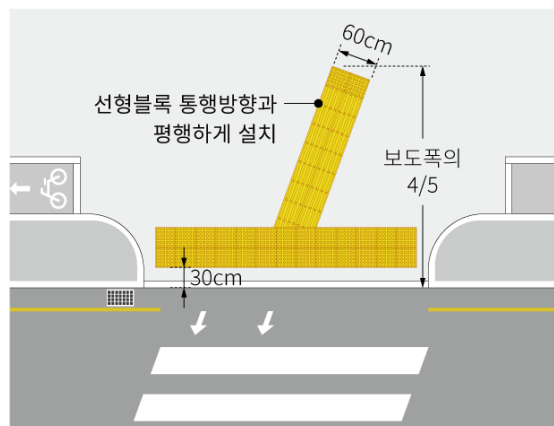
-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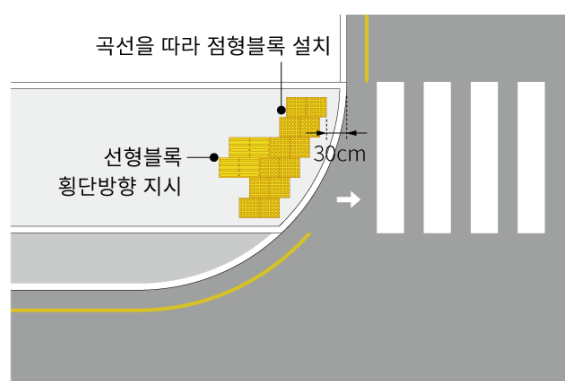
- 두 방향으로 횡단이 가능한 경우



- 횡단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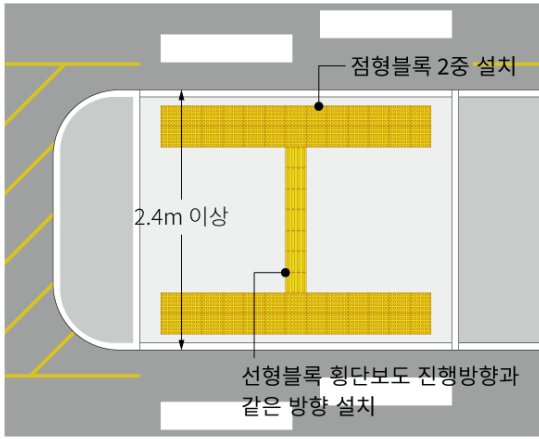


-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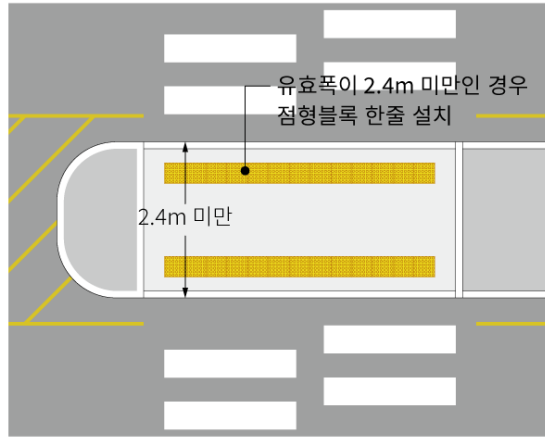


**보행선 점자블록 설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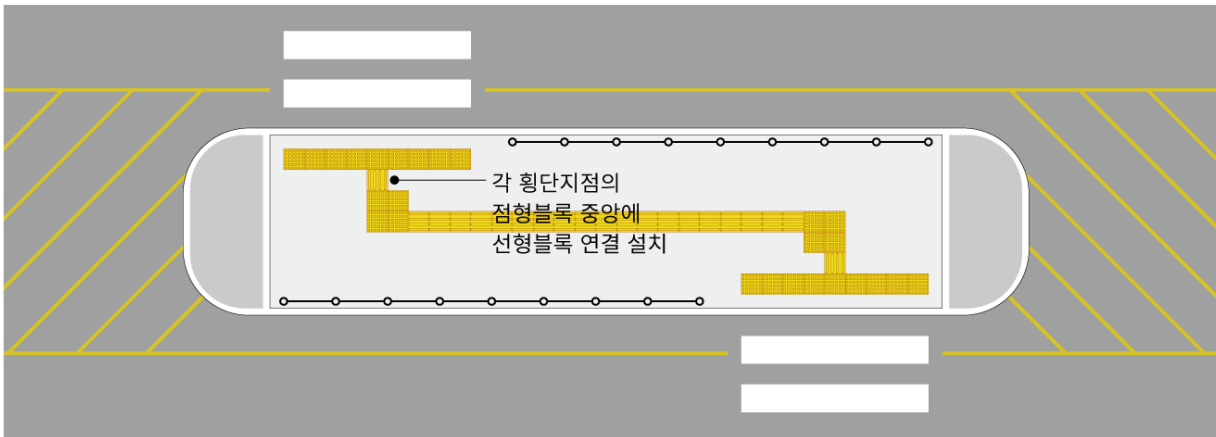
- 폭 2.4m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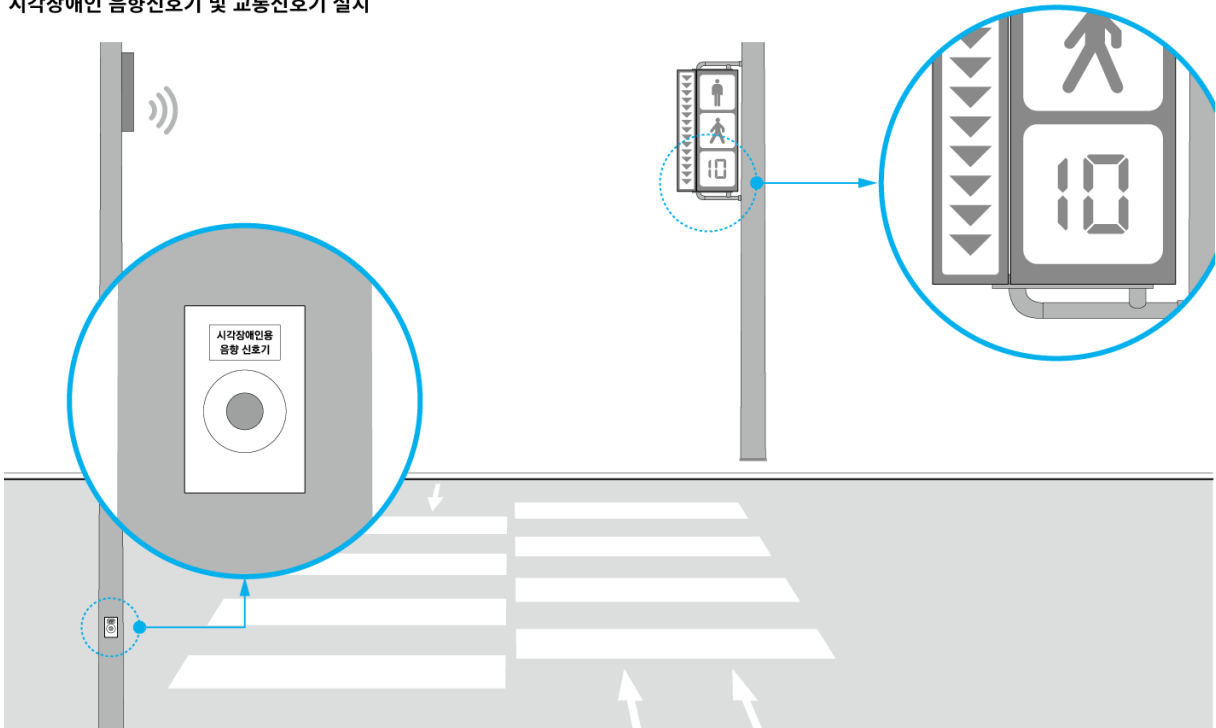
- 폭 2.4m 미만



- 횡단보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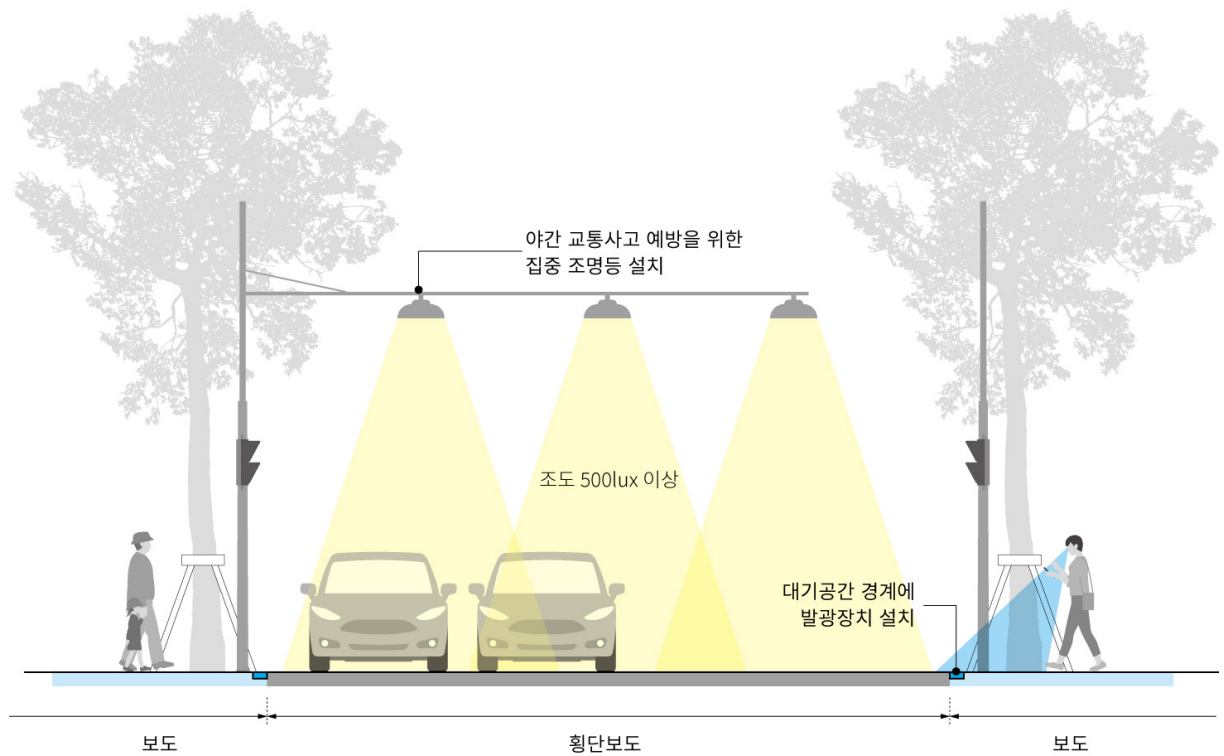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교통신호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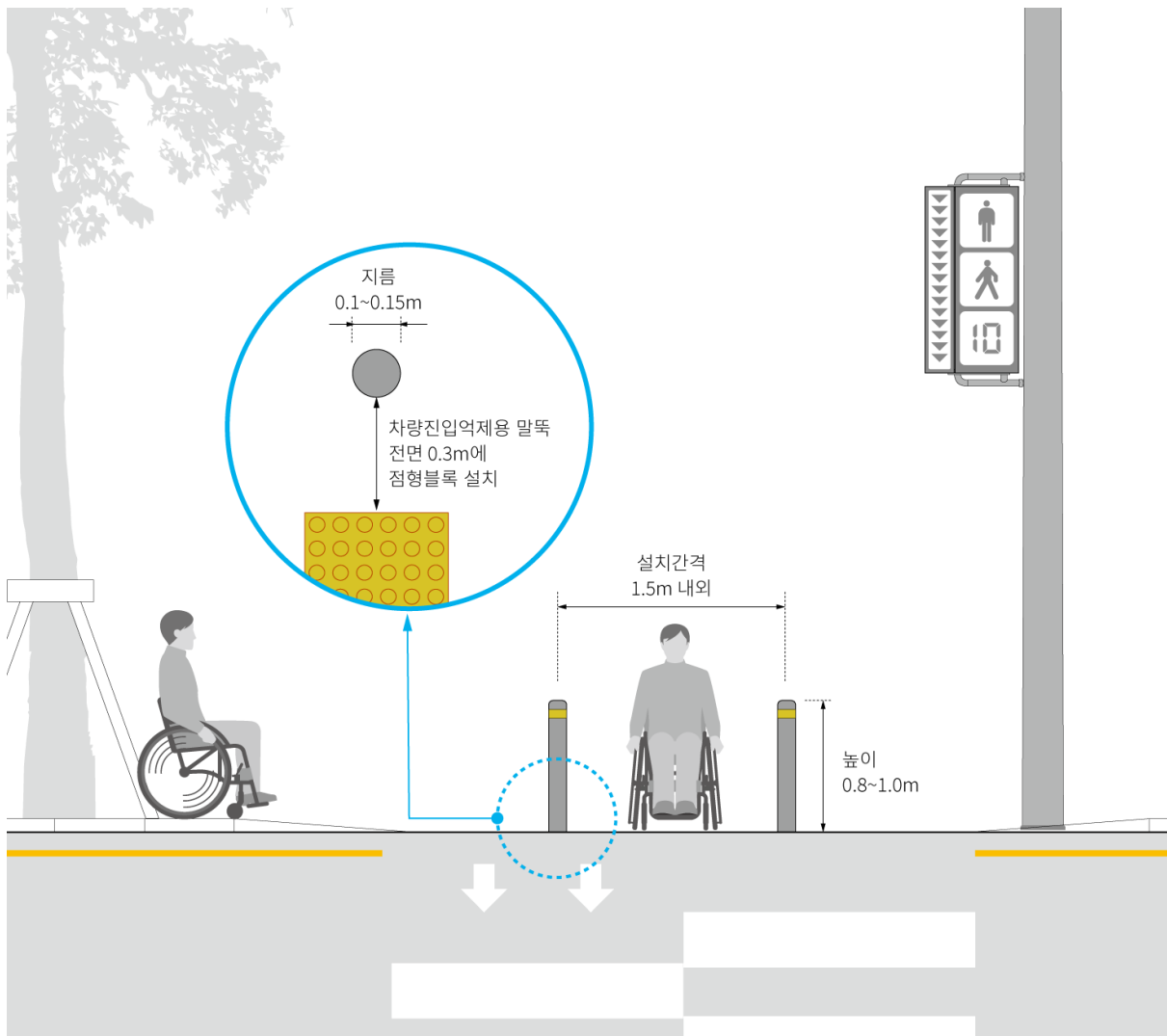
## 인지 강화용 경고 및 안내시설

- 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 횡단구간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조도를 확보한다. (도로의 연속 조명과 광원색이 다른 조명 사용 권장)
- 횡단보도 전후 차도에 야간 발광장치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횡단보도 인지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 횡단보도와 횡단 대기공간 경계에 발광장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인지성을 향상시킨다.
- 횡단 대기공간 및 횡단구간 조도는 500lx 이상을 확보한다.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 횡단 대기공간과 횡단구간 경계에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말뚝을 설치한다.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은 '보도-보도상의 시설물-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기준을 준수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 생활도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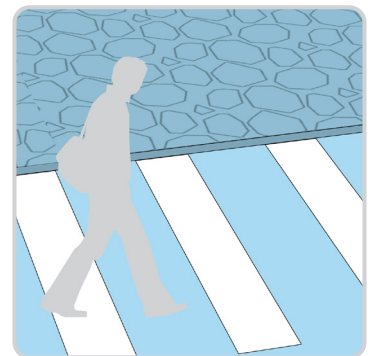
(1)	보행자 우선도로	059
(2)	생활도로(이면도로)	064
(3)	보행 안전성 확보	066

### 계획원칙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 우선구역과 보행 환경개선 지구와 같이 차량 통과 수요가 적고 보행 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 및 구역을 말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도의 정비 뿐만 아니라 보도와 인접한 공간 및 시설까지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 (1) 보행자 우선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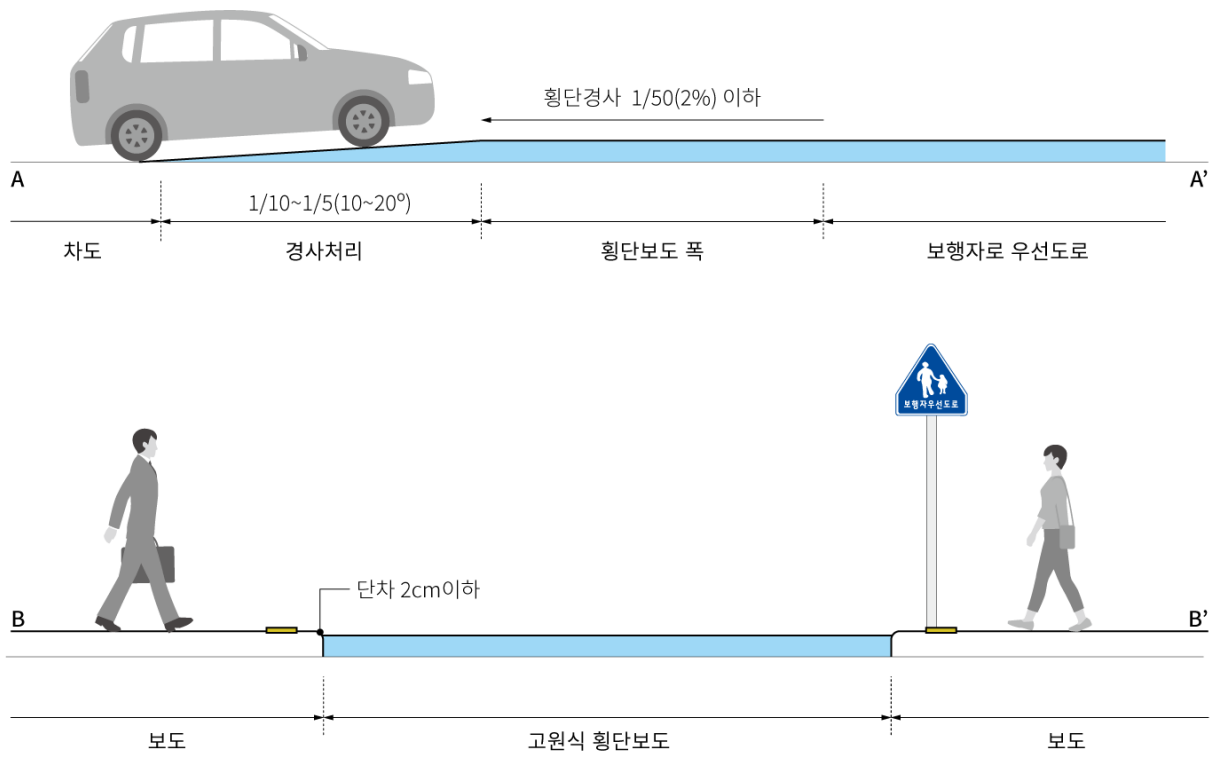
## 보행자 우선도로의 구조

보행자 우선도로의 진입구간은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구역 안내 표시를 통해 차량의 속도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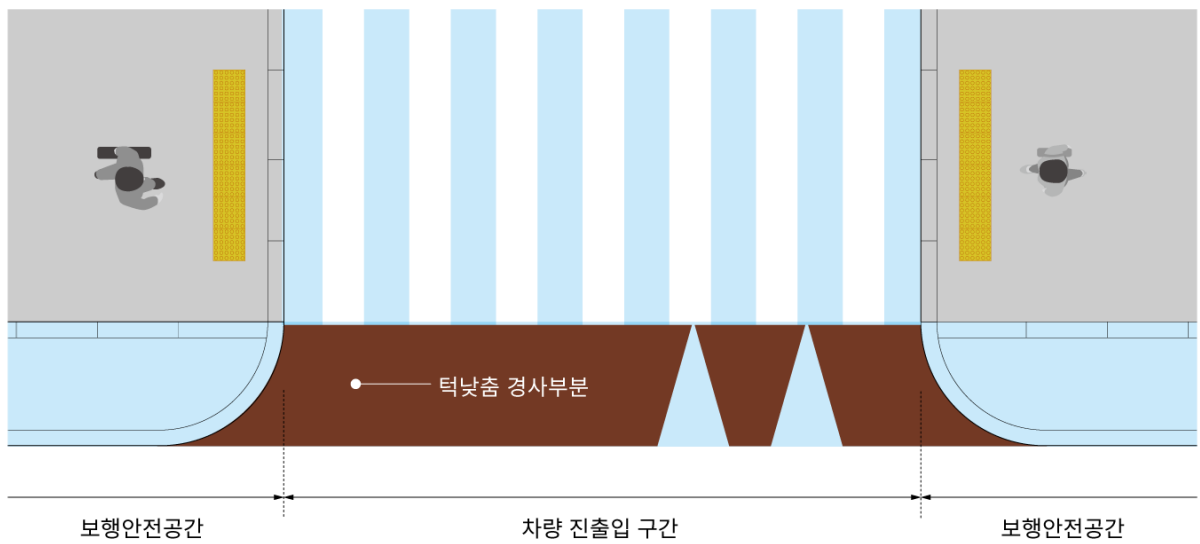
### 차량 진입구간의 구조

- 보도 단절 구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버스가 통행하는 구역의 진입부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행약자의 통행이 빈번하거나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고려한다.
- 해당 구역 진입부에 보행자 우선도로에 관한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입식 표지 또는 바닥 표시 등)
- 진입부에는 기존 차도 색상과 다른 색상 마감 및 요철 패턴 등으로 운전자가 쉽게 해당 구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보도-보차교행구간-횡단보도' 참조





TOP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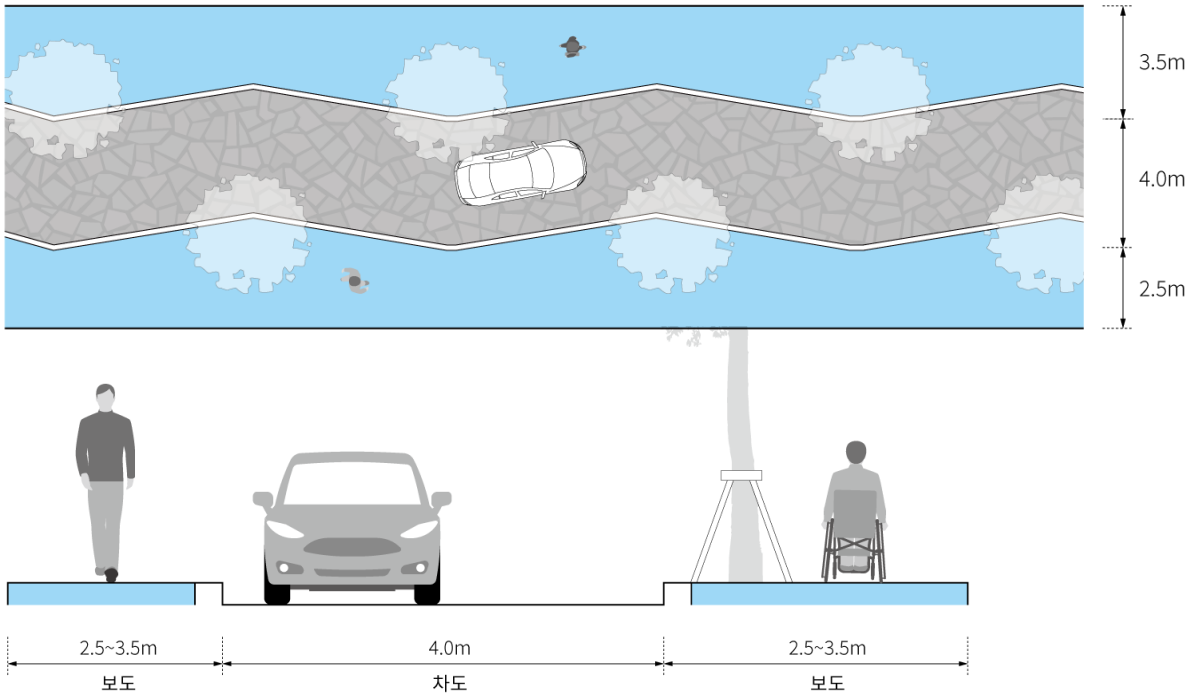


###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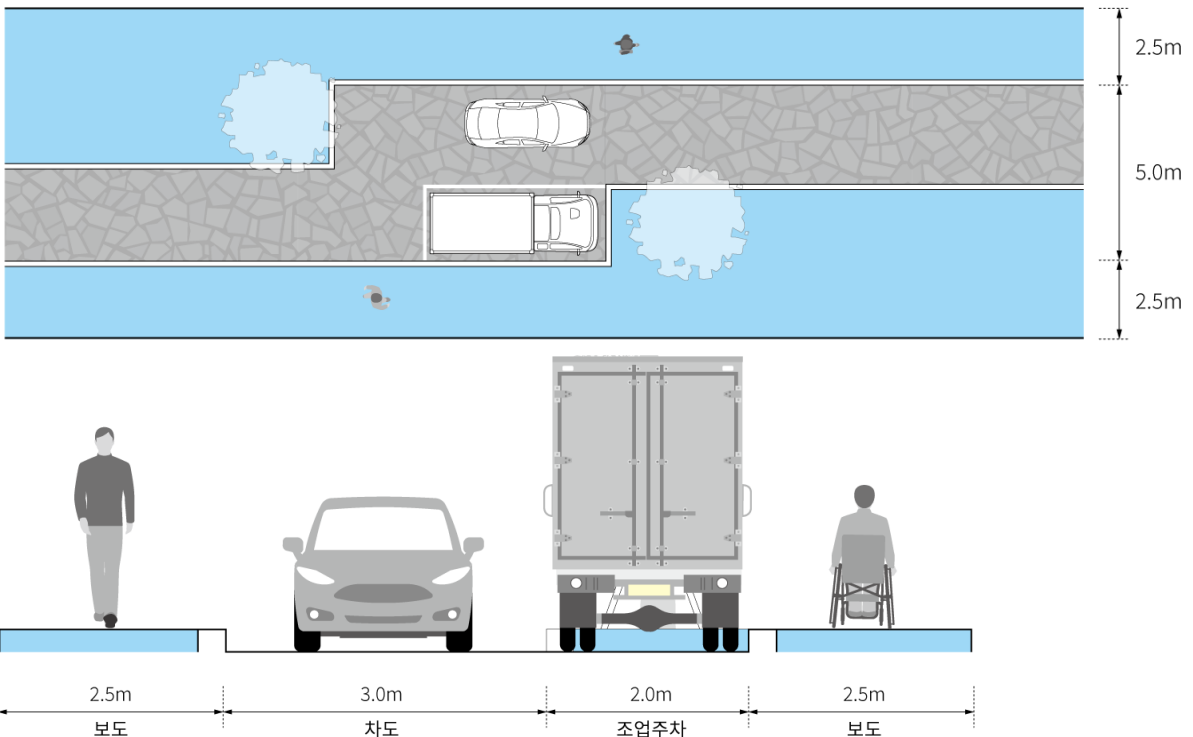
- 보행자 우선도로에 별도의 보행안전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의 차도는 차량 속도저감을 유도하는 거친 질감, 요철 포장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며, 가로의 성격에 따라 속도저감을 위한 도로 구조를 적용한다.

#### 일방통행도로

- 도로 폭이 8m~10m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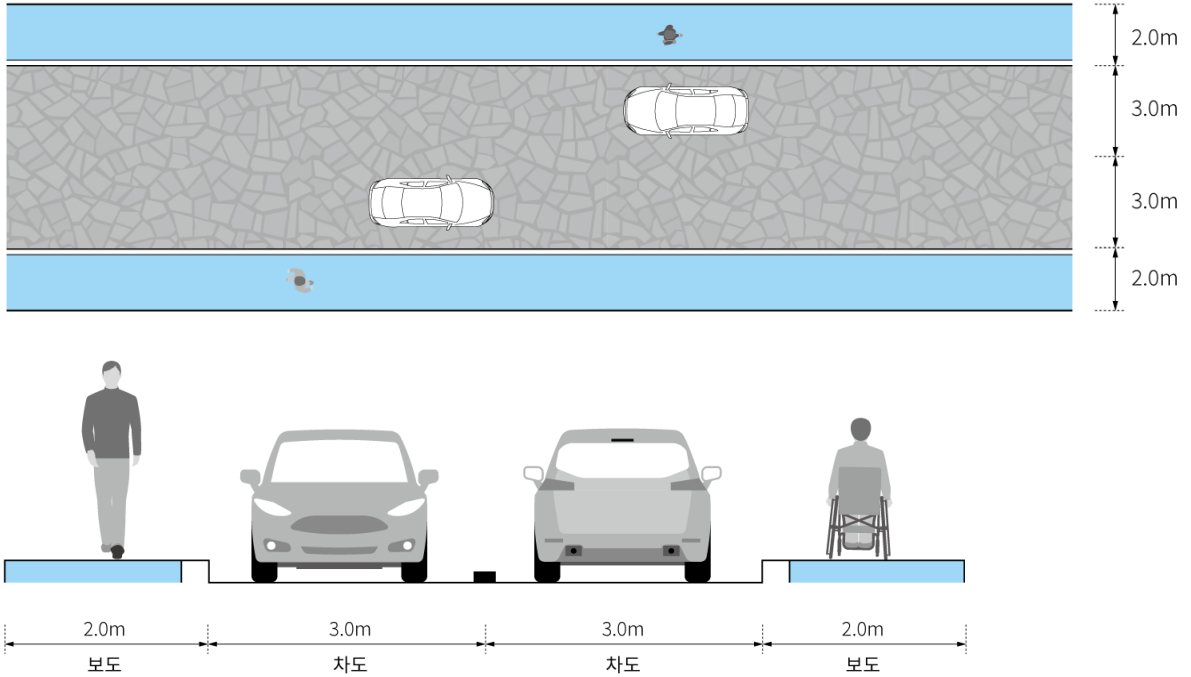


- 도로 폭이 10m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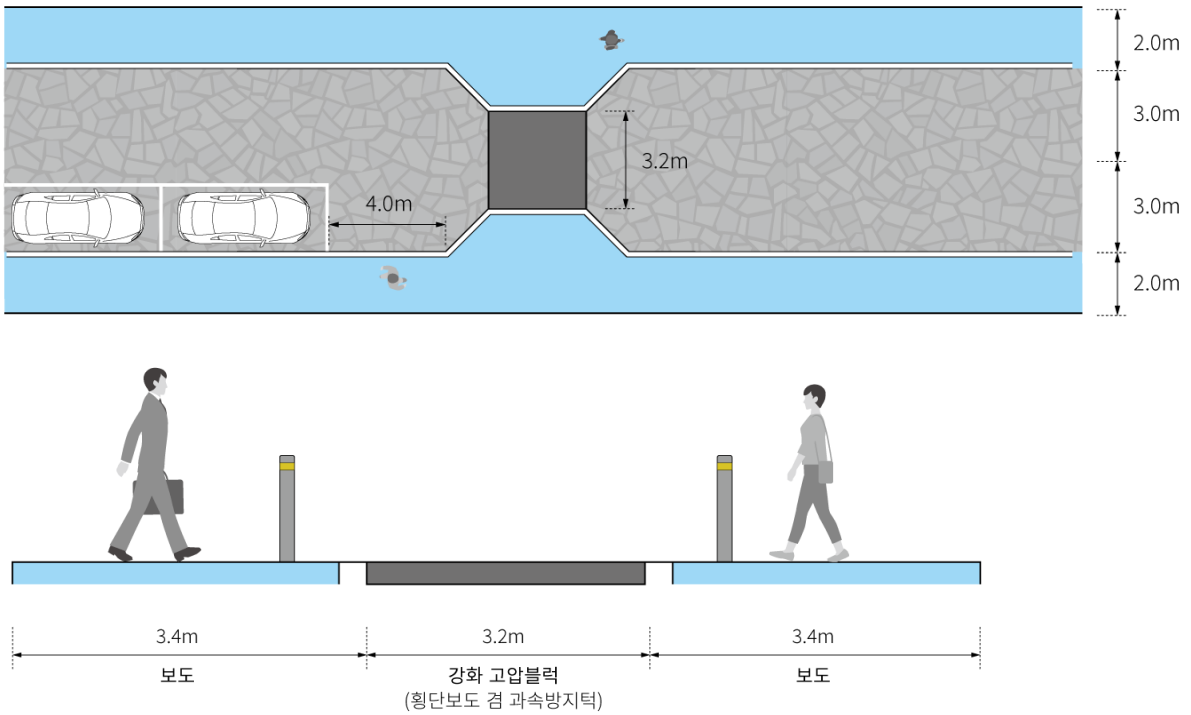


**양방향통행도로**

- 도로 폭이 8m~10m인 경우



- 도로 폭이 10m 이상인 경우



**주의·경고 및 안내시설**

-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주변의 교통시설, 반경 600m 이내 주요 시설물, 반경 1.2km 이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항 등에 관한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안내시설은 음성 안내, 점자 등을 병기하고, 이 외 세부 사항은 '보도-안내시설-구역 안내'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 (2) 생활도로(이면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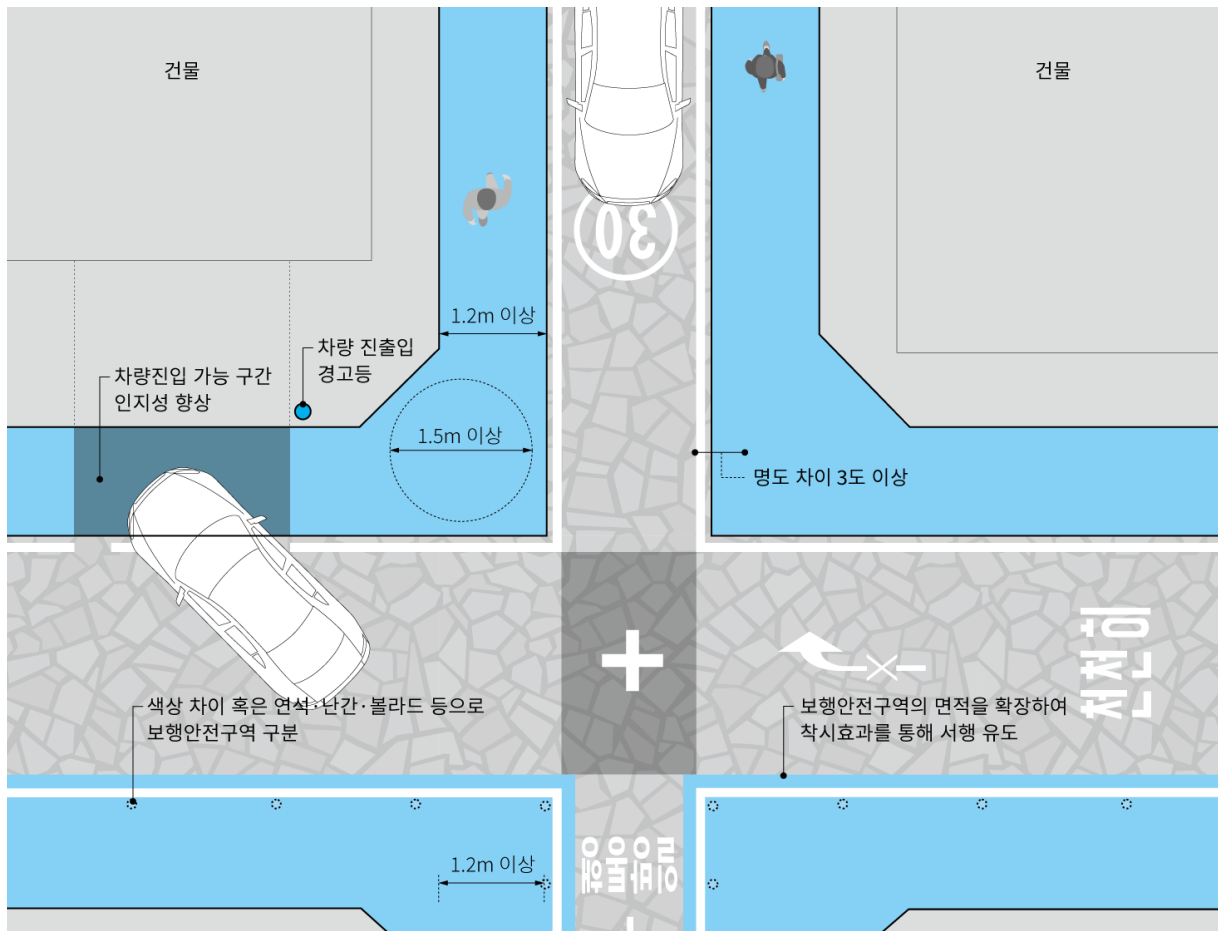


## 보차혼용 도로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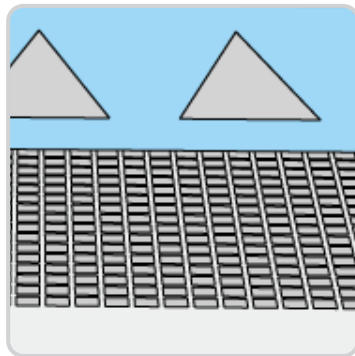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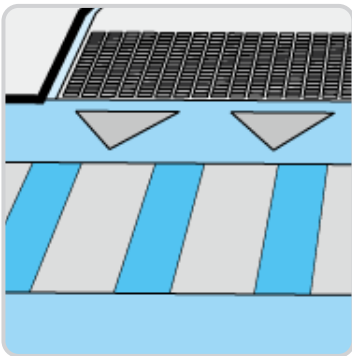
생활도로(이면도로)와 같이 차도와 구분된 보행안전공간 확보가 어려운 보차혼용도로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차도 측면 등을 활용하여 1.2m 이상의 폭으로 보행공간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때, 차로 경계와 보행공간의 바닥 포장을 구분하거나 연석·난간·볼라드 등을 활용한 보행공간을 구분하도록 한다.
- 보행공간과 차량 이동 공간을 바닥면의 색상 차이로 구분할 시에는 포장면 색상의 명도 차이가 3도 이상 나도록 하되, 시각적으로 복잡하지 않도록 단순한 패턴을 적용한다.
- 차로 바닥 포장을 할 경우라도 보행안전공간의 바닥 미끄럼 방지 성능 기준을 준수한다.
- 생활도로(이면도로) 등은 도로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한 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주차 구역 설치를 지양한다.
- 보행공간은 단절 없이 연속되게 설치하되 교차로와 차량 진출입 구간에서 차량의 진출입에 대해 보행자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주의·경고 표시를 설치한다.

\* 도로포장 변화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118~119 참조



### (3) 보행 안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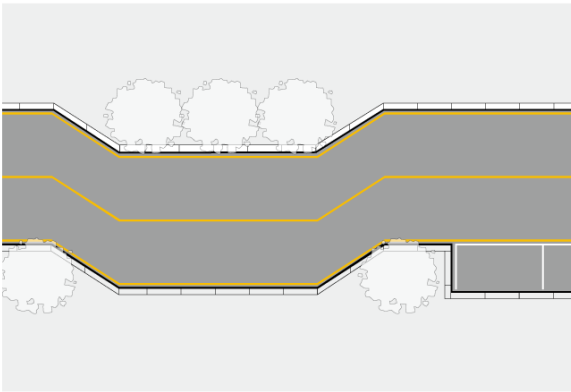
## 차량 속도저감 계획 수립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주택가의 생활도로(이면도로), 스쿨존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노유자 시설이나 병원 주변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차량의 속도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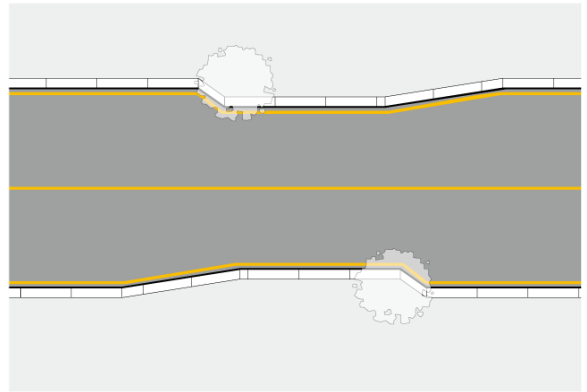
-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 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 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시설을 설치한다.
-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 유도 시설, 방호 울타리, 충격 흡수 시설, 조명 시설, 과속 방지 시설, 도로 반사경, 미끄럼 방지 시설, 노면 요철 포장, 긴급 제동 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 육교(지하 횡단보도 포함) 등의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차량 속도 저감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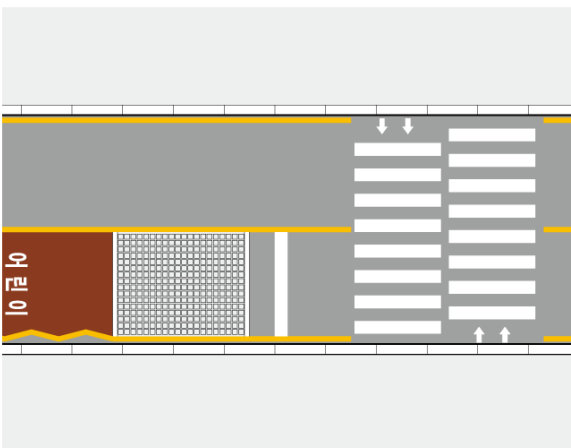
- 지그재그 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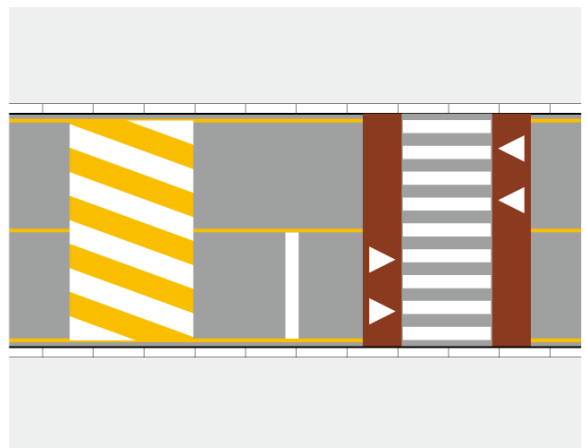
- 차도 폭 좁힘



- 요철포장 및 이질재 포장



-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 관련 안전표지 종류

- 속도저감시설 설치 표지



**113 우좌로 이종급은 도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에 설치

- 우좌로 이종 급은 도로가 있을 때 설치
-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설치
  - 60km/h일 때 100미터 이하 직선거리
  - 50km/h일 때 80미터 이하 직선거리
  - 40km/h일 때 60미터 이하 직선거리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14 좌우로 이종급은 도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에 설치

- 좌우로 이종 급은 도로가 있을 때 설치
-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 거리가 다음과 같을 때 설치
  - 60km/h일 때 100미터 이하 직선거리
  - 50km/h일 때 80미터 이하 직선거리
  - 40km/h일 때 60미터 이하 직선거리
-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18 도로 폭이 좁아짐**  
바깥쪽 차로가 좁혀질 때 설치

-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나 3차로 이하의 도로에 폭이 좁아질 경우에 설치
-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19 우측차로 없어짐**  
우측 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설치
-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120 좌측차로 없어짐**  
좌측 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좌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설치
-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121 우측방 통행**  
안쪽 차로 폭이 좁혀질 때 설치

-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
-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29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설치구간에 설치

-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가 있는 지점 전 3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32 횡단보도**  
횡단보도 설치구간에 설치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의 경우에 설치
  - 포장도로의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 (신호기 유무에 관계없이 설치)
- 횡단보도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 도로우측에 설치

- 속도저감시설 바닥 표지



**517 속도제한표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 최고 속도를 지정한 구역 내 또는 도로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518 속도제한표시(어린이 보호구역 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



**519 서행 표시**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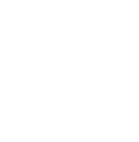


**520 서행 표시**  
차가 서행하는 곳을 표시하는 것으로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 진로 변경 제한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는 것



**521 일시정지 표시**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 등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



**522 양보표시**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나 합류도로 등에서 차가 양보하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



**529 횡단보도 예고표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 횡단보도 전 50~60미터 노상에 설치
- 필요할 경우 10~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각 차로마다 설치



**529 횡단보도 예고표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 횡단보도 전 50~60미터 노상에 설치
- 필요할 경우 10~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각 차로마다 설치

## 차량 속도저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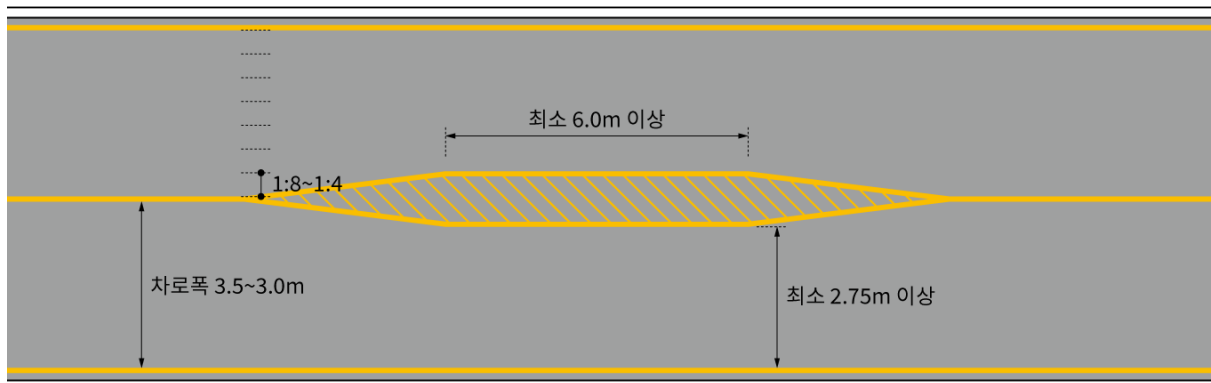
보행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속도저감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차량의 속도 저감효과를 갖추되,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차도 폭 좁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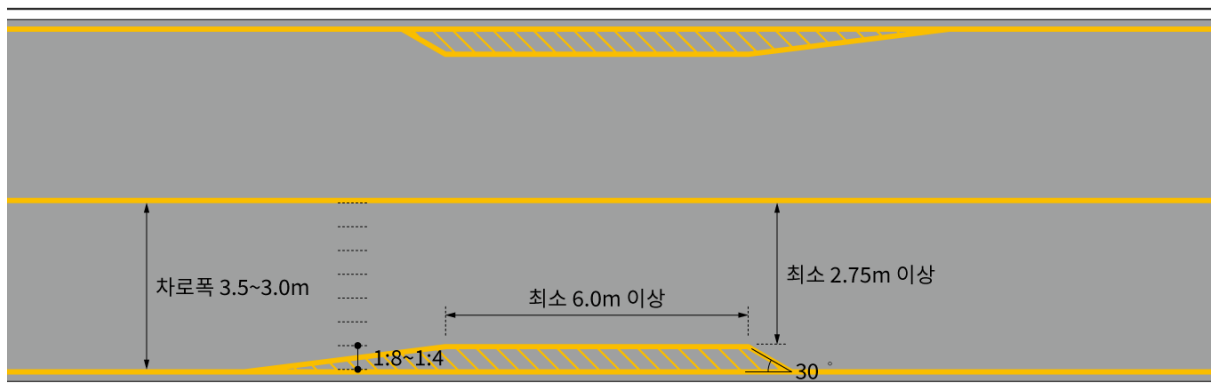
- 차도 폭 좁힘을 통한 속도저감은 다음의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도로의 선형이 지그재그 형태가 되도록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각적 패턴 변화를 설치하되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설치(단, 도로폭 12m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보행공간은 직선의 선형을 유지하고, 보행안전공간의 유효폭 확보
  - 차량이 정해진 차로로만 운행 하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구역 이외의 차도에는 중앙 분리대 등을 설치
  - 충분한 도로 폭과 길이를 확보하며, 야간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조명, 고휘도 발색 도로 등)을 설치
  - 운전자가 차도 구조를 사전에 인지 가능하도록 시인성 높은 안내 및 경고 표시를 설치

\* 차도 폭 좁힘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114~115 참조

### 차로 폭 좁힘 형태의 내측 폭 좁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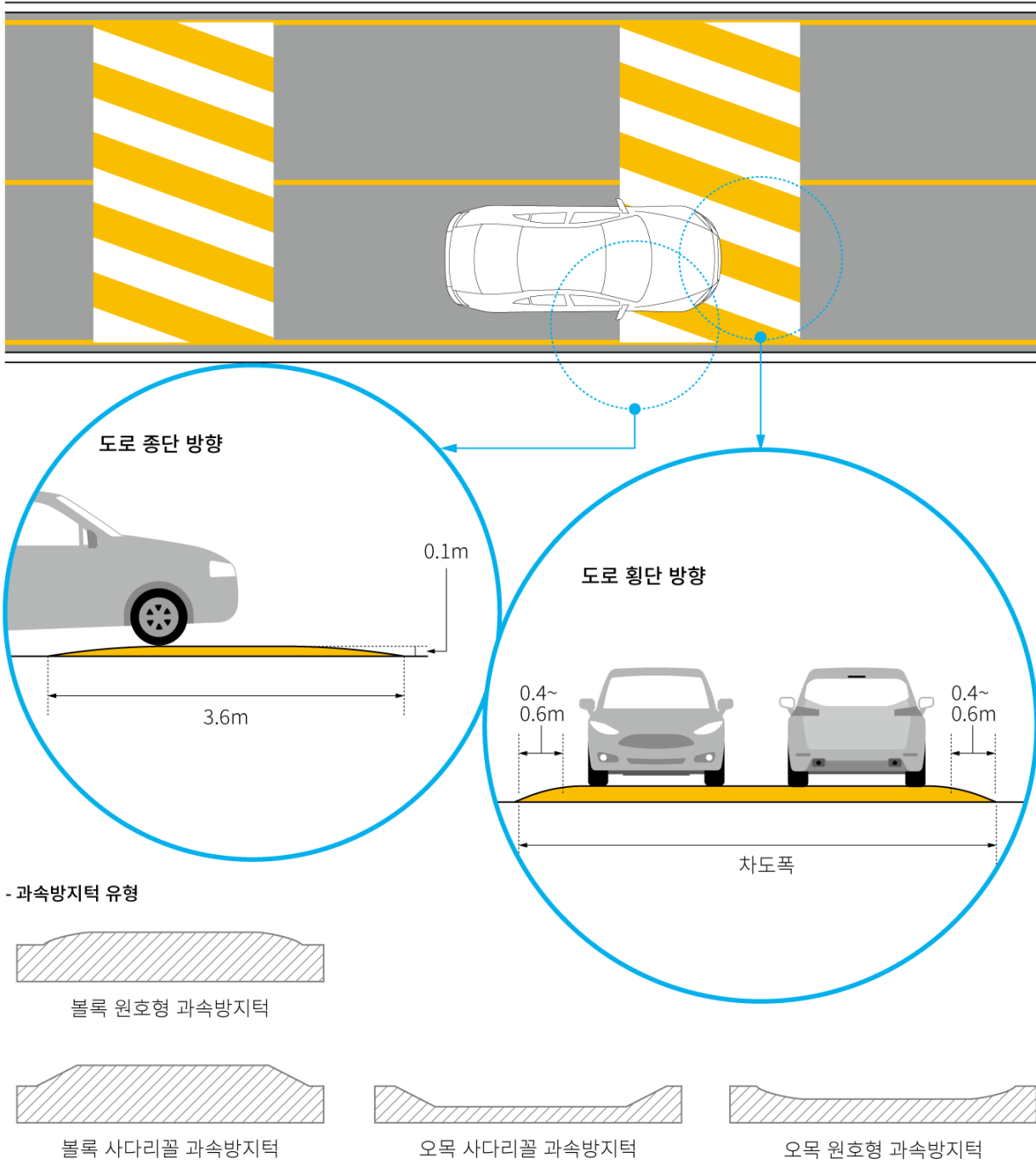
### 차로 폭 좁힘 형태의 외측 폭 좁힘



##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을 통한 속도저감은 다음의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차로 횡단 길이 3.6m, 높이 0.1m의 원호 형태로, 차도에 빈 공간 없도록 설치
  - 과속방지턱은 연속하여 2개 이상 설치하며, 1개 소만 설치 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준수
  -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 방법





## 보도상의 시설물 등

(1)	시설물 구역	073
(2)	보도 시설물	075
(3)	보행 편의시설	080
(4)	가로수 등	083
(5)	교통 관련 시설	087
(6)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094
(7)	기타 시설	096

### 계획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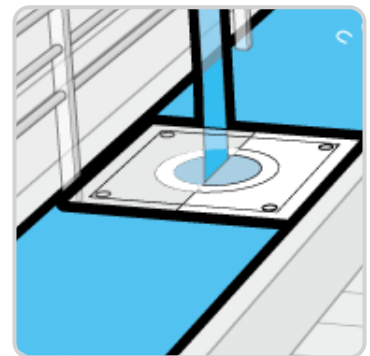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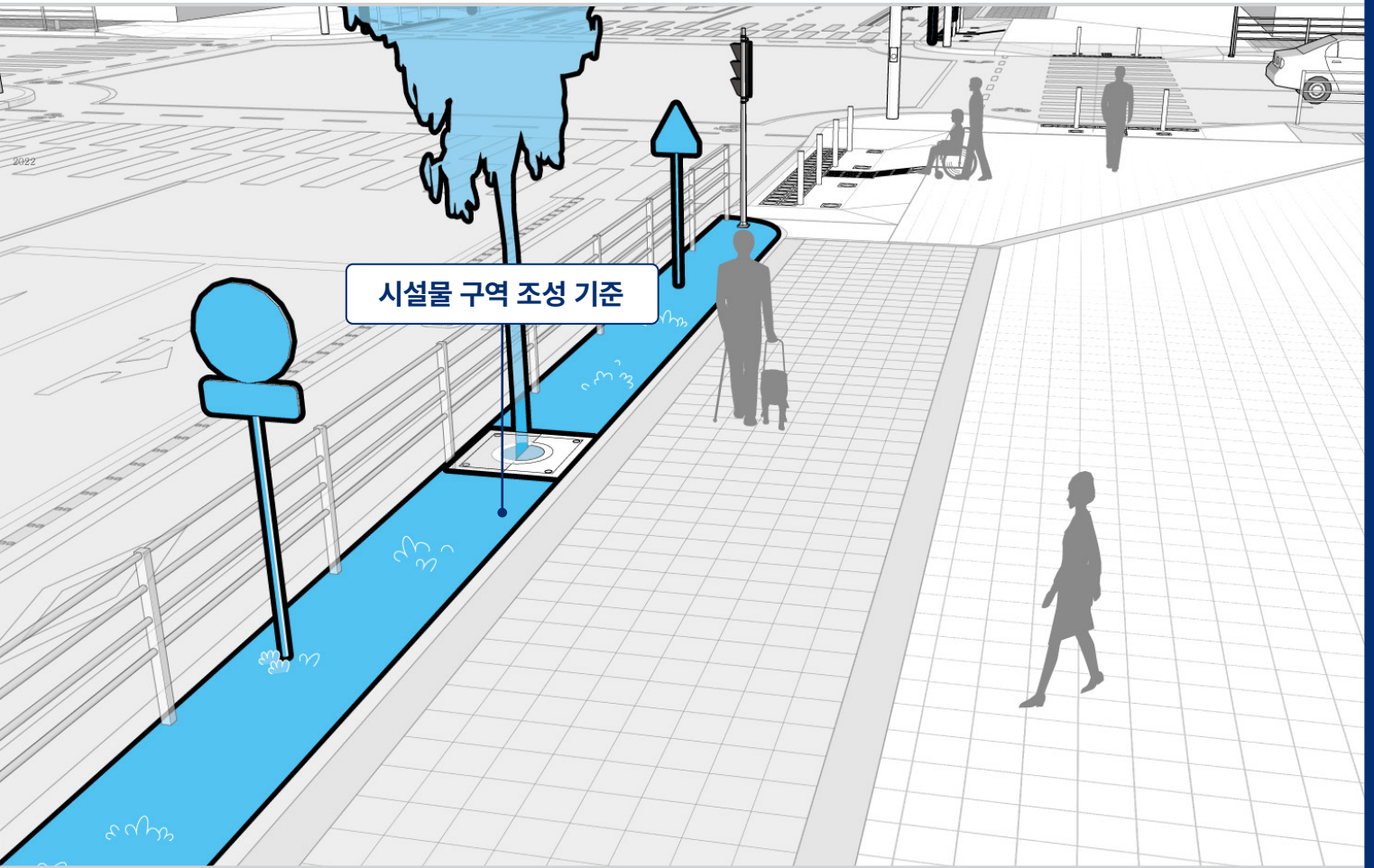
- 보도상의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한다.  
이때,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 횡단보도 대기공간 등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이 있는 지점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시설물 구역은 보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물 구역,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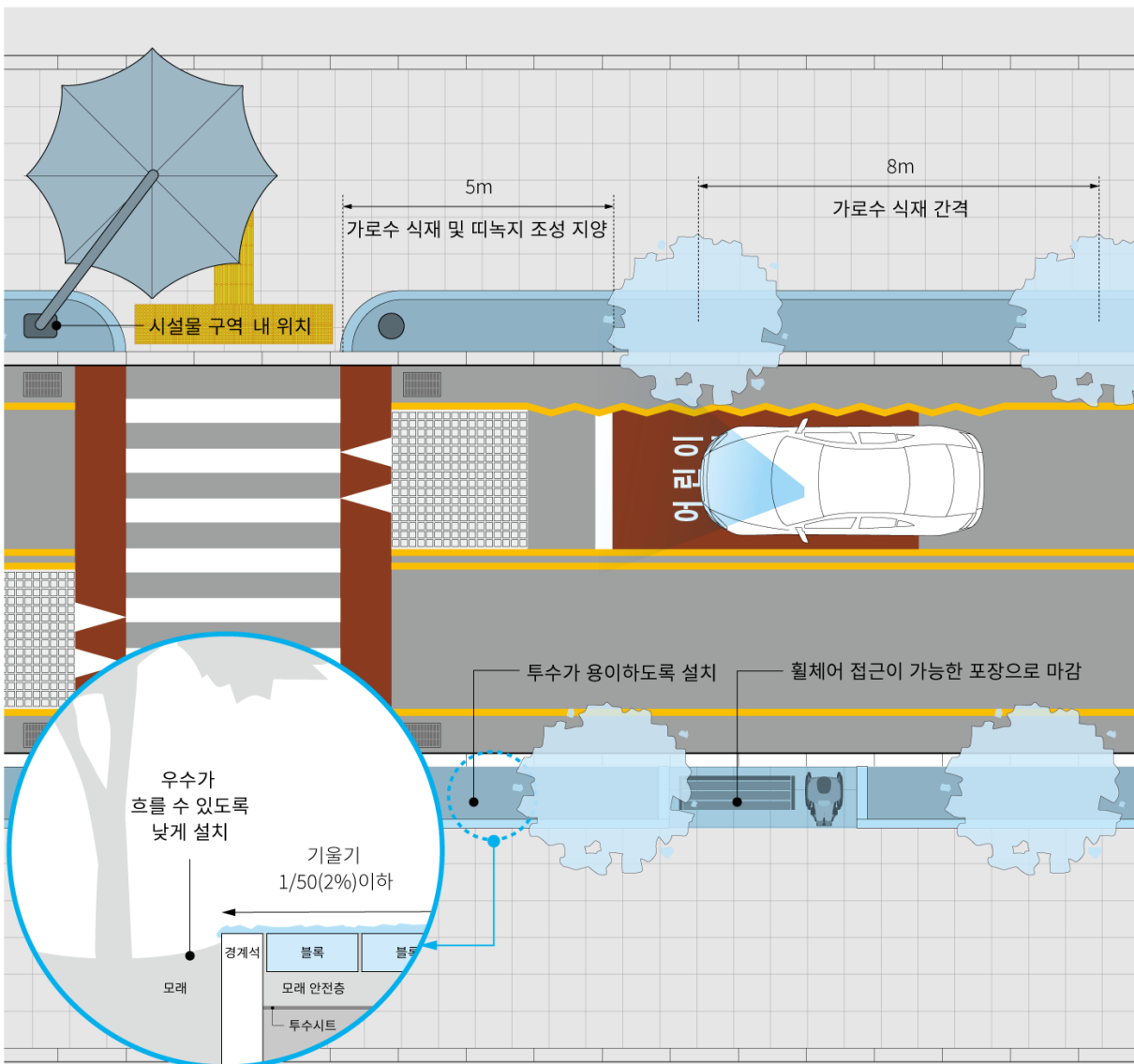
# (1) 시설물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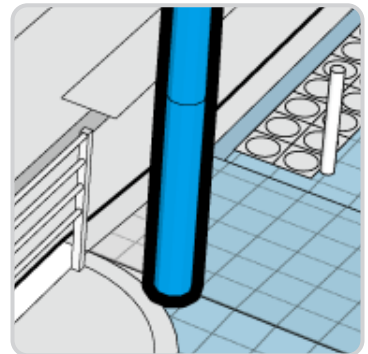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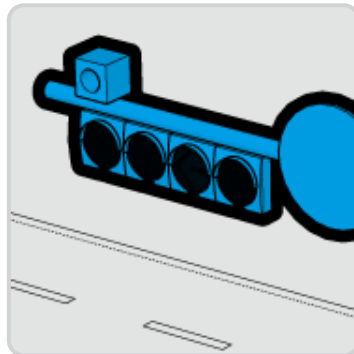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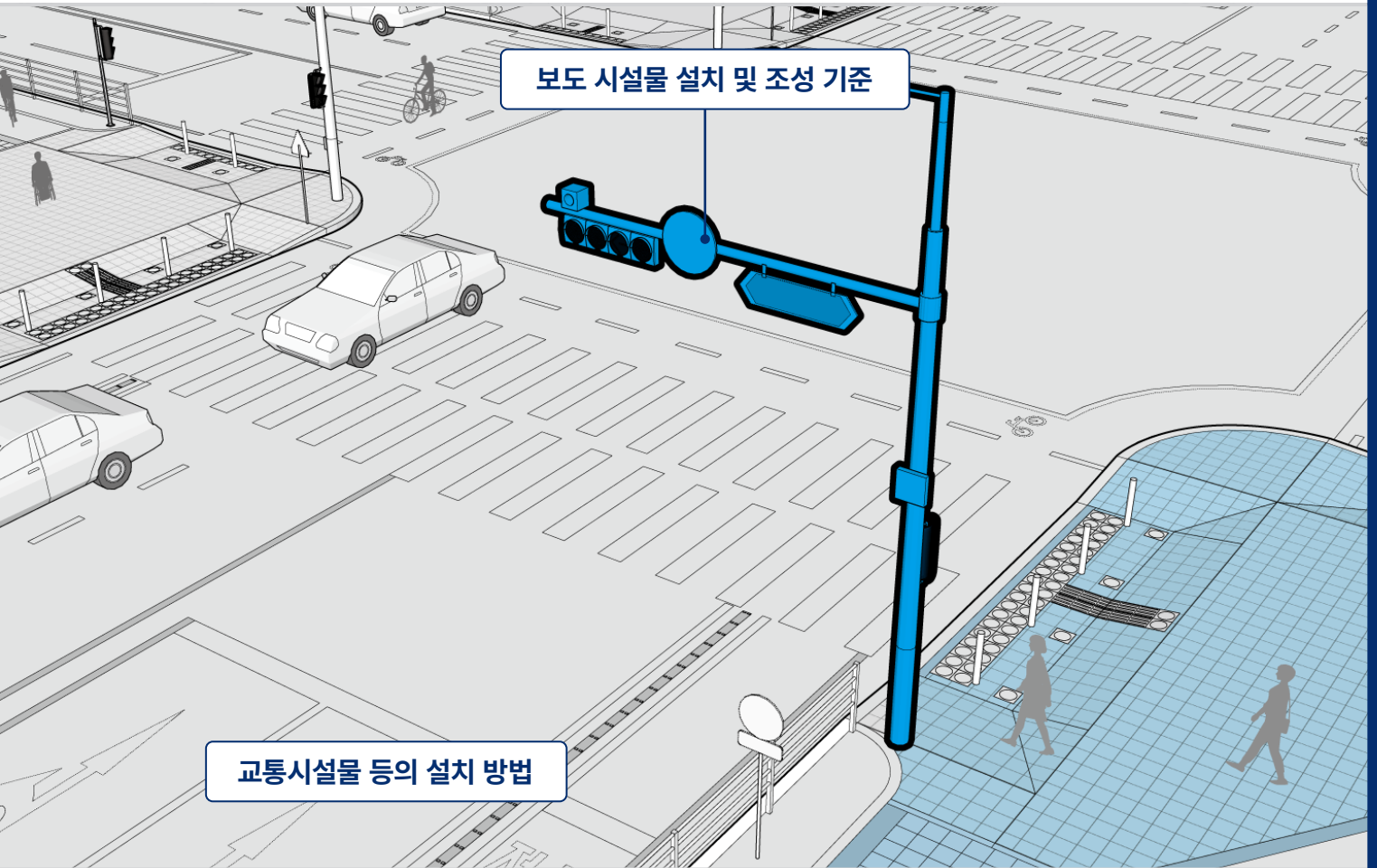
## 시설물 구역 조성 기준

보행에 방해가 되는 보도 시설물 등을 집적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구역을 조성하며, 시설물 구역에 녹지대, 식재대, 띠녹지 등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안전공간과 상이한 색상 및 재질로 조성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시인성을 확보한다.
- 바닥은 투수성 재료로 마감하며, 구역 내 휴식 공간을 조성할 때에는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한 포장으로 마감한다.
- 차도 쪽으로 설치하여 보행로와의 완충 공간으로 활용한다.
- 다양한 색채의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또는 무채색 계열 색채 적용을 권장한다.
-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설치하되, 보행 약자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설치한다.



## (2) 보도 시설물



---

## 보도 시설물 설치 및 조성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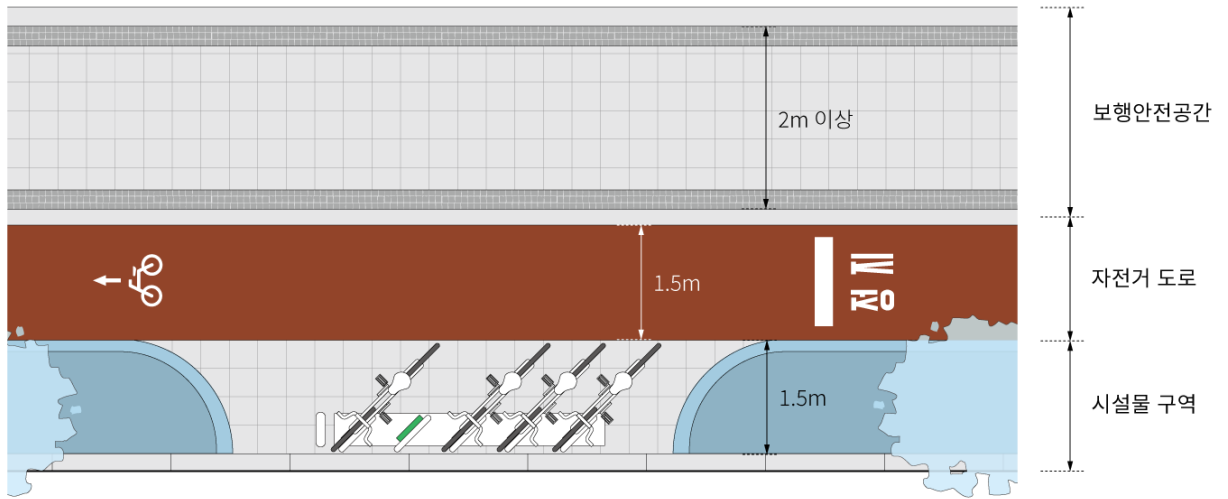
보도 상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은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되, 보행약자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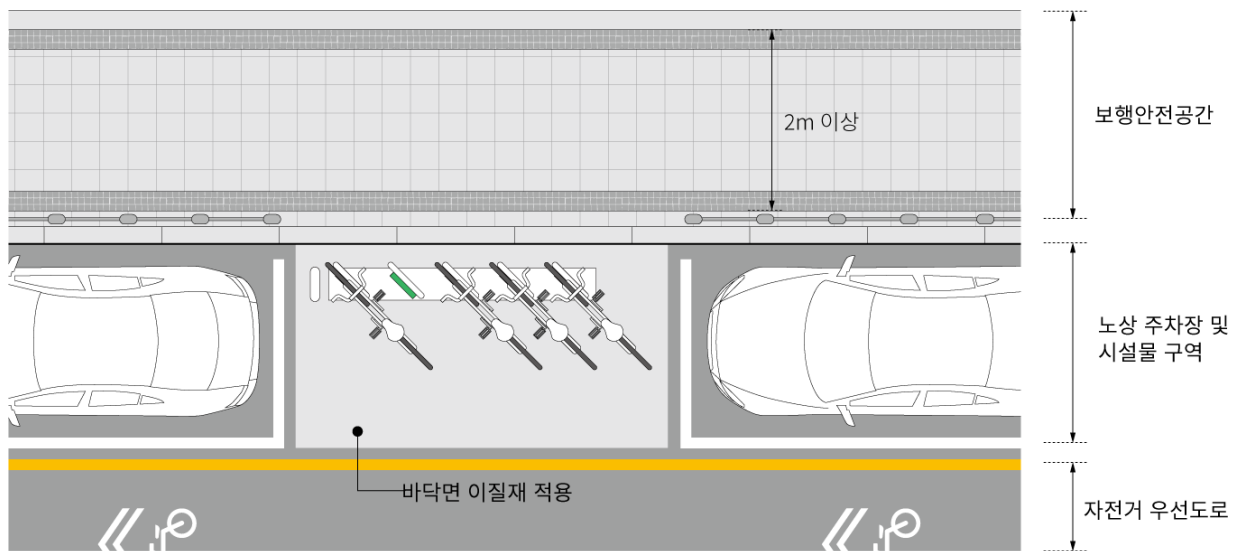
### 보도 시설물 설치기준

- 보도 시설물은 보행안전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이 재질, 색상 등의 경계 없이 설치된 경우 1.5m 이상의 연속되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편의시설은 차도 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보도 상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 유효폭을 2m 이상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자 등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 휴지통 등의 도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은 보행안전공간상 전면 노출을 지양하며, 보도 인접 녹지대, 보도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는 등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시설물 구역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시설물 구역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



**보도 폭에 따른 시설물 구역 조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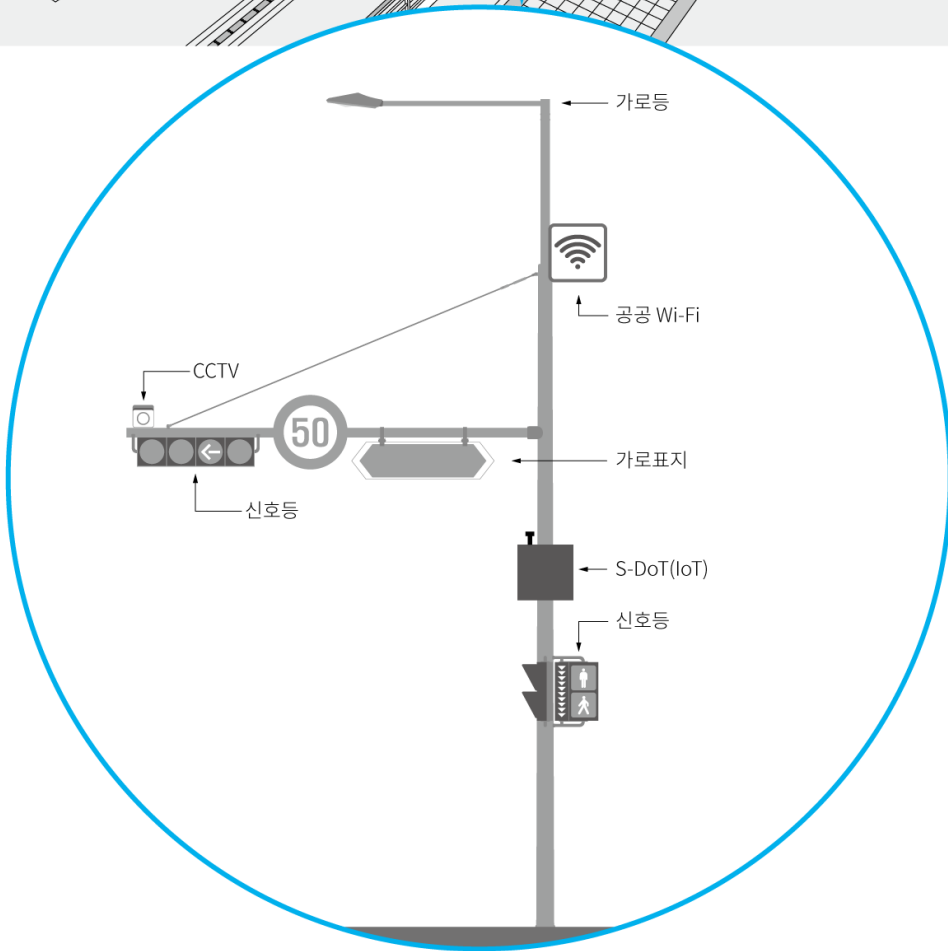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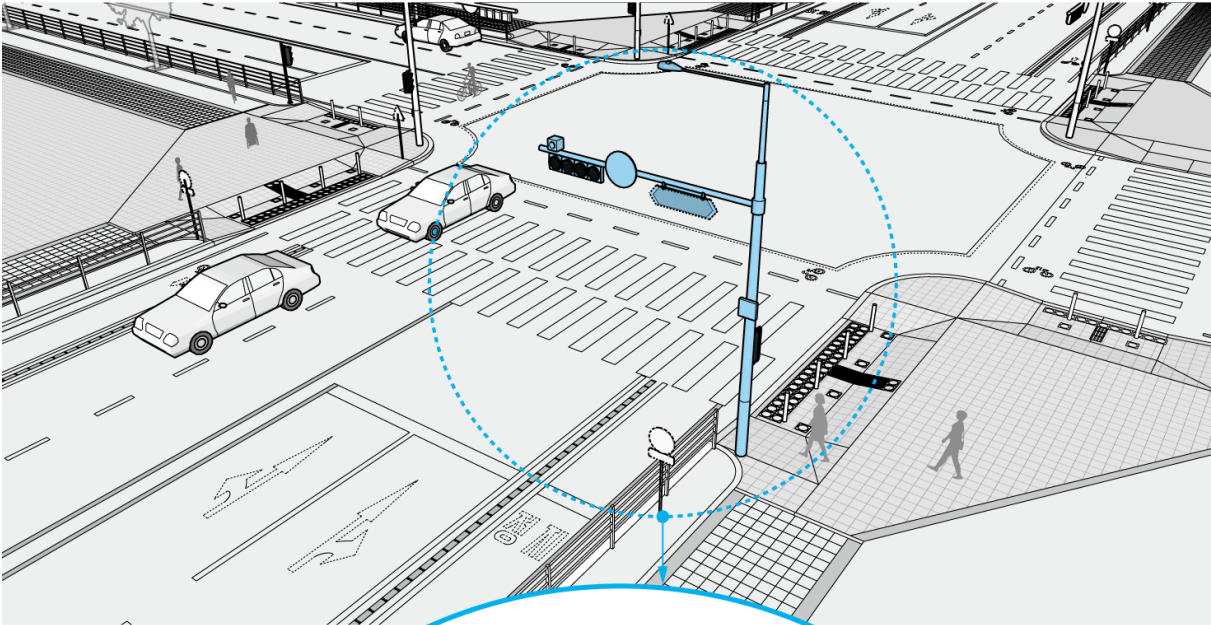
- 보도 유효폭 2m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조형물, 가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보도 유효폭 2m 미만인 경우에는 가로등, 보행등, 보도용 방호 울타리, 가로 점멸기를 제외한 보도 시설물 설치의 지양한다.



### 시설물 지주의 통합

- 보도 시설물은 그 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가능한 통합·집적 설치를 통해 시설물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한다.
- 가로 표지,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지주형 시설물 등은 통합 지주화하여 설치한다.

\* 시설물 간 이격 거리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82-83 참조



---

##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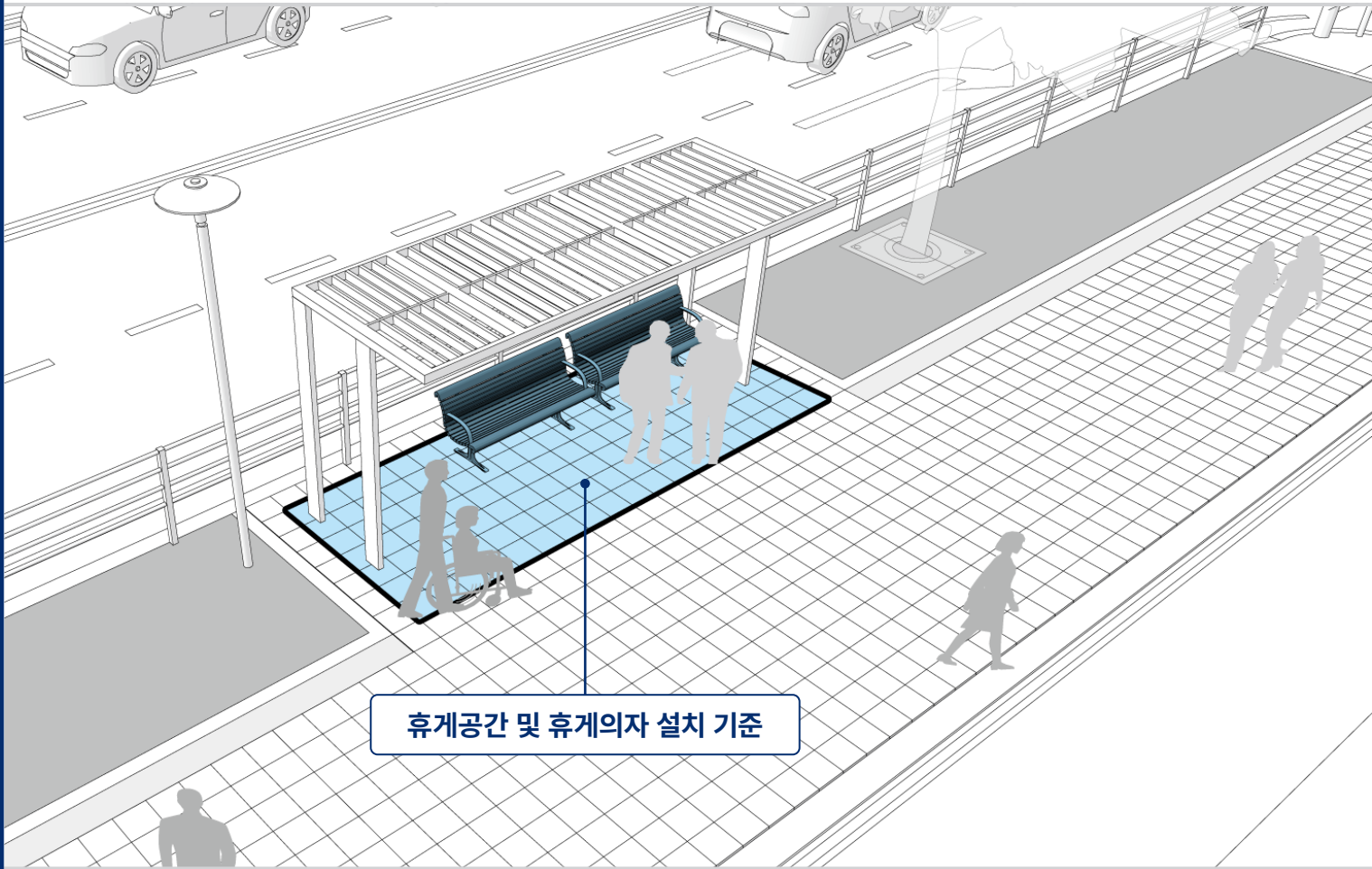
---

보도 상 설치하는 교통 관련시설 등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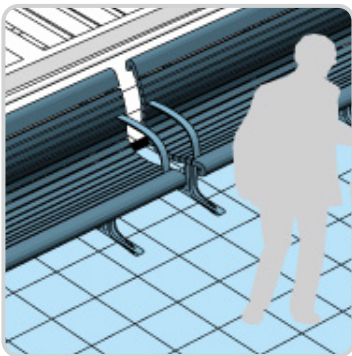
---

- 택시, 버스 승차대는 보행안전공간 1.5m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보도상의 쉼터형 승차대를 설치할 때 보행안전공간 유효폭 1.5m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승차대의 지주, 가림막 등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3) 보행 편의시설



휴게공간 및 휴게의자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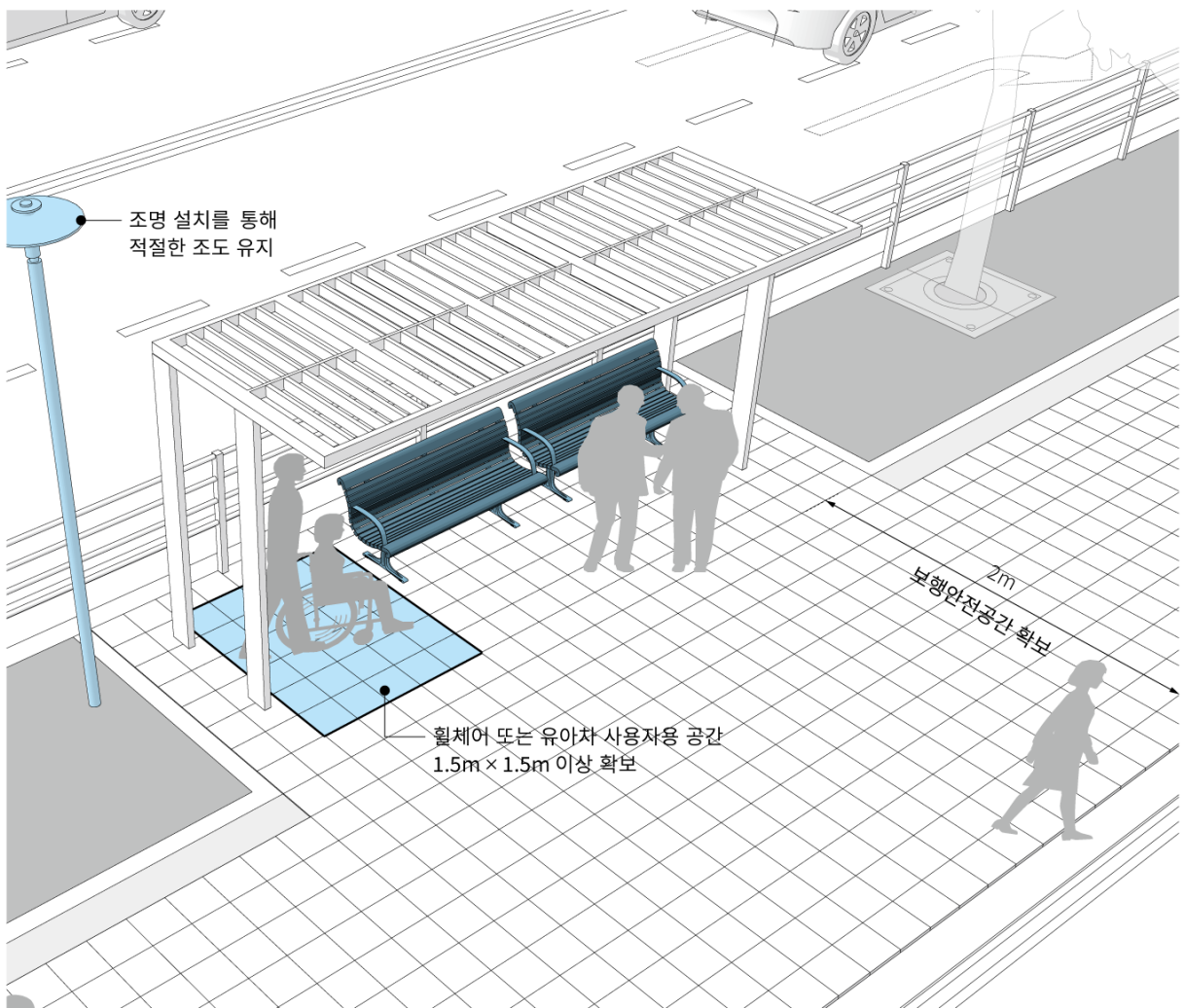


## 휴게공간 및 휴게의자 설치 기준

보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및 형태로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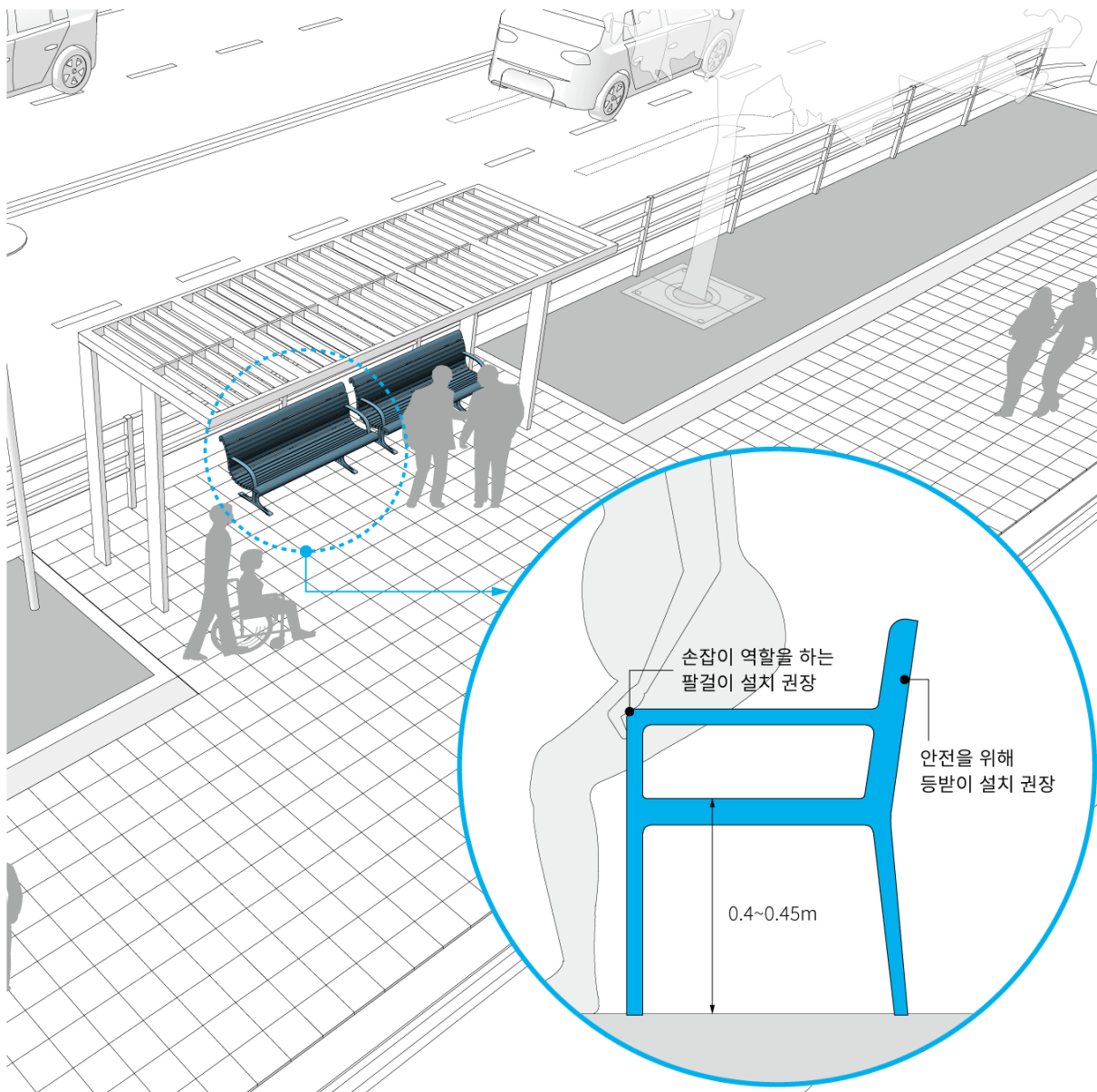
### 휴게공간 설치 기준

- 보행안전공간 유효폭이 2m 이상 확보된 경우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 또는 시설물 구역에 포켓형으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휴게 공간을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및 유아차 사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접근로 상의 단차를 제거하고, 충분한 유효폭으로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닥을 마감한다.
-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휴게공간 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내부에 휴게의자를 제외한 휠체어 또는 유아차 사용자 공간 1.5m × 1.5m 이상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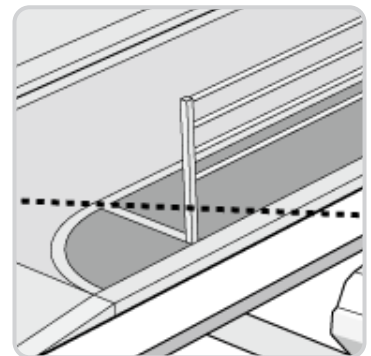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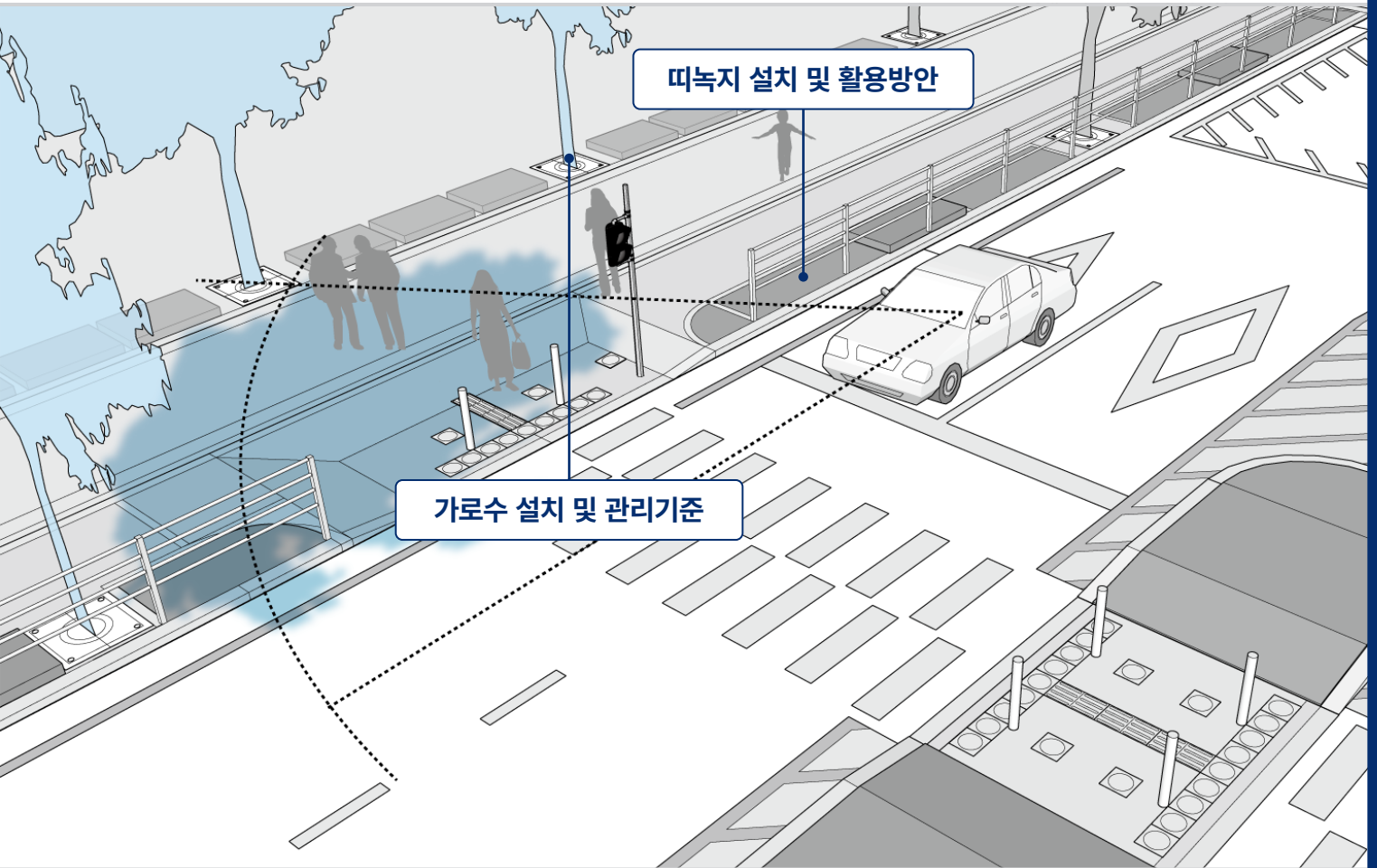


### 휴게의자 설치 기준

-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휴게의자는 전체 설치하는 의자 중 1/2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평의자와 등의자 복합 설치 시 디자인적 연계성이 있는 의자로 구성한다.
- 휠체어, 유아차 사용자 활동 공간 1.5m 이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 의자 설치를 지양한다.



## (4) 가로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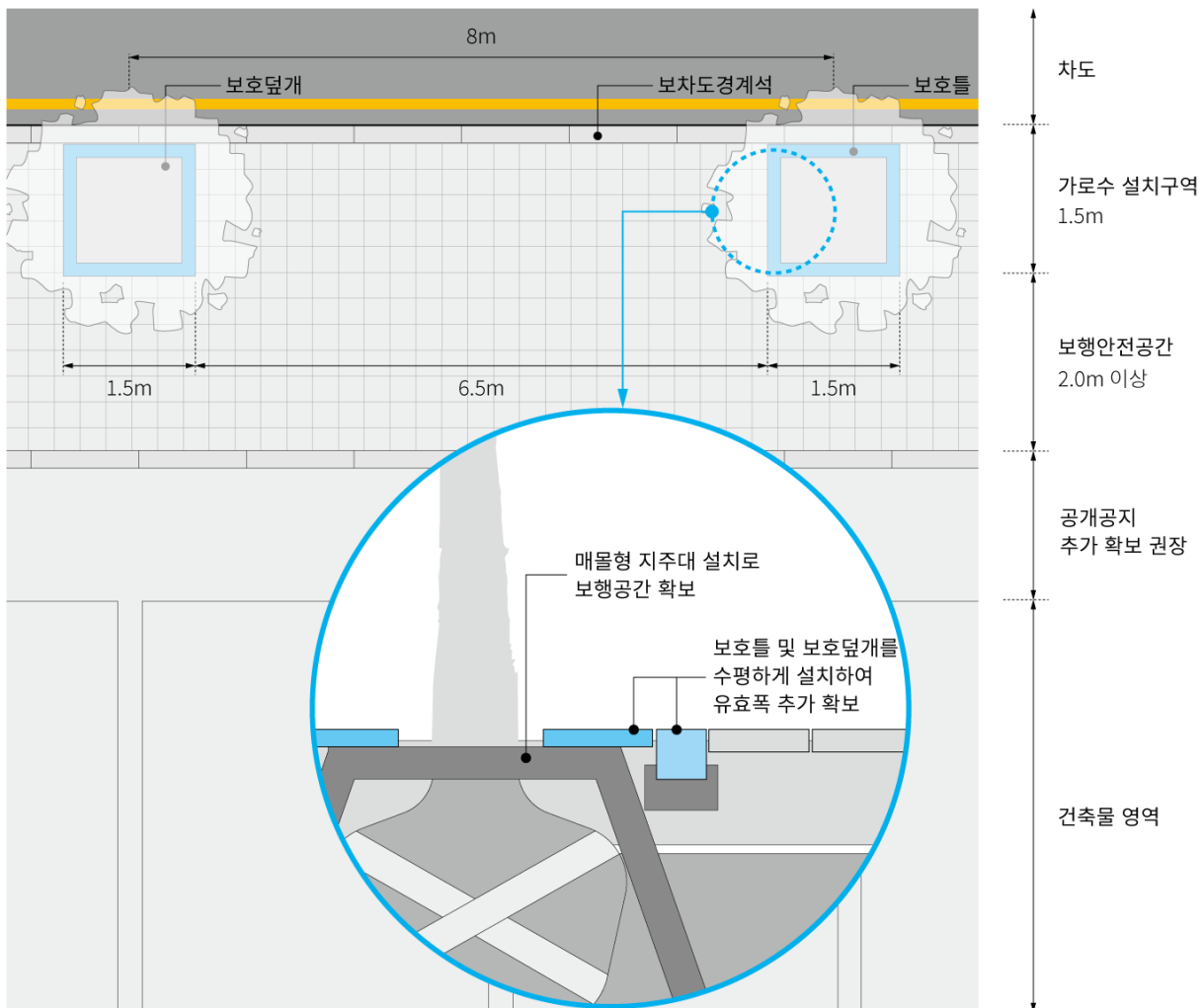
## 가로수 설치 및 관리기준

보도의 녹지대 또는 가로수는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한 후 설치하며, 횡단보도 대기공간 등에서 교통 신호기, 안내 표지판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로수 및 식재를 관리한다.

### 가로수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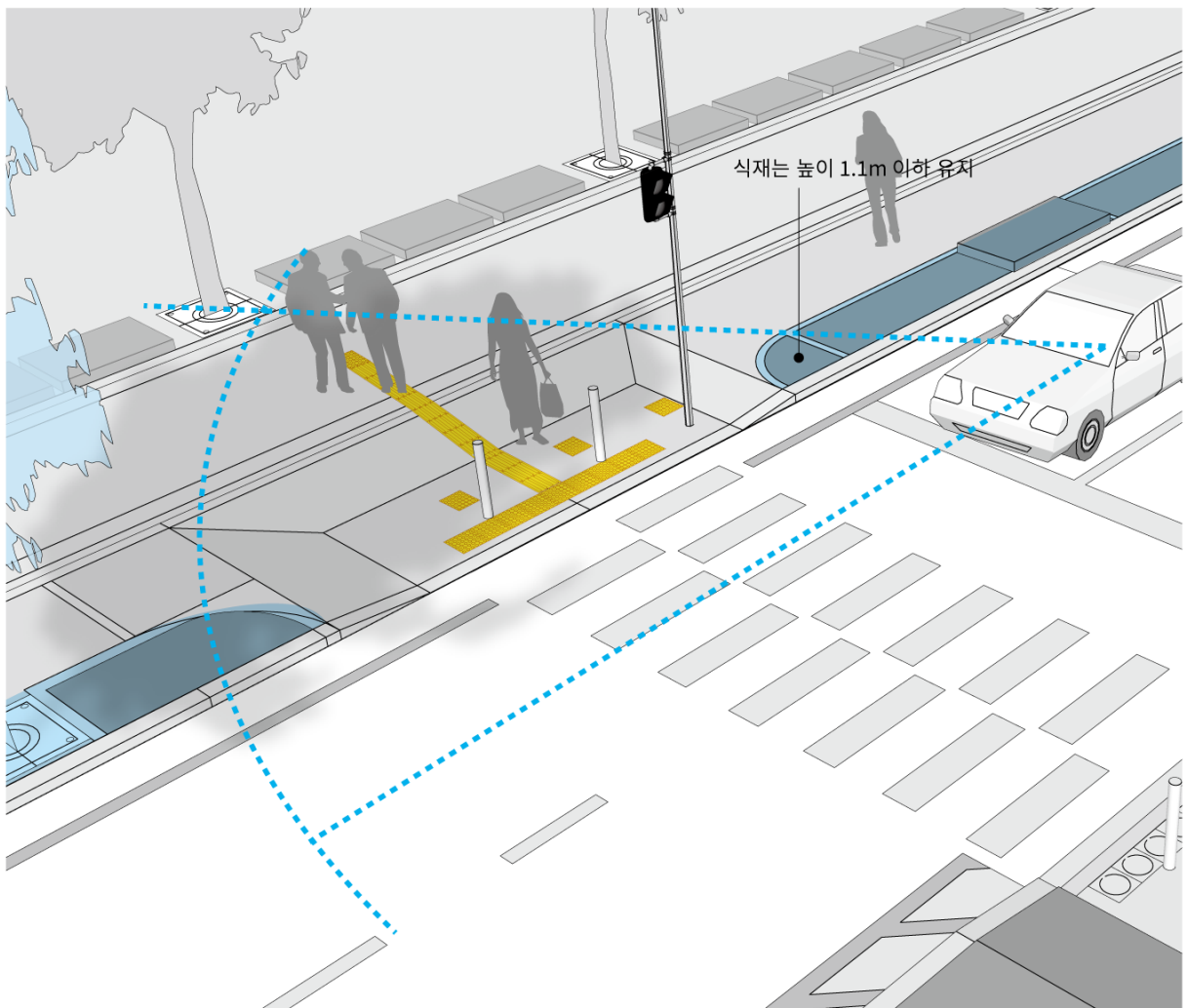
- 별도의 시설물 구역이 없는 경우 유효폭 1.5m 이상의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가로수를 설치한다.
- 가로수 설치로 인해 보행안전공간에 1.5m 이상 유효폭을 확보할 수 없는 보도에는 가로수 설치를 지양한다.
- 좁은 보도의 경우 가로수 이설, 제거 등을 자치구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가로수 설치 예시



## 가로수 관리

- 보행안전공간과 횡단보도의 앞, 교통 표지판 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설치를 지양한다.
- 횡단보도의 통행을 포함한 보행자의 보행권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인접 구역의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 횡단보도에 인접한 식재 중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식재는 높이 1.1m 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 가로수 정비 및 설치 세부 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60~61 및 「서울시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조성 및 관리」 참조
  - \* 식재를 이용한 우수관리 설계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54~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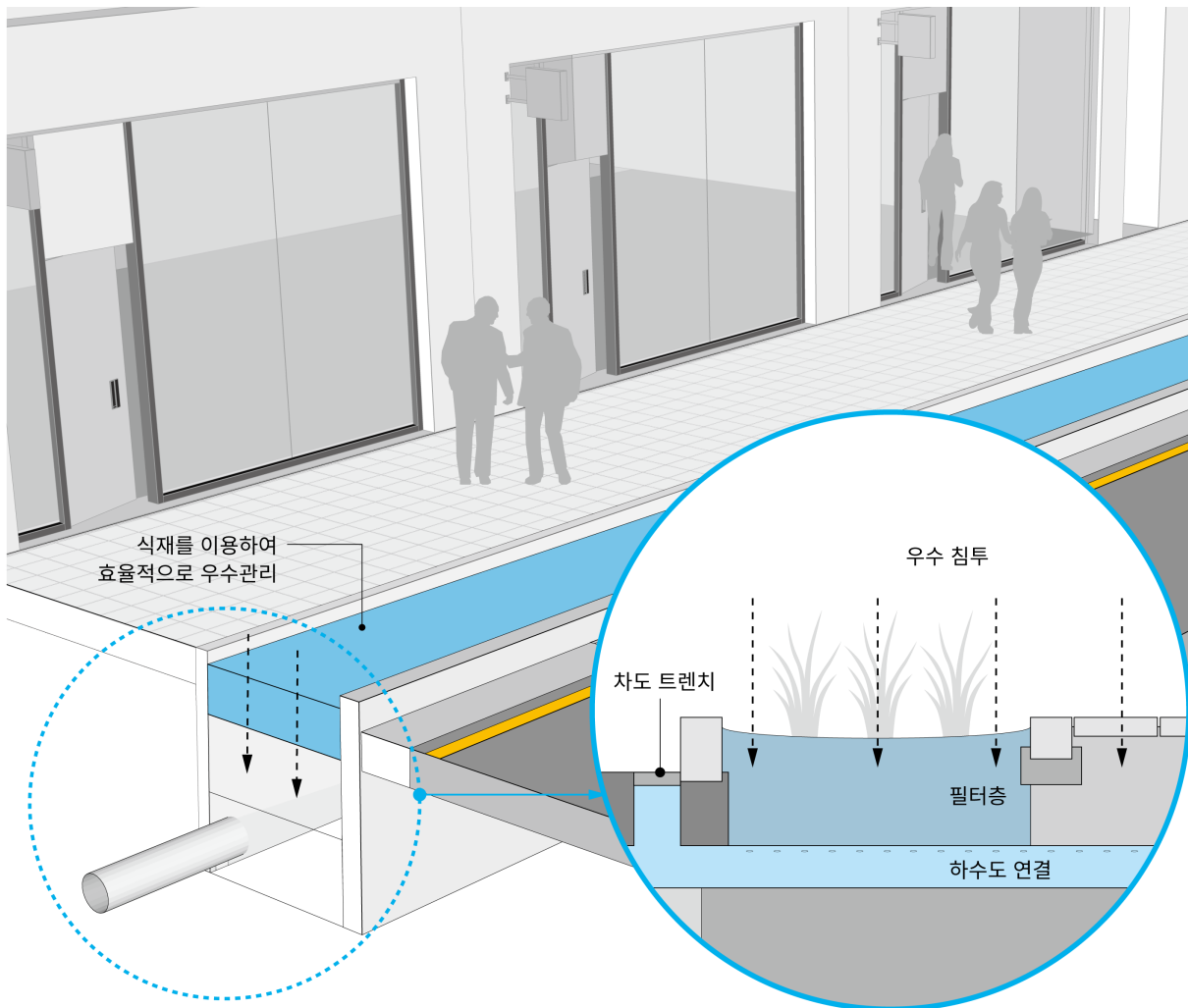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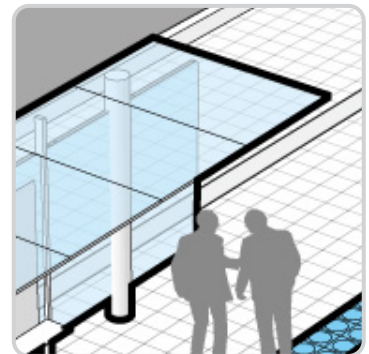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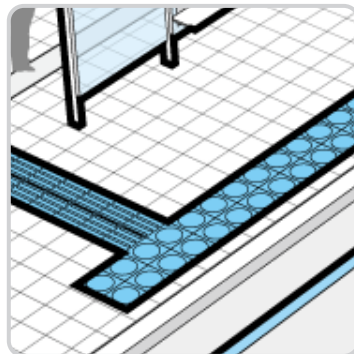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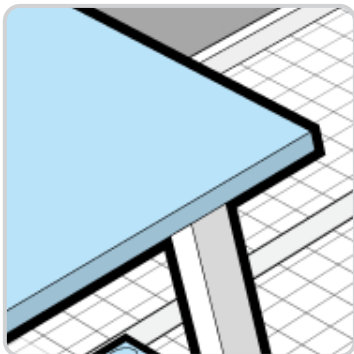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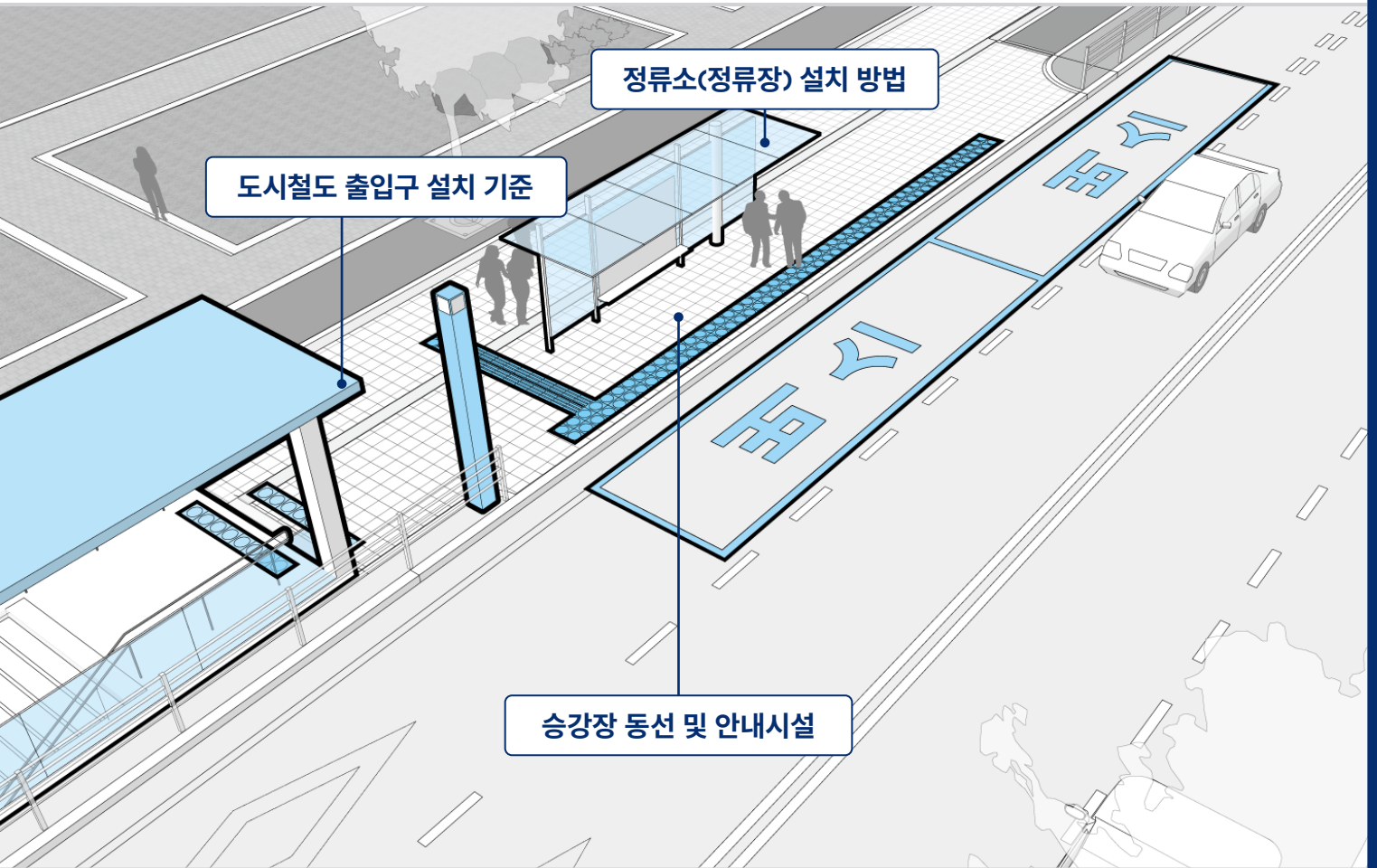
## 띠녹지 설치 및 활용방안

보행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보도의 시설물 구역에는 띠녹지 형태의 조경을 권장한다.

- 띠녹지 형태의 시설물 구역 내에 휴게공간 등의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공간까지의 접근로와 바닥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우천 시 보도 표면 위로 흐르는 우수량을 줄여 미끄럼 사고 방지 및 보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재를 이용한 우수 관리 체계를 권장한다.



## (5) 교통 관련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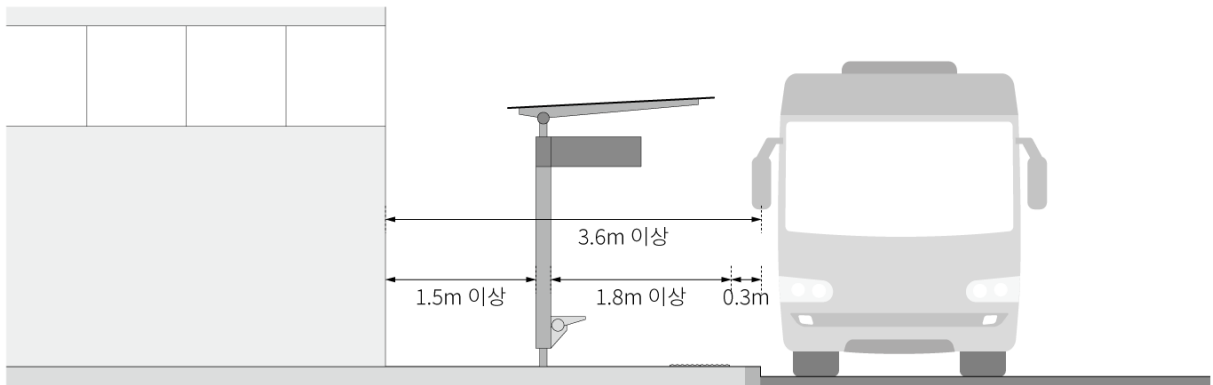


## 승차대의 구조

- 승차대는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 승차대(첼터)는 보도 유효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 상황에 따라 보도 중간형, 역상형, 보도 후퇴형 중 최적의 형태로 설치하되,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역상형 설치를 우선 고려한다.
  - 보도폭이 협소하여 승차대 대신 표지판만 설치하는 경우, 표지판에 접한 대기공간은 2.0m × 2.0m 이상을 확보한다.
  - 승강장 내 승차대에는 지붕 및 조명을 설치한다.
- \* 버스 정류소는 서울 시내버스 승차대(가로변) 표준형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며, 기타 시티투어 버스, 공항 버스, 마을 버스, 장애인·노인 무료 셔틀 버스 등의 승차대도 각각의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을 참고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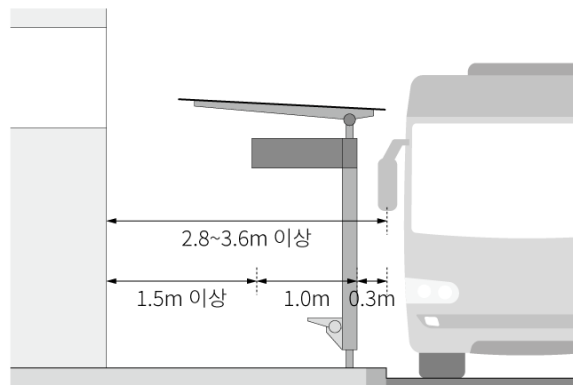
###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된 경우

- 보도중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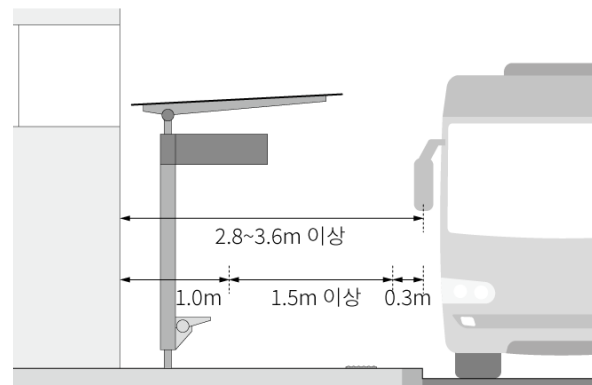


###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 역상형



- 보도후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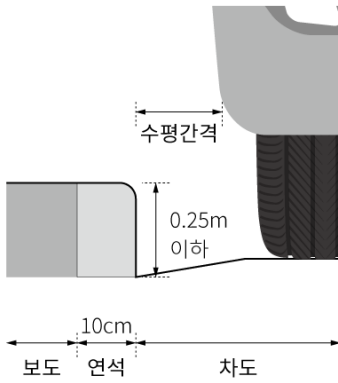


### 승강장의 경계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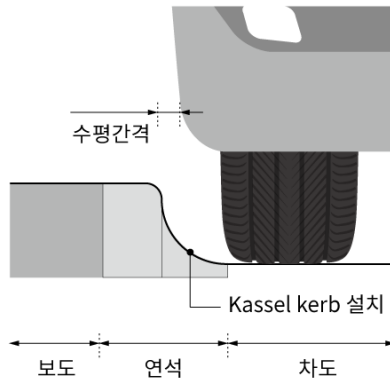
- 연석의 높이는 0.25m 이하로 하되, 저상버스 저상면의 높이에 따라 승강장의 적정 연석 높이를 확보한다.
- 저상버스가 정차하는 승하차 공간에는 휠체어 사용자 탑승 위치를 표시한다.
- 차도로 내려와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과 차도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며, 기울기가 1/18 이하, 유효폭 0.9m 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 공간 1.5m × 1.5m 이상을 확보한다.

\* 경계 부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pp.7~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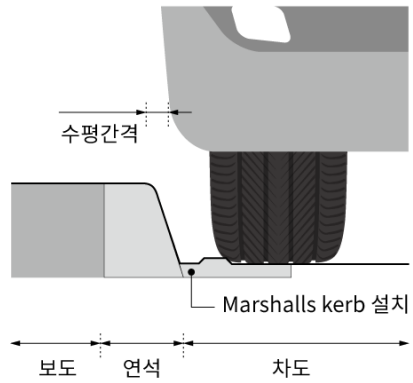
기본 방안



차량 간격 최소화 방안(Kassel kerb)



차량 간격 최소화 방안(Marshalls kerb)



### 안전시설

- 정류소(정류장) 등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다음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 대기공간과 차도와의 경계에 있는 점형 점자블록은 승하차 공간의 길이만큼 보차도 경계에서 0.3m 이격하여 설치하고, 그 외 대기공간은 재질 및 색상 차이가 나는 경고용 바닥재질로 설치
  -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 설치 시 일부 구간(교통시설 승하차 출입구 구간)은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한 개구부 및 안내시설 설치
  - 야간에 대기공간 내 이용자가 쉽게 인지되도록 승강장 내 충분한 조도 확보



## 승강장 동선 및 안내시설

-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의 동선을 분리하며, 일반인 대기공간과 휠체어 사용자 대기공간을 구분하고 휠체어 승강 위치를 표시한다.
- 정류소, 승강장 등에 설치하는 안내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의 크기, 안내판의 설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승강장 동선 유도

- 이용자별 동선 분리는 선형 점자블록 설치 공간 외의 보행 통로 유효폭 1.2m를 확보한 경우에 적용한다.
- 승강장 내 대기공간의 유효폭이 좁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형 점자블록 설치를 지양하며, 승하차 위치에만 점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버스정류장 점자 설치 세부기준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 p.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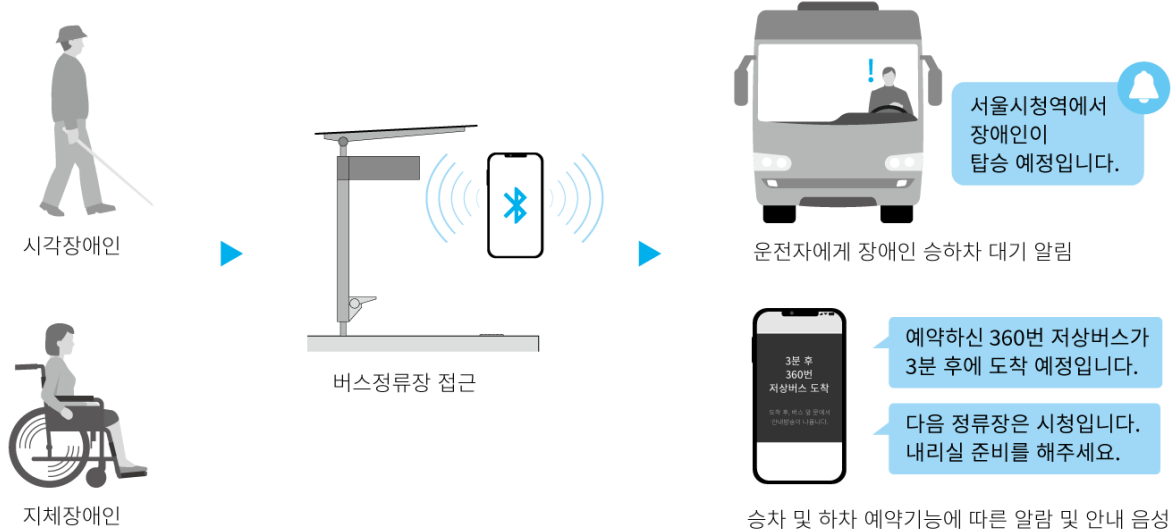


## 승차대 안내시설

- 승차대에 부착된 안내도는 중심 높이가 바닥에서 1.2m 이하로 하고, 외국어·점자 안내·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 음성 안내는 주위의 소음에도 가청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높이 1.2m 이하로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설치
  - 가능한 한 양면형으로 화면 등에는 눈부심 및 역광 방지 설비 설치
  - 디스플레이 시각 정보 장치는 음성 및 시각 정보를 함께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버스 이용 시스템(비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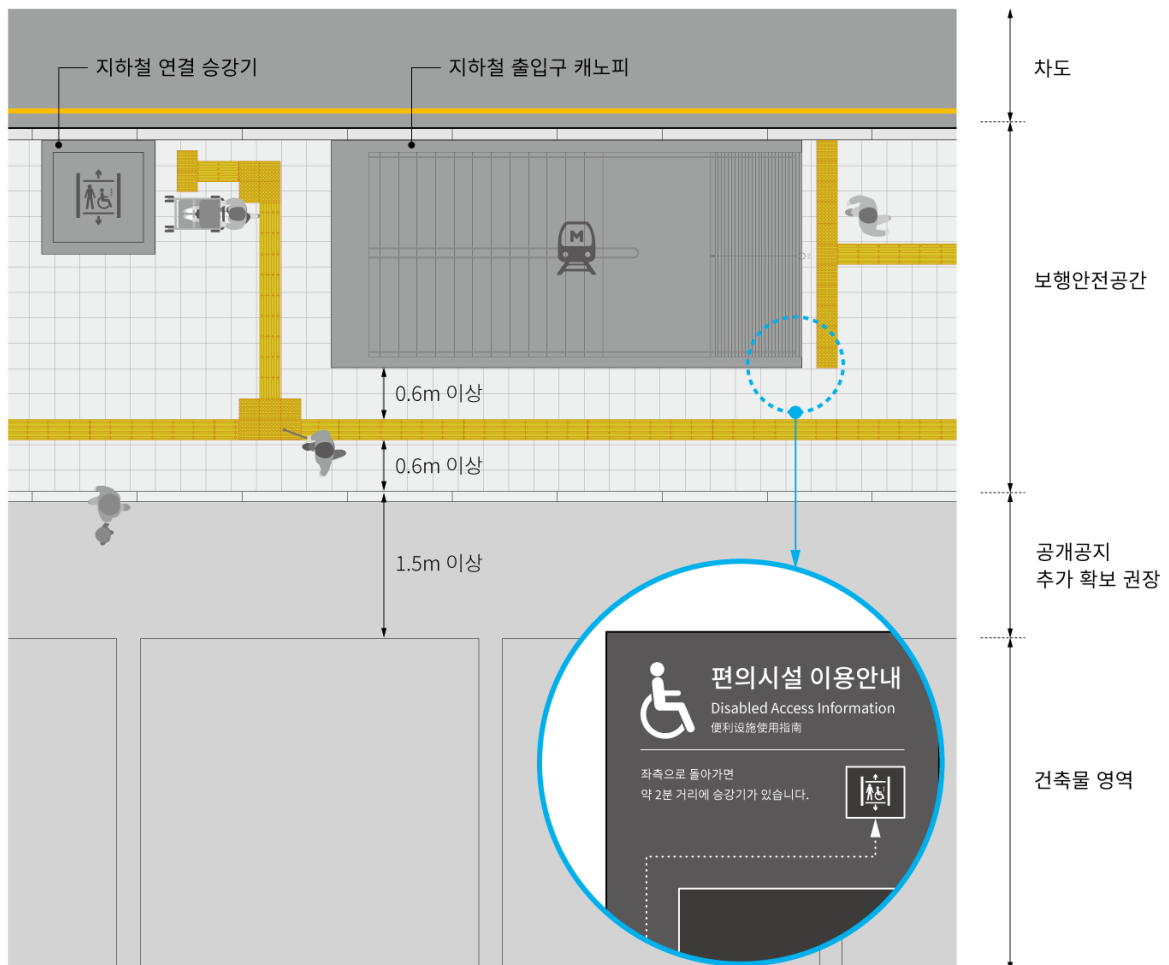


## 도시철도 출입구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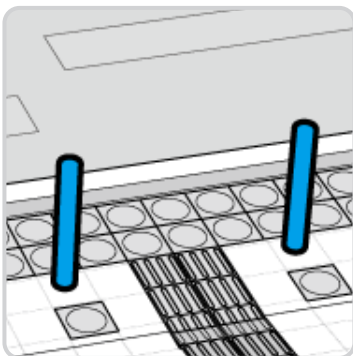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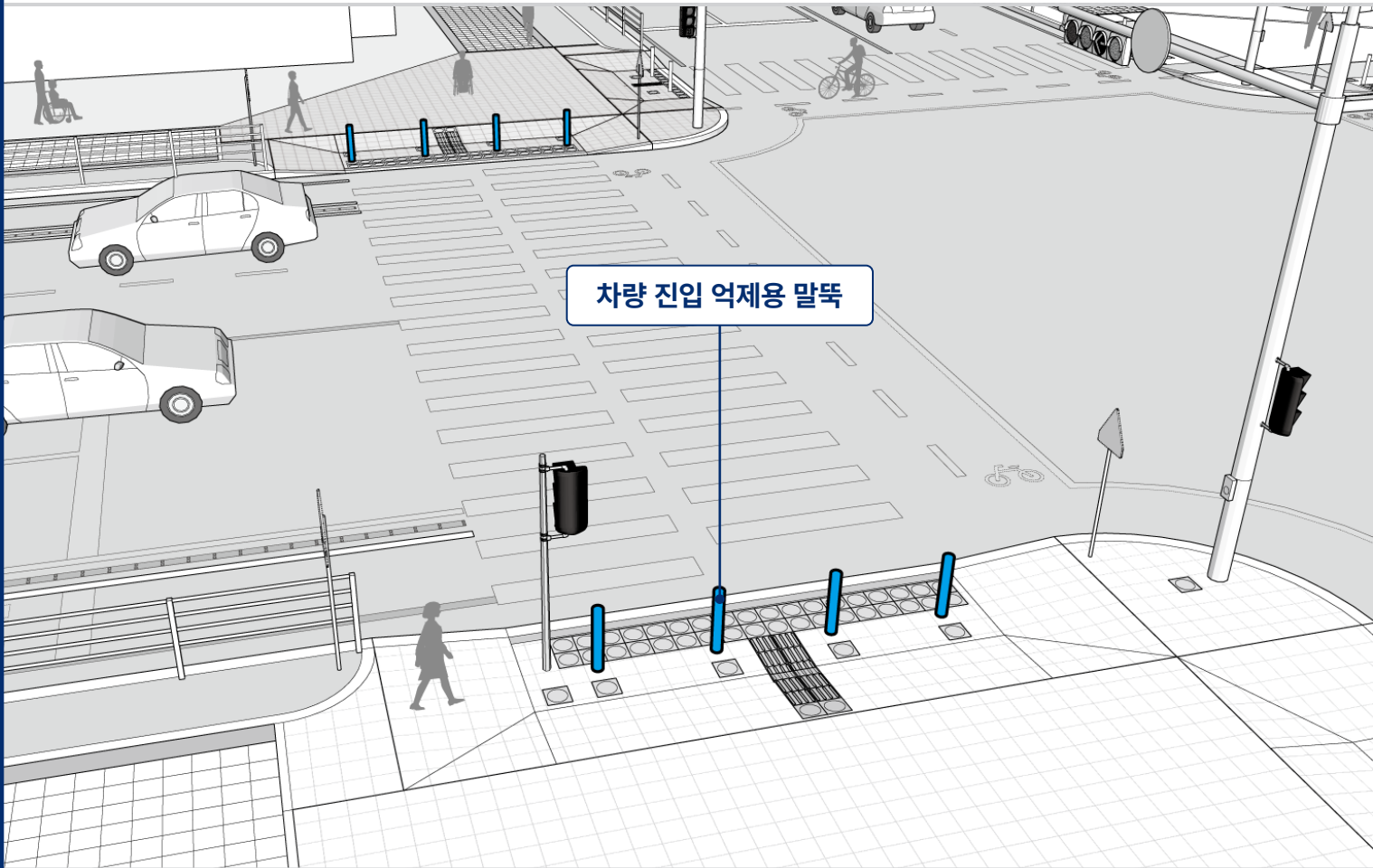
도시철도 등 보도 상에 설치하는 여객 시설의 출입구는 여객 시설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되, 기존의 보행안전공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보도 상에 설치하는 여객 시설의 승강기,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 이동 시설 출입구까지의 접근로는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기준을 준용한다.
- 도시철도 출입구 설치 후 보도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보차선을 조정하고 건축물의 후퇴선과 인접 건축물의 출구를 활용하며, 사유지 점용 등을 통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적정 유효폭을 확보한다.
- 여객 시설의 출입을 위한 승강기,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 이동 시설 출입구 전면에는 시각장애인 유도 및 경고용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도시철도 출입구에 대한 세부 기준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3.4.2 (중량전철), 6.4.2 (경량전철)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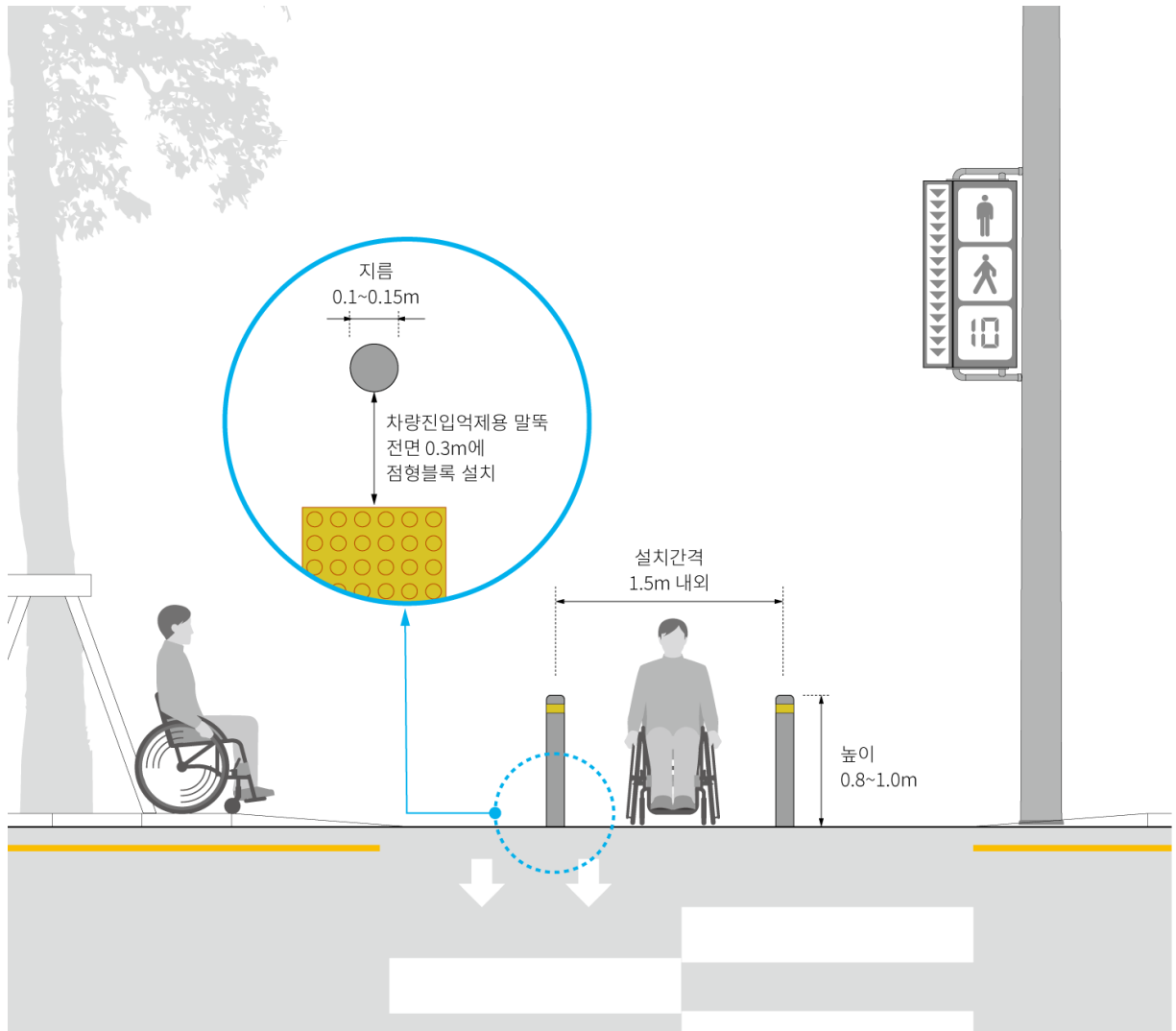
## (6)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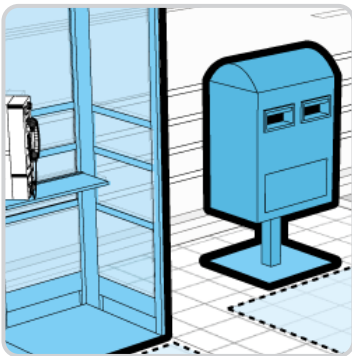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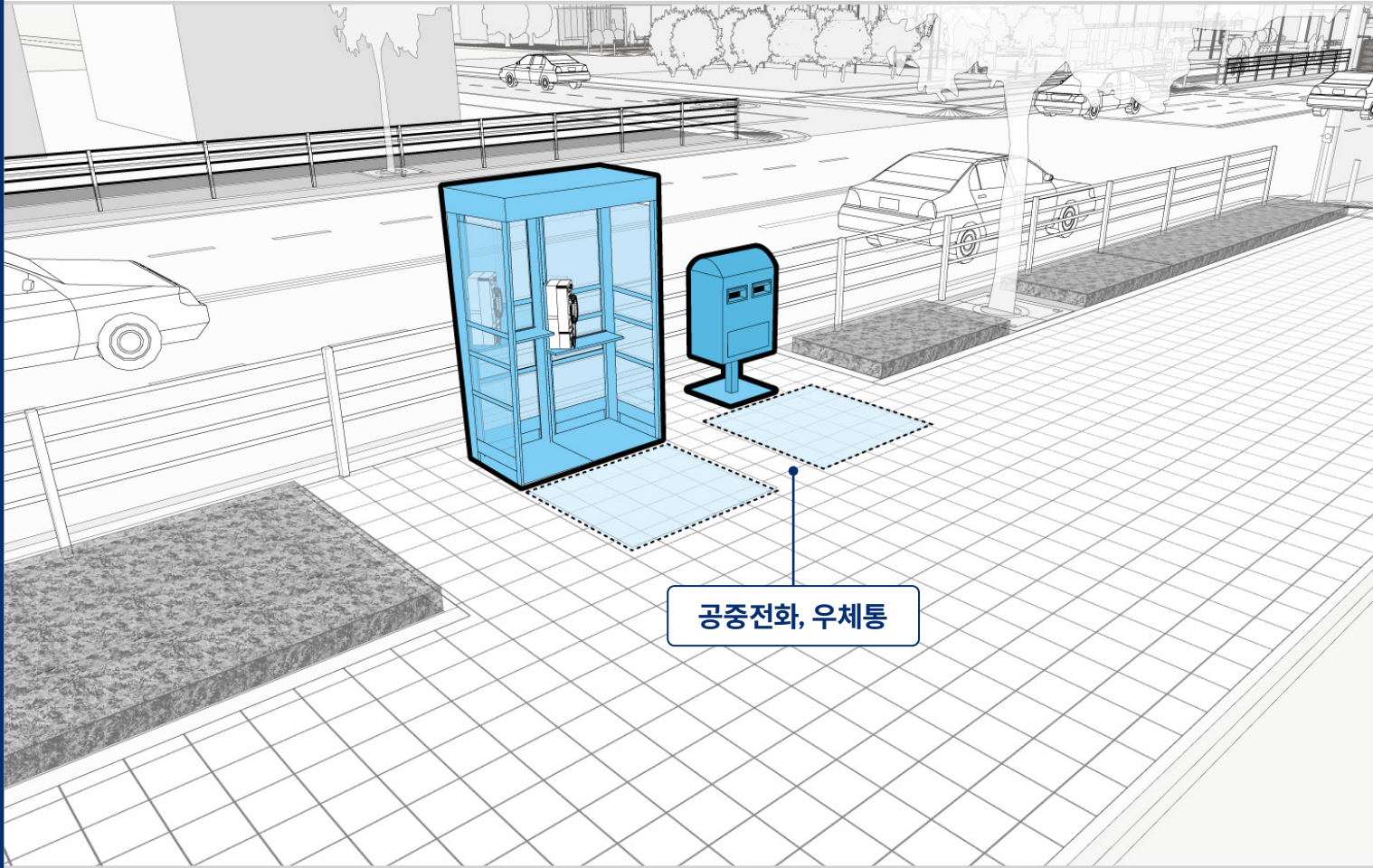
보도와 차도의 교행·접점 구간 경계에 차량의 보행공간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되,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설치 간격 1.5m 이상, 높이 0.8~1m, 지름 0.1~0.15m
  - 보행자 충돌 시 충격 완화가 가능한 재질 적용
  - 야간 식별성을 위한 반사띠 필수, 반사 도료/발광 재질/조명 내장 권장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전면 0.3m에 점형 점자블록 설치





## (7) 기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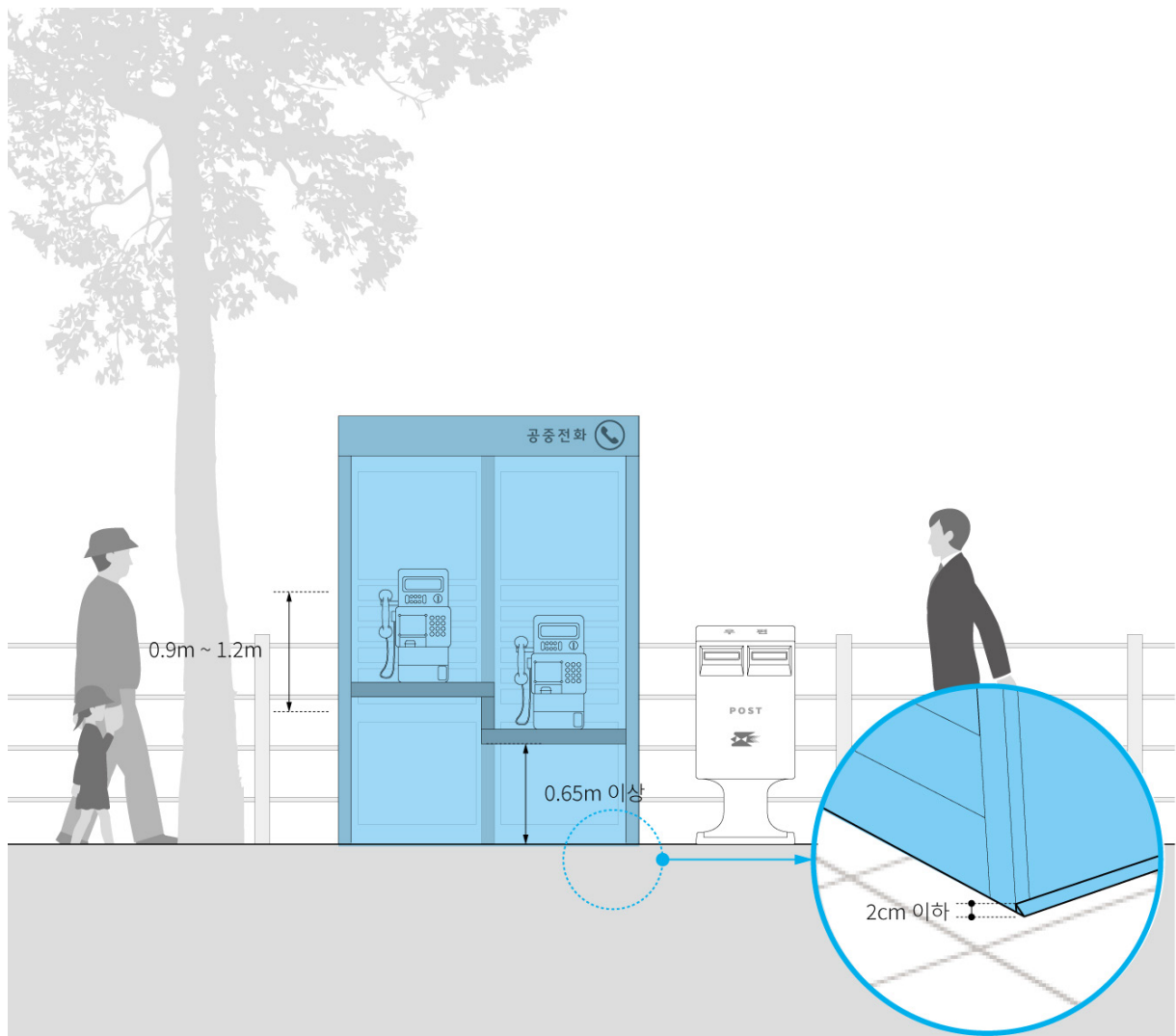


## 공중전화, 우체통 설치 기준

보도 상 공중전화, 우체통 등을 설치 할 때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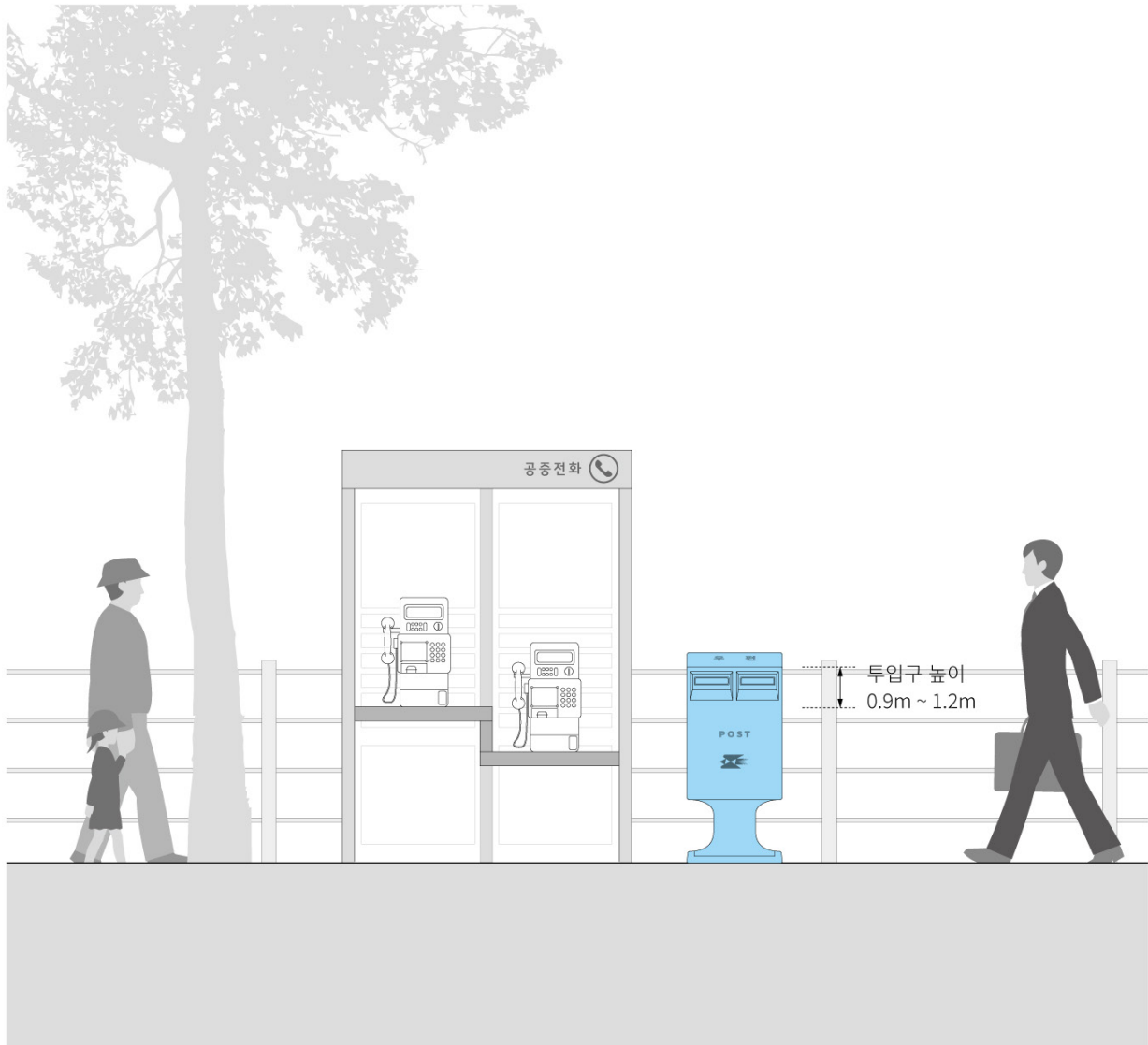
### 공중전화 설치 기준

-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평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한다.
- 전화부스 설치 시에는 보행안전공간에서부터 단차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전화대 하부 공간은 바닥에서 0.65m 이상, 깊이 0.25m 이상을 확보한다.
- 공중전화의 조작 설비 높이는 바닥에서 0.9m~1.4m 내외로 한다.
- 전화부스 양쪽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 보관 지지대 등을 설치한다.



### 우체통 설치 기준

-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한다.
- 우체통 투입구 높이는 바닥에서 0.9m~1.2m 내외로 한다.





## (1) 안내시설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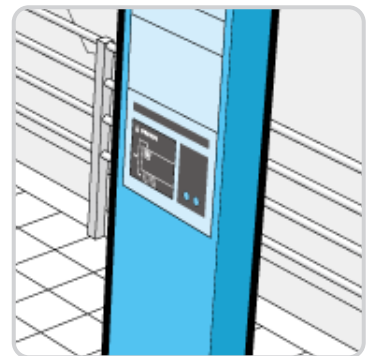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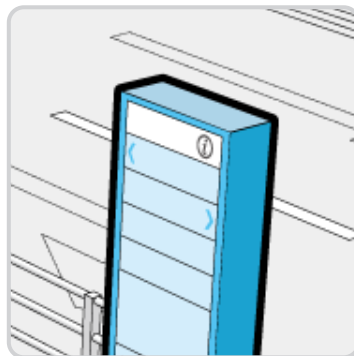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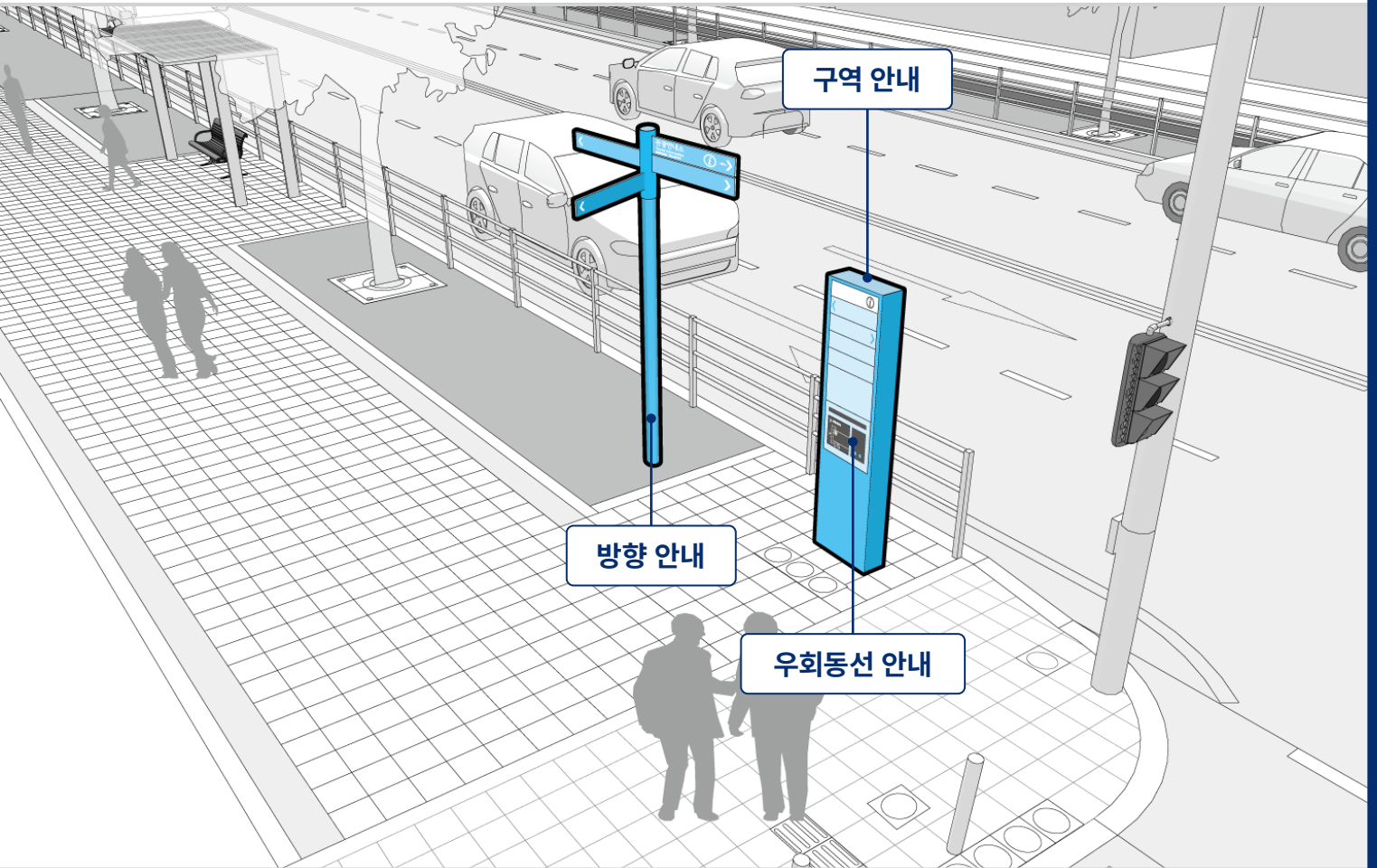
### 계획원칙

서울시 안내 체계의 기본 방향인 인지성, 기능성, 상징성, 조화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 안내시설 세부 기준은 「2016 서울시 공공 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개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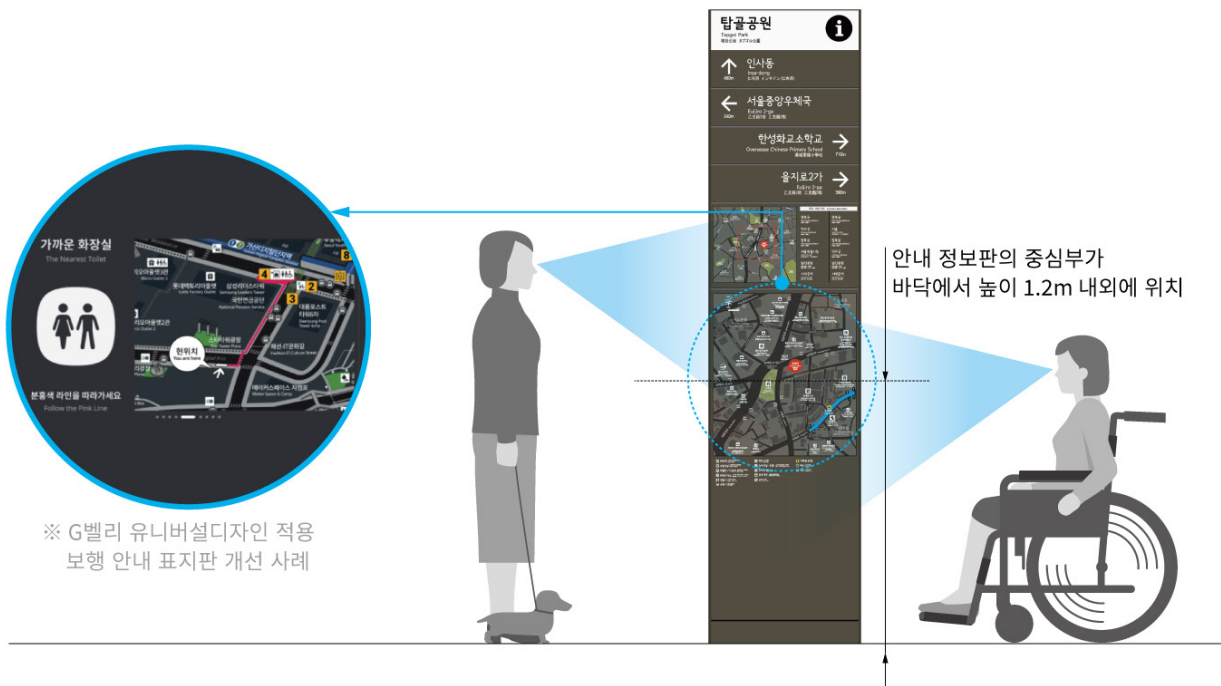
# (1) 안내시설



## 구역 안내

특화 거리, 테마 거리 조성 등의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안내도 설치를 권장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시설, 인근 교통시설 등 주요 편의시설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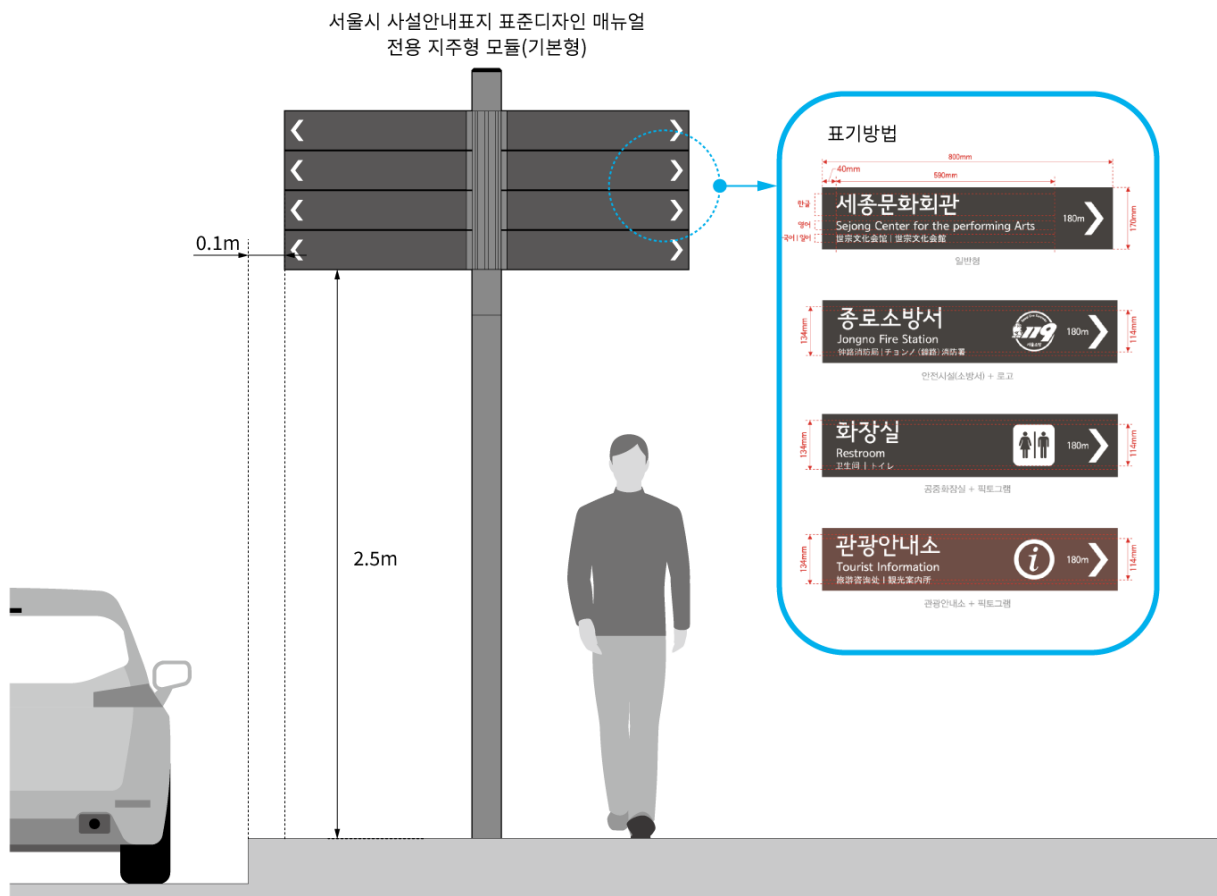
- 종합안내시설(구역 안내도 등)에 보행성 정보, 위생 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을 포함한 보행 편의 정보를 표시한다.
- 종합안내시설은 가독이 가능한 위치까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안내 정보판의 중심부가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
- 종합안내시설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보행공간 경계 등에 독립형으로 설치 시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격 완화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글자의 크기 및 주변과 안내판 바탕면 색 대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하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촉지도 또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QR코드) 등을 설치한다.



## 방향 안내

주요 여객 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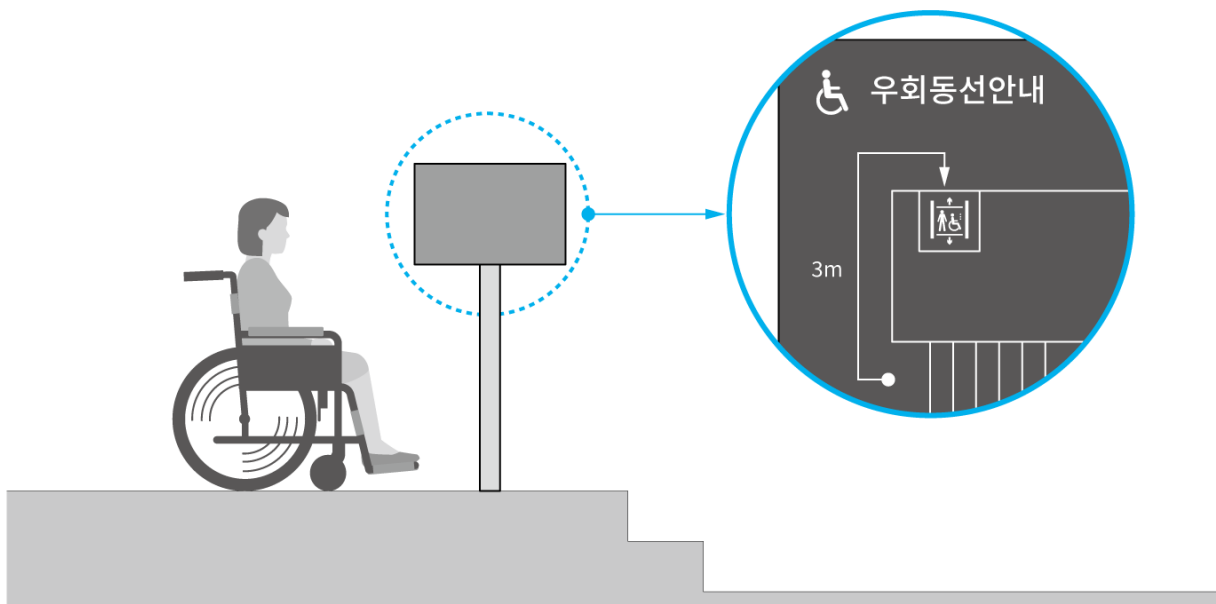
- 방향 안내시설은 방향과 소요 거리 정도를 표기한다.
- 글자의 크기 및 주변과 안내판 바탕면 색 대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한다.
- 3개 이상의 가로(시가지의 넓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 우회동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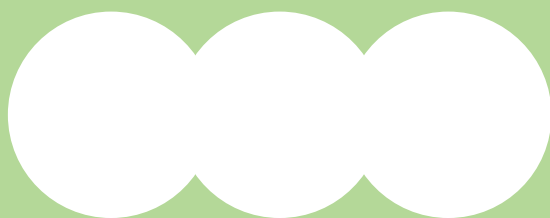
기울기가 급하거나 계단만 존재하는 경우에 휠체어 사용자 및 유아차 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우회동선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우회동선 안내는 기울기 1/18 이하의 보도와 승강기를 이용 가능한 동선 등으로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이 이용 가능한 동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급경사지 및 계단 등 해당 구간의 시·종점 이전에 보행의 어려움에 대한 사전 정보인 우회동선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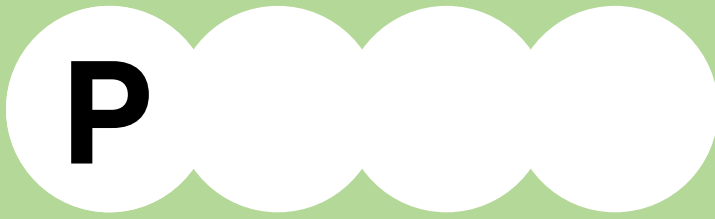
# 공원 Park



##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아래 내용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에 적용한다.
- 도시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 공원 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위 내용 외에도 관련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본 지침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단, 지형 등의 조건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P 1**

접근 공간

107

**P 2**

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

125

**P 3**

위생 공간

143

**P 4**

안전 환경

161

**P 5**

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

169



## 접근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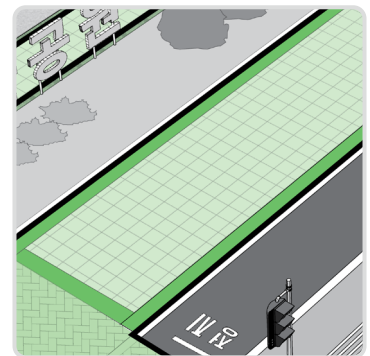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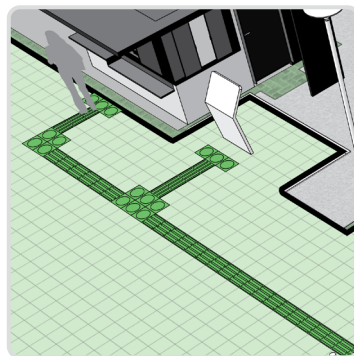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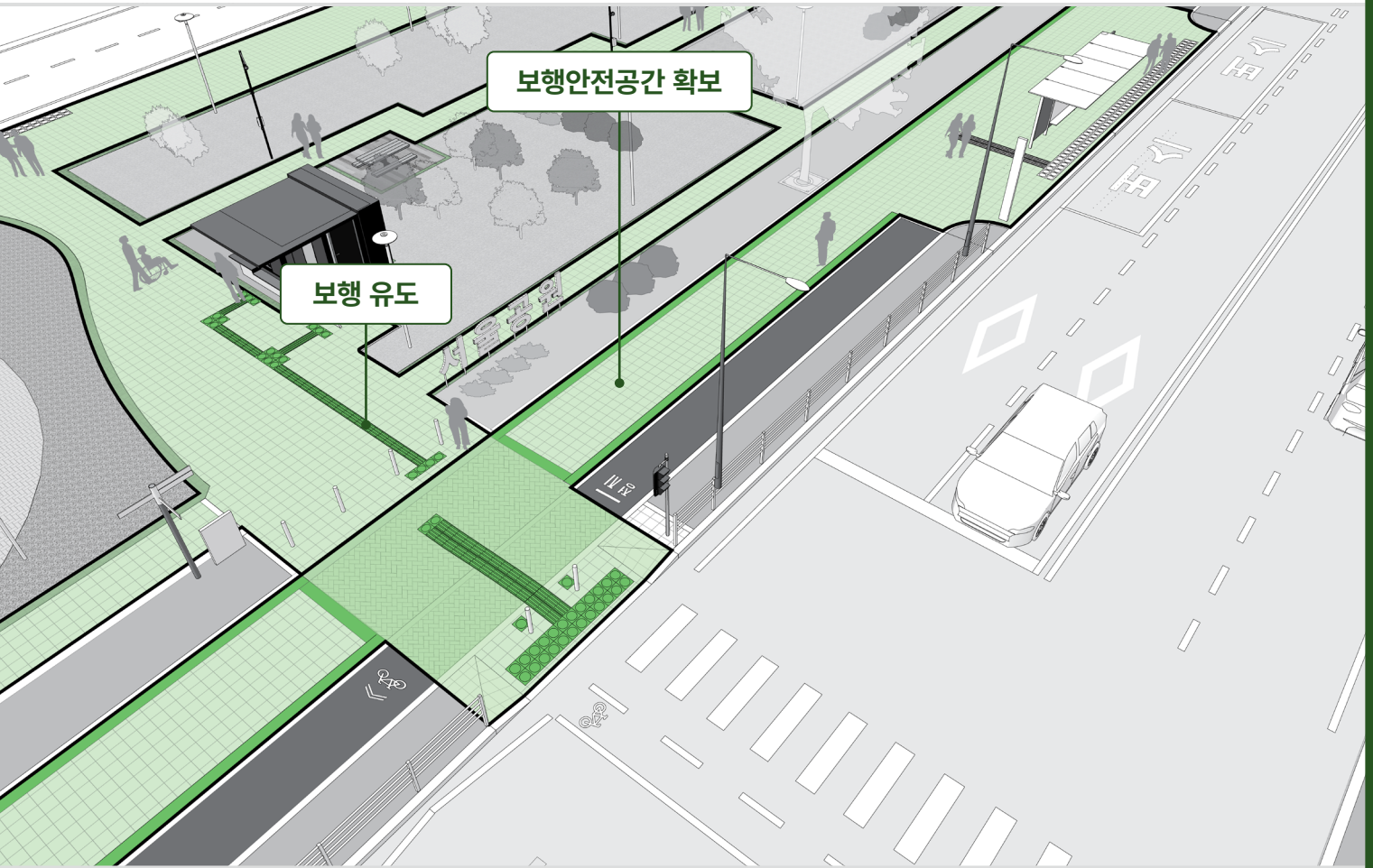
(1)	보행 접근	109
(2)	공원 출입구	113
(3)	차량 접근	117

### 계획원칙

-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원까지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공원 인근의 주요 교통시설과 차로 횡단구간에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 아울러 차량을 이용해 공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시설과 적절한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주차 후 공원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보행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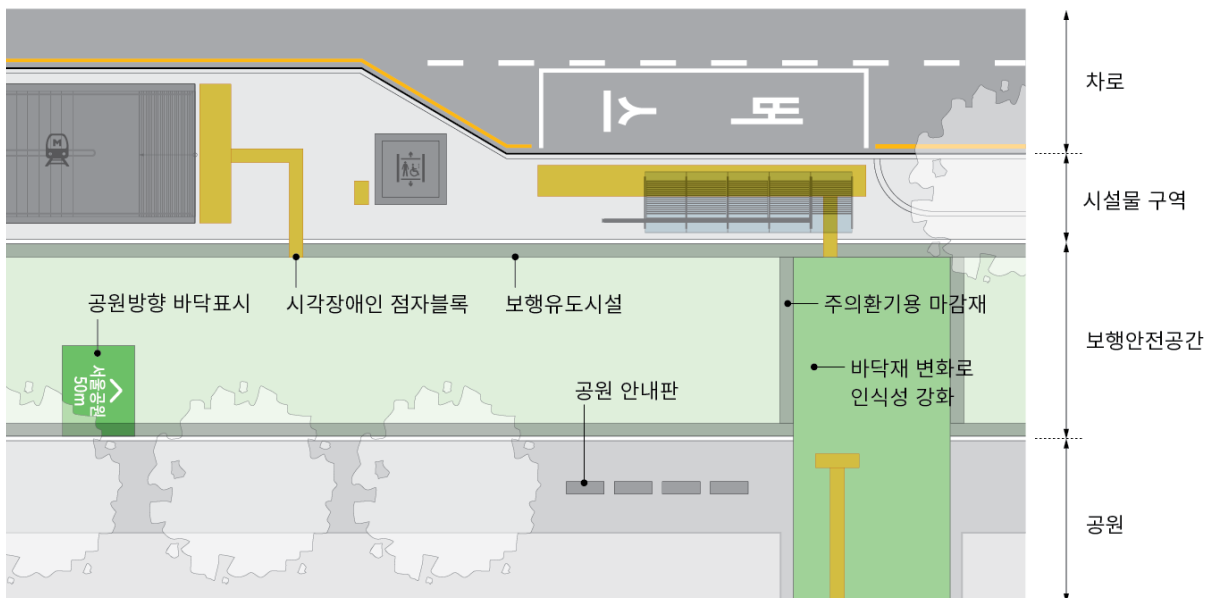
## 보행안전공간 확보

공원 인근의 주요 교통시설 및 차로 횡단구간에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까지는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 누구나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속적인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다.

### 교통시설 및 보도와 연속적인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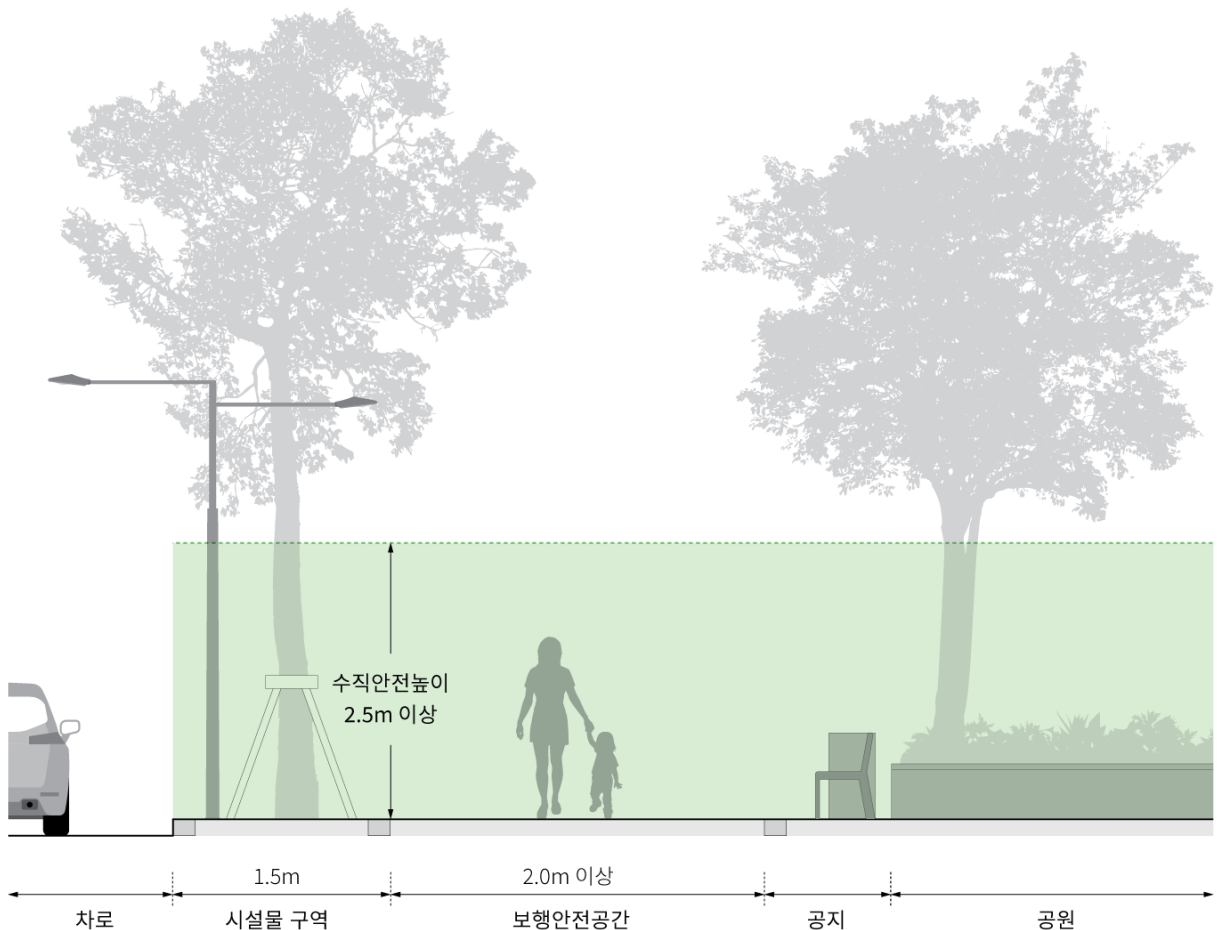
- 공원의 주출입구에서부터 인근의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버스 정류소, 공원 외부 공영주차장 등과 같은 주요 교통관련 시설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다.
- 공원의 주출입구에서부터 인근의 횡단보도, 입체 횡단시설(육교 등) 등과 같은 주요 차로 횡단구간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다.
- 공원 조성 사업 혹은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할 경우, 공원의 대지 경계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우선 정비하도록 한다.
- 사업 범위 외의 구역은 자치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원 조성 과 함께 통합 정비가 되도록 한다.
-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행안전공간은 본 지침의 '보도-보행안전공간'의 기준을 준수한다.
- 보행안전공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본 지침 '보도-보행안전공간' 기준을 참고 한다.

\* 그 외 공원-광장 접근로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28~30을 참조



## 보행안전공간의 구조

- 수평 유효폭 2.0m 이상, 수직안전높이 2.5m 이상을 확보한다.
- 기울기는 종단 1/24, 횡단 1/50 이하를 확보한다.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블록 포장, 덮개, 재료 분리 구간 경계 등에서 무단차 처리한다.
- 접근로 상의 화분, 휴게의자, 자전거 보관대, 휴지통 등의 보도시설물과 조경시설물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설치한다.
- 접근로 상에 설치된 독립 지주, 독립 설치된 시설물은 접근 방지 및 충격 완화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 및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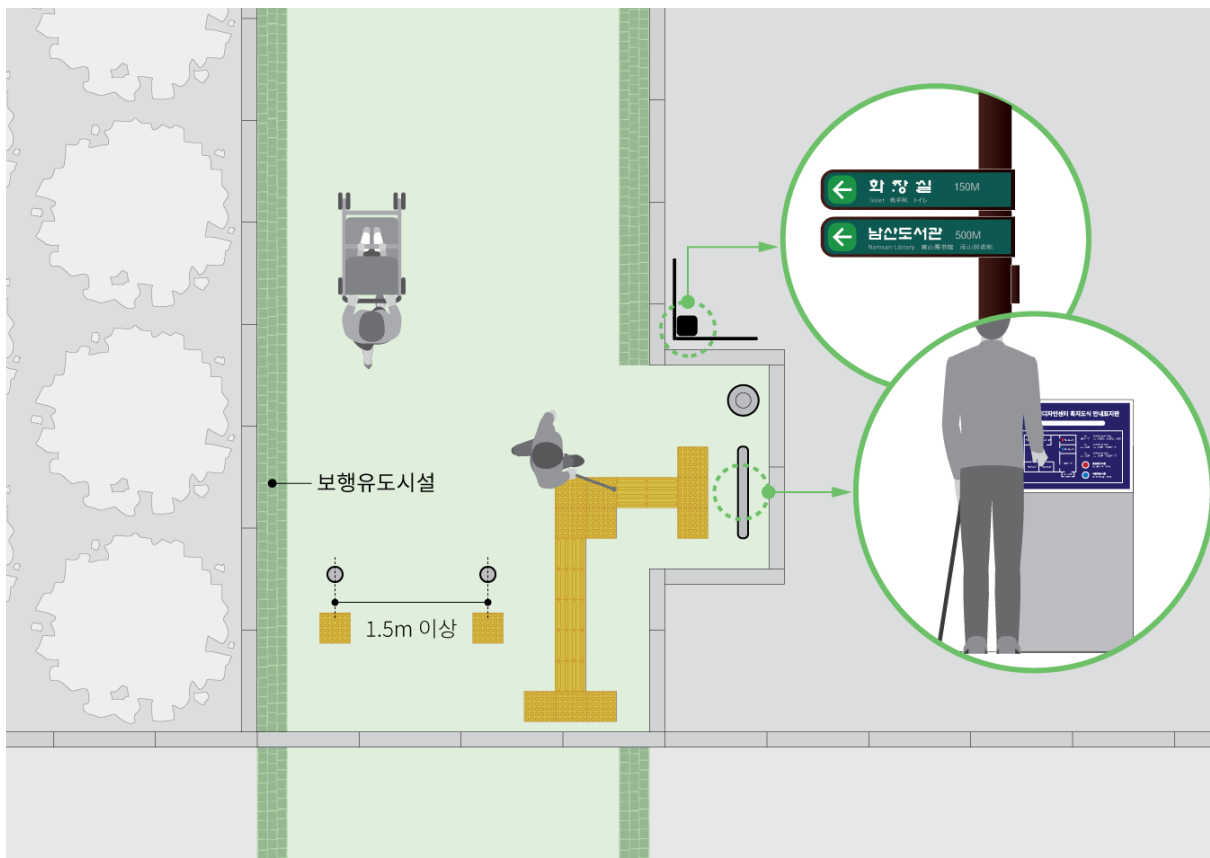


## 보행 유도

공원의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 인근의 주요 교통시설과 차로 횡단구간까지는 시각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연속적인 보행 유도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외부 유도

- 접근로 상의 시각장애인 유도는 점자블록(점형/선형)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보행안전구역이 확보된 경우 유도용 재질을 사용한 보행 유도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행 유도는 최단·최적 거리 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는 최소화한다.
- 공원 주출입구까지의 대략적인 거리와 방향, 시설 명칭이 표기된 연속적인 방향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방향 안내표지판의 세부 기준은 본 지침의 '보도-안내시설' 기준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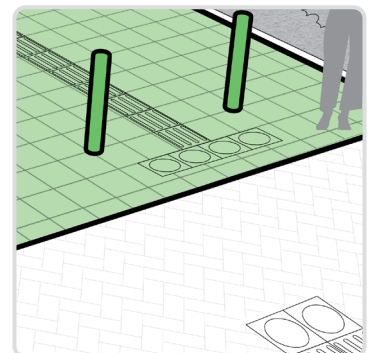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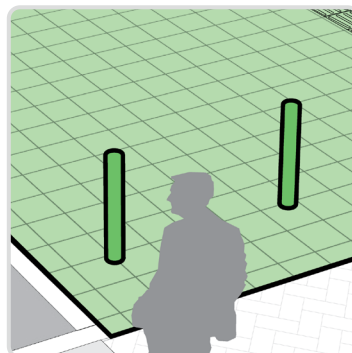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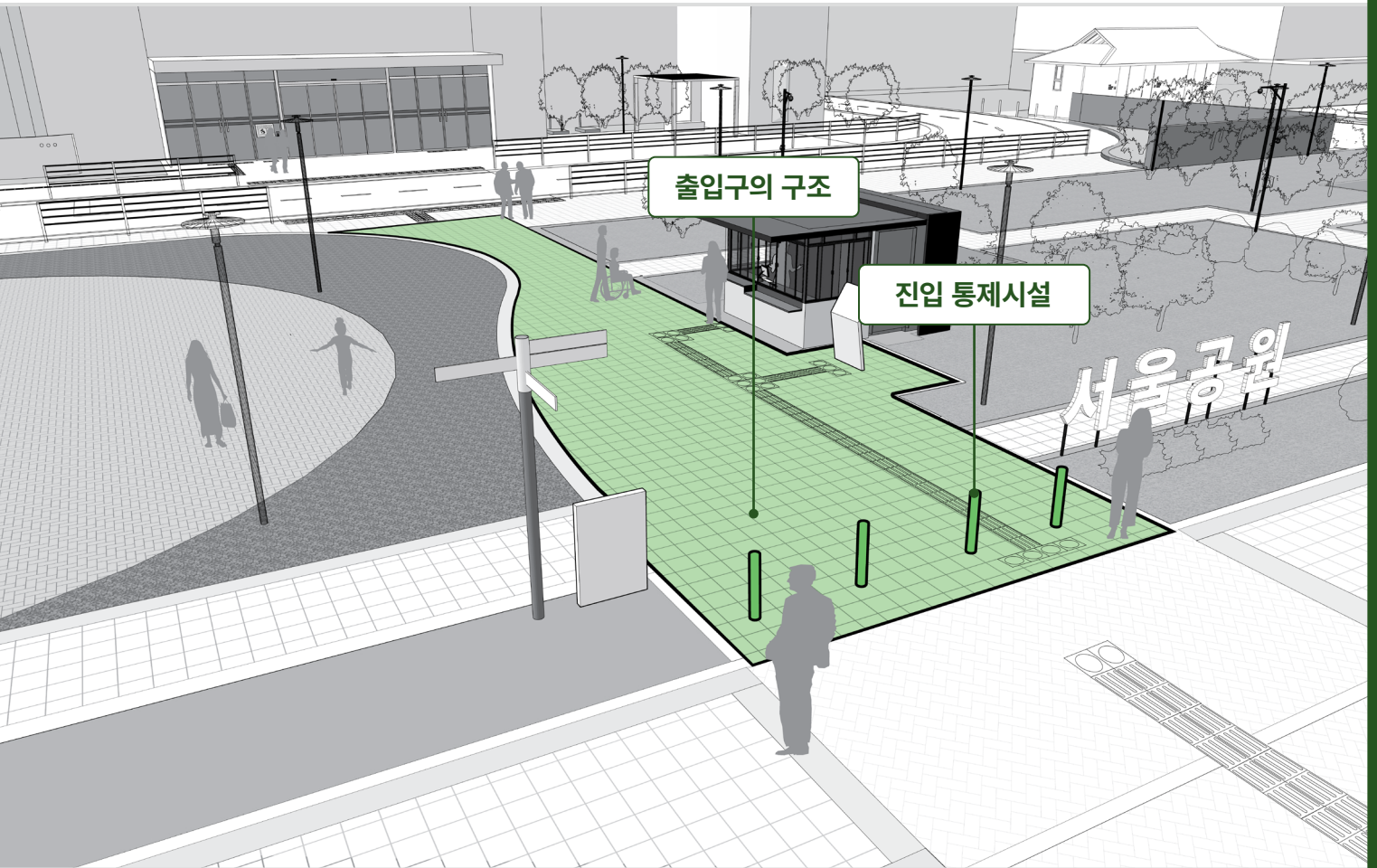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지 내 유도

- 공원 인근 보도(사업범위 미포함)의 정비가 어렵거나, 기존 시각장애인 유도시설(점자블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원의 경계에서부터 공원의 주출입구 또는 종합안내시설(촉지도식 안내판 등)까지 연속적인 보행 유도시설을 설치한다.



## (2) 공원 출입구



---

## 출입구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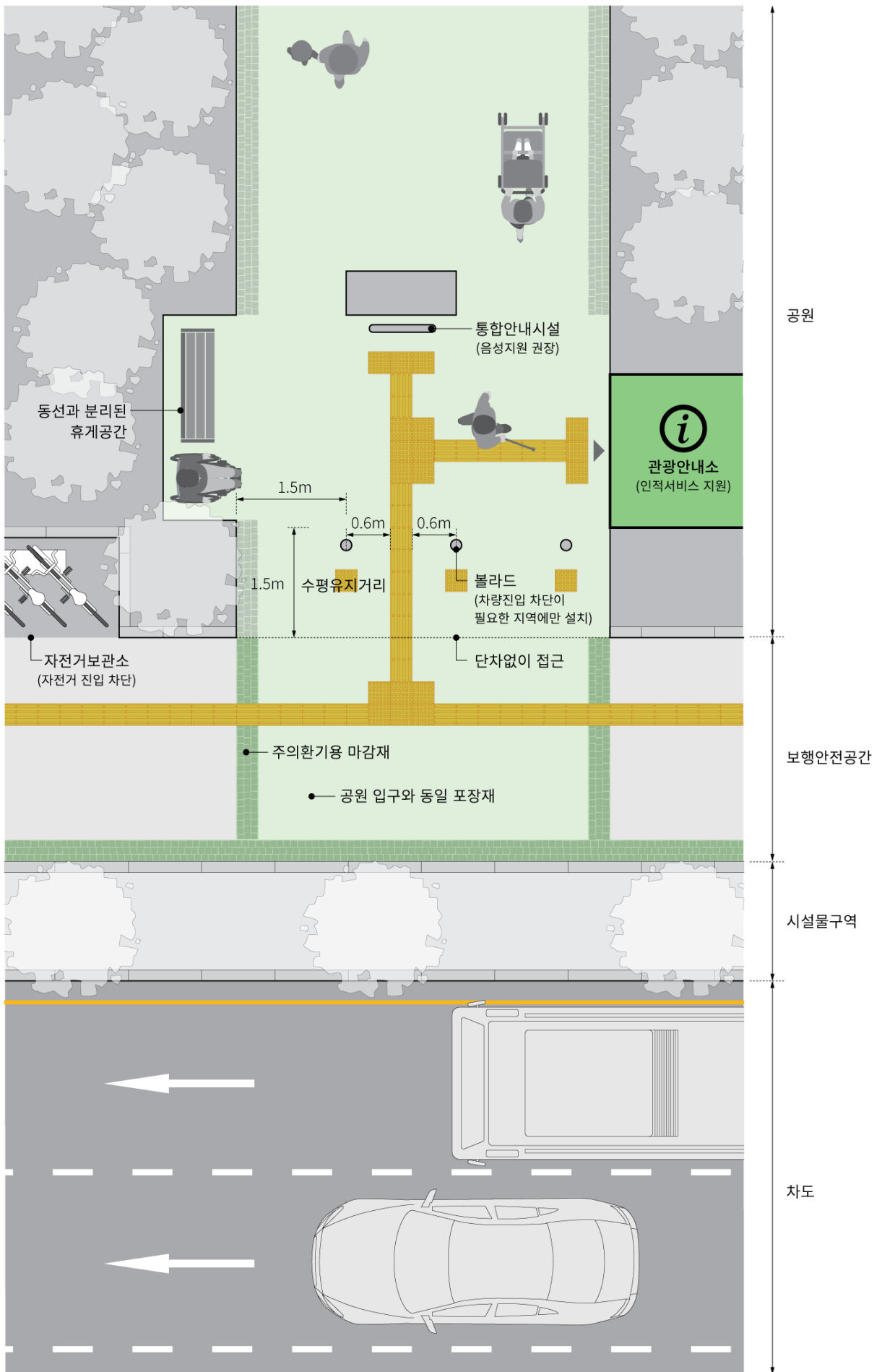
---

공원의 모든 출입구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효폭, 기울기, 재질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의 수직이동시설 및 높이 차이를 안내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

- 출입구는 수평 접근(1/24 이하의 기울기)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입구의 유효폭은 1.8m 이상을 확보한다.
- 지형상 이유 등 불가피하게 보행 접근로와 출입구 사이에 높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을 설치한다.
- 지형상 이유 등 불가피하게 모든 출입구의 접근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출입구의 접근성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수직이동시설은 공공건축물 내부 수직이동시설 기준을 준수한다.
- 출입구의 인지성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가능한 광장 형태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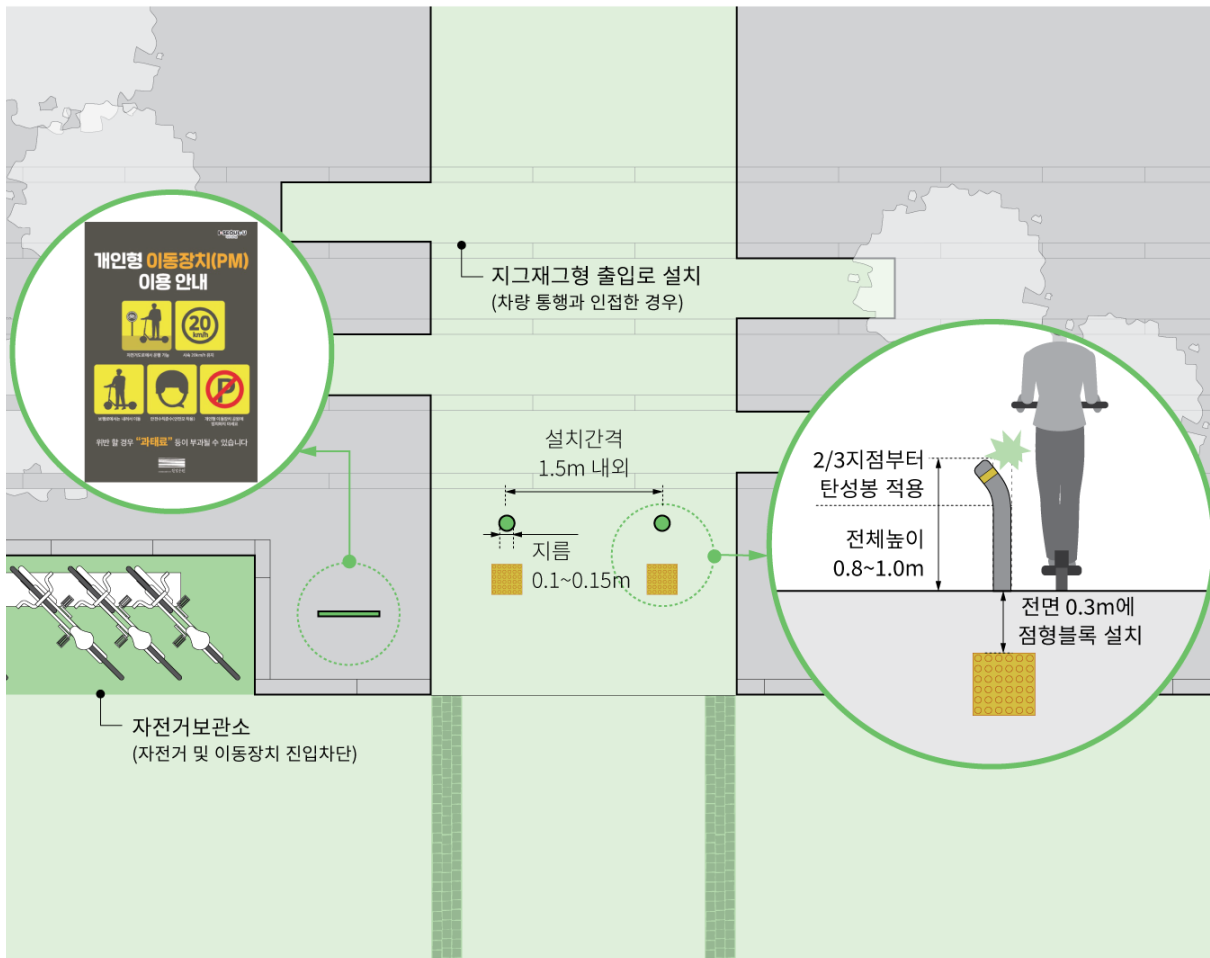
\* 공원·광장 주출입구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35~36 참조



## 진입 통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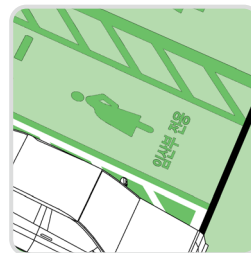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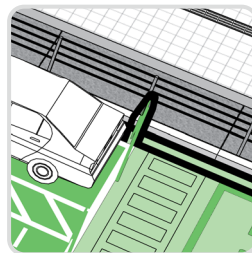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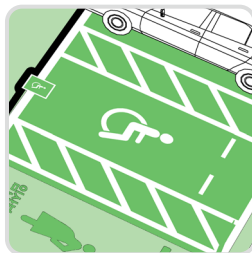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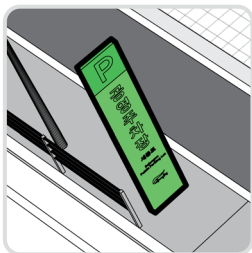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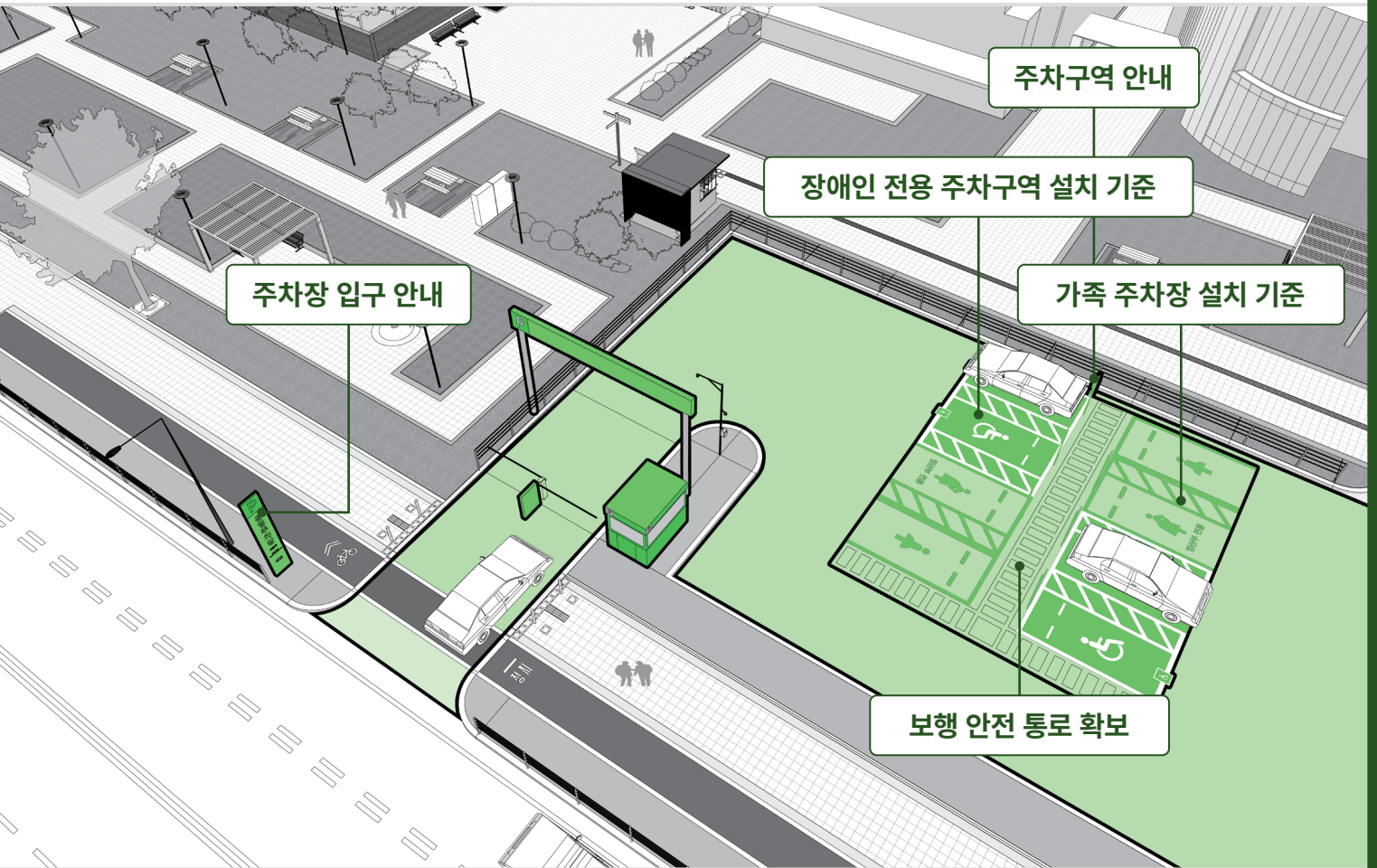
출입구에는 속도가 빠른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진입통제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등) 설치 시 설치 간격 1.5m 이상, 높이 0.8~1m, 지름 0.1~0.15m 내외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주변 접근 주의경고용 이질 바닥재 포장
  - 보행자 충돌 시 충격 완화가 가능하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형태/재질로 설치(마감/조명 등 활용)
  - 상황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 등 시각/물리적 진입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치
  - 개인형 이동장치 등 속도가 빠른 탈것의 진입금지, 보행자 주의 등 안내시설 설치





### (3) 차량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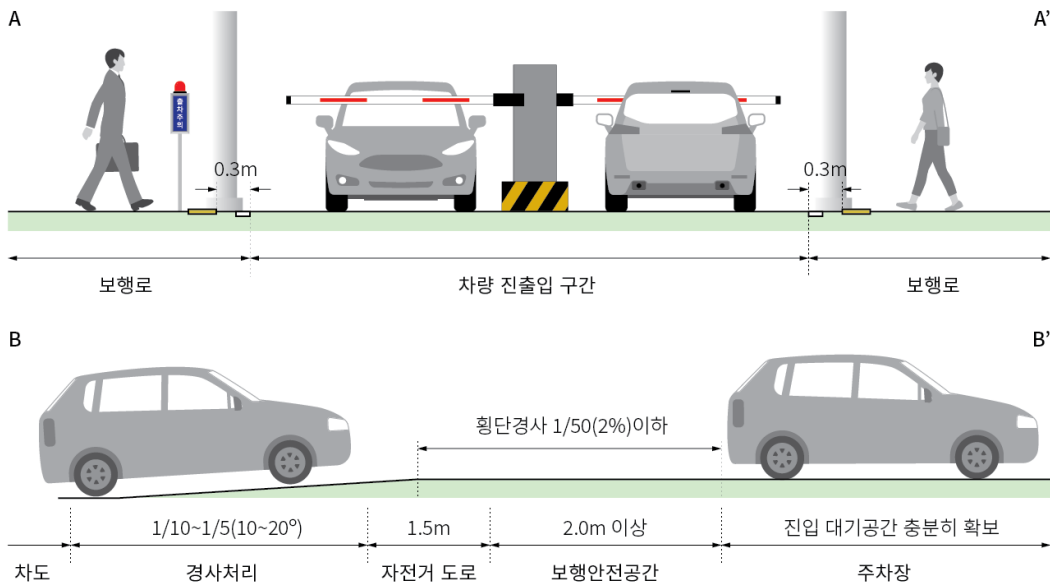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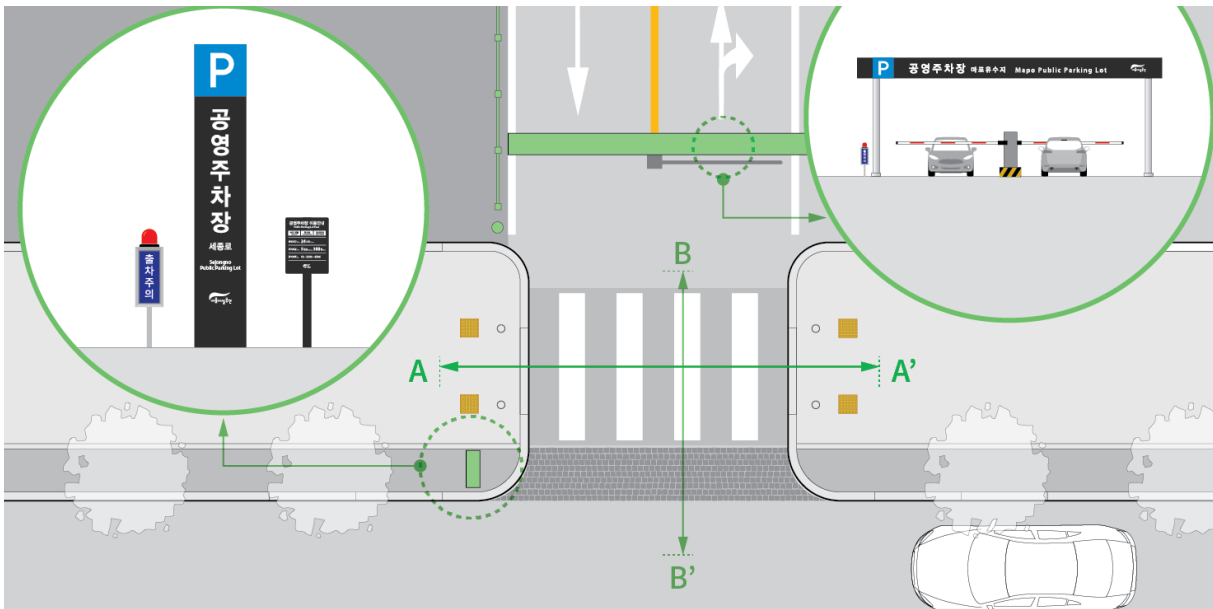


## 주차장 입구 안내

운전자가 외부 차도에서 시설의 주차장 입구를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주차장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주의·경고시설을 설치한다.

-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량 운전자가 차도에서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이용시설명과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차량 진출입구 전후에 운전자가 쉽게 인지 가능한 보행자 주의/경고시설 설치한다.
- 별도의 표지판이 없어도 주차장 입구임을 쉽게 인지 가능한 경우 안내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원·광장 주차장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31~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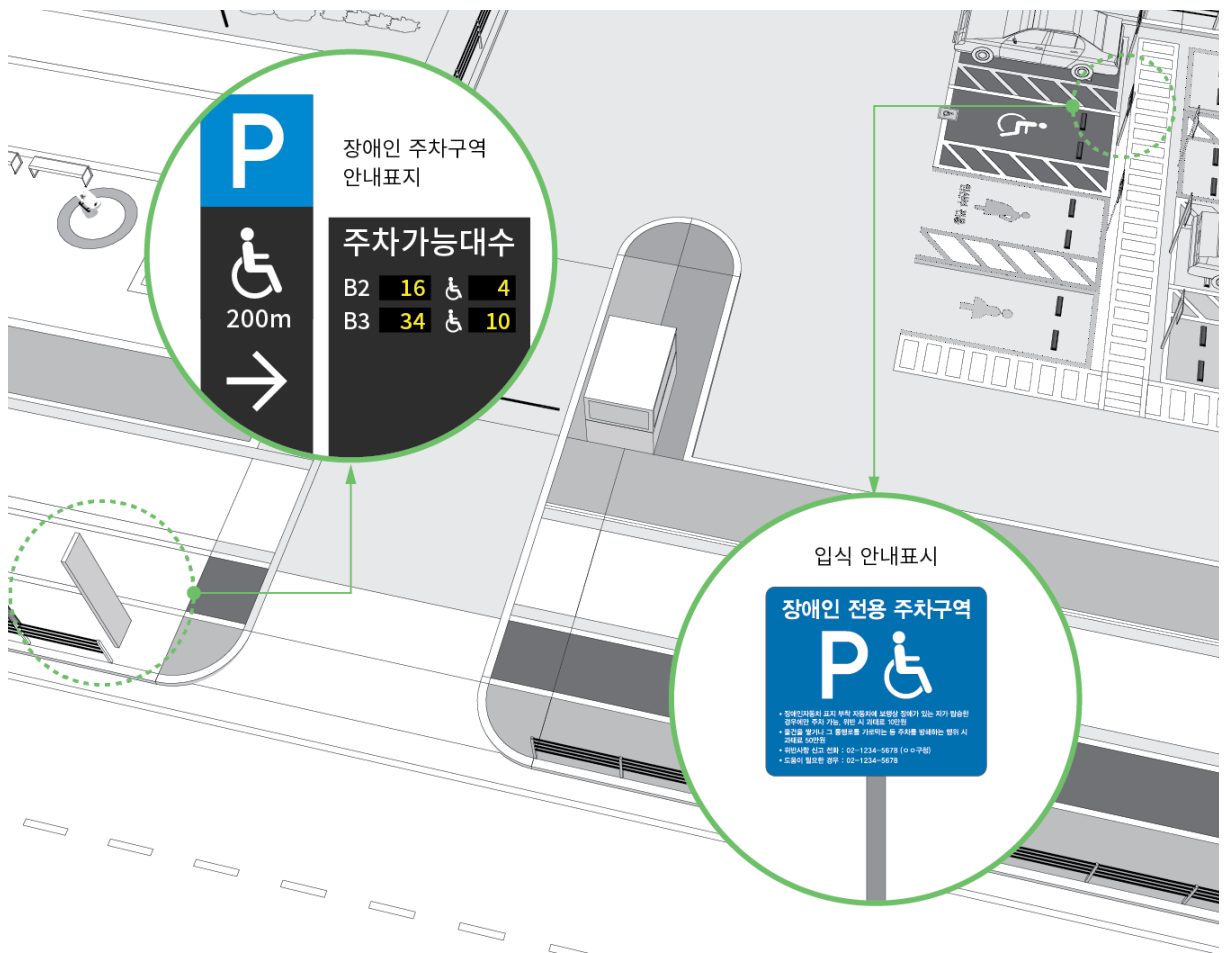


## 주차구역 안내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명확하게 인지 및 이해 가능하도록 위치 안내 표지판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 공원 내 주차구역 안내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치(방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방향 및 위치 안내는 입식 안내, 천장형 안내, 바닥 안내 등의 형식을 활용한다.
- 안내판은 야간에도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발광형 또는 조명 내장형 등으로 설치하거나, 야간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안내판 주변 조도를 확보한다.



### 인근 주차구역 안내

- 공원 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공원 접근로에 대한 안내 및 유도 표시와 함께 접근로를 정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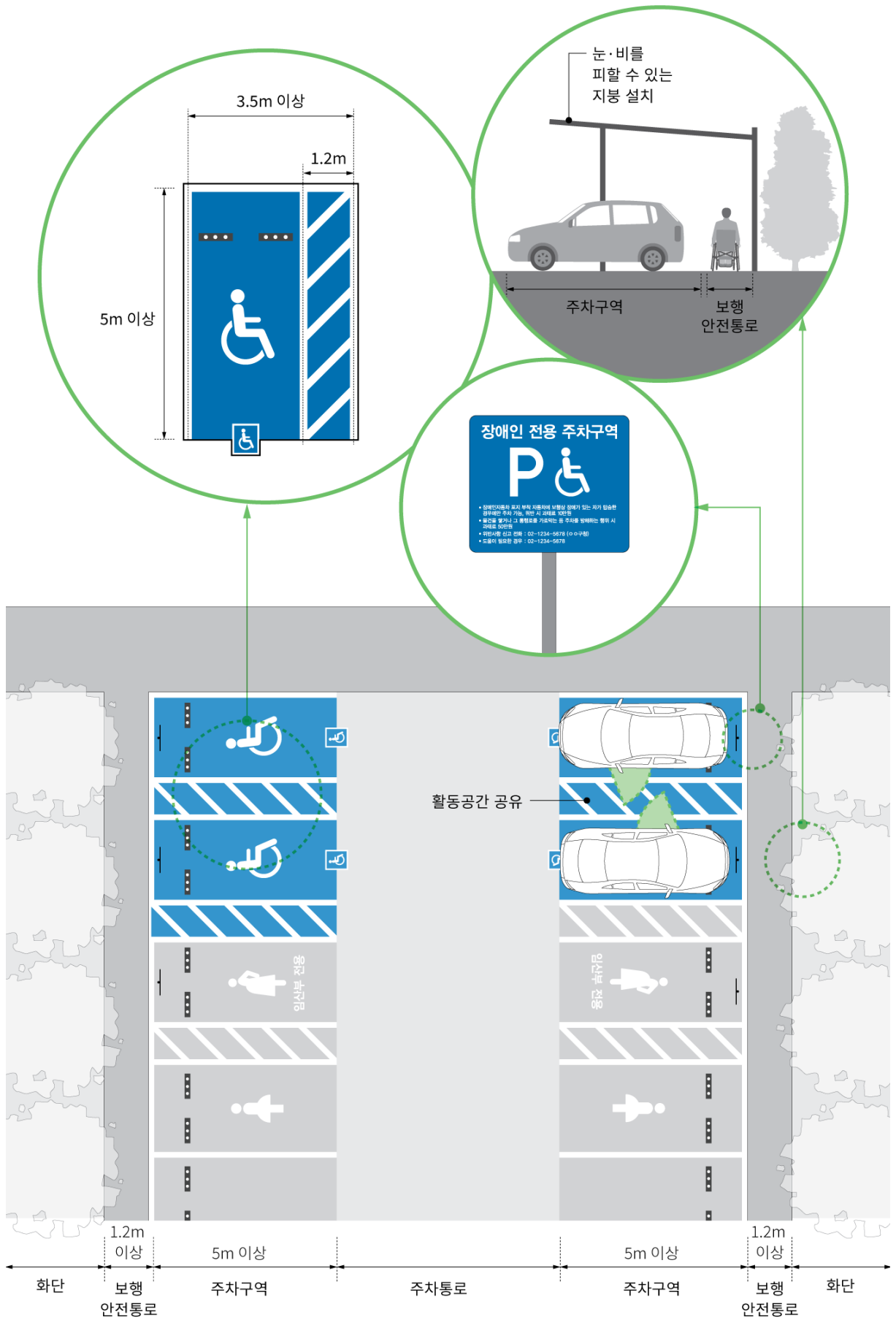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공원의 주요 출입구별, 주요 시설별로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하여 설치한다.

- 주차구역의 출입구는 보행자 출입구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 공원의 출입구가 분산되어 있거나 하나의 주차장에 시설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해당 출입구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하여 설치한다.
- 전기차 충전기 이용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소 중 1면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주차구역으로 조성하고, 충전기 전후에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지붕 등을 설치하여 우천 시 등에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대규모 옥외 주차장에는 수관 폭이 넓은 수종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구역을 2면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연속하여 인접 설치하여 활동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폭 3.5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활동공간 1.2m 이상 노면(색상 등) 표시한다.
- 주차구역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기울기는 종·횡단 1/50 이하로 한다.
- 주차구역에는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자 호출·도움 벨 설치를 권장한다.
- 주차구역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기준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한다.
- 직원용(휠체어 사용자) 전용 주차공간은 방문자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및 입식 안내 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 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제1항관련)」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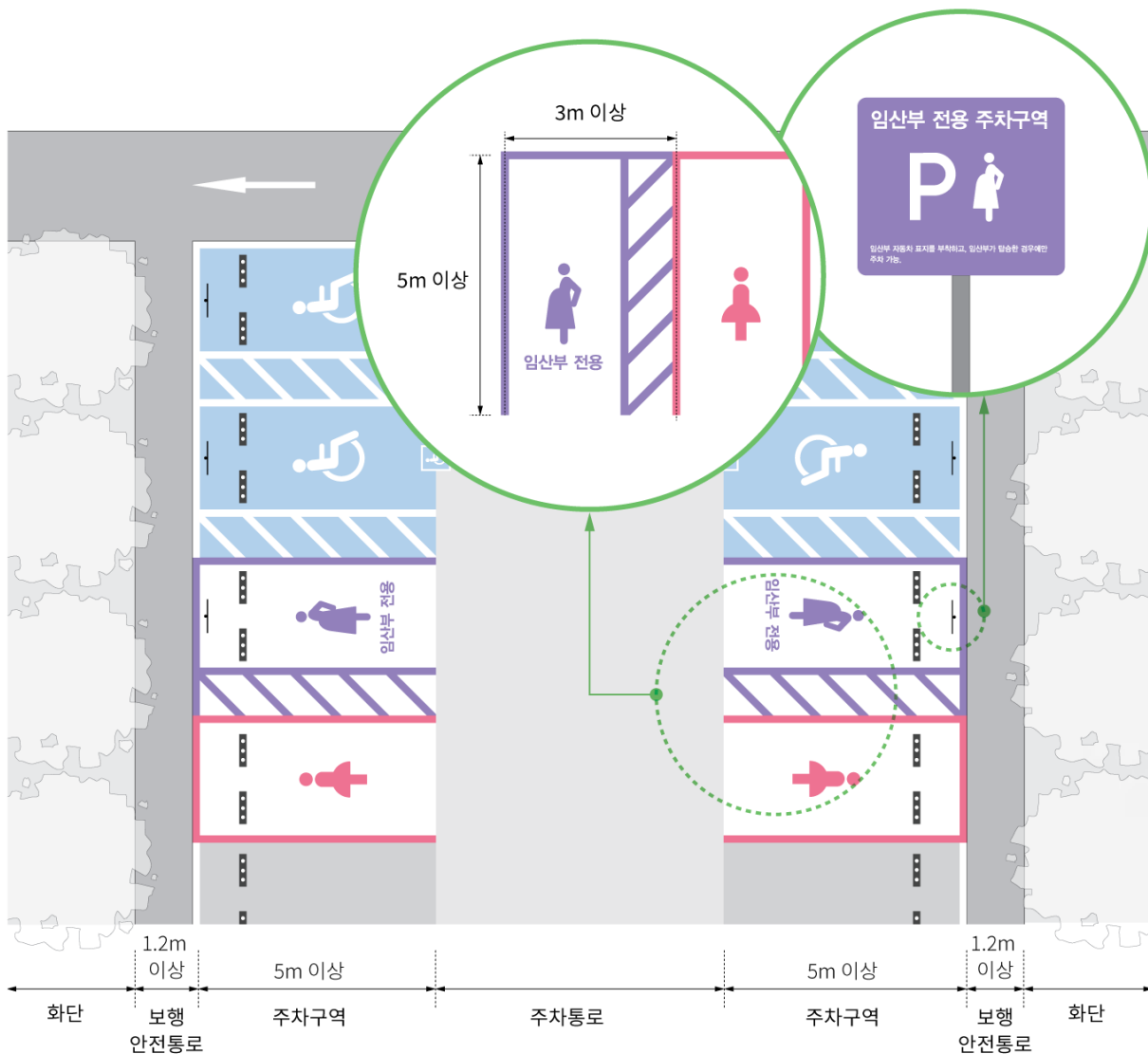




## 가족 주차장 설치 기준

유아차 사용자, 임산부 등을 배려한 가족 주차장을 설치한다.

- 가족 주차구역은 유아차 사용자, 임산부, 지팡이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폭 3m, 길이 5m 이상 확보한다.
- 공원의 출입구 또는 공원 내 보행안전공간까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은 주출입구 또는 보도까지 연결한다.
- 바닥 안내와 입식 안내를 활용하여 주차구역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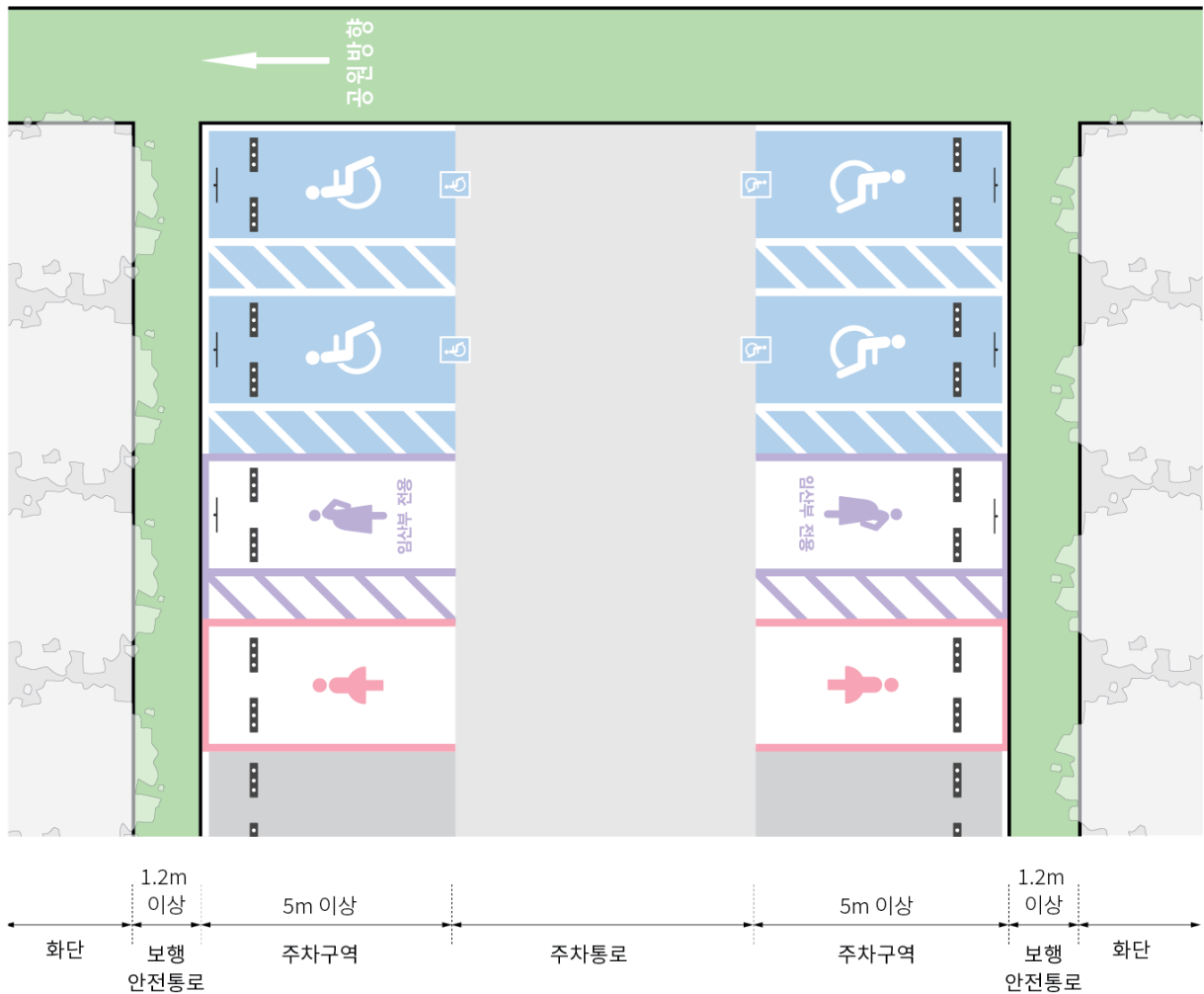


## 보행 안전 통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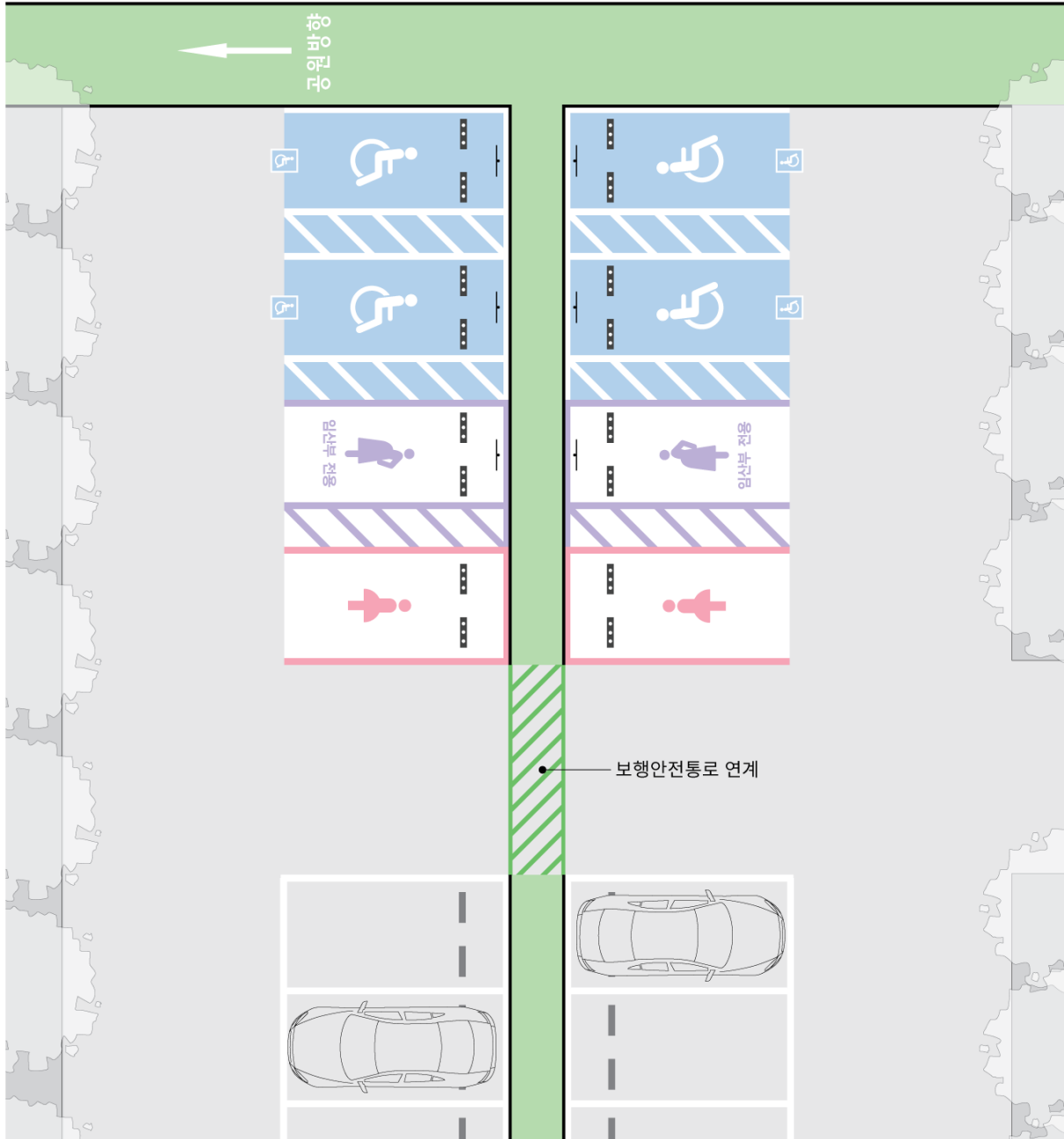
운전자 및 동승자가 주차구역에서 시설의 주출입구 또는 이에 연결되는 보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 보행 통로를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시설의 주출입구 또는 보도까지 차량과의 교행 없이 연결되도록 보행안전 통로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내 보행안전 통로 설치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단, 공원의 보행안전 통로와 보도 사이에 단차 발생 시 연결 부위는 1/12 이하로 처리하며, 경사 구간 전후 면에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차도와 구분되는 재질/색상으로 마감(명도 차이 3도 이상 권장)
  - 부득이하게 차량 교행구간이 생기는 경우, 보행자 횡단구간 표시(고원식 적용, 횡단보도 노면 표시 등)

보행안전통로 양측배치



보행안전통로 중앙배치





## 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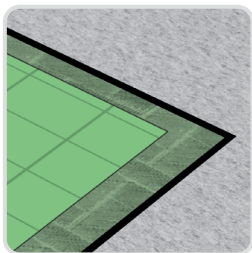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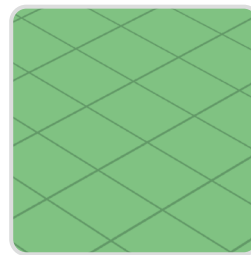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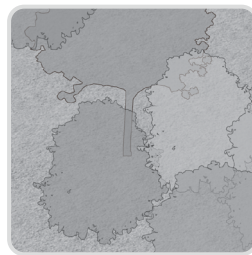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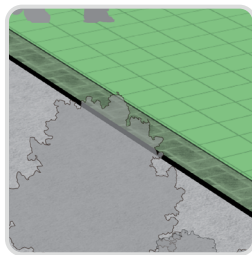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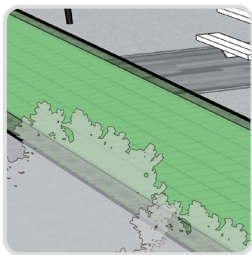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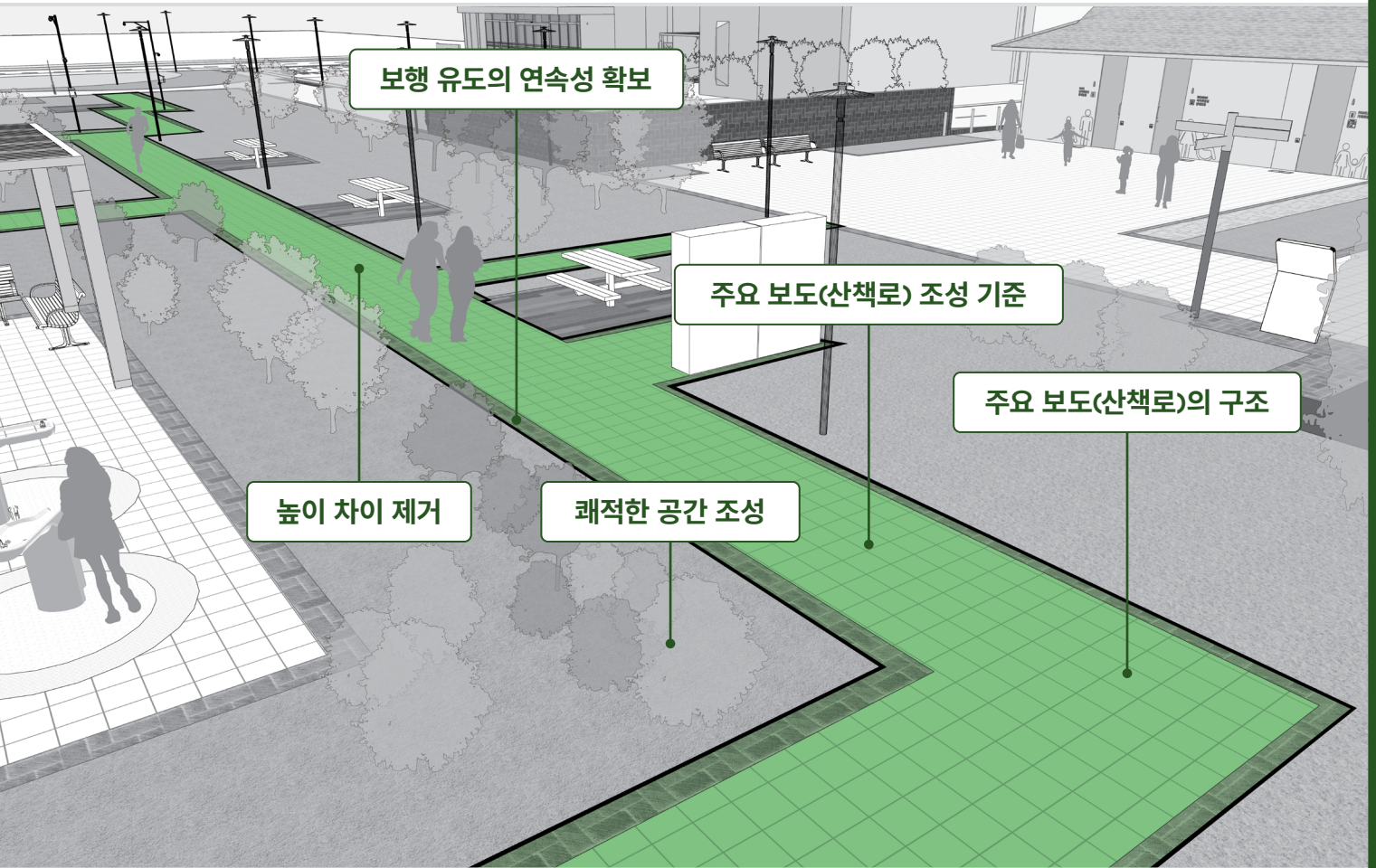
(1)	내부 이동 공간	127
(2)	내부 이용 공간	136

### 계획원칙

공원의 내부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 가능해야 하며, 공원 내 주요시설은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원의 용도·지형·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약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함께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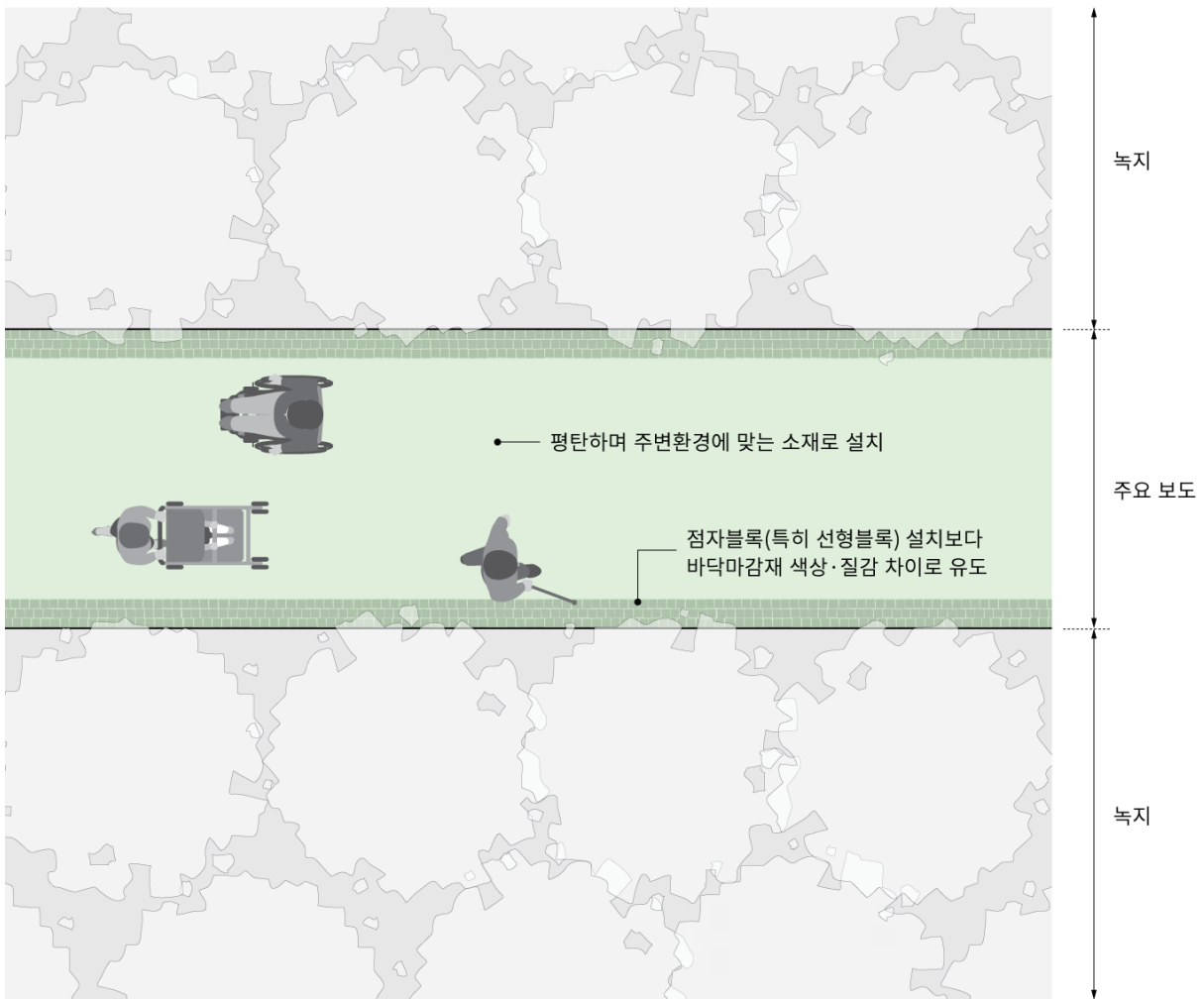
# (1) 내부 이동 공간



## 주요 보도(산책로) 조성 기준

공원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행로를 설치하되, 공원 내 주 이용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공원의 주출입구로부터 공원 내의 주 이용시설(공원 시설, 위생시설, 관리 사무실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주요 보도로 조성한다.
- 주요 보도는 휠체어, 유아차 사용자 등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어려움 없는 기울기와 재질로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연속적인 보행 유도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자연 지형으로 불가피하게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산책이 가능한 기준으로 적합한 산책 동선을 개발·적용하고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공원 내 주요 보도를 제외한 보행로는 일반 보도로서 휠체어, 유아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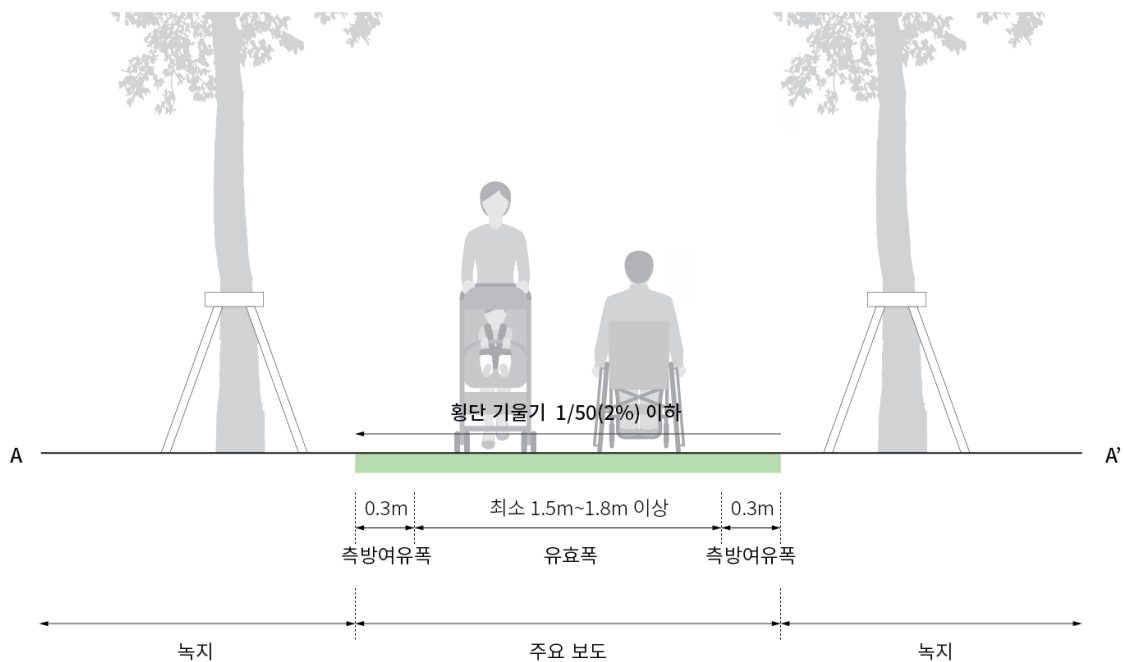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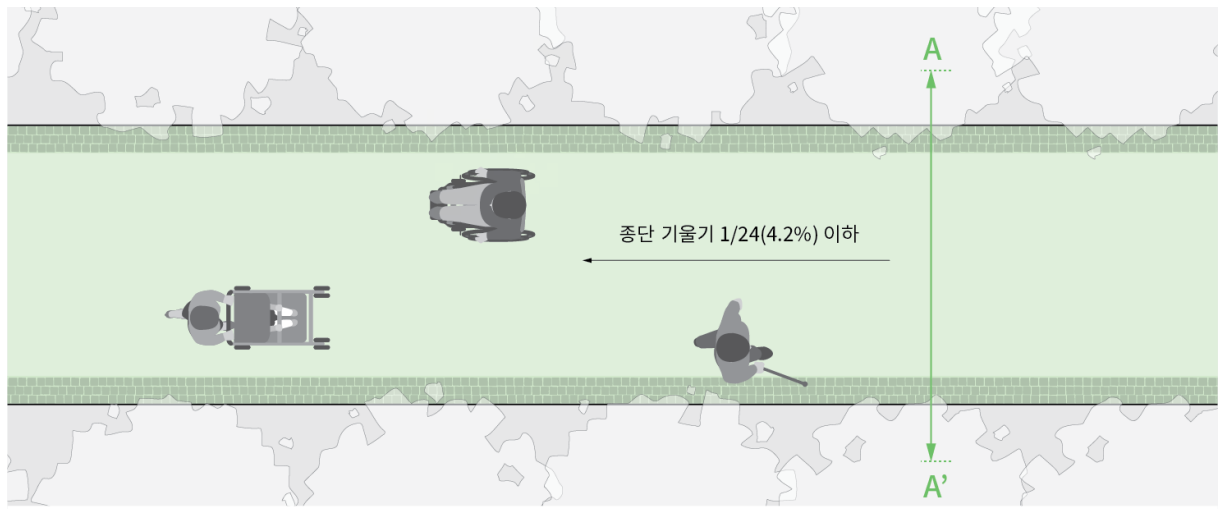
## 주요 보도(산책로)의 구조

공원 내 주요 보도는 누구나 이용 및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며, 공원 내 다른 이동 수단(자전거 등)을 위한 통로가 존재할 경우 보행안전공간과의 교행이 없도록 계획한다.

###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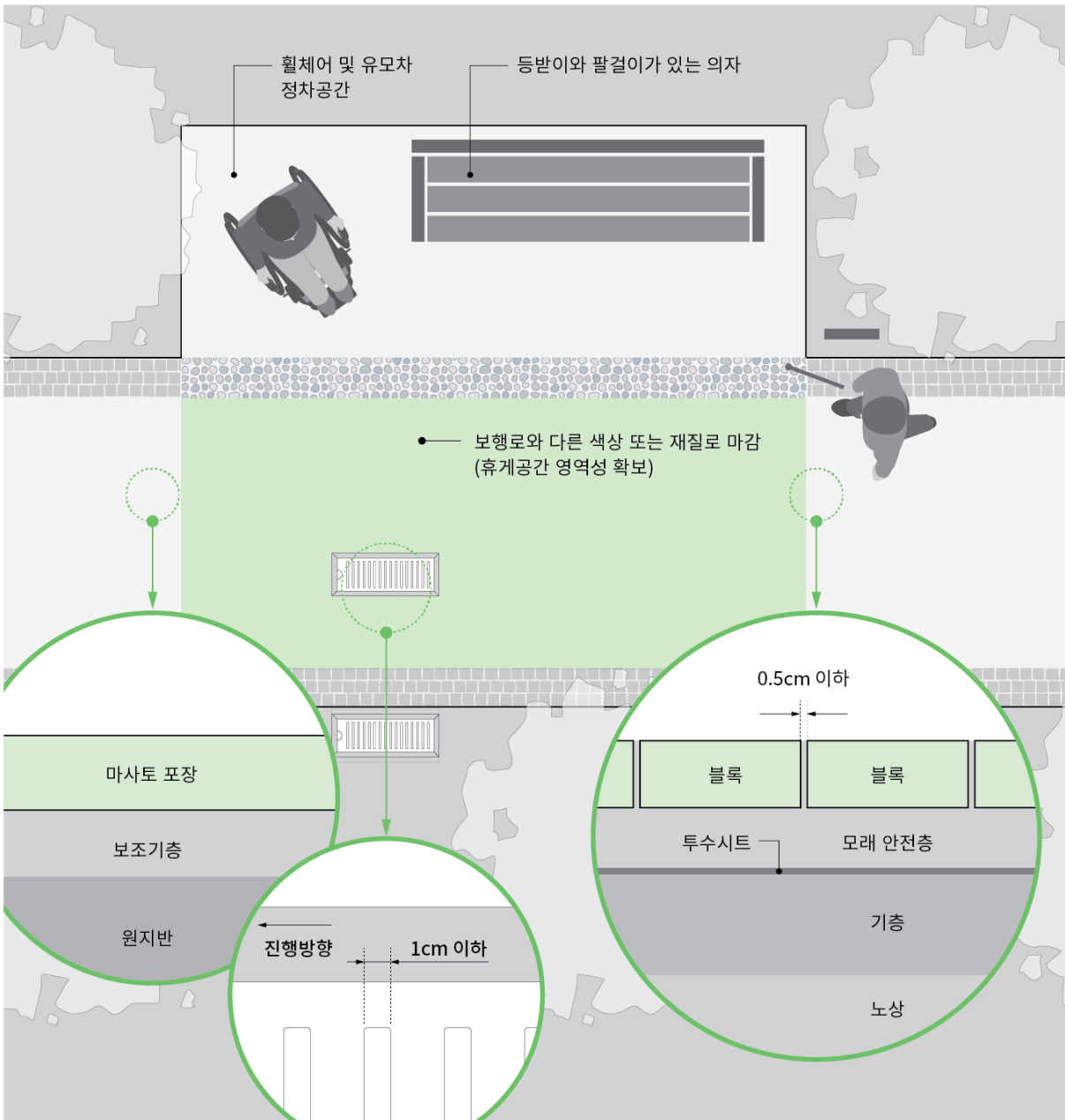
- 주요 보도는 수평 유효폭 1.8m 이상, 수직안전높이 2.5m 이상을 확보한다.
- 주요 보도는 종단 기울기 1/24 이하, 횡단 기울기 1/50 이하로 계획한다.
- 공원 내 다른 이동수단(자전거 등)의 통로와 교행하는 구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의 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광장 산책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42~4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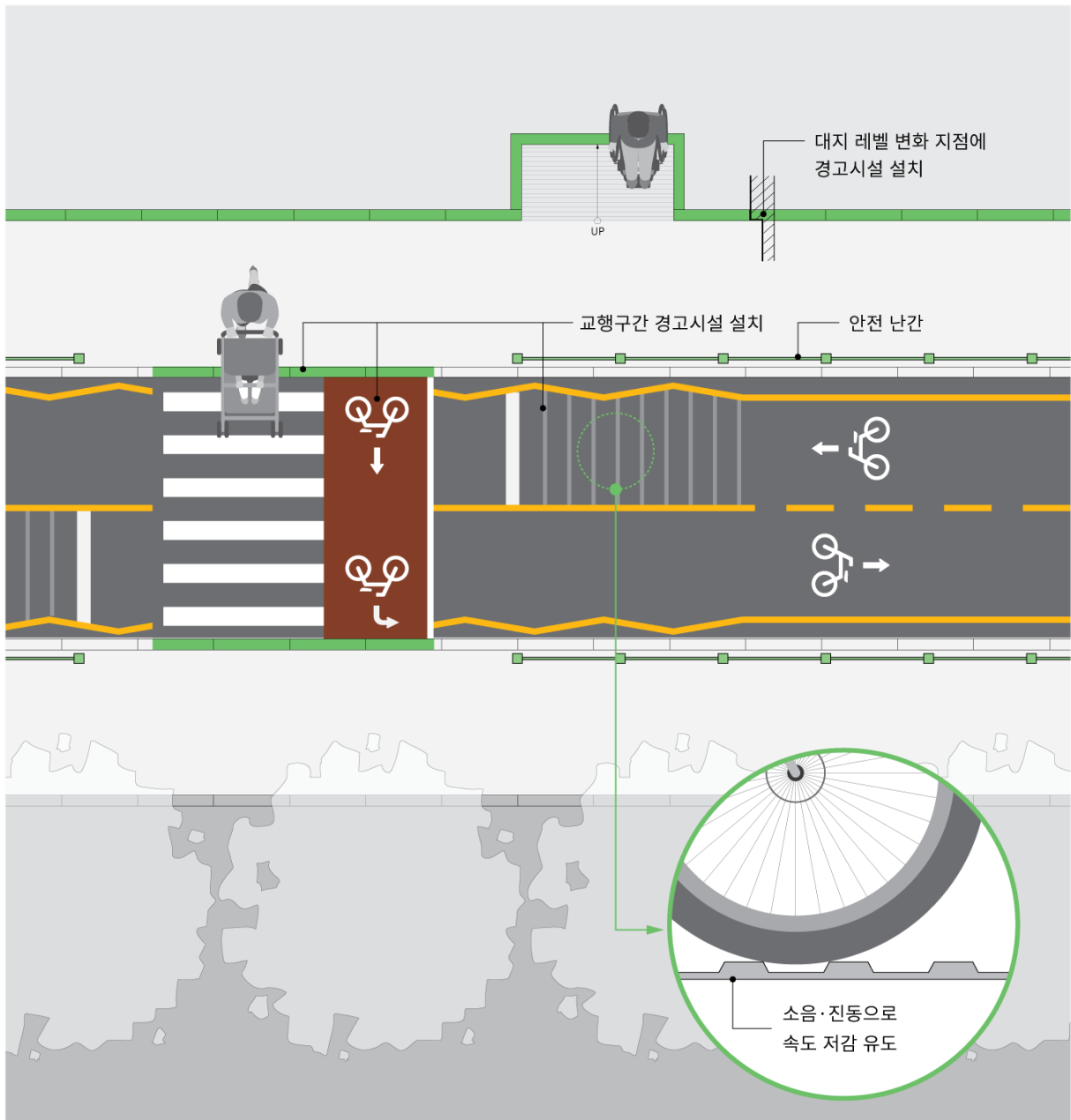
### 보행 장애 요소 제거

- 산책로 상에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 휴게공간 및 의자는 산책로 인접 조경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 바닥은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단차 및 틈새 없이 마감하며, 블록 마감 등은 줄눈 간격 0.5cm 이하로 설치한다.
- 우배수 관련 덮개 등은 조경 구간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보행로 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틈새 간격 1cm 이하인 것으로 설치한다.
- 바닥에 배수, 맨홀, 수목 보호 덮개 설치 시 인접 보도 마감과 평탄하게 처리한다.
- 산책로 상에 설치하는 손잡이, 안내표시 등 보행 유도과 관련된 시설은 조경, 식물 등으로 가리지 않도록 관리한다.



## 단차 및 높이 변화 구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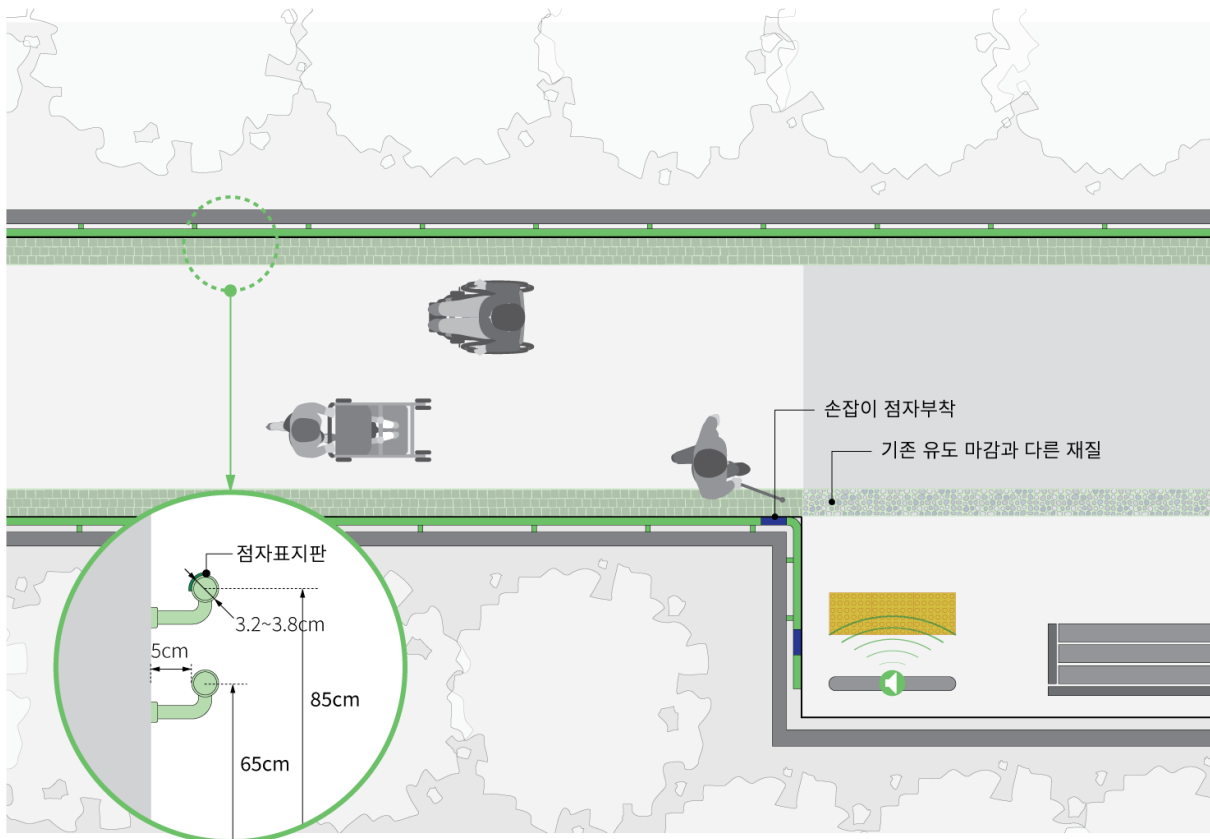
- 대지 레벨이 변화되는 지점(경사로, 계단 등)에는 색상 및 재질 차이를 활용한 적절한 바닥 경고시설을 설치한다. 이때 과도하고 복잡한 패턴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재질로의 설치는 지양한다.
- 공원 내 다른 이동수단(자전거 등)의 통로와 교행하는 구간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계획을 수립한다.
- 보행자 우선 계획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교행구간 전후 경고시설 설치(자전거 사용자 및 보행자용 통로에 모두 설치)
  - \* 전후 경고시설은 바닥재질 및 색상, 입식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설치.  
(단, 입식 안내표지판은 자전거 및 보행자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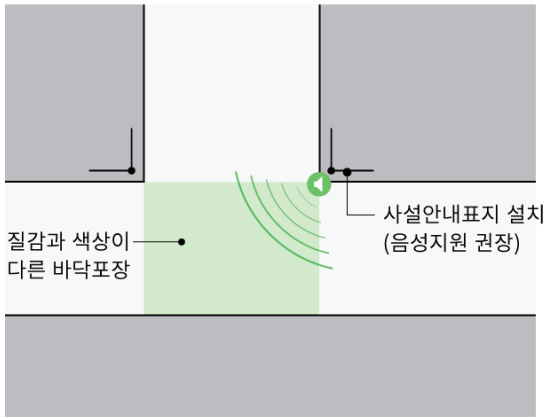
## 보행 유도의 연속성 확보

공원 내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은 누구나 인지가 가능하도록 보행 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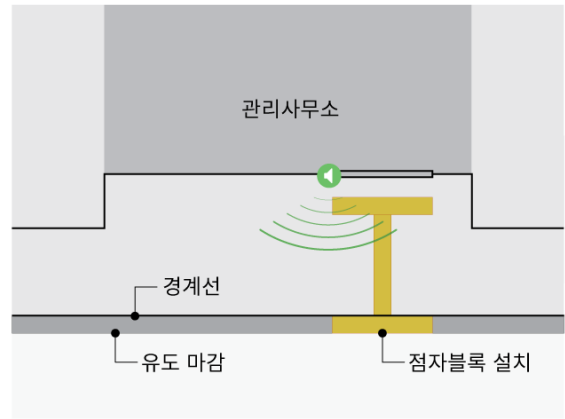
- 공원 내 기본적인 보행 유도는 보행안전공간의 양 경계 쪽의 마감 재질 변화 등을 활용한다.
- 별도의 보행 유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책로를 따라 보행 유도 손잡이 혹은 보조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 유도를 위해 주요시설(화장실, 관리사무소 등)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음성/음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광장 등 경계를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유도를 위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등 명확한 유도 방식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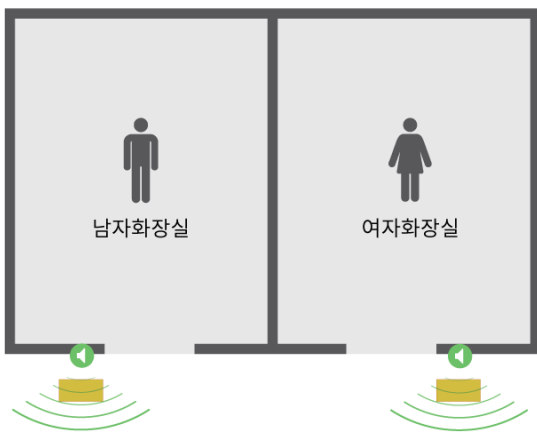
교차로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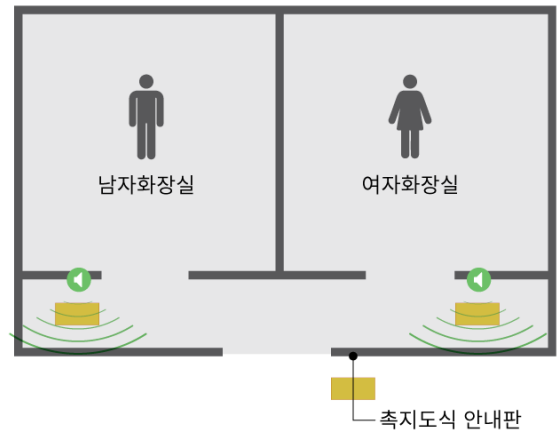
공원 간선로와 연결된 시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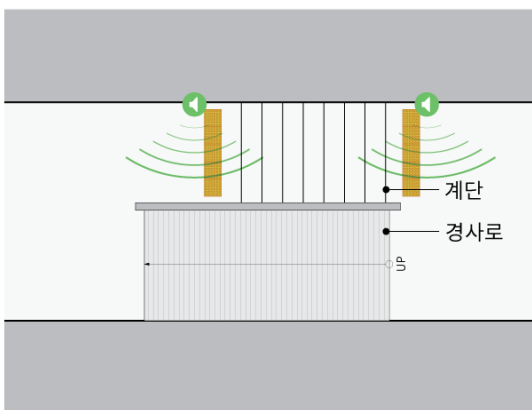
나뉘어진 화장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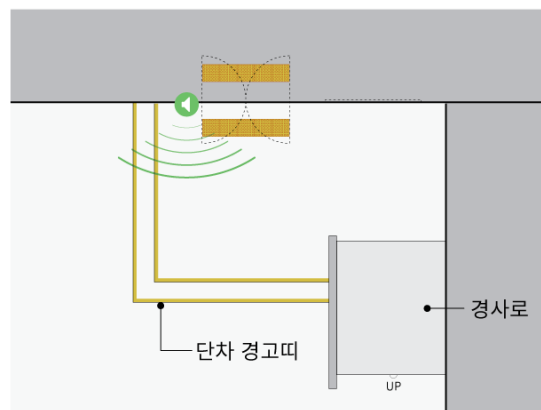
공동입구 후 나뉘어진 화장실



계단 및 경사로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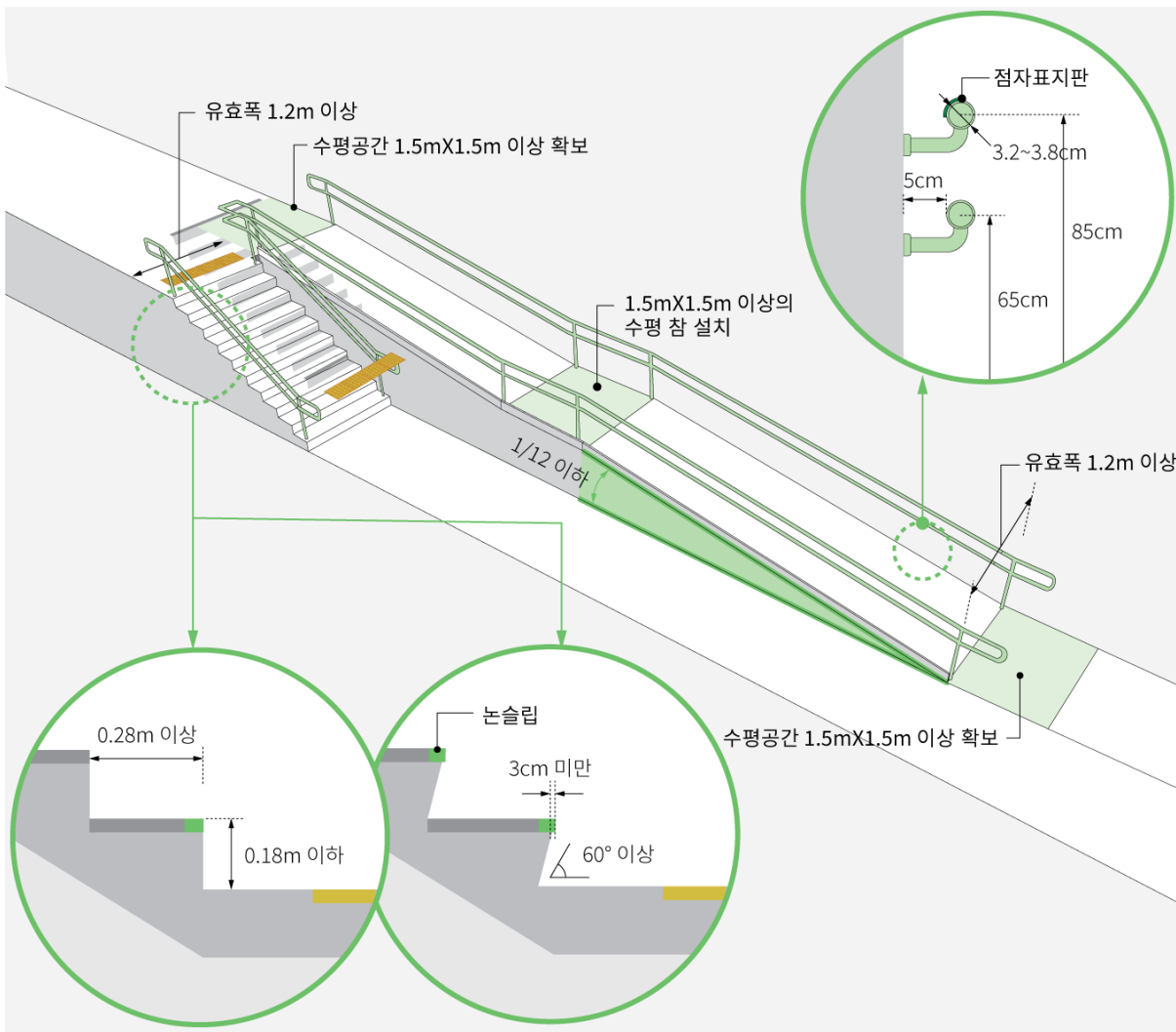
건물 출입구



## 높이 차이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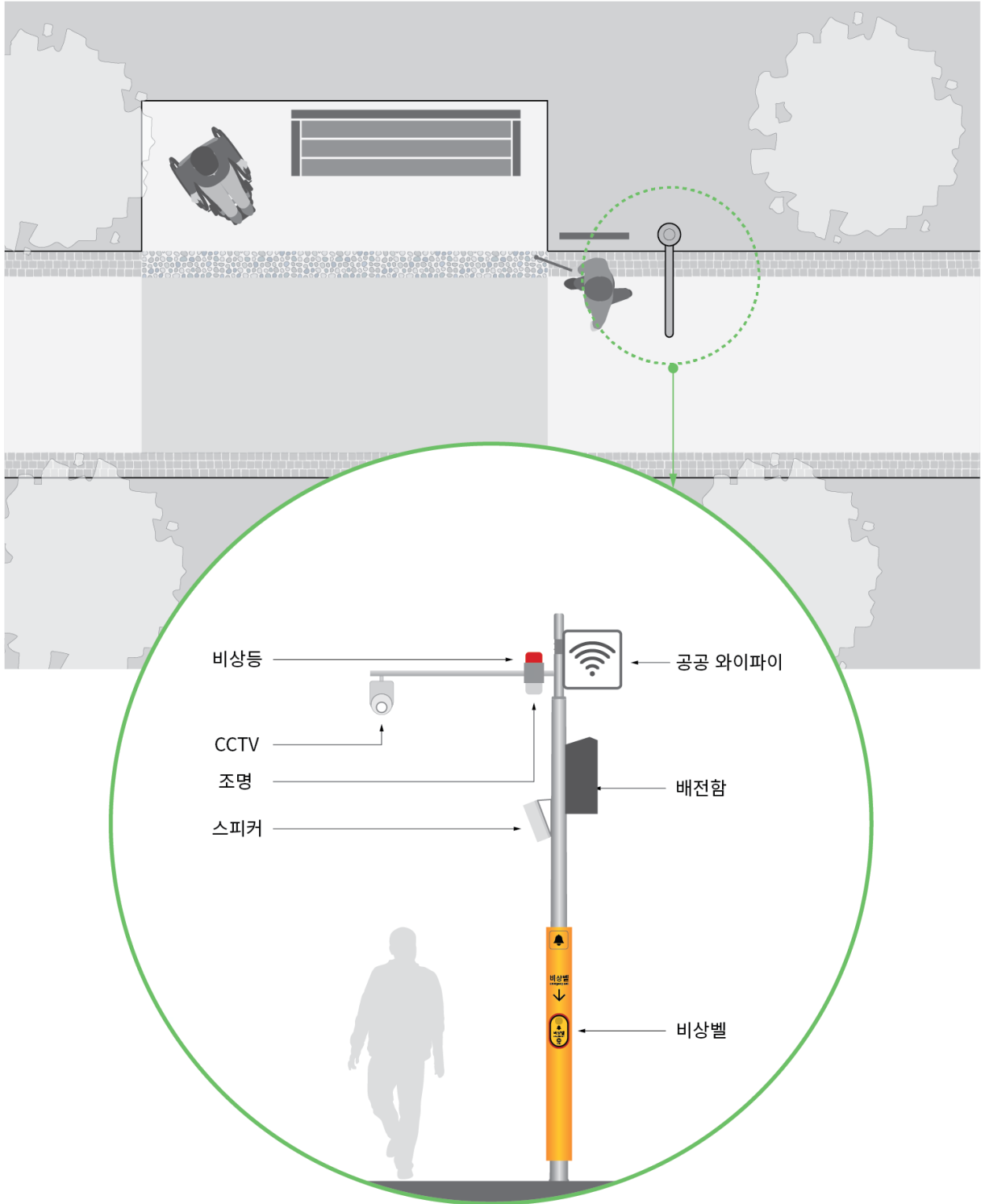
주요 보도 상에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계단을 함께 설치하여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계단과 경사로는 유효폭 1.2m 이상, 시작과 끝 지점 1.5m 이상의 수평 공간을 확보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며, 경사로 길이 30m 이내마다 1.5m 이상의 수평 참을 설치한다.  
(단, 높이 차이 1m 이상 등으로 지나치게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1/18 이하의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
- 계단과 경사로 양측에는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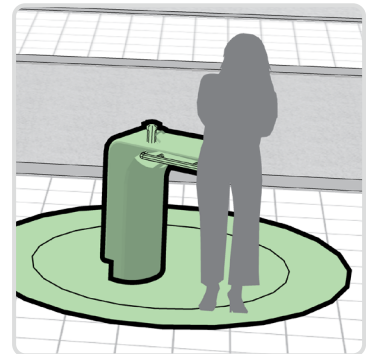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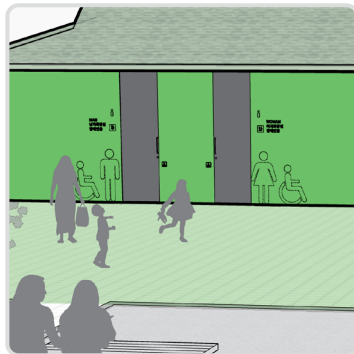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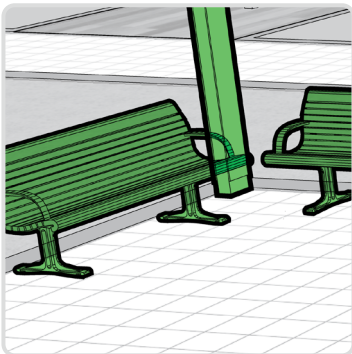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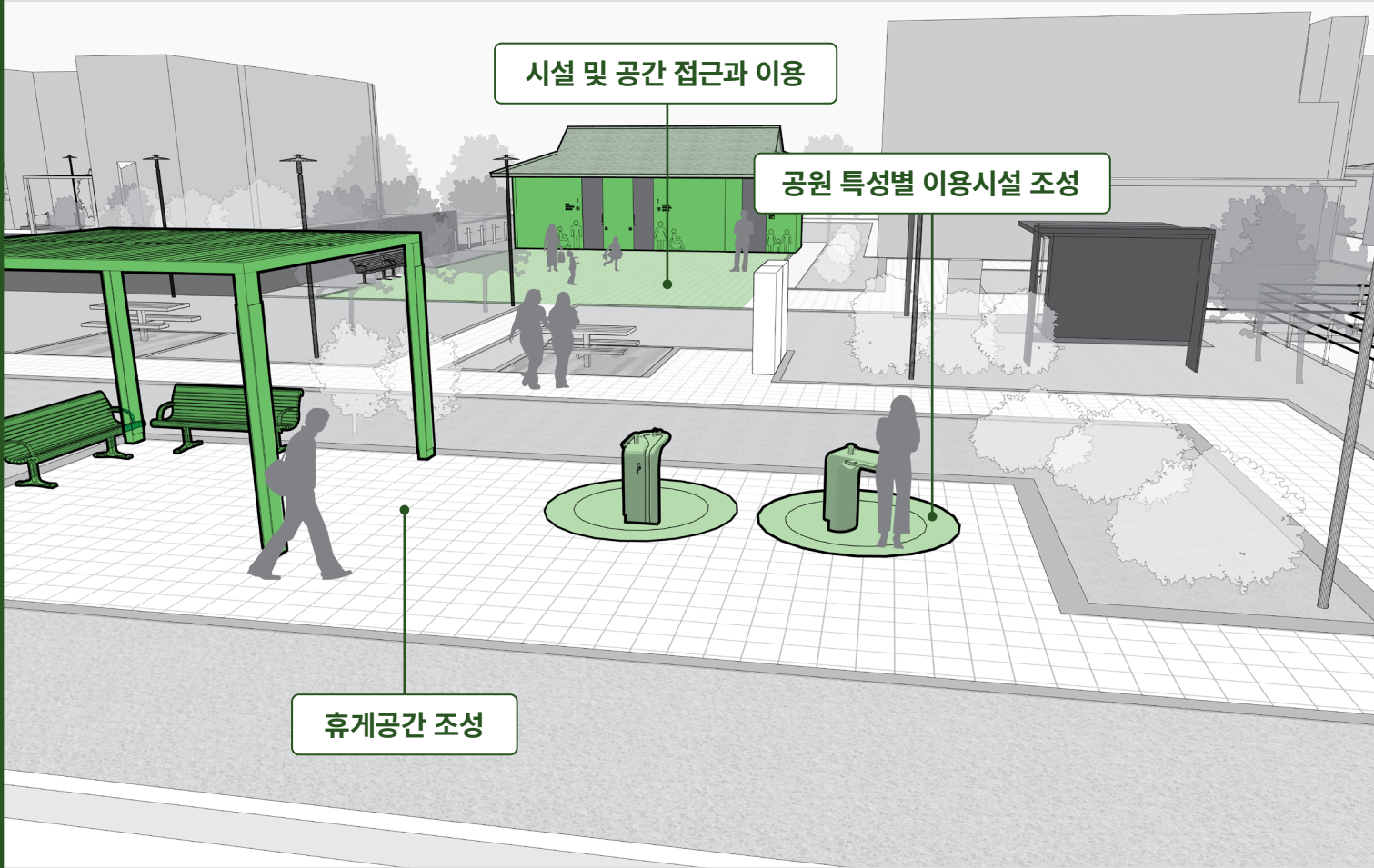
## 쾌적한 공간 조성

산책로 주변에는 식재, 휴게공간, 가로등,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시설물을 통합하여 최소로 설치하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 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 (2) 내부 이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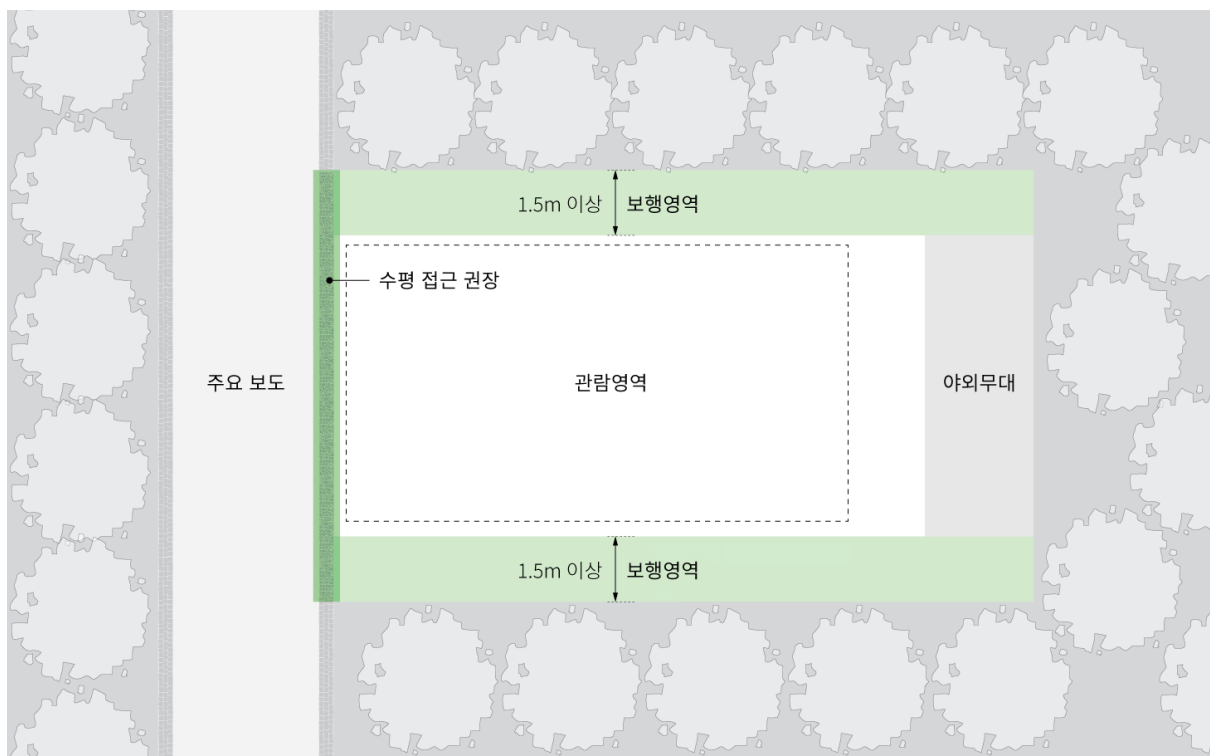


## 시설 및 공간 접근과 이용

공원 내 주요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의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접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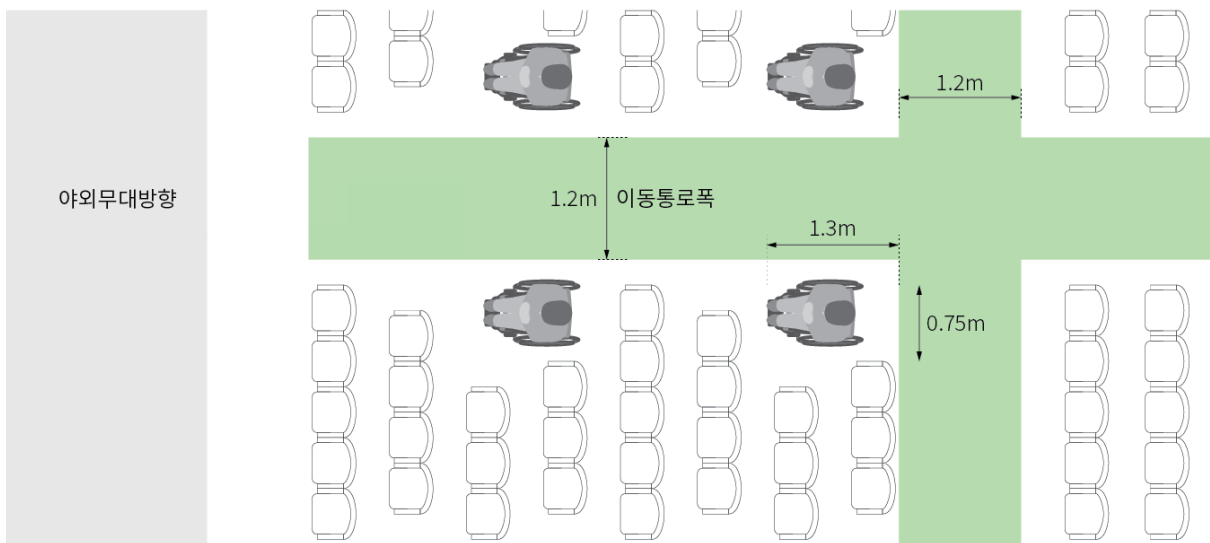
- 공원 내 주요시설이란 안내소 및 관리사무소, 판매시설, 위생시설, 운동·놀이 공간, 정원 등을 말한다.
- 주요시설은 주요 보도(산책로)로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안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유도 및 방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출입구(문)는 주요 보도에서 1/24 이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고,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 0.6m 이상과 출입구(문)의 전후면 수평 활동공간 1.2m 이상을 확보한다. 이때,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공간으로 확보한다.
- 구릉지 등 지형과 같은 물리적 제약 상황으로 불가피한 높이 차이 발생 시에는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승강기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구역 내 조망 지점, 놀이운동 공간, 야외 무대, 정원 등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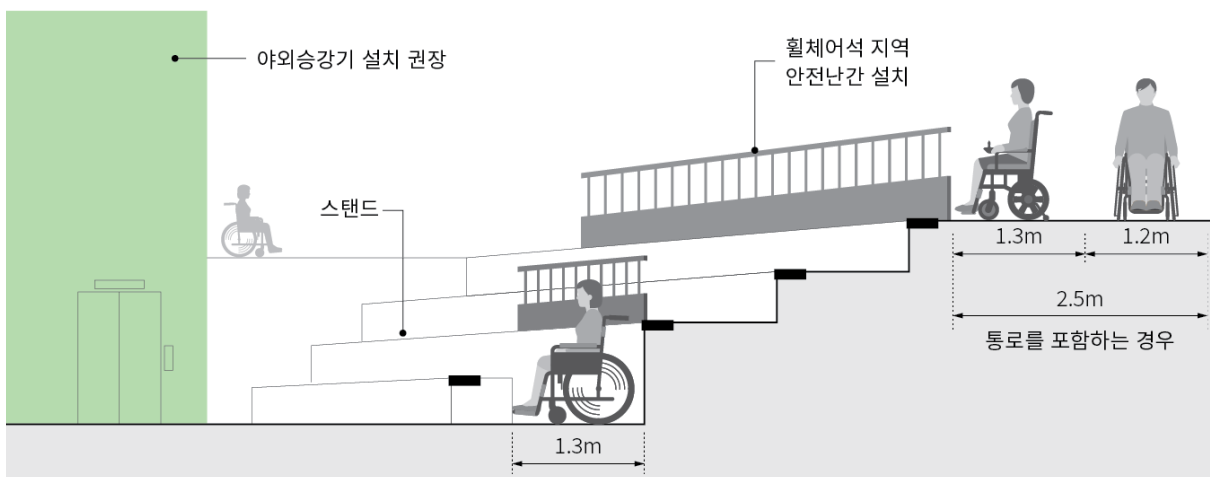
## 이용 기준

-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한 적절한 내부 활동공간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이용시설은 보호자 등 동반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어린이 이용 등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시설 인근에는 휴게의자 및 그늘 등의 휴게·감시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 시설 이용 후 세면·세족·샤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한 간이 세면·세족·샤워 시설을 설치한다.
- 이용시설은 위험 지역(교통시설, 잠재적 위험 지역 등)에서 이격 혹은 안전시설(난간 등)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평지형 공연장



경사형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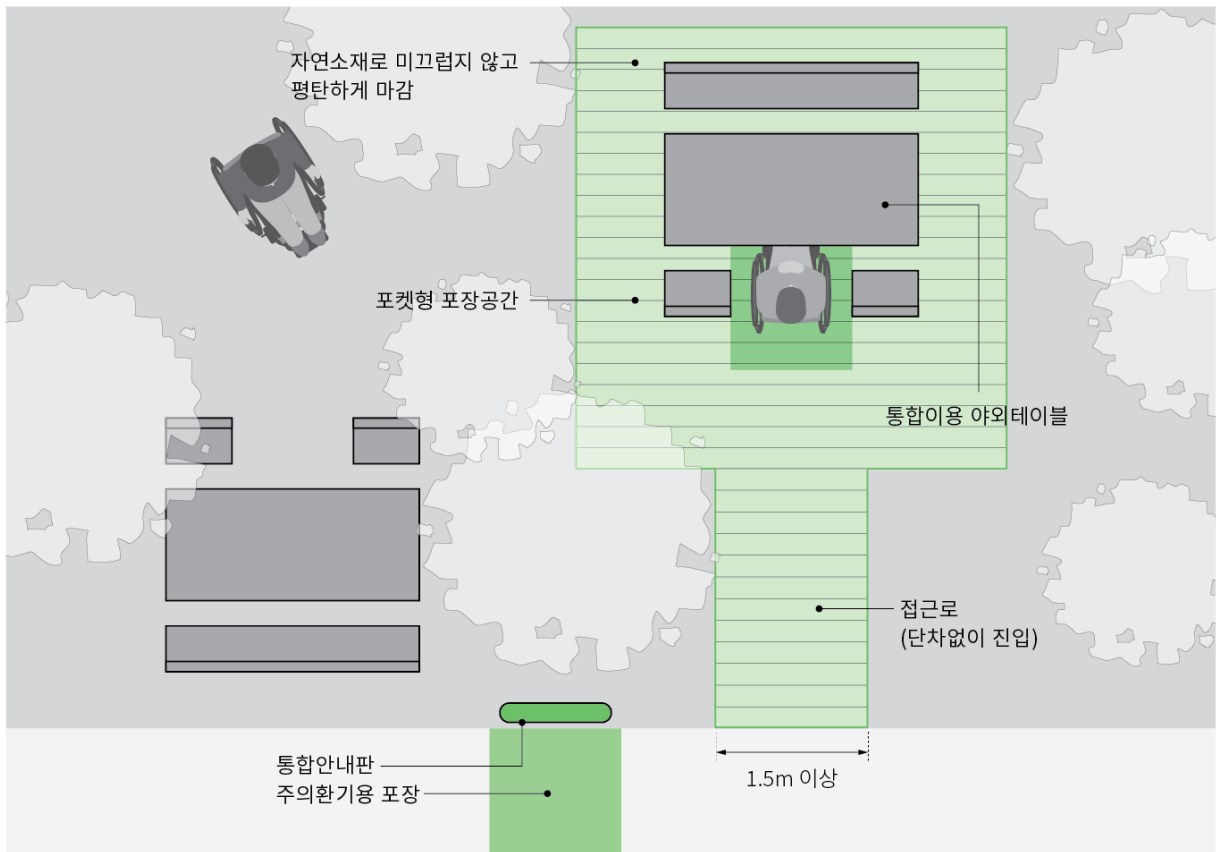
## 휴게공간 조성

공원 내 휴게공간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나 유아차 사용자 등 누구나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공간 조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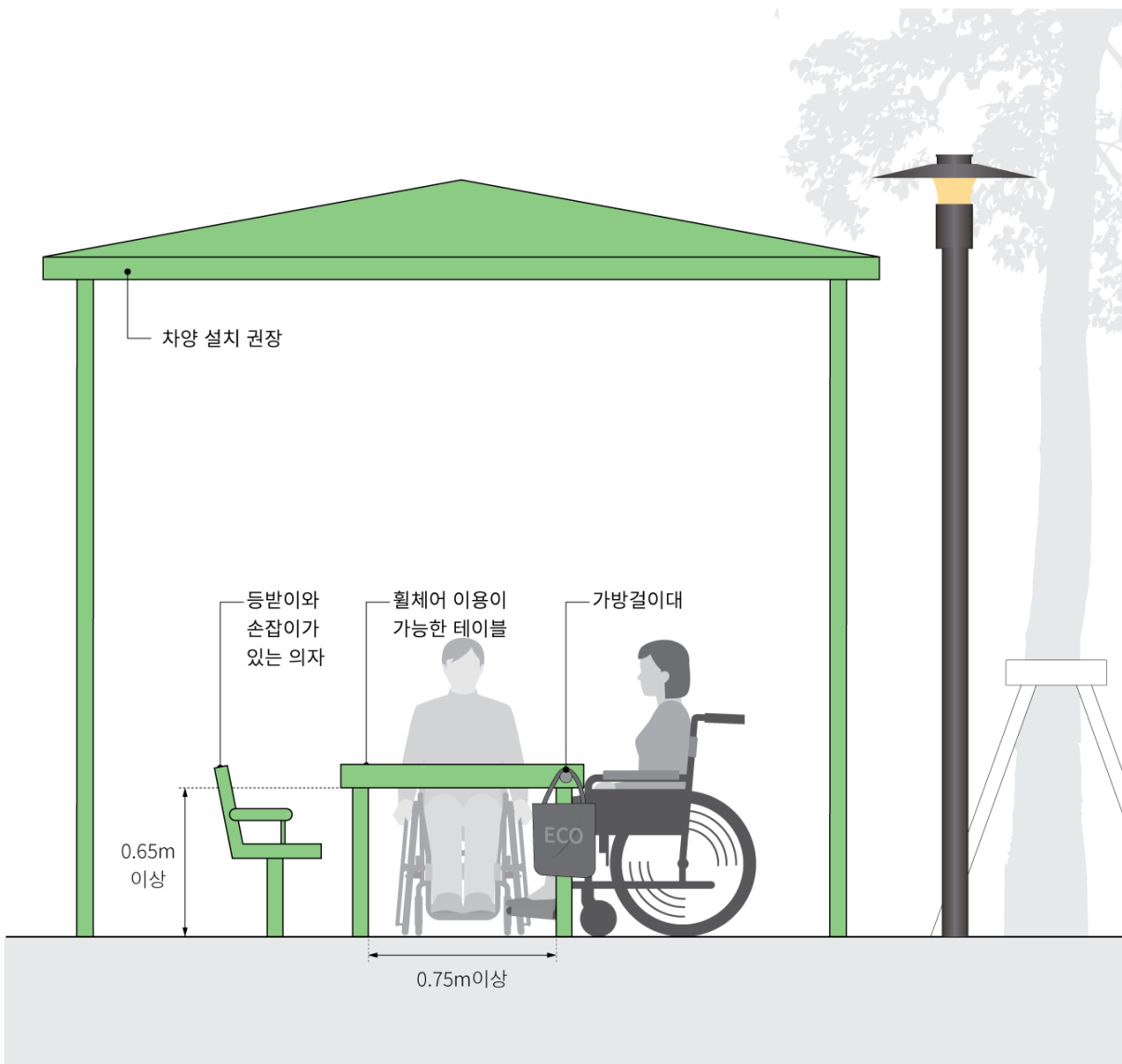
- 휴게공간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단차 없이 수평 접근이 가능하게 설치하며, 보행로에 인접 설치할 경우에는 포켓형으로 설치한다.
- 주 출입공간, 주요시설 전면부 등 보행자가 쉽게 접근하여 머무는 일이 잦은 장소는 광장화하도록 권장한다.
- 휴게의자 설치 공간 외에 모두가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유아차 사용자의 활동공간 1.5m 이상을 확보한다.
- 휴게공간은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키 낮은 수목을 식재하여 안정감을 주고, 접근과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공원·광장 휴게시설의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46~59 참조



### 휴게의자 설치 기준

-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휴게의자는 전체 설치하는 의자 중 1/2 이상을 설치하며,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휴게공간 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1인, 가족 등 다양한 이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휴게공간 상부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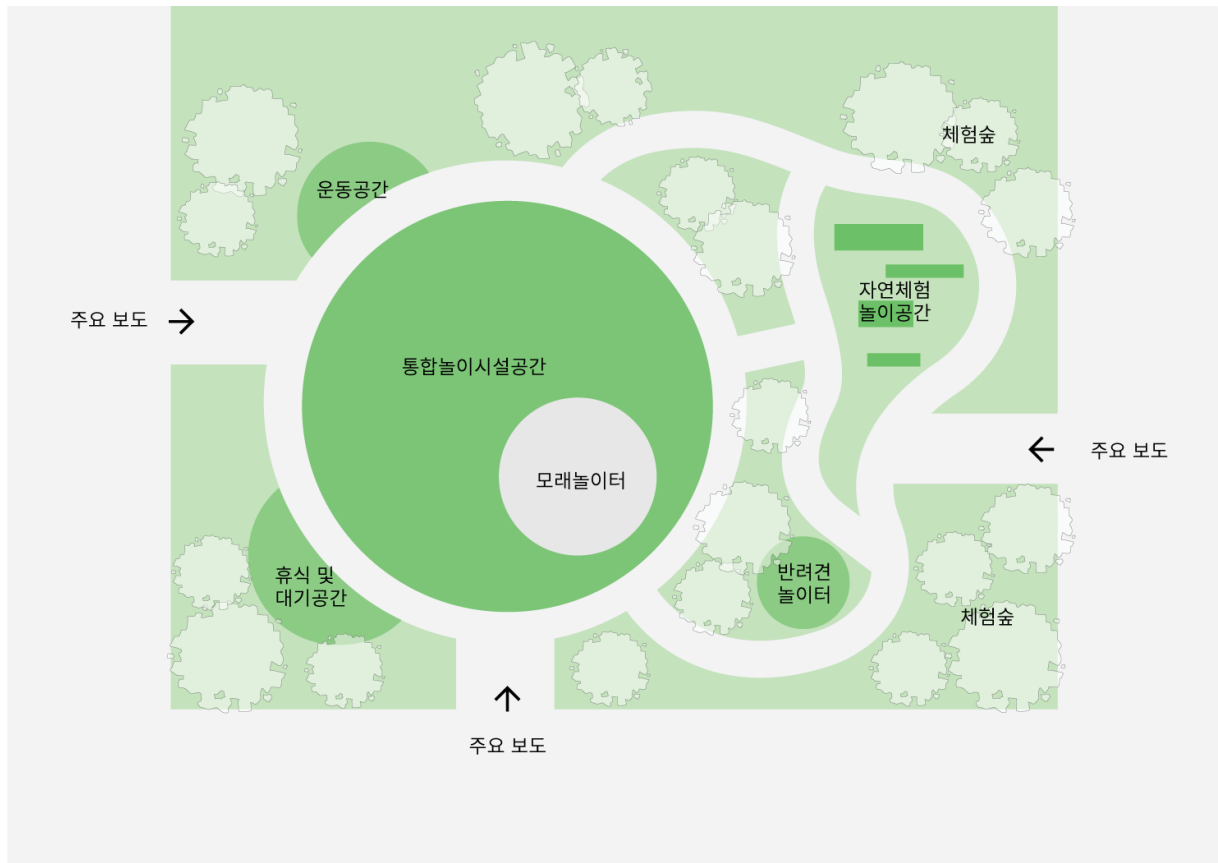


## 공원 특성별 이용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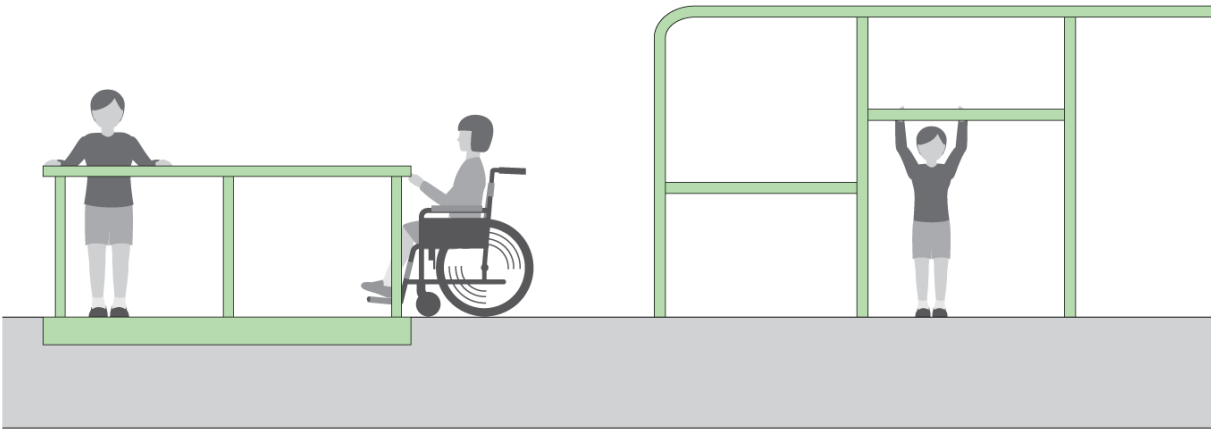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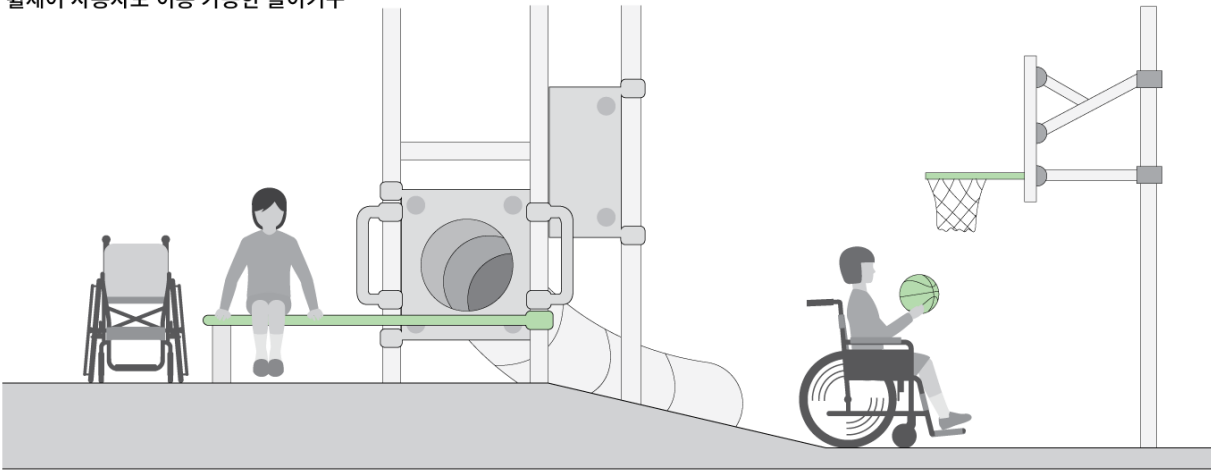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정원,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노인, 어린이 등 공원의 주 사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한다.
- 각 시설 등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한 접근로, 출입공간 및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공원 특성에 따른 시설 설치 예는 아래와 같다.
  -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 놀이시설 등의 놀이시설 설치
  - 사·청각 장애인 등이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치유 및 감각 정원 등의 정원시설 설치
  - 반려견 동반자 등을 고려한 애완견 놀이시설 및 산책 공간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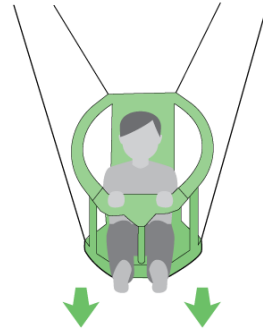
\* 공원·광장 놀이터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52-53 참조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



다양한 유형의 그네 놀이기구





## 위생 공간

(1)	설치 위치	145
(2)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	147
(3)	모두를 위한 화장실	149
(4)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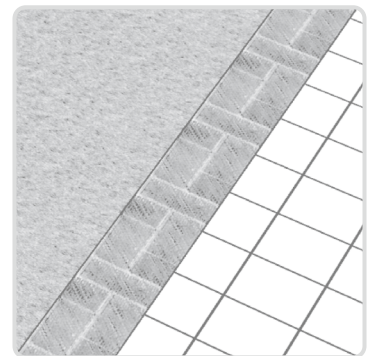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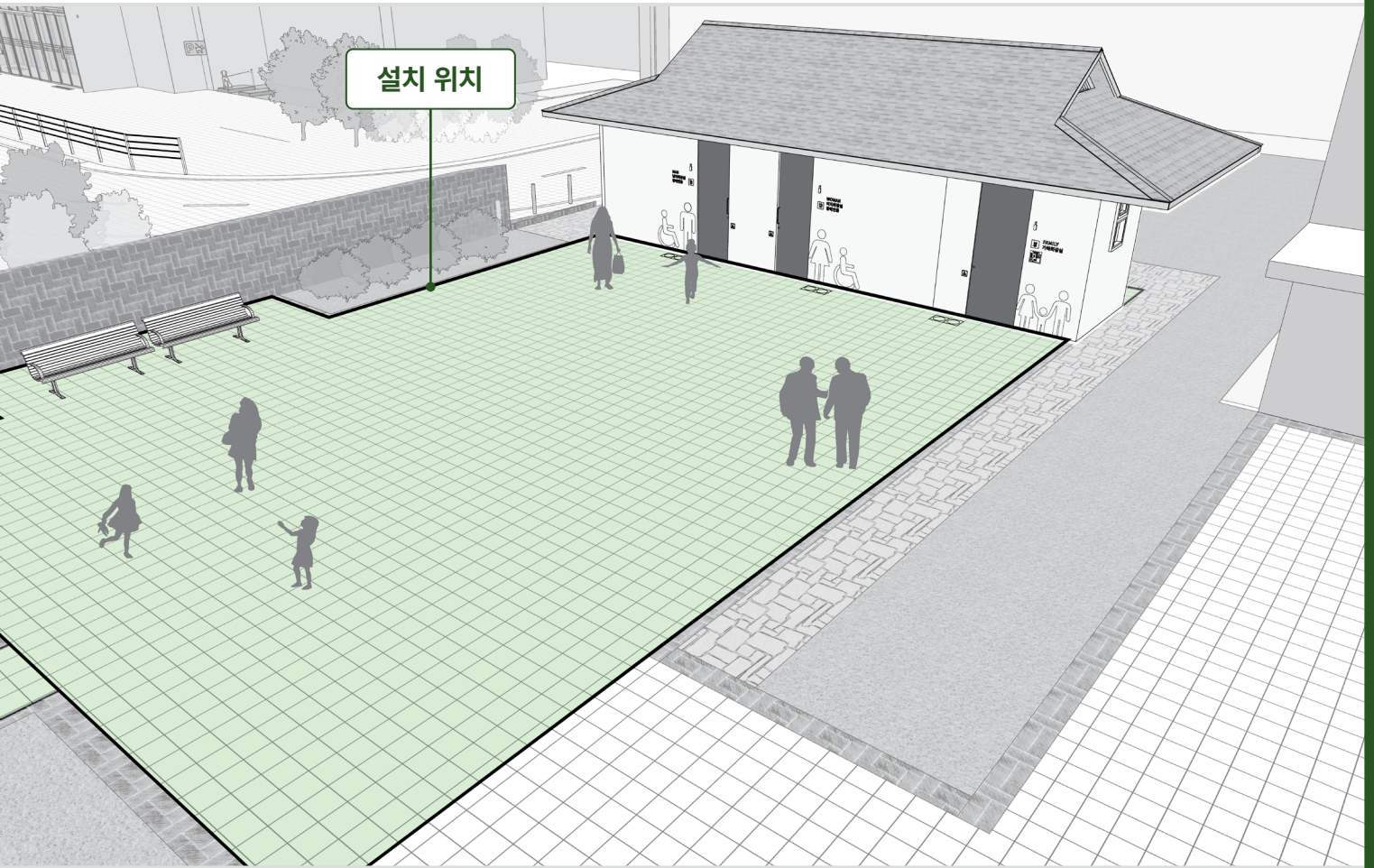
### 계획원칙

공원에는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위생 공간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용안내가 필요하다.





# (1) 설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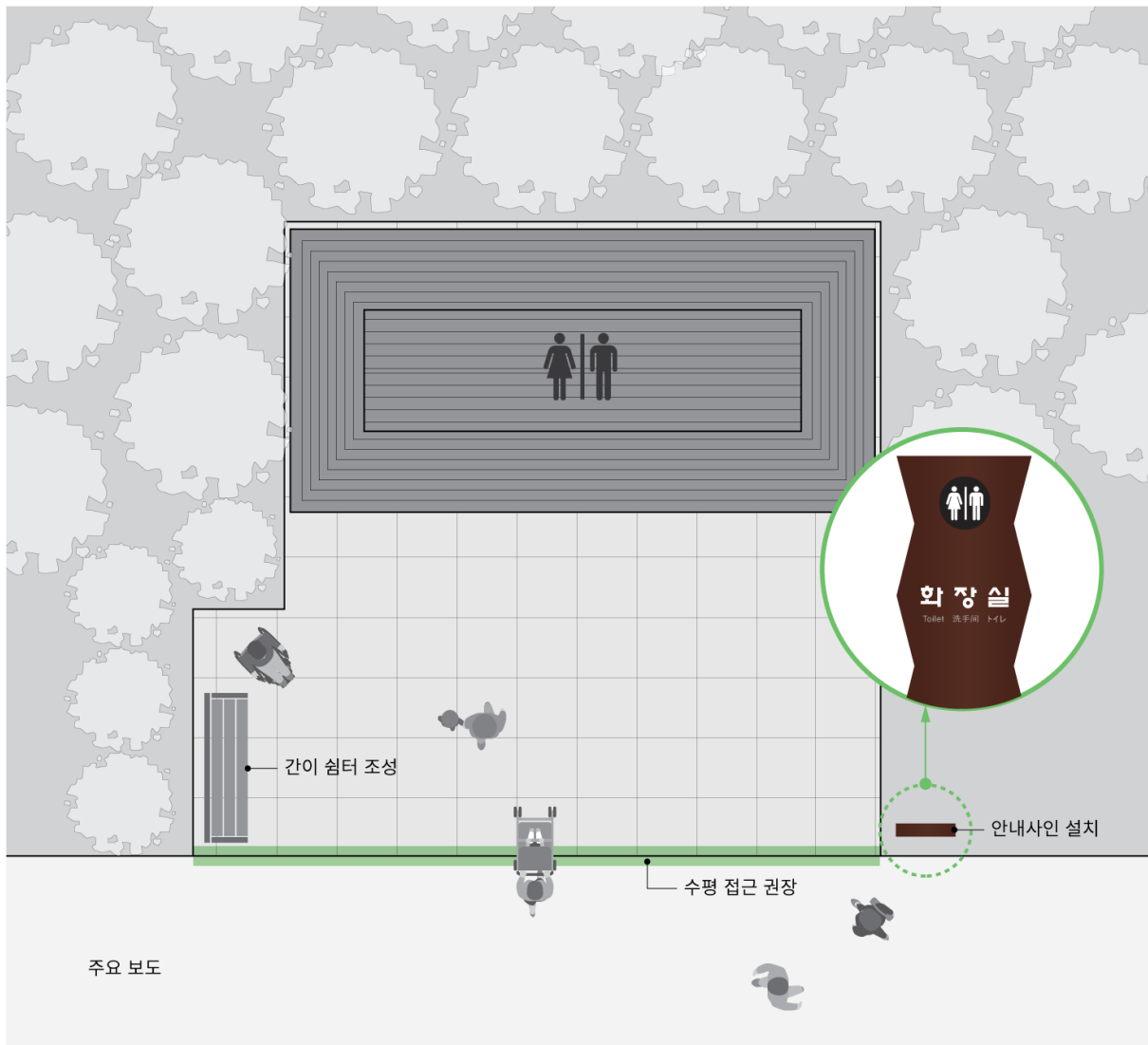


## 설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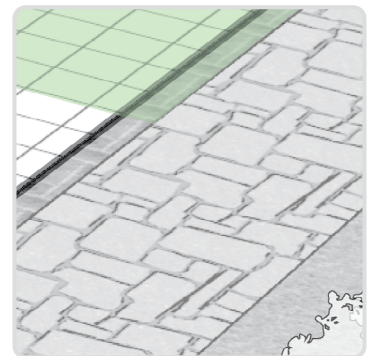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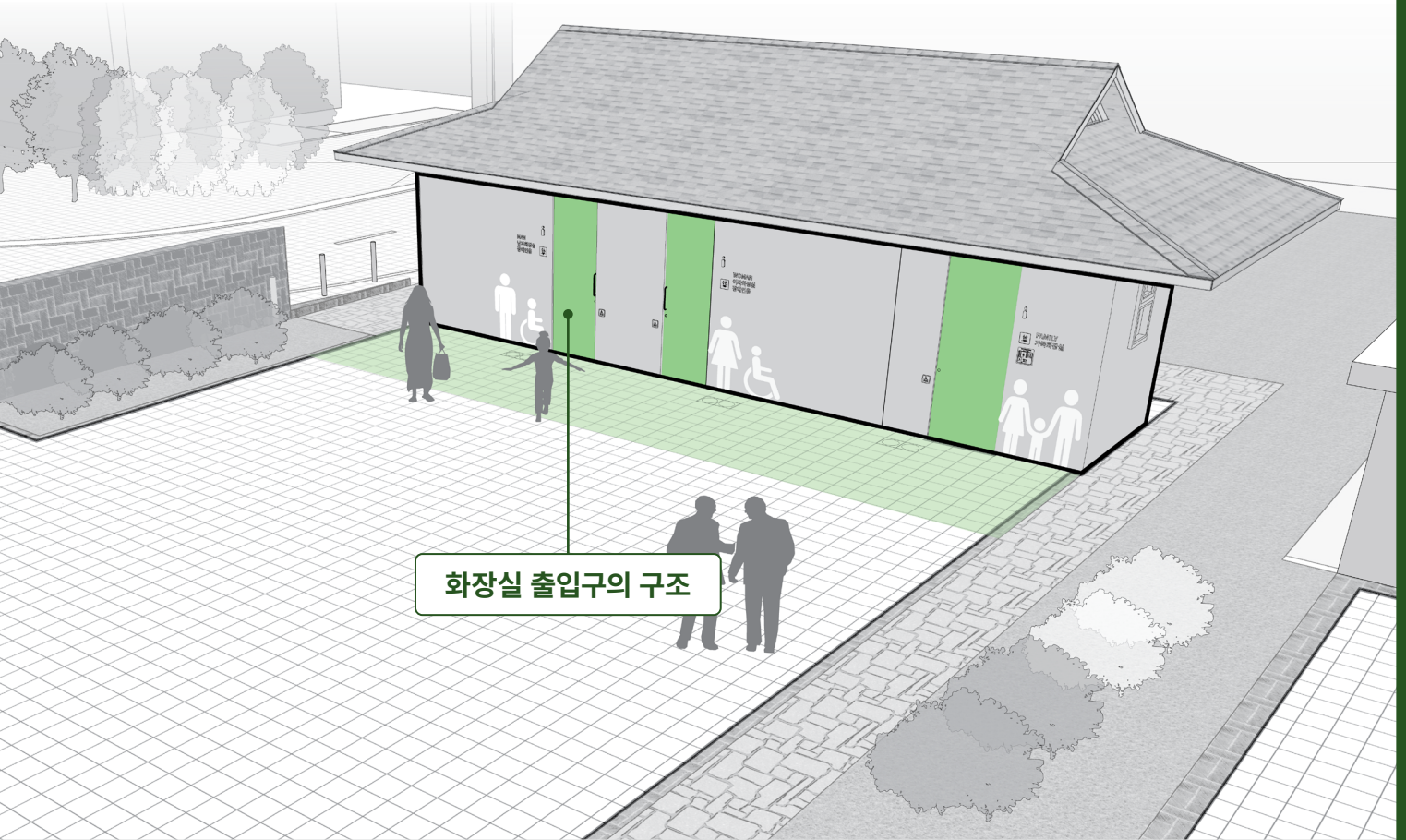
공원 내 화장실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

- 접근 가능한 주요 보도와 연결되도록 설치하고, 공원 주출입구, 기타 주요 교차점에 방향·위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공원·광장 화장실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63~6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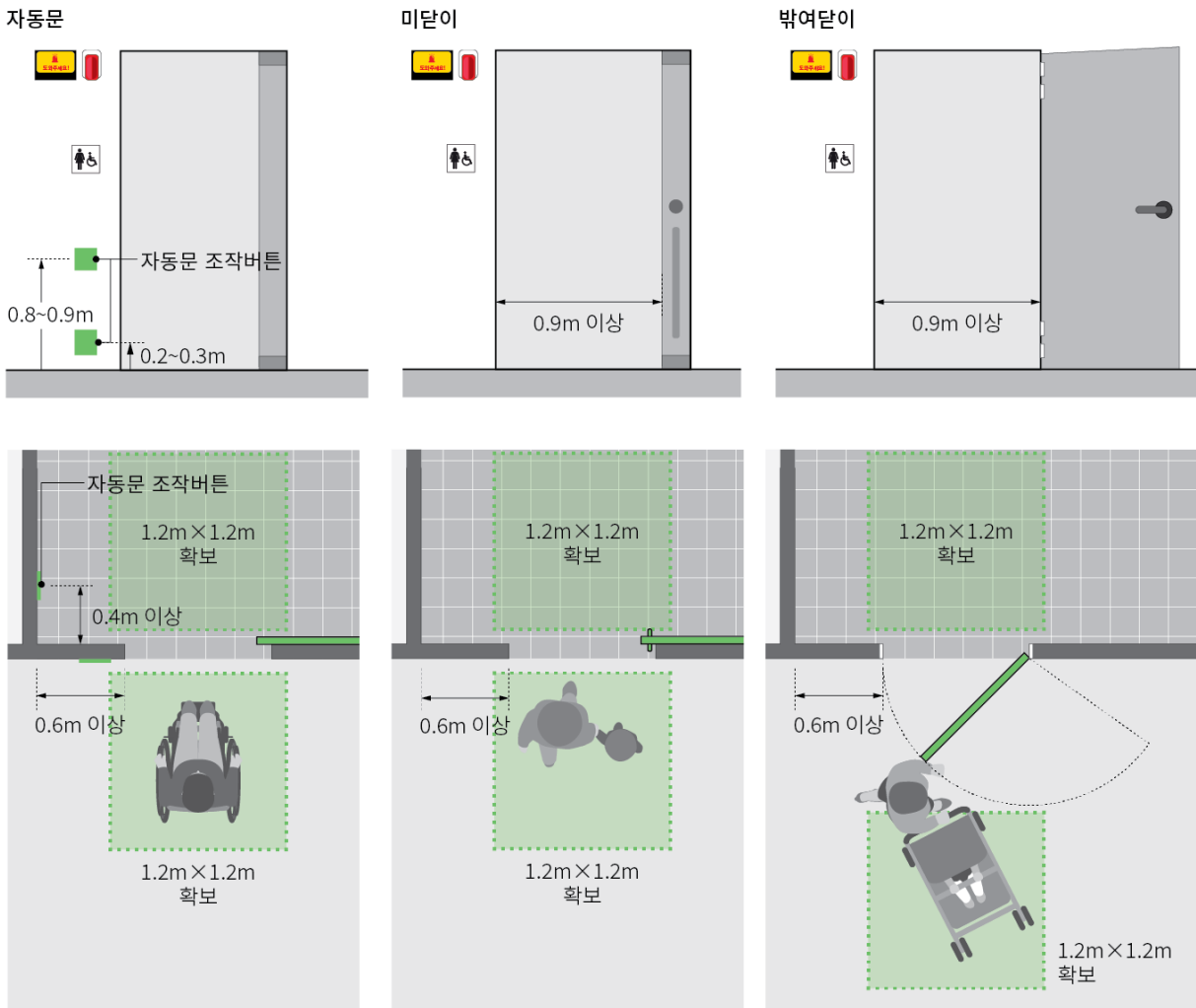
## (2)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



##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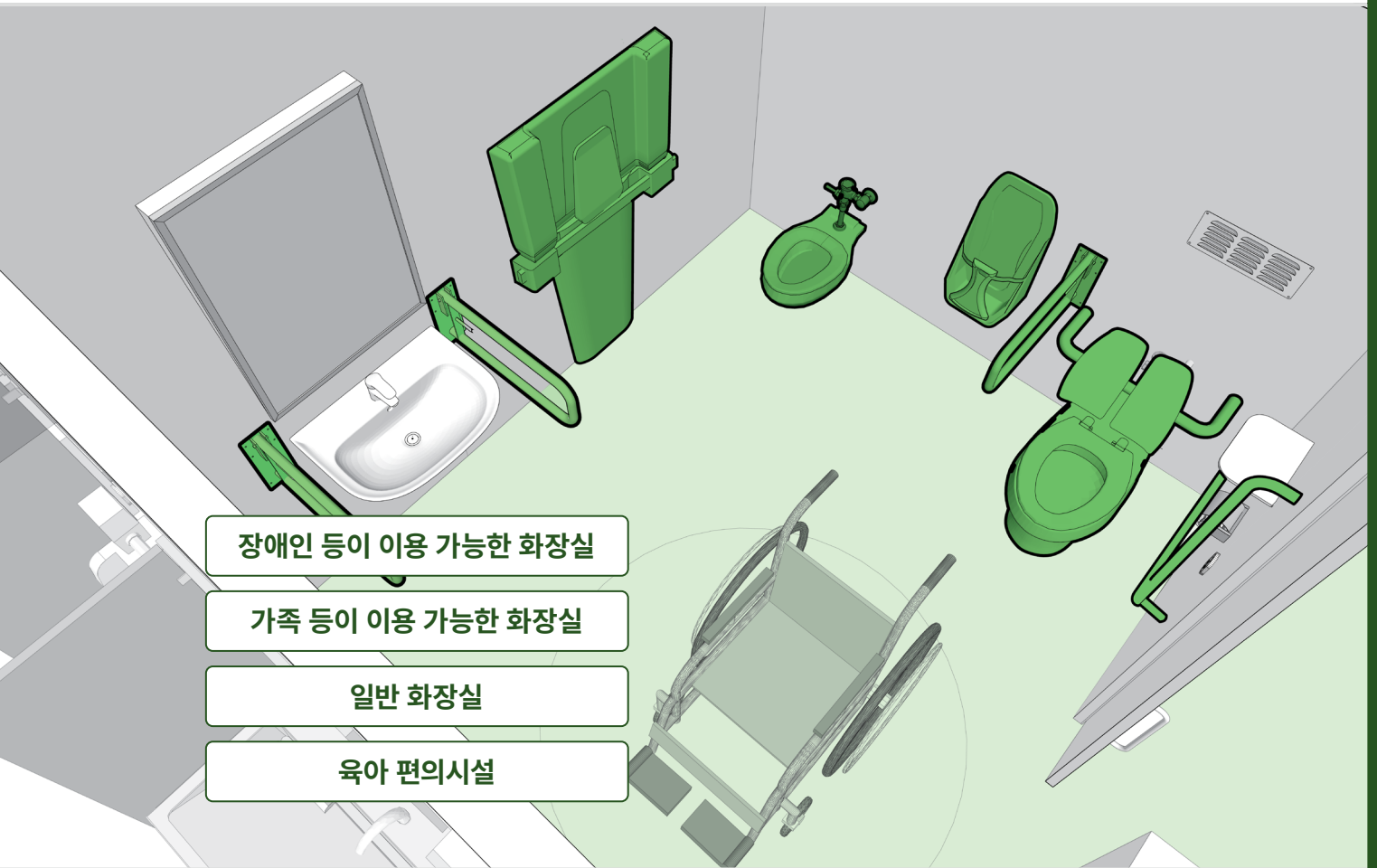
공원 내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며, 충분한 출입 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구는 주요 보도에서 1/24 이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하며, 출입문을 열고 닫는데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한다. (단, 출입구만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공간 기준은 예외로 한다.)
- 출입구(문)의 전후면 수평 활동공간은 1.2m 이상을 확보한다. 이때 수평 활동공간은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공간을 말한다.





### (3) 모두를 위한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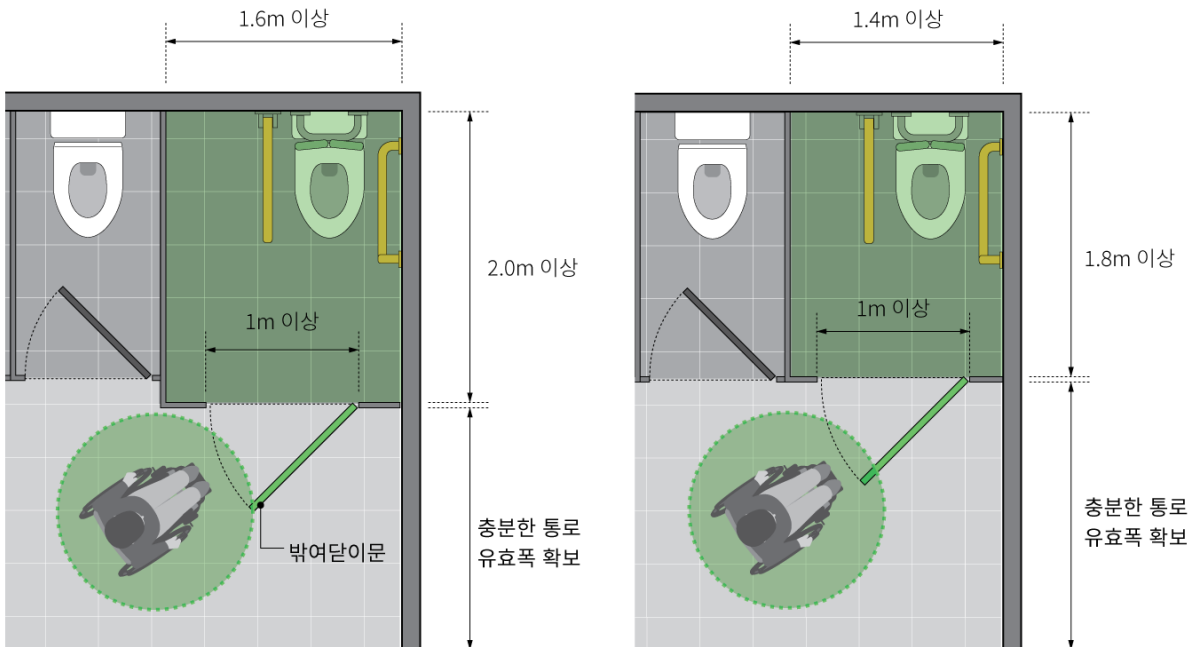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

공원 내 주요 경로에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 시 내부 유효 크기 2m × 2.1m 이상을 확보하며,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 할 때에는 1.6m × 2.0m 이상을 확보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하고, 내부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보조 손잡이, 대변기 등받이, 세정장치, 비상호출 장치 등)를 설치
  - 내부에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 설치 및 적절한 수신반 설치
  - 장애인 이용 가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시설 설치
  -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성능을 유지

일반화장실 내 설치 시  
2019.9.27. 이후 준공 시

2019.9.27. 이전 준공 시





---

## 가족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

공원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 외에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별도로 1개소 이상 공원의 주 이용시설 인근 화장실에 설치한다.

---

-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화장실 내부 유효 크기 2m × 2.1m 이상을 확보
  - 내부에는 휠체어, 유아차 등의 활동공간을 확보
  - 남녀 일반 화장실과 다른 별도의 출입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 노인,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시설 설치(간이 샤워, 기저귀 교환대, 유아시트, 보조 손잡이, 어린이용 위생설비 등)
  - 가족 이용 등 다목적에 대한 적절한 안내시설 설치
  -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성능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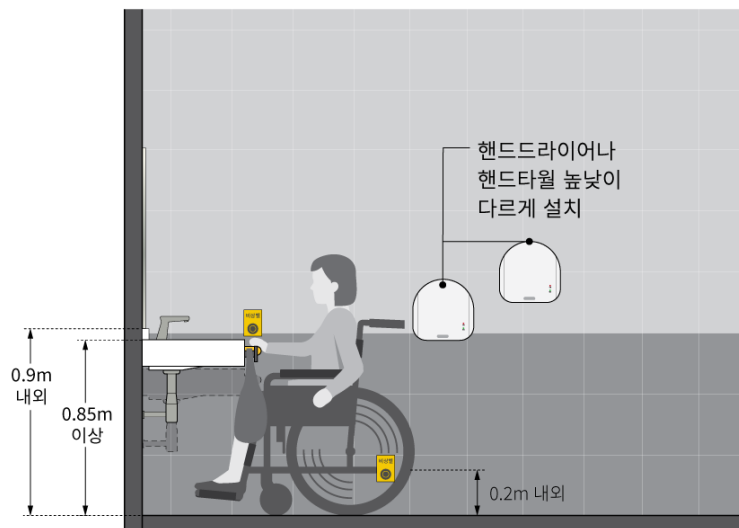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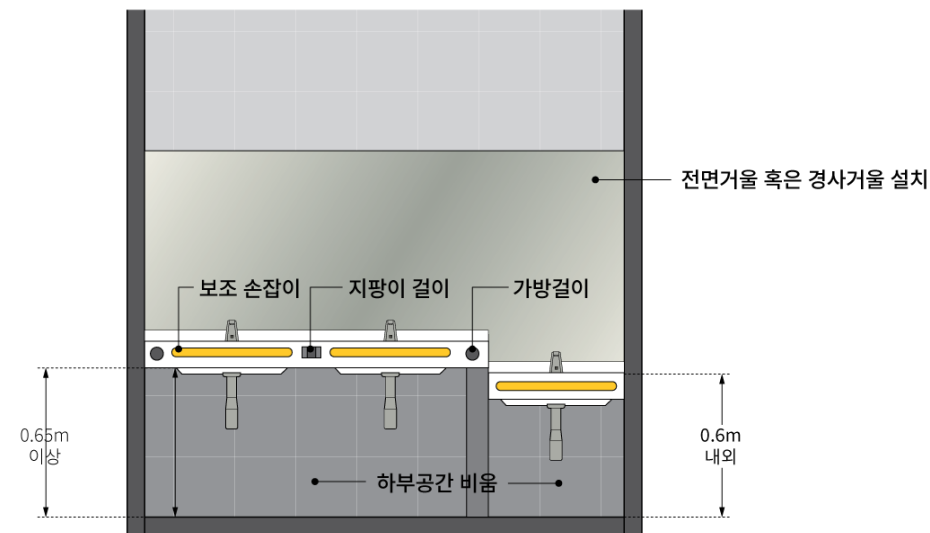
##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

일반 화장실은 시각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및 영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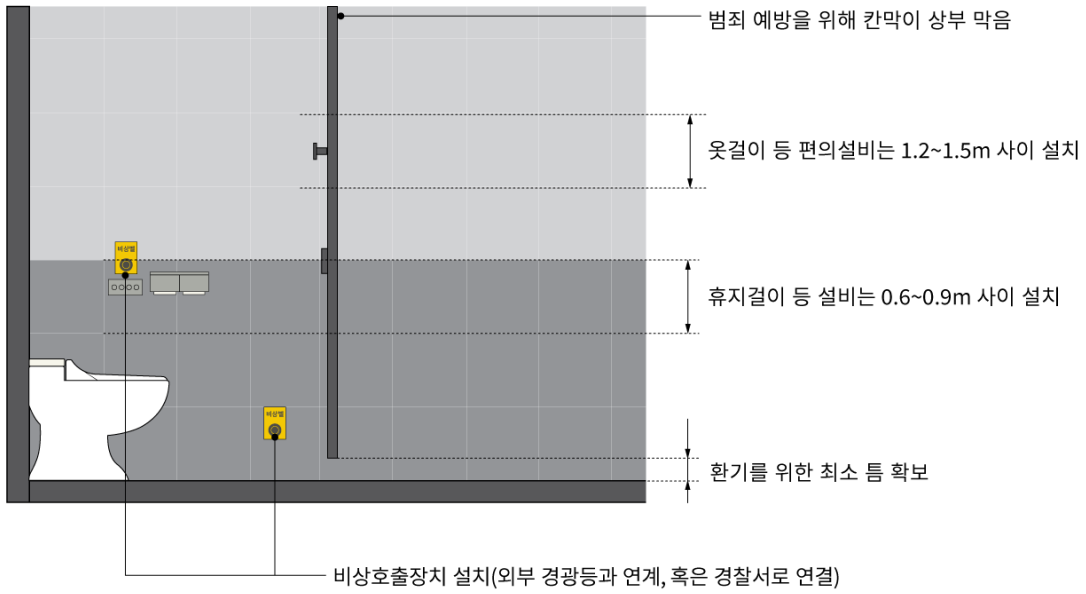
### 화장실의 구조

-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및 지팡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소변기, 세면대, 보조 손잡이 등)를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도 함께 이용 가능한 세면대로 설치한다.
- 남녀 구분하여 설치 및 비상호출 장치,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 일반화장실 세면대의 구조



일반화장실 대변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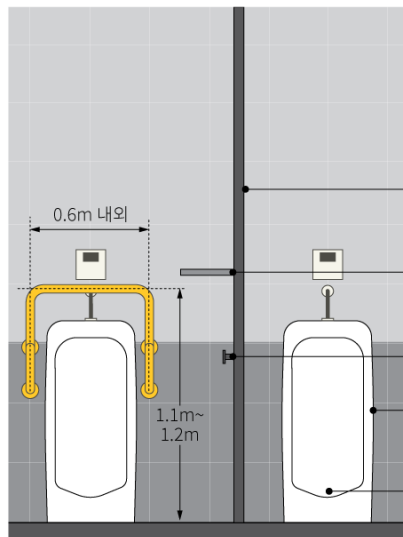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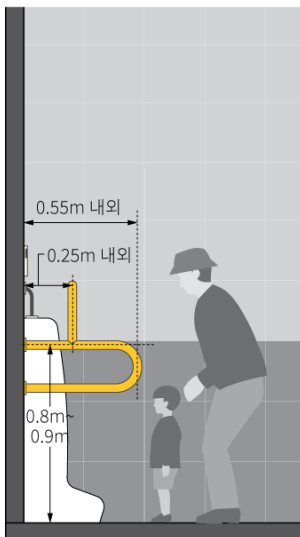
잠금장치 및 사용중 안내



사용중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주어야 하며, 색상 및 문자(다국어 포함)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조명으로 나타낼때도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여, 사용중일 때는 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유도하며, 픽토그램 및 문자(다국어 포함)를 병행 설치

일반화장실 소변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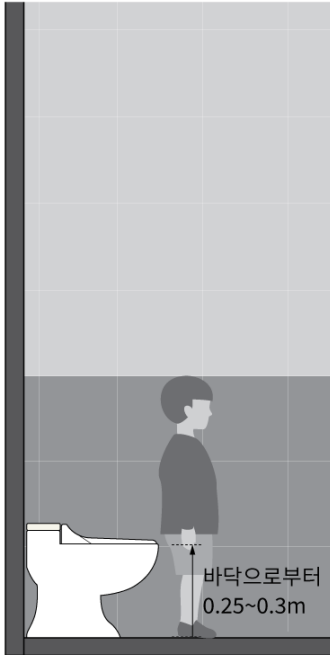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칸막이 설치
- 핸드폰 등을 놓을 수 있는 간이선반 설치
- 우산 및 가방걸이 설치
- 도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배경과 명도 3이상 차이 권장
- 어린 아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기 하단부가 낮은 바닥부착형 소변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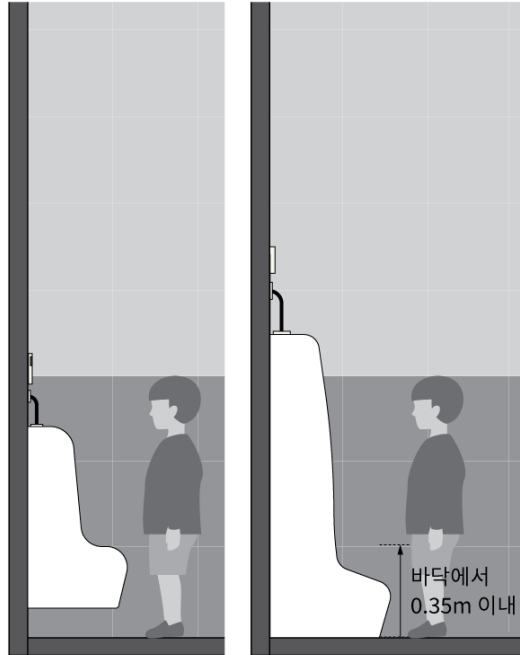
### 어린이 등 영유아 배려시설 설치 기준

- 어린이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세면대와 소변기를 설치한다. 어린이용 소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소변기의 하단 높이를 바닥에서 0.35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어린이 등을 배려하여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거울 포함)를 남녀 각각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다.
- 위의 시설물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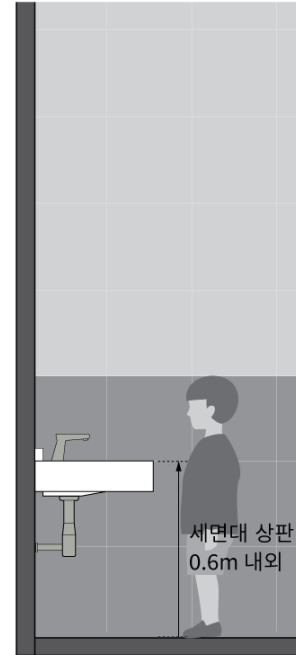
어린이 대변기의 구조



어린이 소변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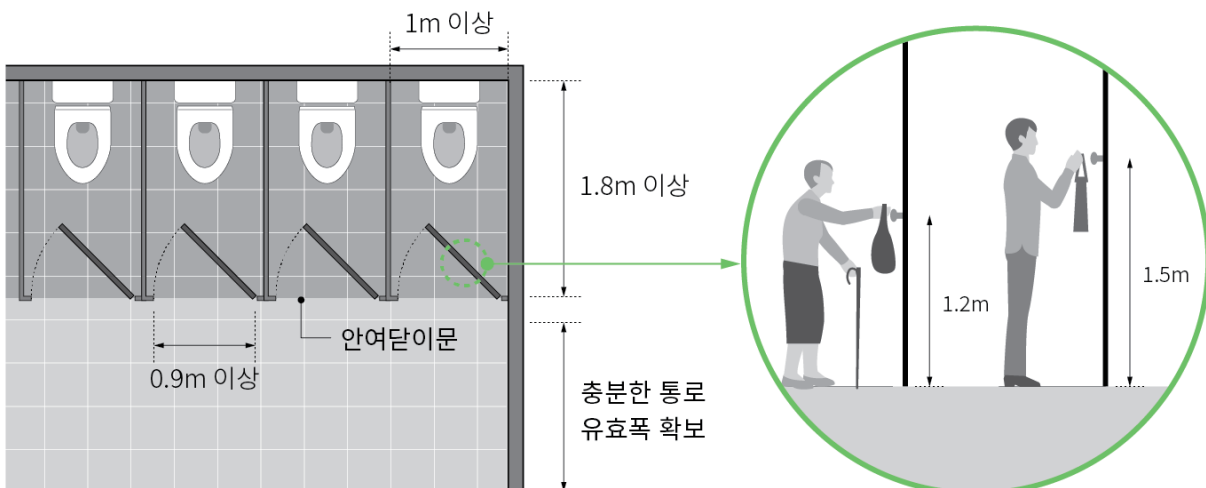


어린이 세면대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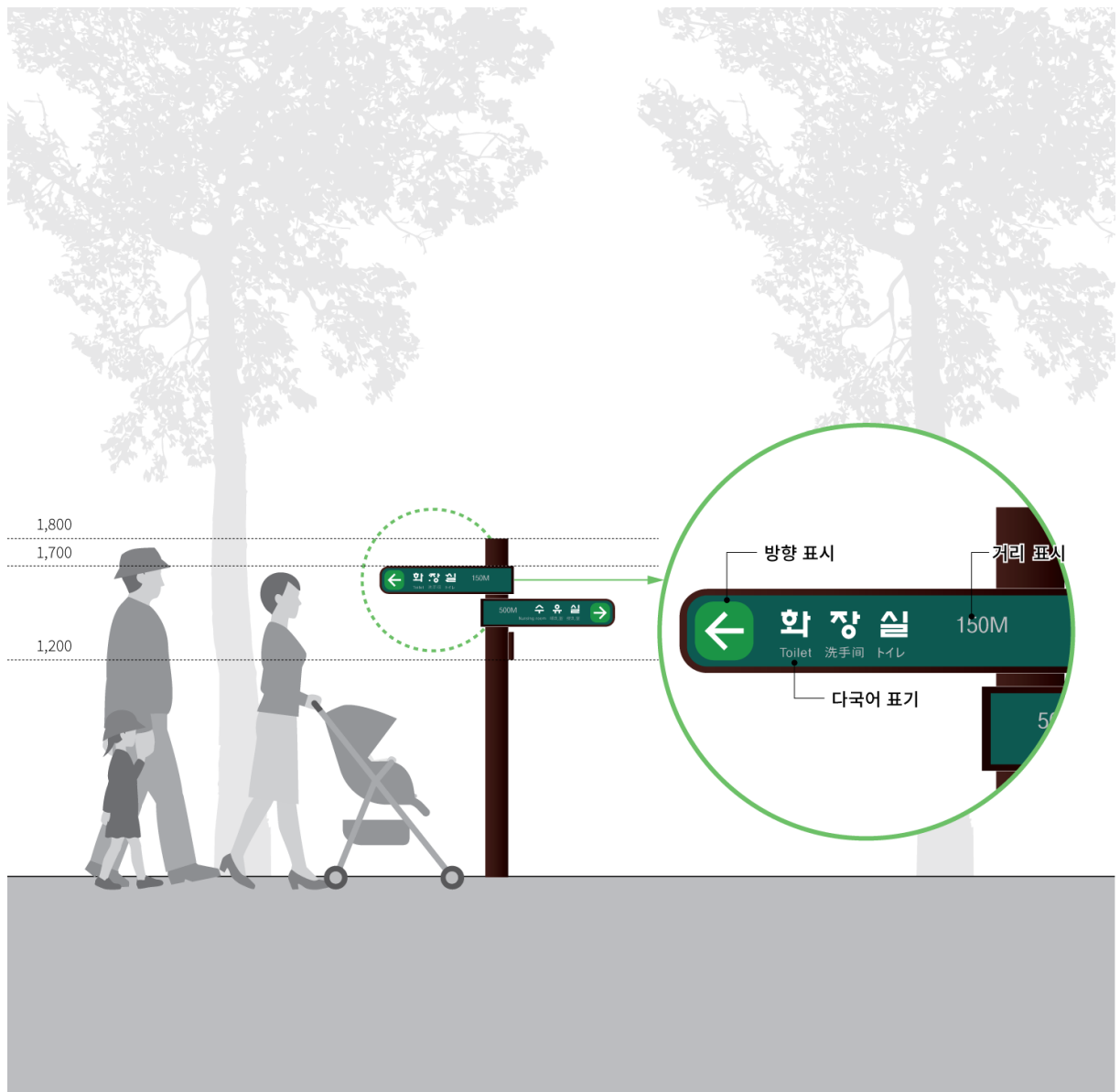
### 다기능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

- 대변기 부스 면적 폭 1m 이상, 깊이 1.8m 이상, 출입문 폭 0.9m 이상을 확보한다.
- 대변기 부스 내 보조 손잡이, 간이 선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그 외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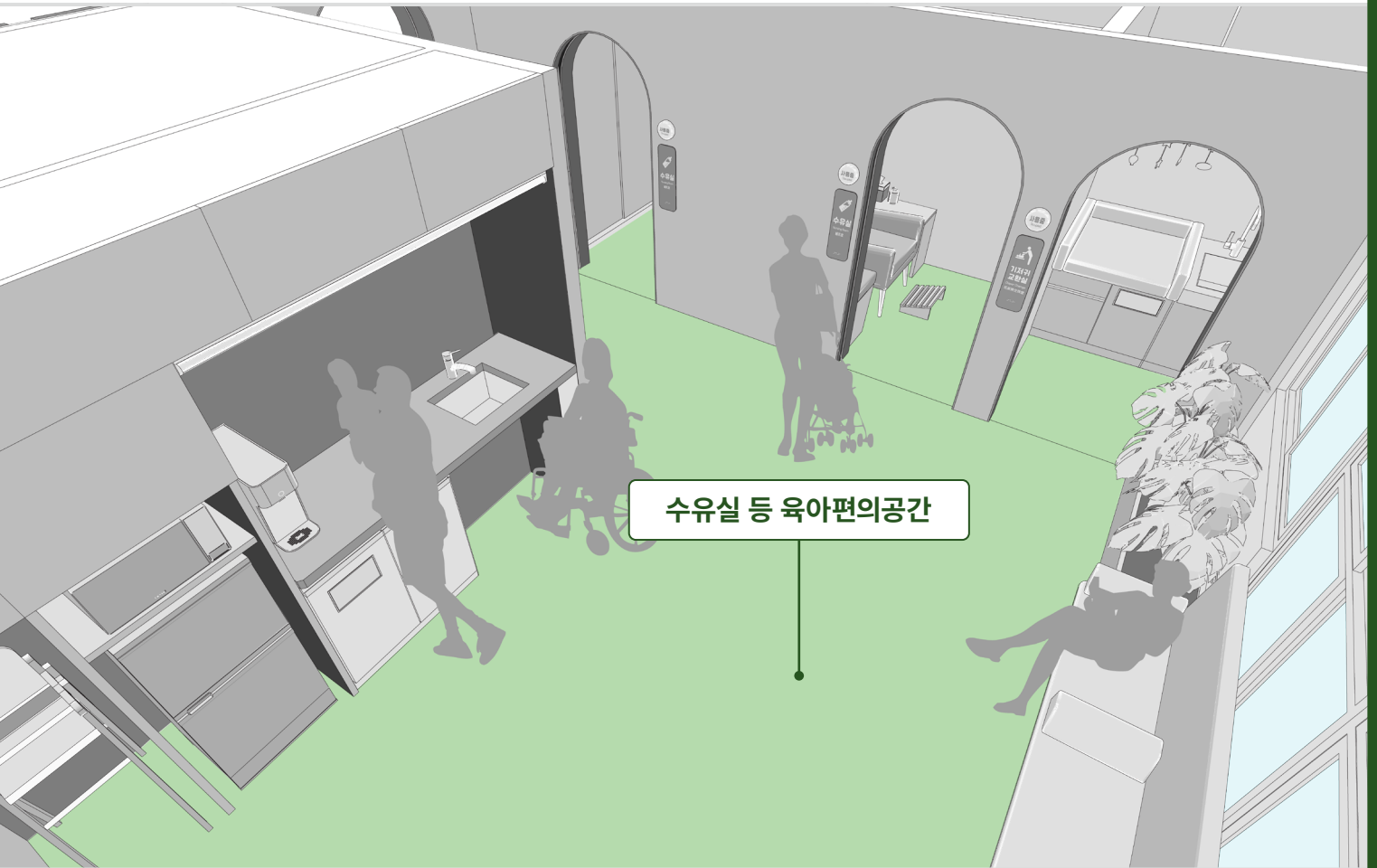
## 인근 화장실 안내

- 공원 내 위생시설이 미설치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이용 가능한 위생시설에 대한 안내시설을 공원 입구 종합안내시설에 설치한다.
- 해당 내용에 대해 점자 또는 음성 등으로 시각장애이용 안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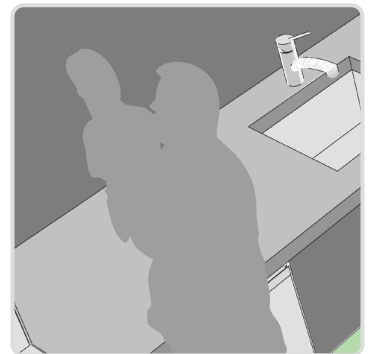




## (4)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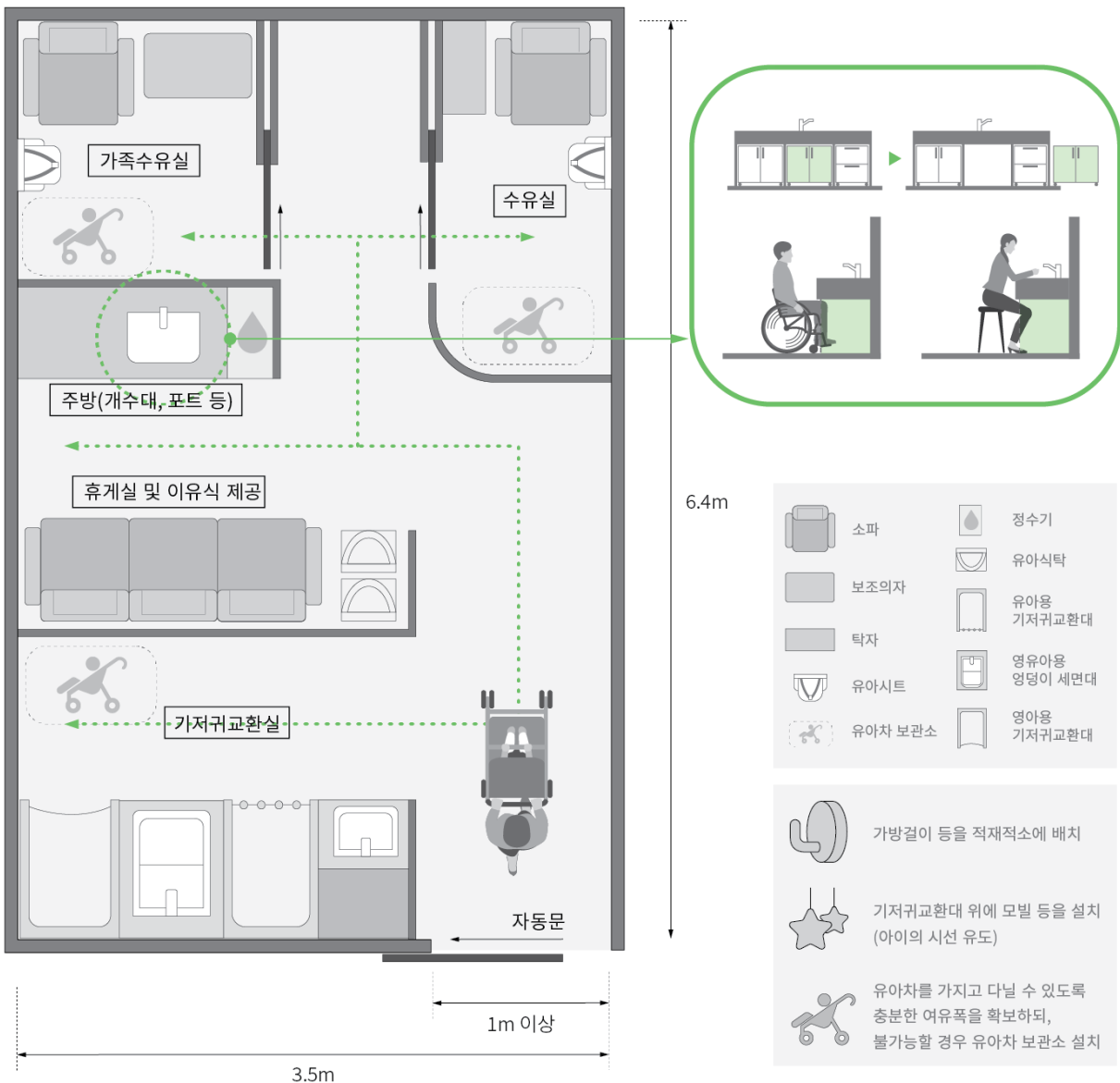


##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공원의 경우,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수유실 등의 육아 편의공간을 설치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 및 이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아차,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고 통과 가능한 출입문 설치
  - 내부에 1대 이상의 유아차 및 휠체어 활동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 출입문 주변 유아차 대기공간 확보 및 수유실에 대한 적절한 유도안내시설 설치
  - 수유 공간은 칸막이로 구분하여 프라이버시 보장과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
  - 의자, 소파, 기저귀 교환대, 아기침대, 유아시트, 세면대(온수 기능 확보), 휴지통 등 구비
  -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성능을 유지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예시







## 안전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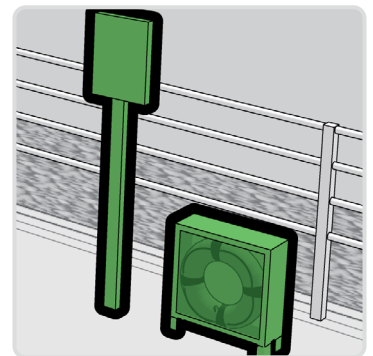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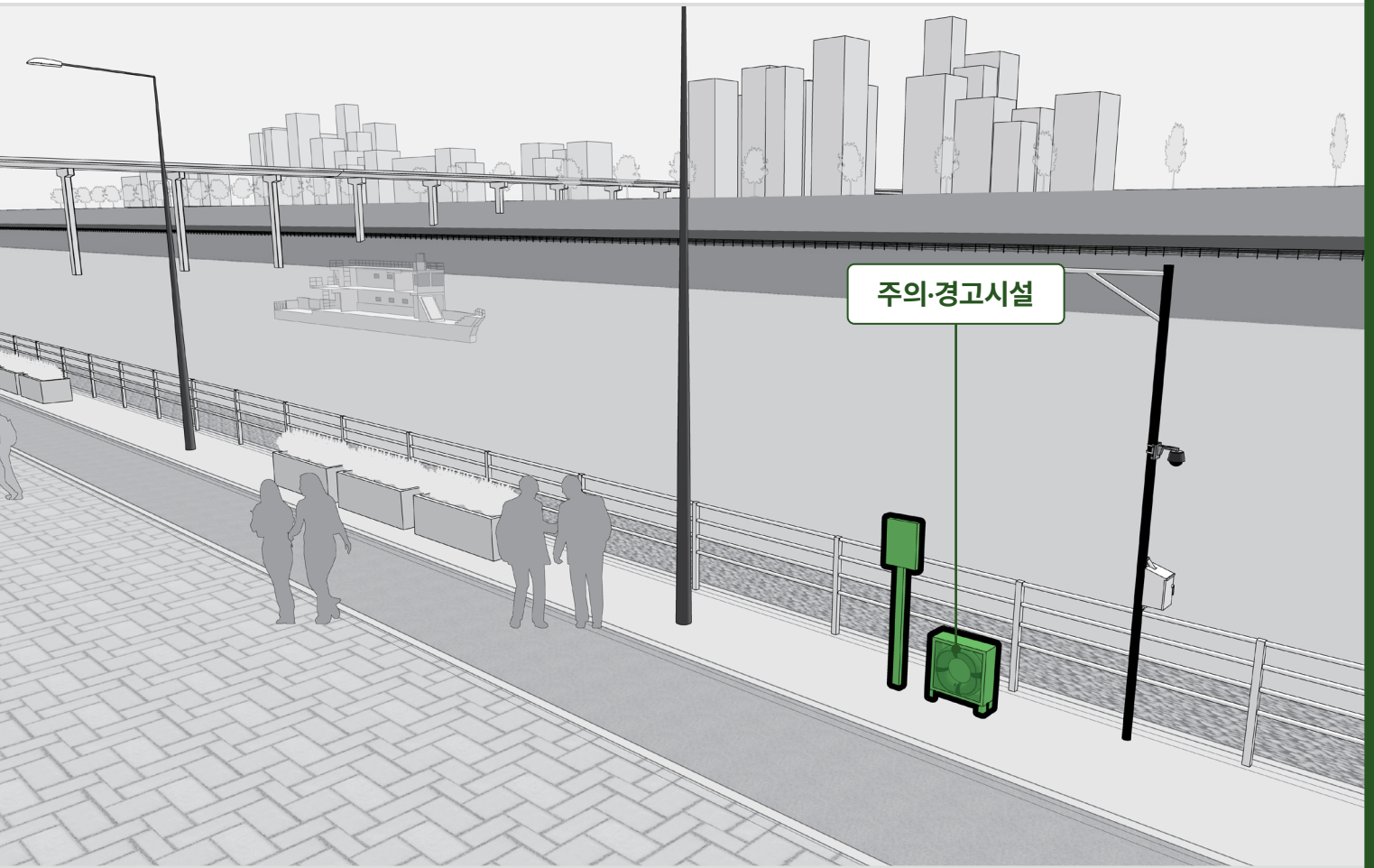
- (1) 주의·경고시설 설치 163
- (2) 안심, 안전 보행공간 확보 165
- (3) 안심, 안전 화장실 공간 확보 167

### 계획원칙

공원은 누구나 이용하는 데에 있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하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실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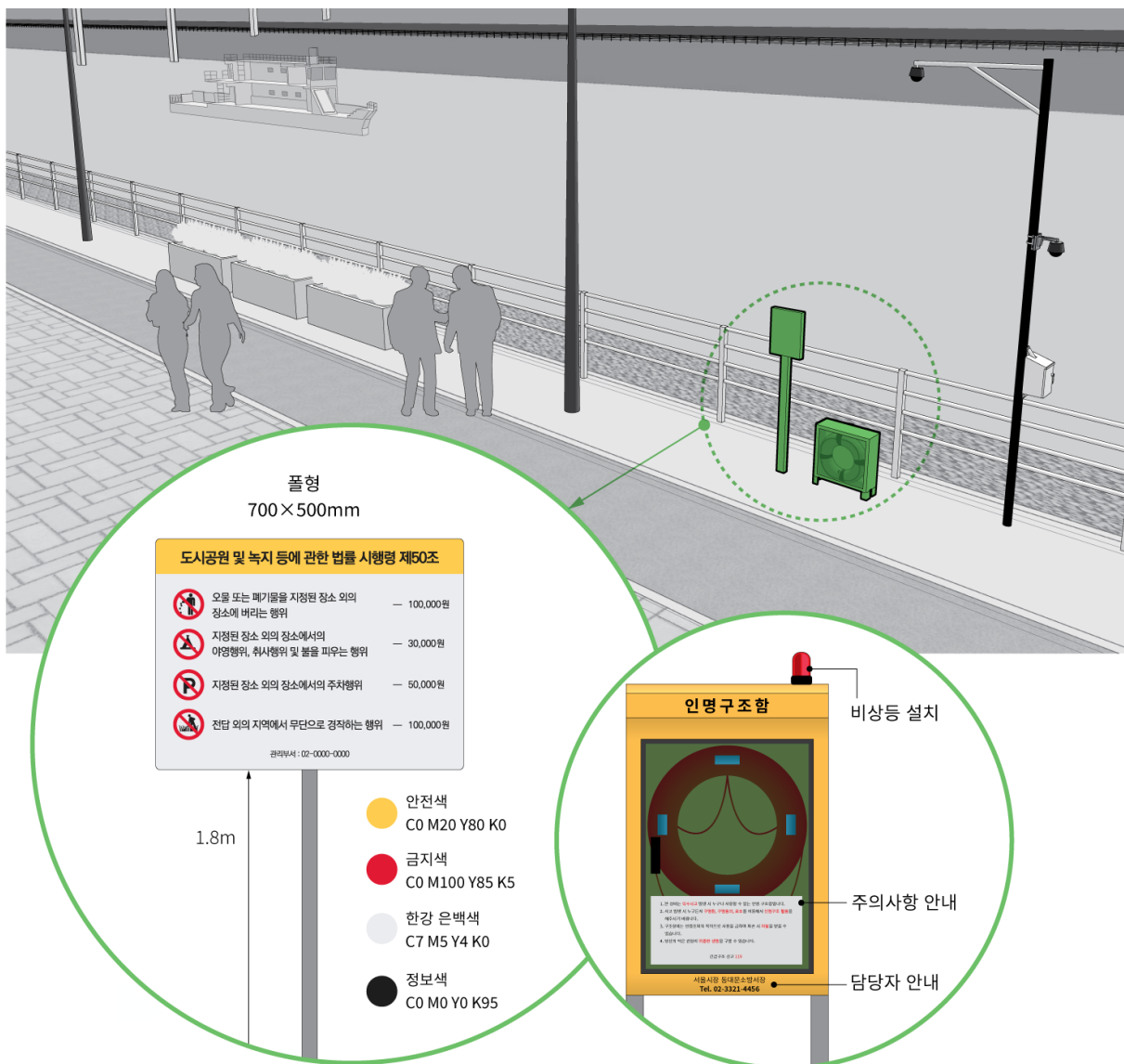
# (1) 주의·경고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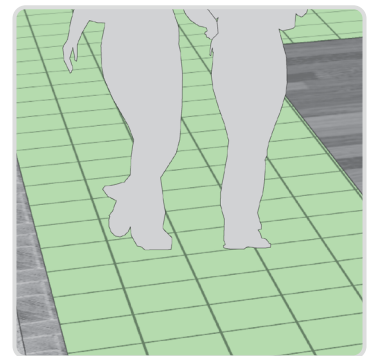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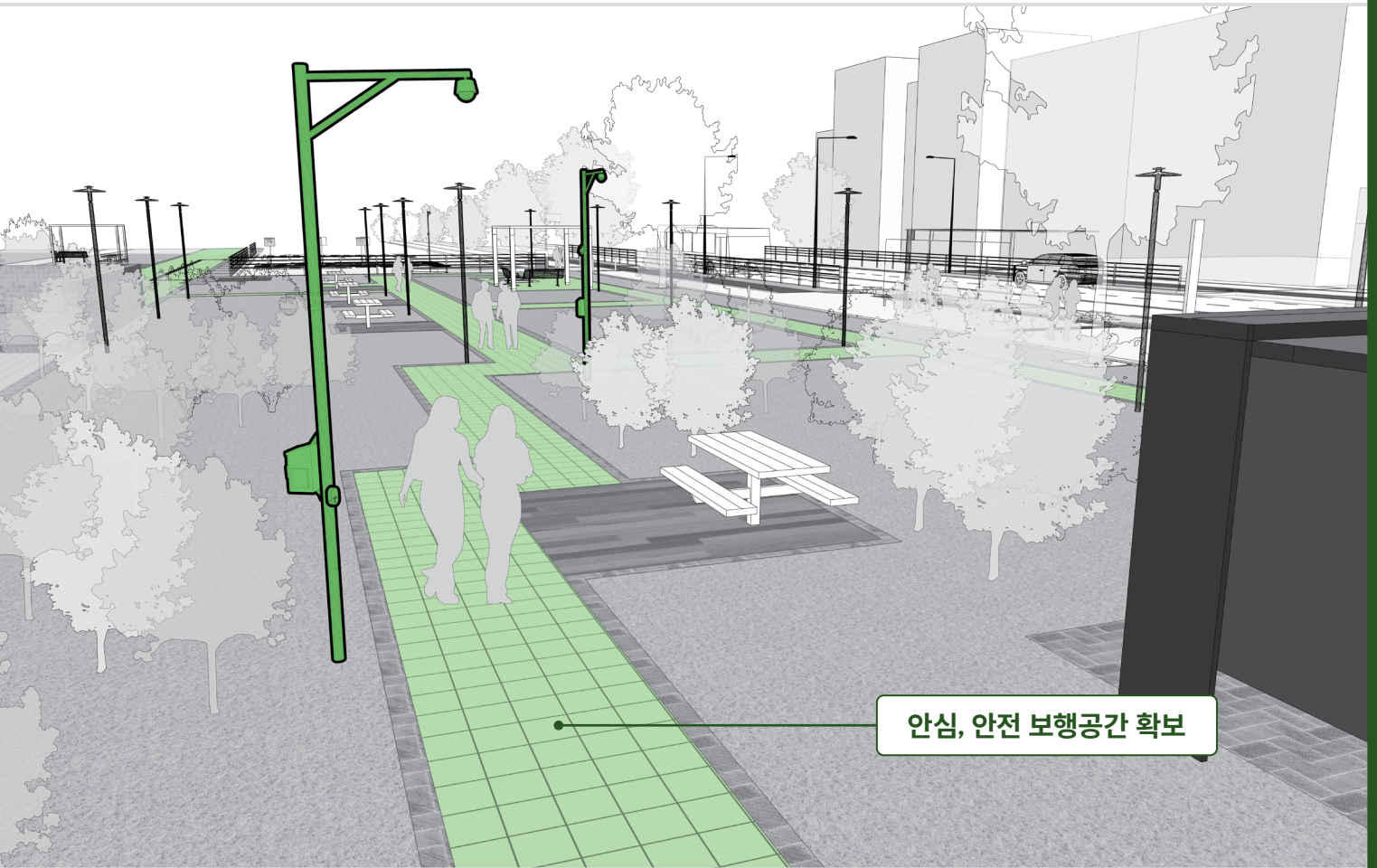
## 주의·경고시설 설치

공원 내 추락 및 낙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 구역에는 시각장애인, 주의가 산만한 아이 등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수변, 경사로, 낭떠러지, 낙뢰 위험 지역 등에 적절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 추락 위험 구역 등에는 추락 방지턱, 경고존 등 색상과 바닥재질 차이를 통한 경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안전 난간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 지역 등에 대한 시인성 높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주요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에는 비상시 구호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구호 장비를 설치한다.



## (2) 안심, 안전 보행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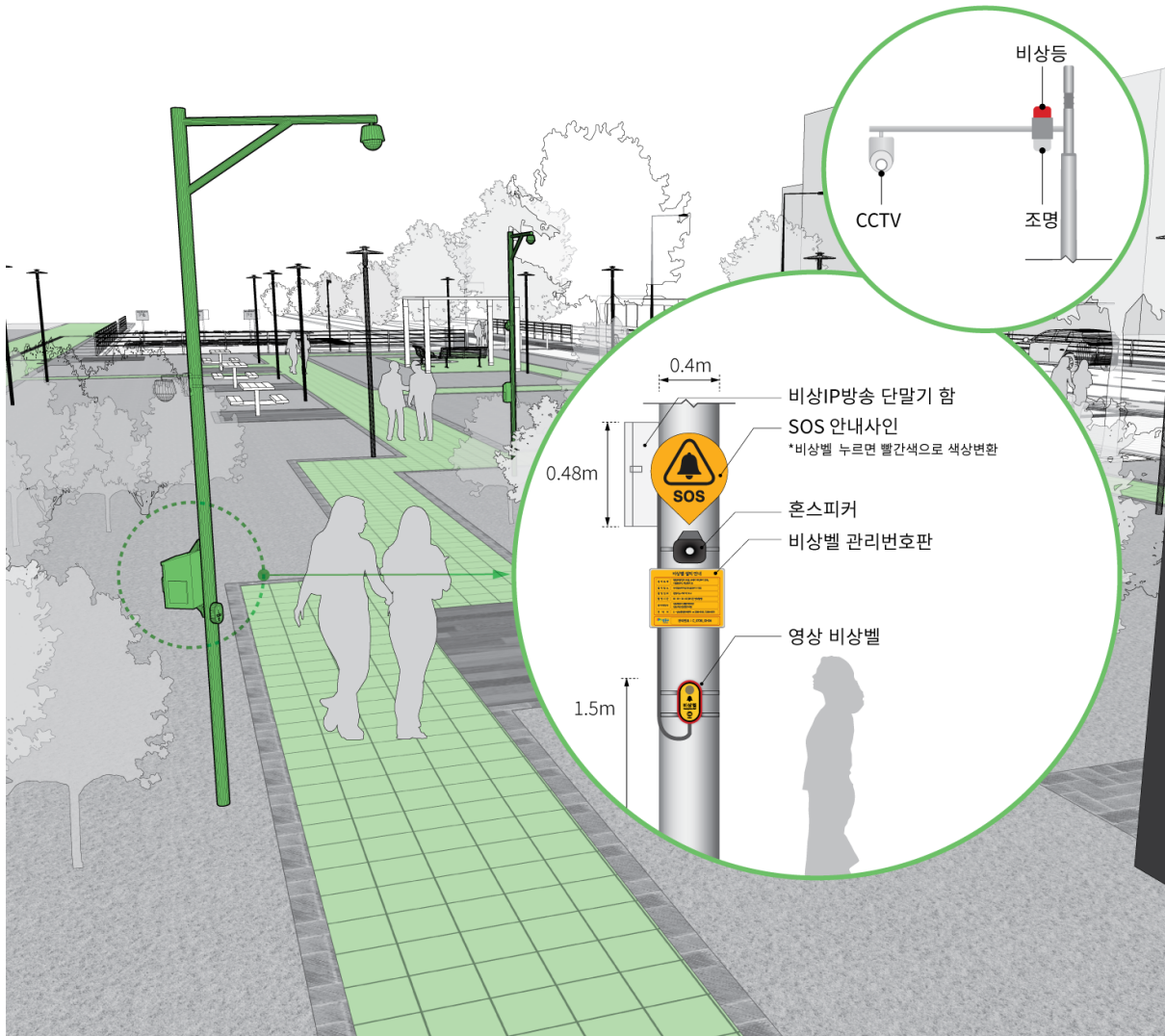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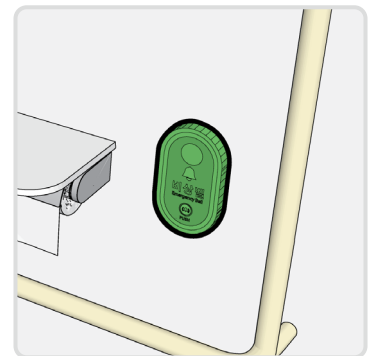
## 안심, 안전 보행공간 확보

공원 내 보도는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안전시설에 대한 인지성을 확보한다.

- 사각이 없는 산책로로 구성하며, 야간 개방을 하는 경우 야간 안전성을 확보한다.
- 주요 산책로에는 양방 소통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한다.(통화, 비상호출 등 통합형)
- 비상호출, 통화 장치는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주요 산책로에는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계획과 디자인을 적용한다.
- 주요 산책로에는 야간 시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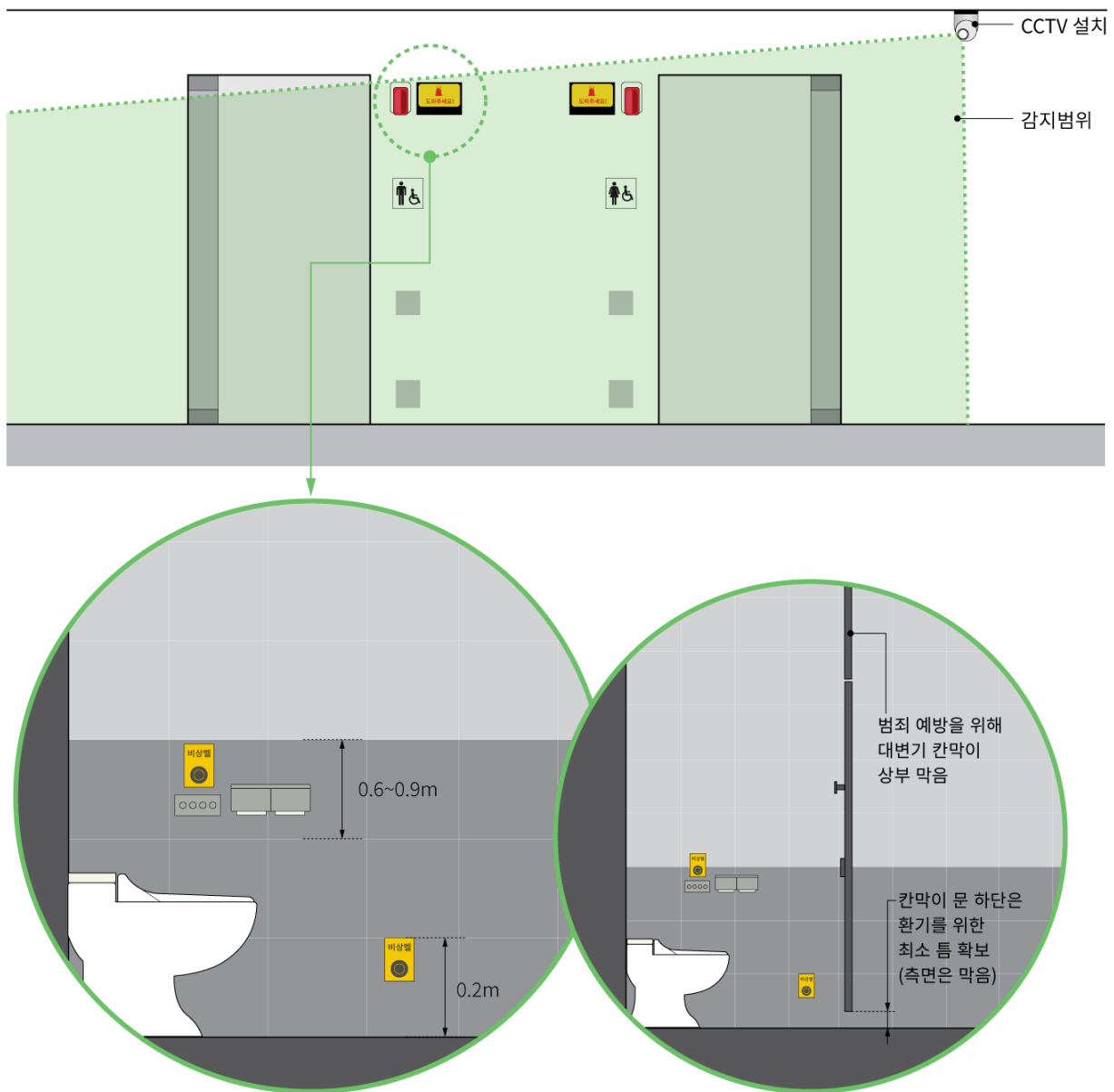
### (3) 안심, 안전 화장실 공간 확보



## 안심, 안전 화장실 공간 확보

공원 내 화장실은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화장실 내·외부에 감시 및 경보 시설을 설치한다.

- 화장실 접근로 및 출입구에 조명 및 CCTV를 설치한다.
- 화장실 내부 비상호출 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 및 경보 시설 설치한다.
-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계획과 디자인을 적용한다.







## 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

(1)	방문자센터 및 종합안내소	171
(2)	종합안내시설	173
(3)	방향 안내	175
(4)	편의시설	177

### 계획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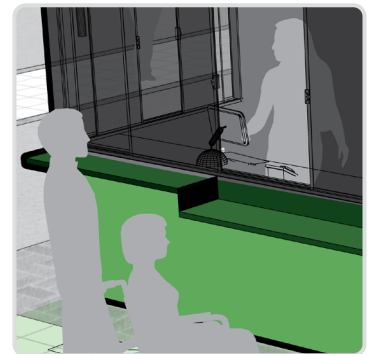
공원의 주 이용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주요 보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 (1) 방문자센터 및 종합안내소



방문자센터 및 종합안내소



---

## 방문자센터 및 종합안내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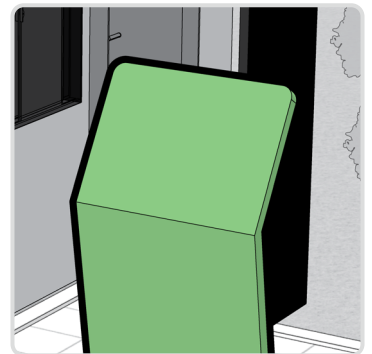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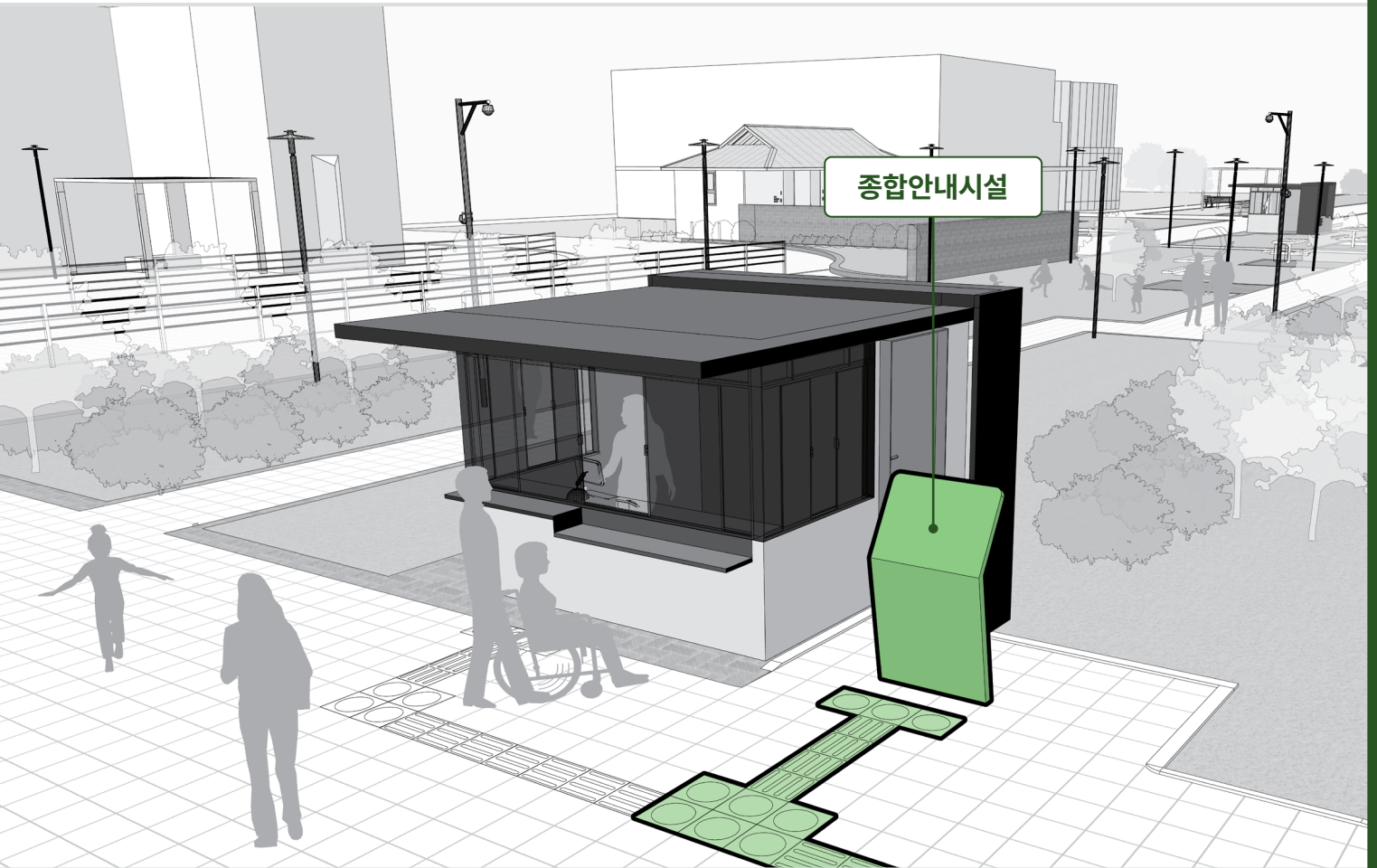
공원의 주출입구 등에는 공원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소 또는 인근 지역의 현황 등을 알리는 정보 센터 설치를 권장한다.

---

- 대규모 공원에는 공원 이용 정보 서비스나, 음성 안내기기, 휠체어, 유아차 등 장비 대여서비스 제공을 권장한다.
-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 등에는 3면 이상의 벽면에 창을 설치하여 공원 내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 및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벽면 녹화를 권장한다.
-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 등에는 공원 내 부상자의 응급 치료를 위한 비상 구급약을 비치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해 인근 병원 응급실과 연계된 호송 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광장 방문자센터 및 종합안내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61~62 참조

## (2) 종합안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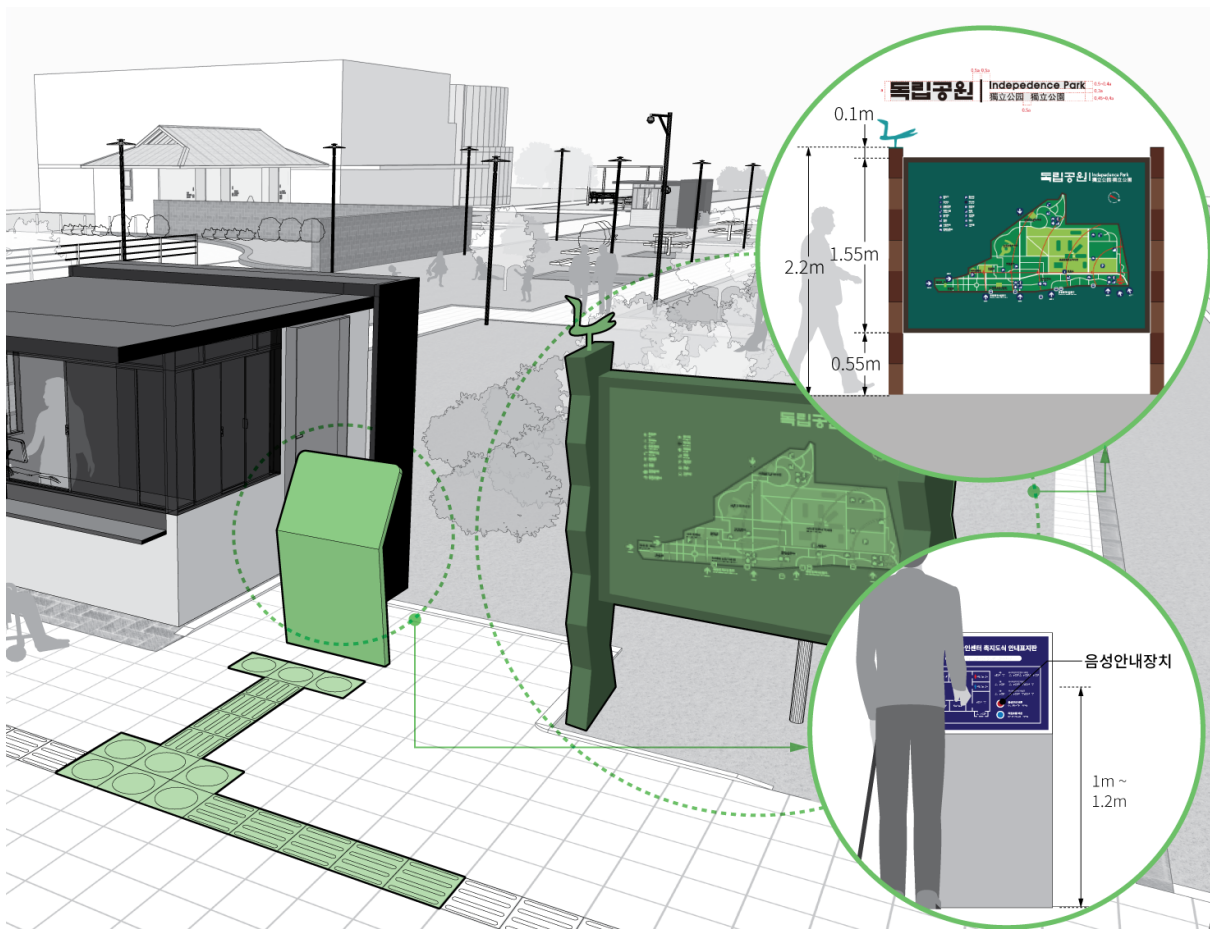


## 종합안내시설

공원 주출입구에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안내시설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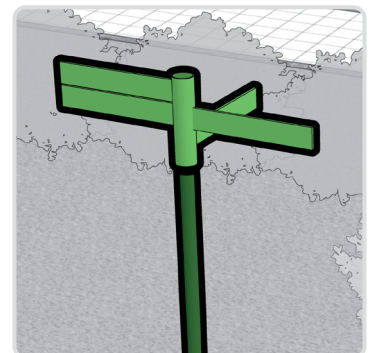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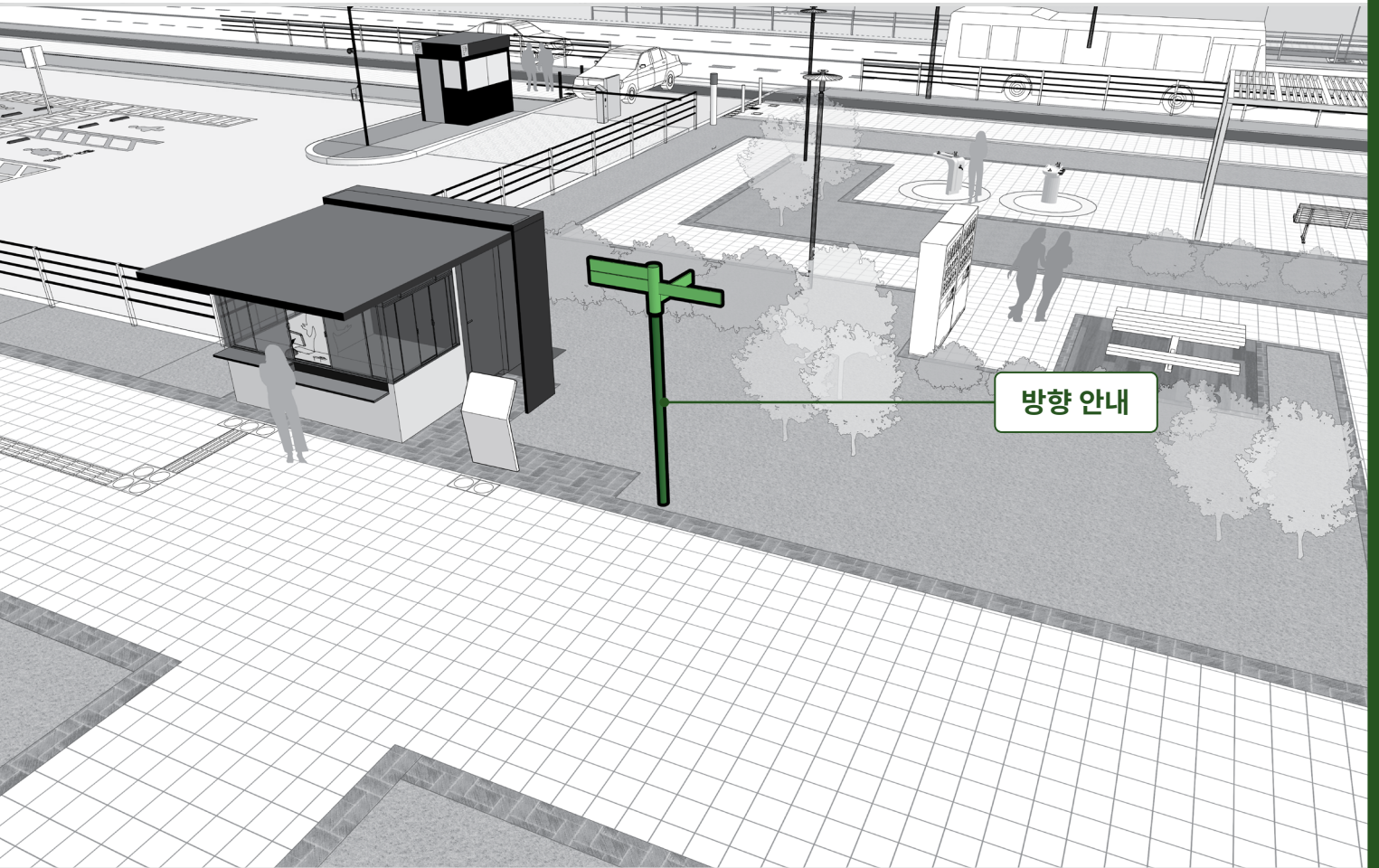
- 종합안내시설은 접근 가능하고 이해 및 인지하기 쉬운 구조로 공원 입구, 주차장 보행통로 연결 지점 등 최소 2곳 이상에 설치한다.
- 종합안내시설은 가독 가능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단,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한다.)
- 안내판 중심부는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의 위치에 설치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한 안내시설을 디자인한다. 이때 그림문자 등은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 공원 내 주요시설, 산책로의 보행 정보 등을 표기하고 야간에 인지 가능하도록 안내판의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점자/촉지도/음성안내 장치와 관리자 호출 및 통화 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 공원·광장 안내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 「무장애 친화공원 지침」 pp.37~41,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_도시공원 안내 체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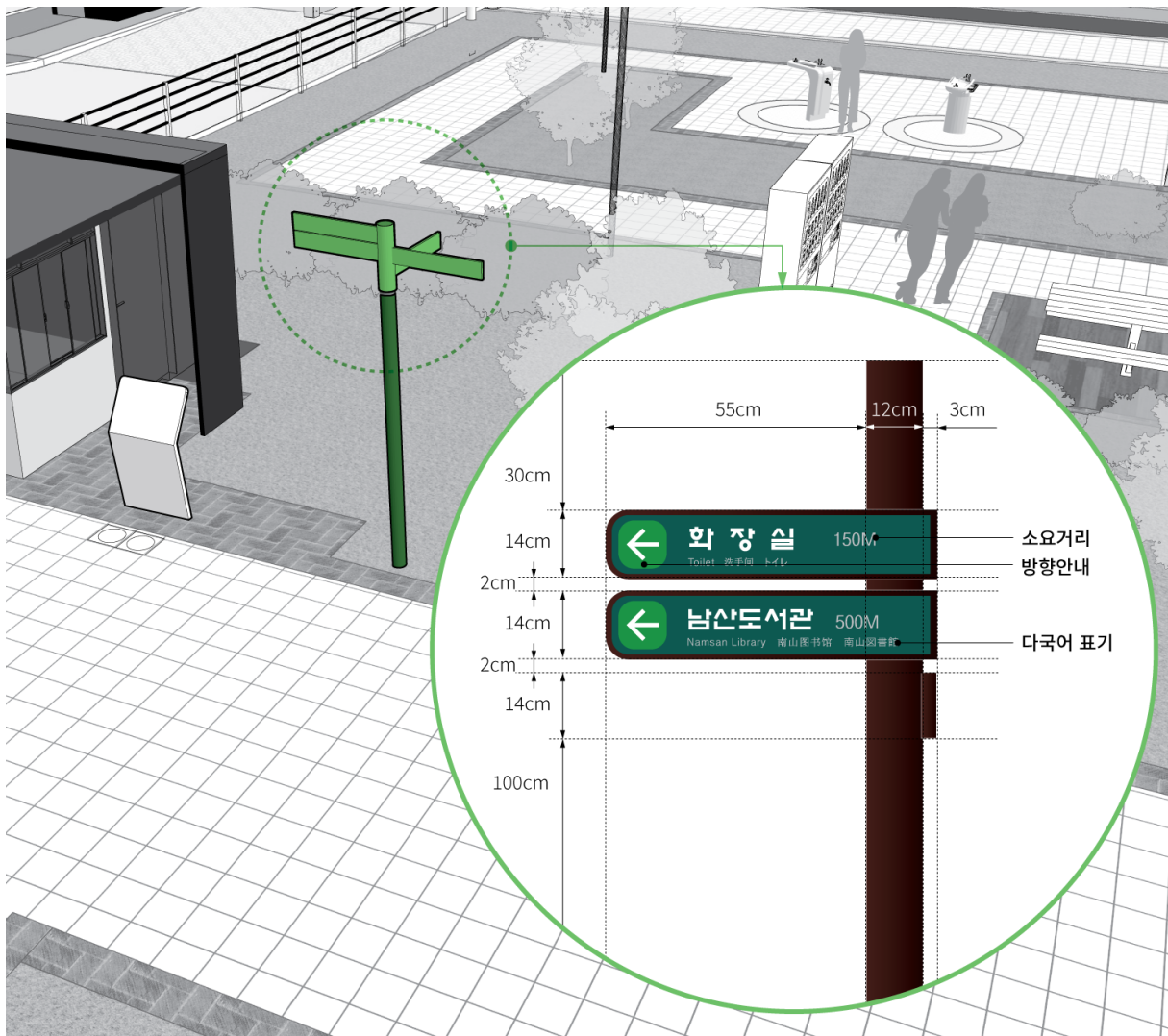
### (3) 방향 안내



## 방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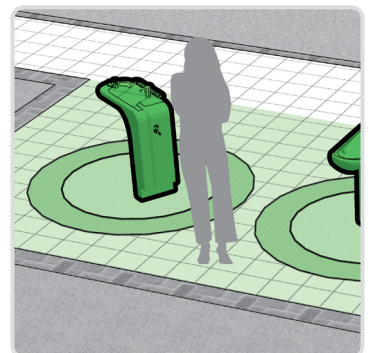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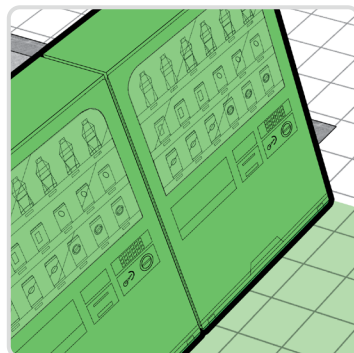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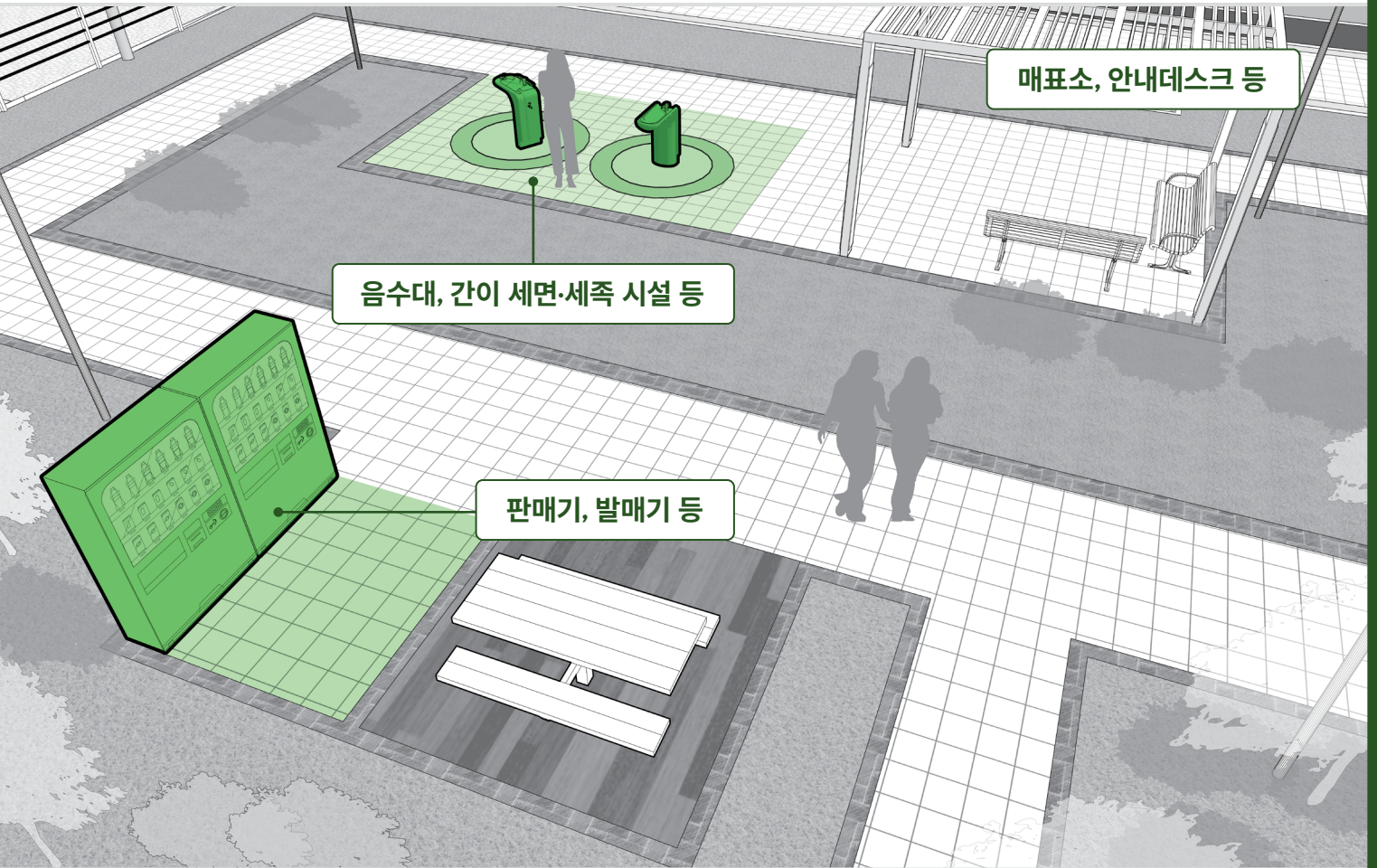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등에는 주요 보도의 교차로, 주요시설의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누구나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방향 안내는 주요 보도(산책로)의 교차로와 주요시설의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글자의 크기 및 배색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방향 안내시설은 목적지에 대한 방향과 소요거리를 표기한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이때 그림문자 등은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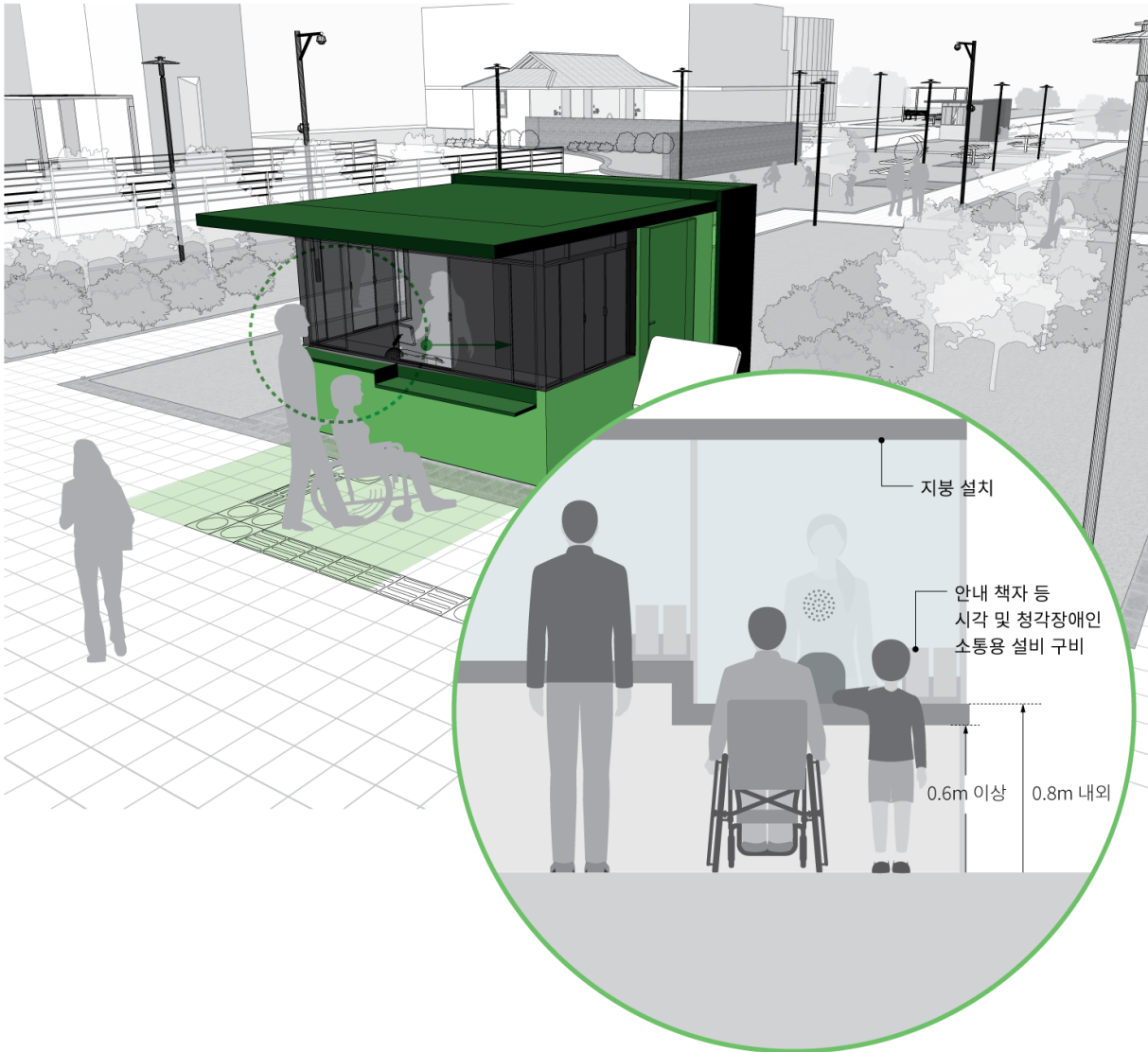
## (4) 편의시설



## 매표소, 안내데스크 등

공원 내 매표소 또는 안내데스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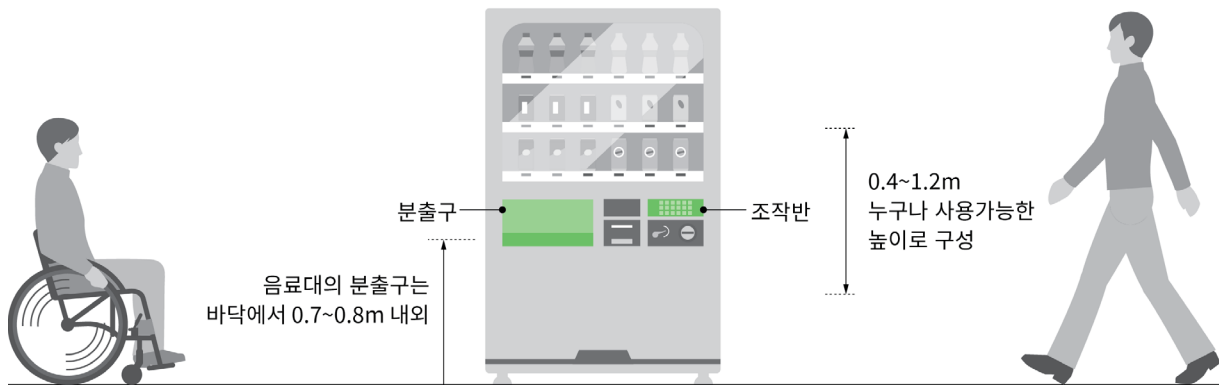
- 매표대, 안내데스크 등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을 배려하여 1면 이상을 낮은 테이블로 설치한다.
- 매표소 등의 전면 대기공간에 지봉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한다.
- 매표소, 안내데스크 전면에 점자블록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
- 외국인을 배려한 다국어 안내 체계, 시청각 장애인 소통용 장비 등을 구비한다.



## 판매기, 발매기 등

공원 내 판매기, 발매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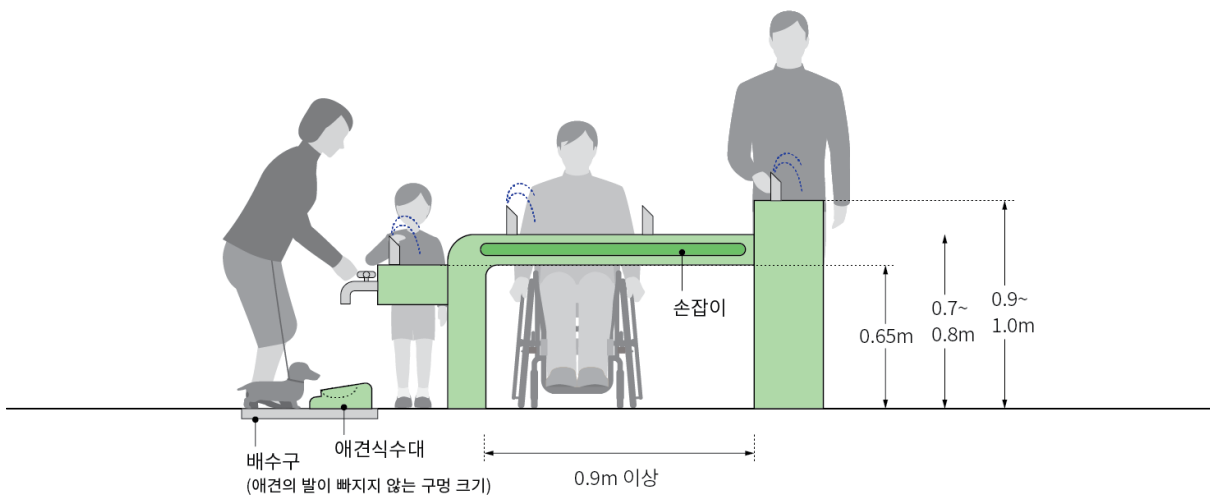
- 판매기 등에 전면 보도와 다른 바닥재질을 설치하여 위치를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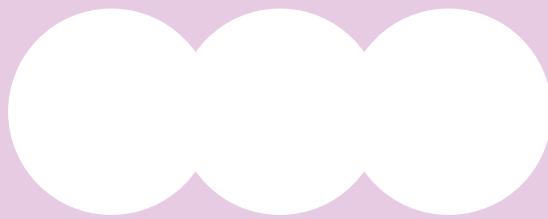
## 음수대, 간이 세면·세족 시설 등

공원 내 음수대, 간이 세면·세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음수대, 간이 세면·세족대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수전과 레버 등의 높이, 하부 공간 확보가 된 음수대, 간이 세면대를 설치한다.
- 놀이터, 운동 공간, 수변 놀이 공간 등의 이용시설 인근에 설치한다.
- 음수대, 간이 세면·세족대 시설 주변 바닥은 보행로 재질과 색상 및 재질이 차이가 나도록 설치하되, 미끄럼 방지 재질을 적용한다.



# 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 적용 범위

- 건축물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3조 제3호)
- 공공 공간 (「건축기본법」 제3조 제3호)
- 공적 공간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
-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장이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업무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위 내용 외에도 관련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본 지침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단, 지형 등의 조건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B



## **B 1**

보도와 대지의 접점 공간(공지) 183

## **B 2**

접근 공간 197

## **B 3**

내부 이동 공간 229

## **B 4**

위생 공간 253

## **B 5**

피난 및 대피 271

## **B 6**

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 277



## 보도와 대지의 접점 공간 (공지)

(1)	대지와의 경계	185
(2)	대지 출입구	188
(3)	공지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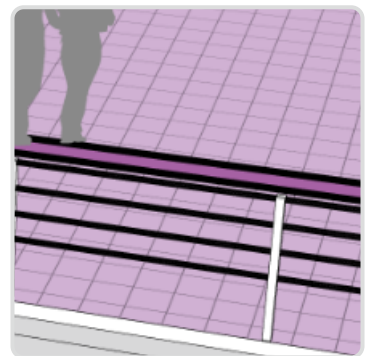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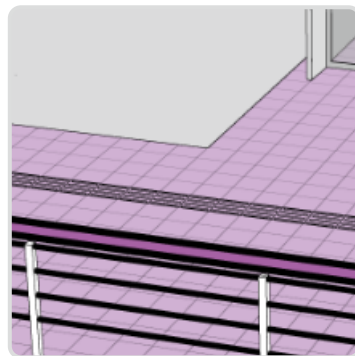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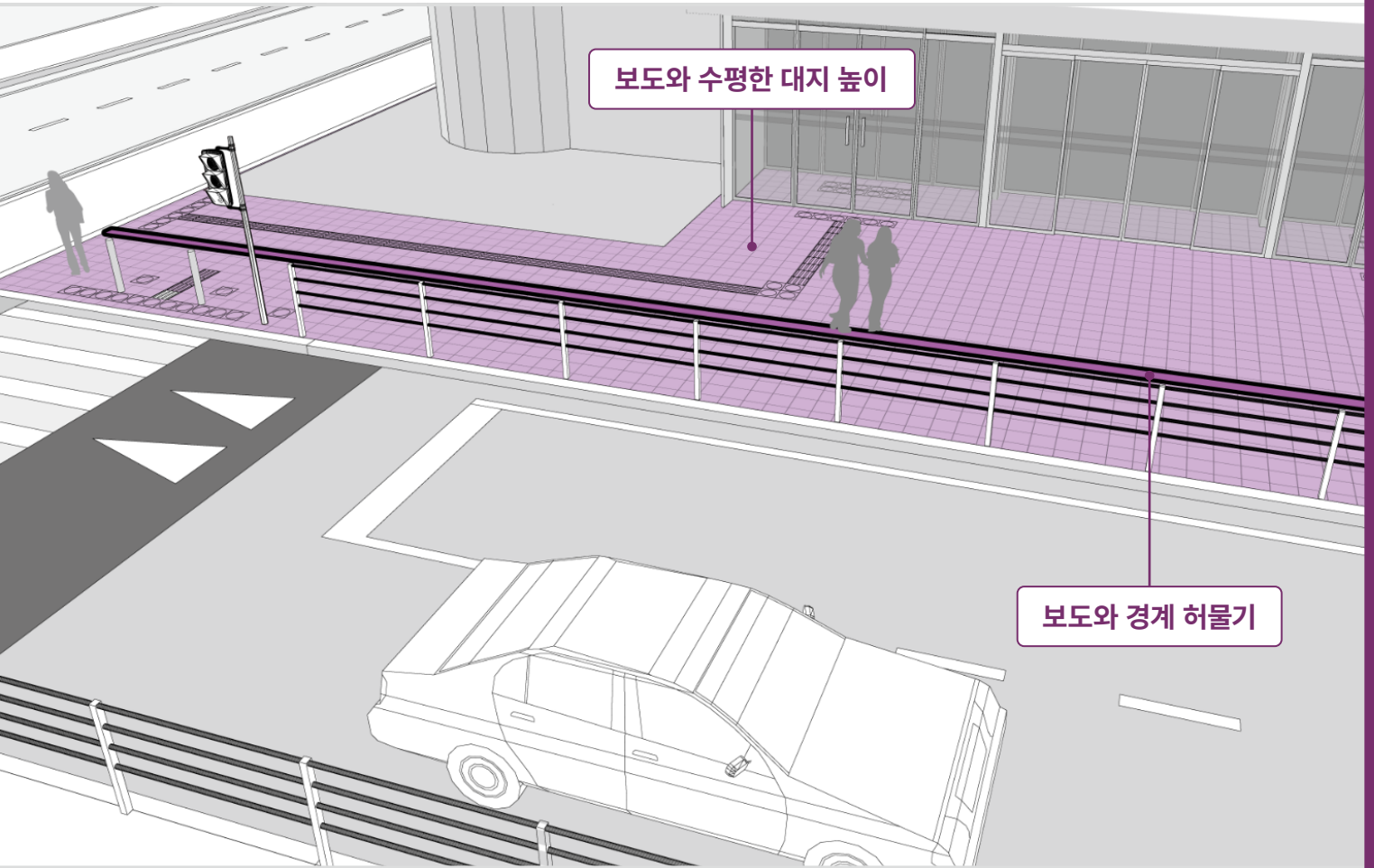
### 계획원칙

보도 공간과 건축물 대지와의 접점 및 경계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건축물 주출입구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보도 공간 및 대지 경계의 구조와 형태는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





# (1) 대지와와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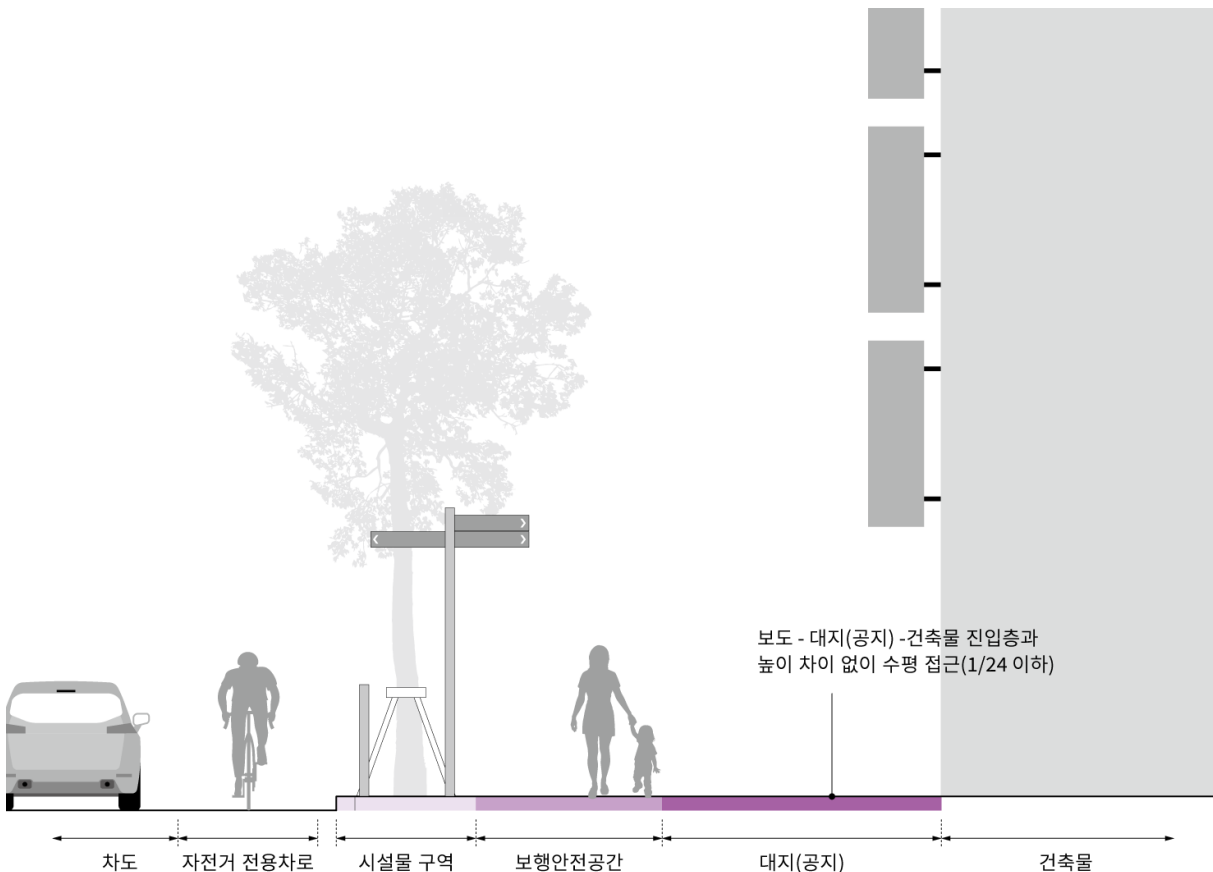


## 보도와 수평한 대지 높이

대지와 건축물 주출입구의 높이는 보도 공간에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기존 보도의 구조를 변경하여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보도 구조 임의 변경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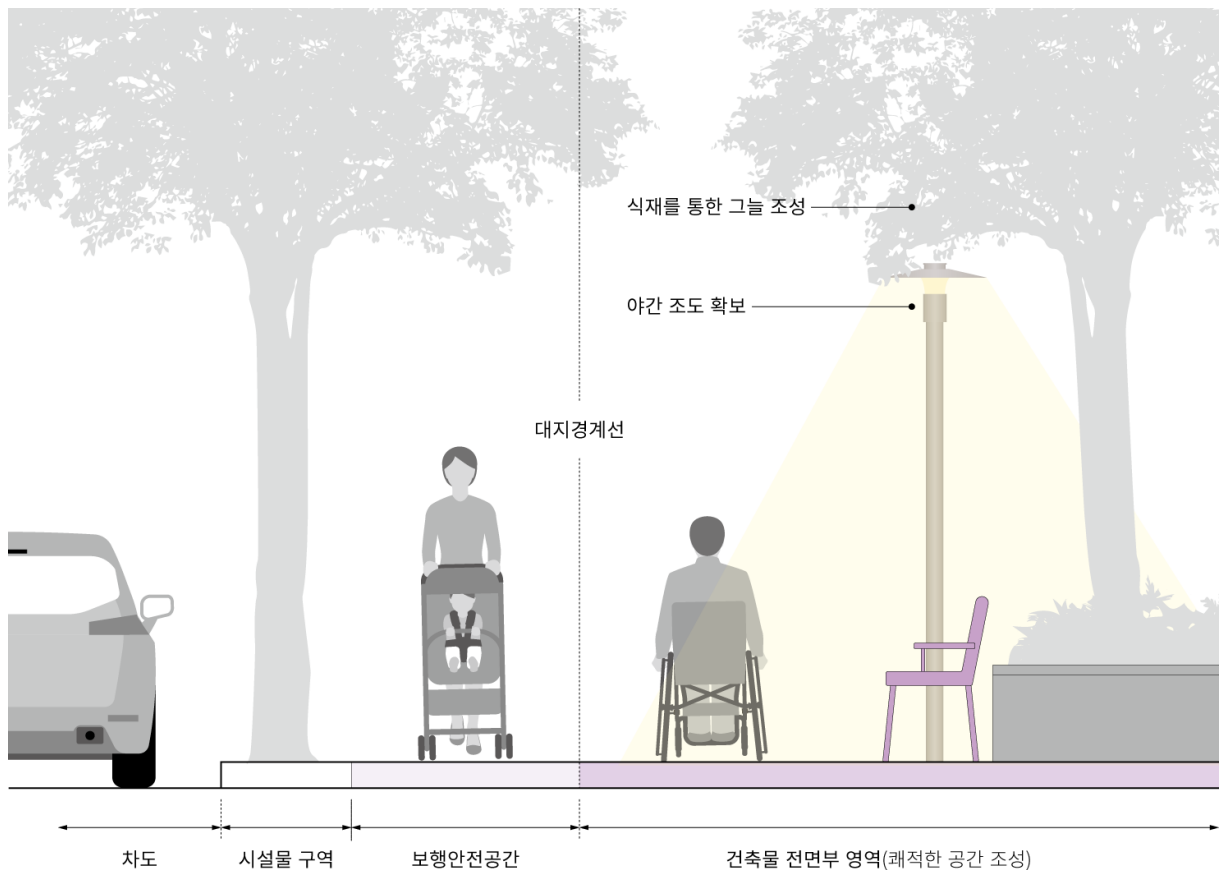
- 건축물 조성 시에 대지 경계의 높이는 보도의 차도 측 연석(경계석) 높이를 기준으로 조성하여, 기존 보도에 횡경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 진입층 높이는 보도-대지(공지)-건축물 진입층과 높이 차이가 없도록 하여 수평 접근(1/24 이하)이 가능하도록 한다.
- 기존 건축물의 개선 등 대지 및 진입층 높이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근 공간, 주출입구 기준을 준수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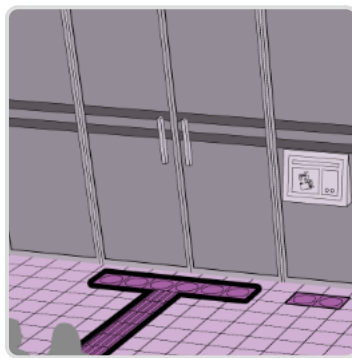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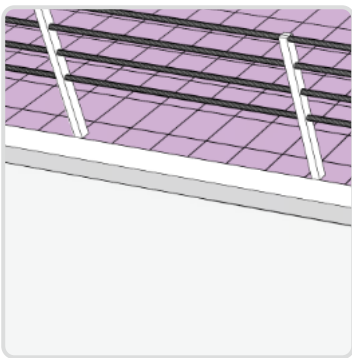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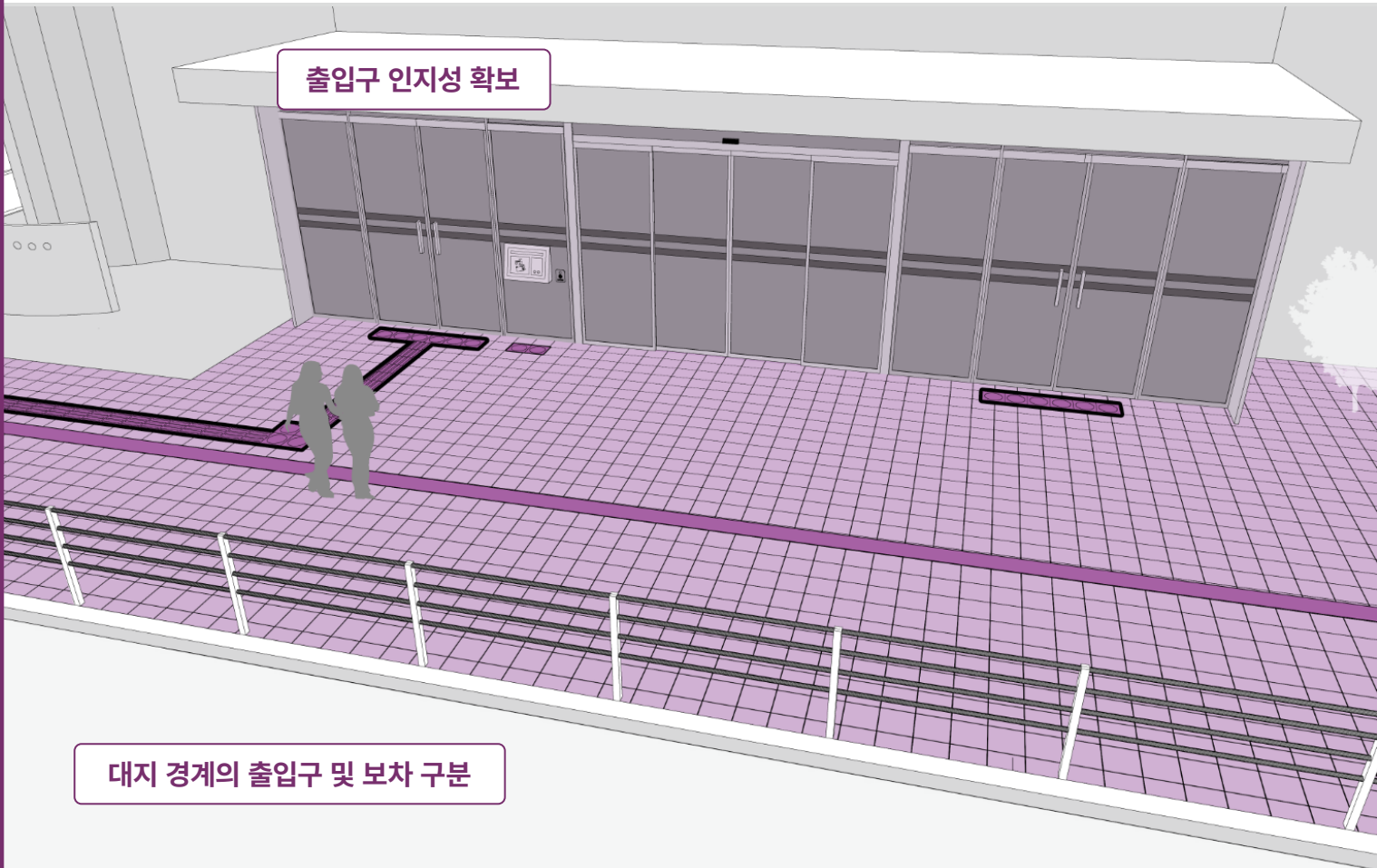
## 보도와 경계 허물기

보도와 대지의 경계는 누구나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시각적·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행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해 쾌적한 가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 보도와 대지의 펜스, 담장 등과 같은 물리적 경계는 가급적 제거하되, 불가피하게 설치할 시에는 형태와 크기가 위협적이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투시형 울타리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과 건축물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도 부분에 그늘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재를 권장한다.
- 보도와 면하는 대지 경계에 보도의 보행자가 이용 가능한 녹지, 친수 공간, 휴게공간 등의 편의시설 및 공간 등의 마련을 권장한다.
- 보도와 대지 경계 사이는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하며, 야간 조도를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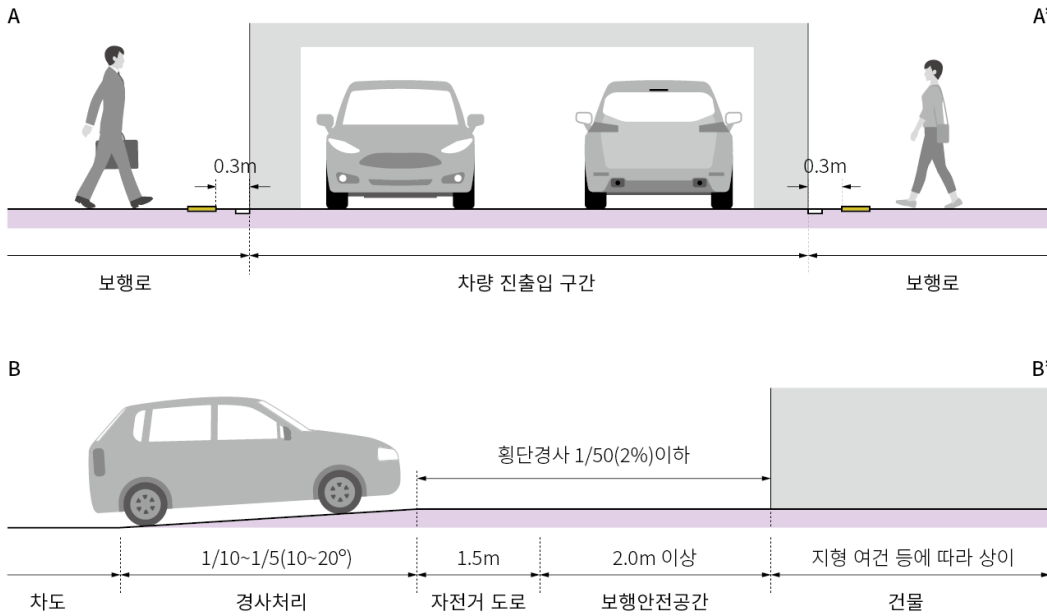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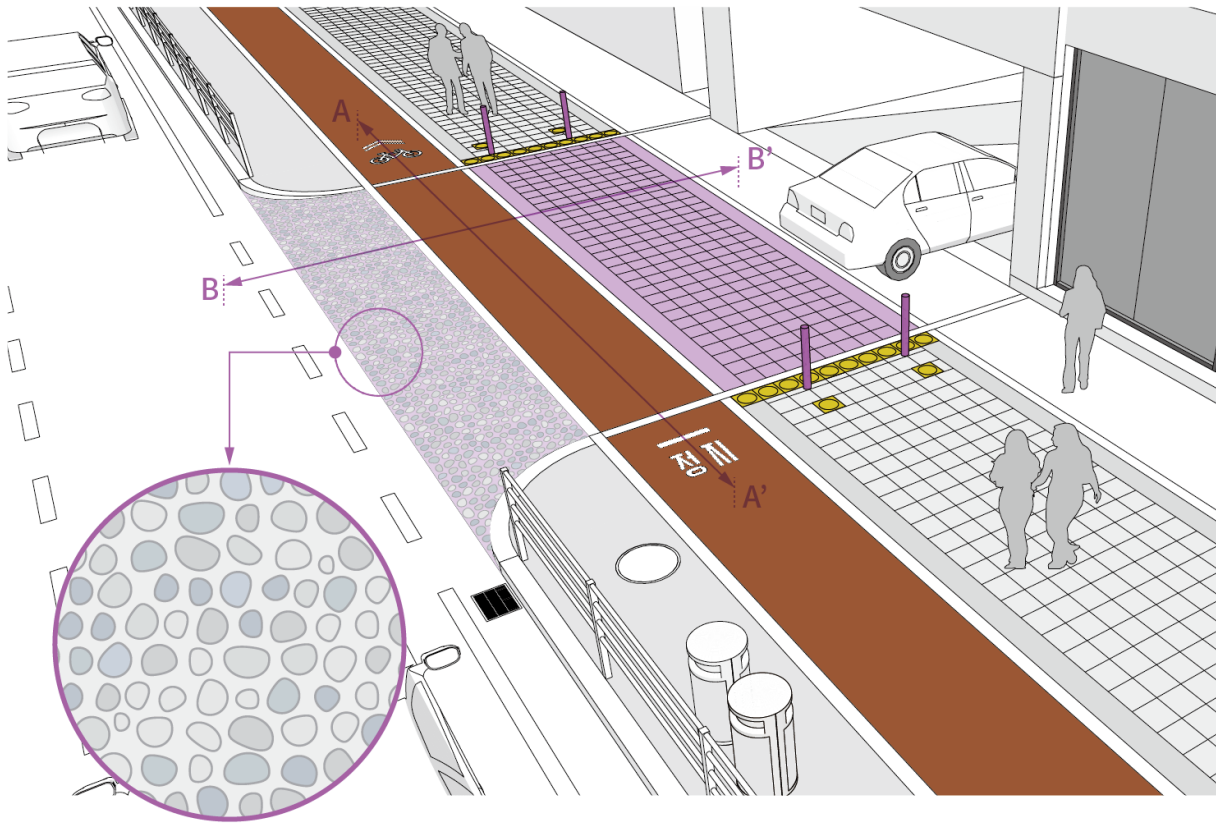
## (2) 대지 출입구



## 대지 경계의 출입구 및 보차 구분

대지 경계에서 별도의 주출입구(구역)를 조성할 때에는 누구나 접근 및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하며, 보행과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안전성을 확보한다.

- 대지 출입구는 주변 교통 여건, 사용자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보도와 대지 경계 출입구는 단차 없이 수평하게 조성한다.
- 복수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여러 출입구를 적절한 위치에 분산 설치한다.
- 차량 진출입구 등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다.
  - 보도, 보차 교행구간, 차도는 재질과 색상 등을 활용하여 구분
  - 차량 진출입구 등에서 보도와 차도 구분을 위해 연석 설치 시 연석 높이는 6~15cm 내외로 설치
  - 차량 진출입구 등에서 안전 난간, 식재 구역 등을 활용하여 차도와 구분
  - 차량 진출입구의 가로의 보차 교행구간
  - 차량 진출입구 기준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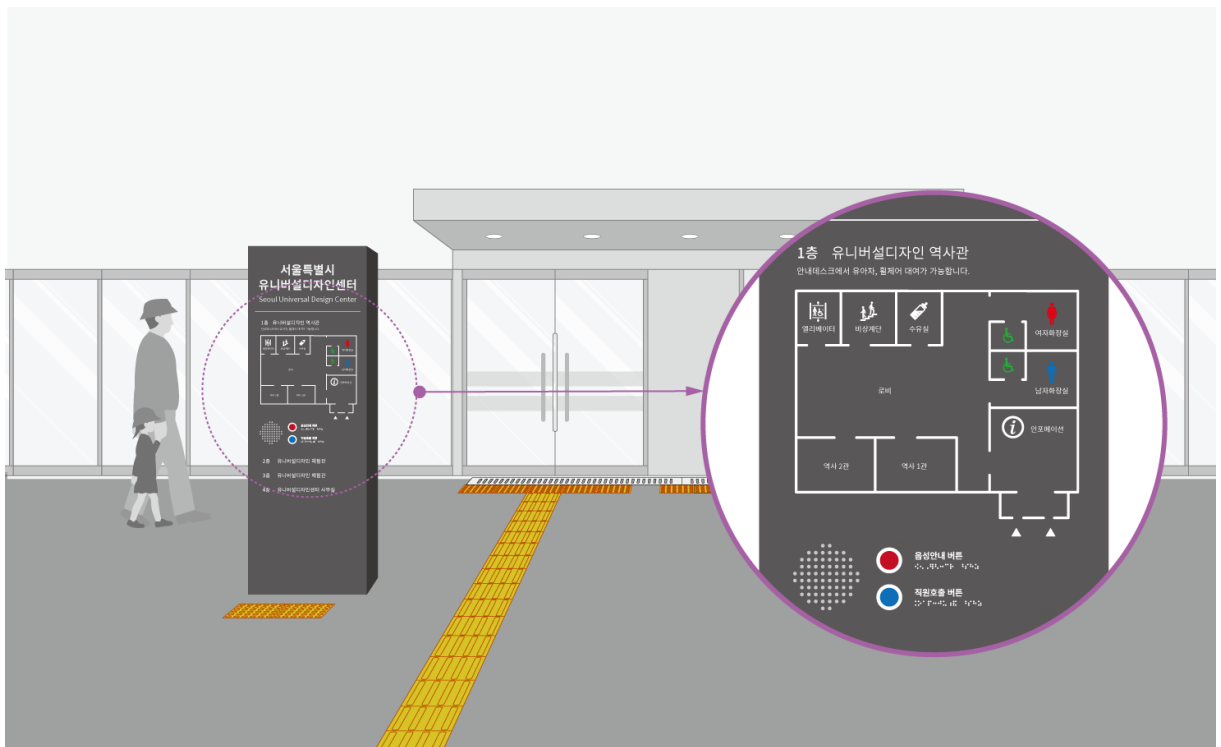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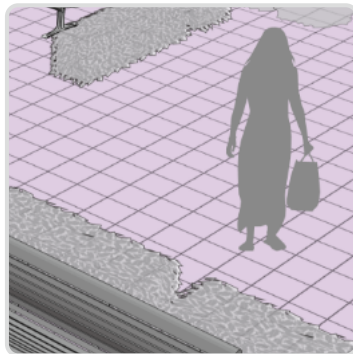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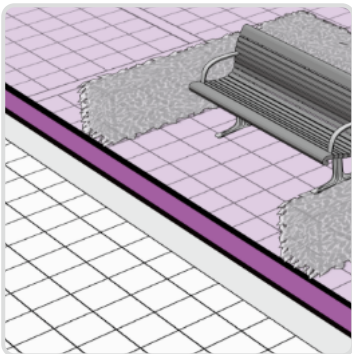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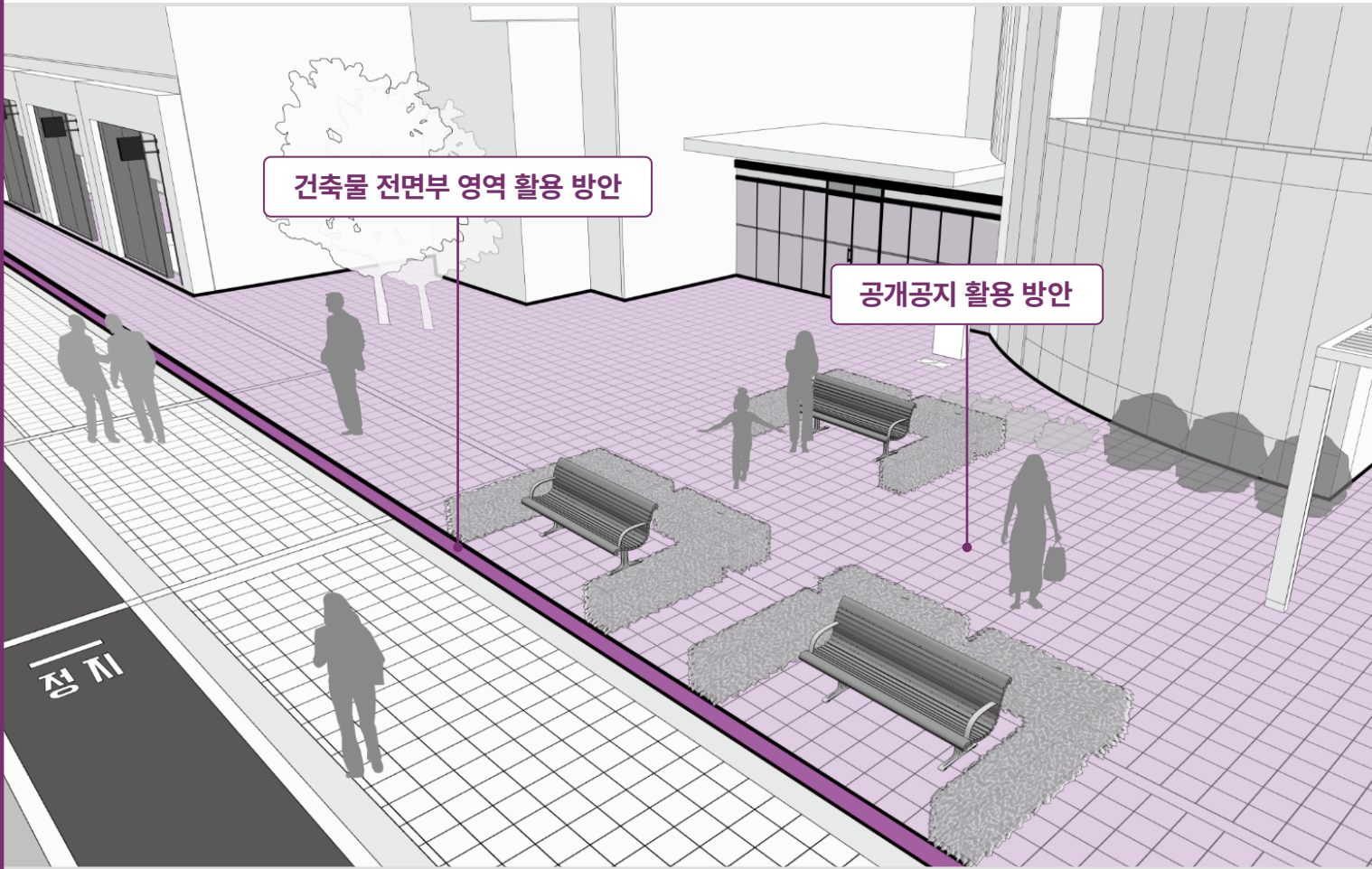
## 출입구 인지성 확보

대지 경계의 출입구에서 보행자가 쉽게 건물명, 시설의 용도 및 출입구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계획하며, 대지 경계의 출입구에서 시설 출입구가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 건물명(용도 등), 출입구의 위치 등의 정보 전달을 위한 보행자용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대지 경계에서의 출입구에 안내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위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 내용: 다국어 병기, 거리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 표기(거리, 소요 시간 등)
  - 재질: 내구성이 좋은 재료 사용
  - 기타: 대지 출입구 부근 주변 교통 시설 안내, 대지 내 이용 가능한 우회 동선 안내, 건축물 내 이용 가능한 이동 설비(승강기 등) 표시 등
- 큰 규모의 대지 등으로 별도 보행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 도우미 배치 또는 안내·관리소 통화·호출 설비를 설치한다.



### (3)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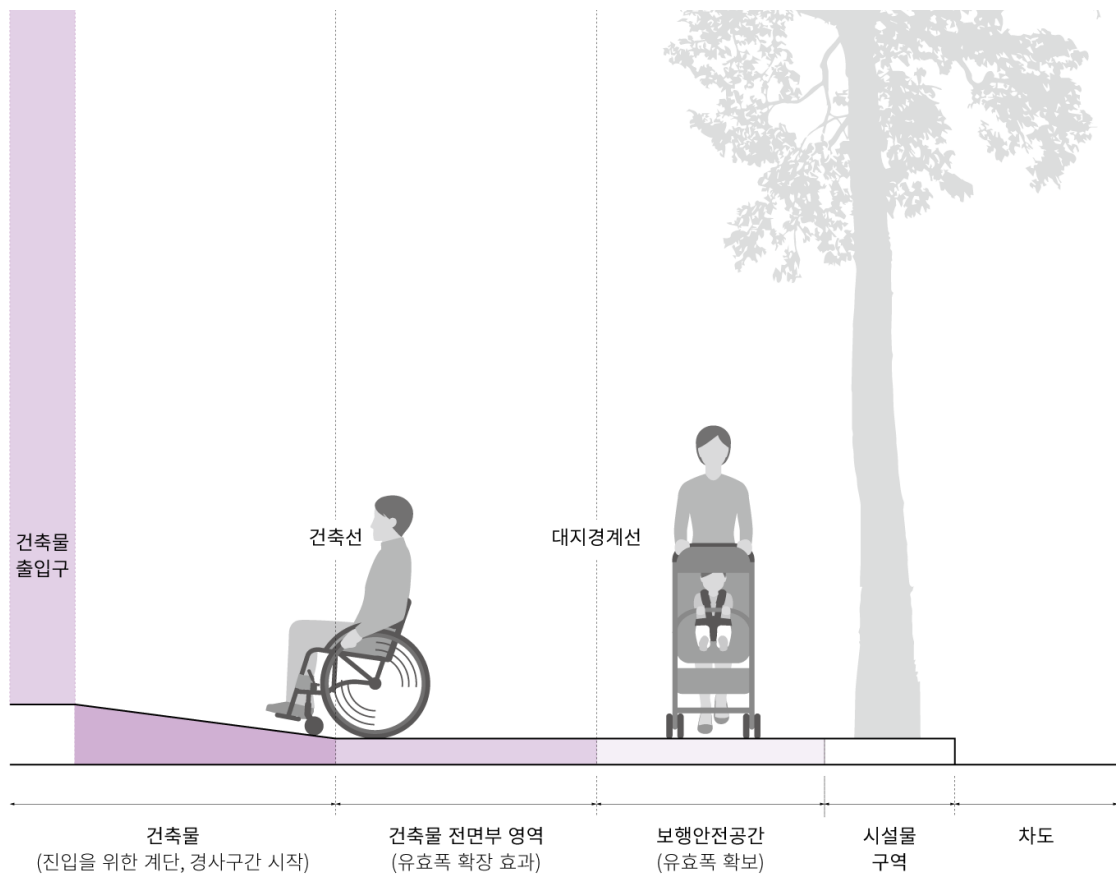




## 건축물 전면부 영역 활용 방안

건축 한계선 후퇴 부분은 기존 보도의 구조와 형태를 동일하게 조성하여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건축 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동일한 포장 재질 적용을 통해 보도의 유효폭 확장 효과를 갖도록 한다.
- 기존 건축물의 진입층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접근로 조성 시에는 경사 구간 내지 내 구역만을 활용한다. (기존 보도 구조, 형태의 임의 변경 금지)



## 공개공지 활용 방안

공개공지로 조성된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이용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기 쉬운 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접근성

- 보도 공간에서 단차 없이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접근 공간이나 출입구의 유효폭은 2m 이상 확보한다.
-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성 시에 각 공지는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공지 내 통로, 광장부, 휴게공간 등의 바닥 마감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마감재로 설치한다.
- 조경 구간 식재 부위, 조형물 등 공지 내 시설물 설치 시에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안전높이 2.5m 이상을 확보한다.
  - \*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 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치를 따로 정하여 설치

### 이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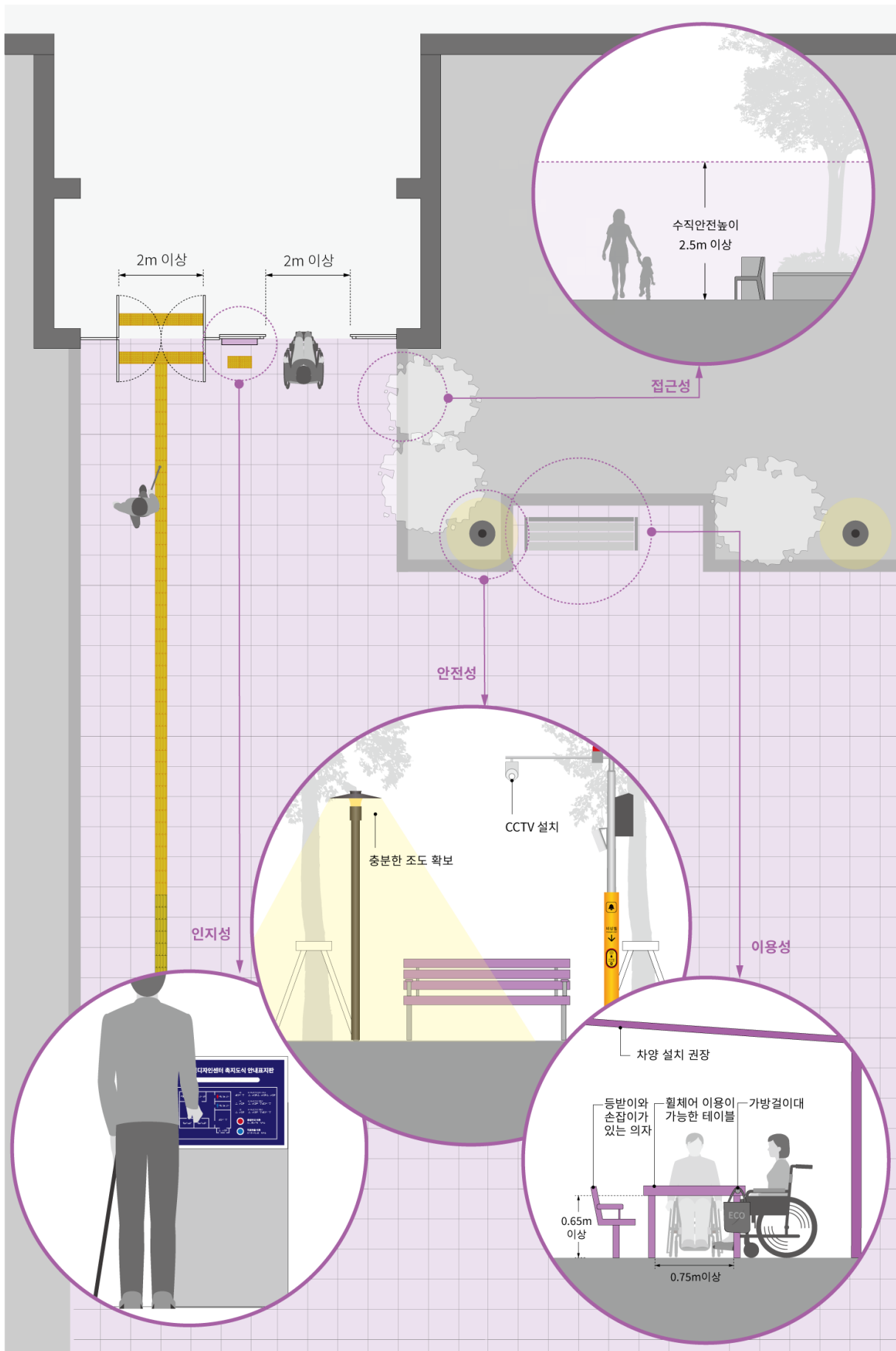
- 보도에 인접하여 공지, 정원 등을 조성할 시에는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 인접 대지 등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성 시에는 확장 및 연결성을 고려하여 적정 유효폭, 향후 건물 간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 조경 구역 내 휴게공간 조성 시에는 포켓형으로 설치하여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 휴게의자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서 우수 공공 디자인 인증 제품으로 설치한다.
- 공개공지 조성과 함께 건축물 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개방형 화장실 설치를 권장한다.
  - \* 형태
    -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m<sup>2</sup> 이상, 최소폭은 5m 이상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 높이가 6m 이상
    -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 무대·소규모 공중 화장실 (33m<sup>2</sup>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 등 다종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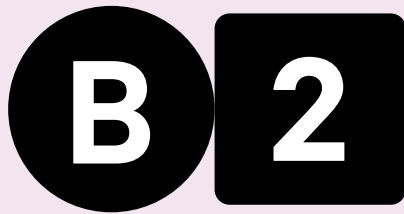
## 안전성

- 야간 이용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되,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야간의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공지와 보도 사이에 조경 시설이나 식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로부터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여, 사각이 없도록 CCTV 등의 감시 시설을 설치한다.
- 바닥 분수, 수경 시설 등을 설치할 시에는 접근 및 충돌 방지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 인지성

- 공개공지 이용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인지 가능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안내시설은 표준 디자인 지침을 준수하되, 공지로의 출입구, 주요 통로 등 보도에서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공지, 시설의 주출입구 및 주요 동선에 대해 점자블록과 연계한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를 권장한다.





## 접근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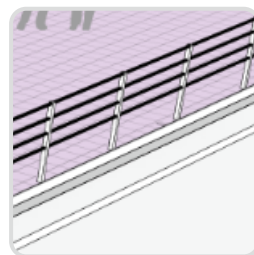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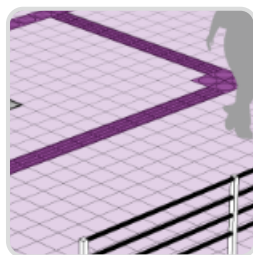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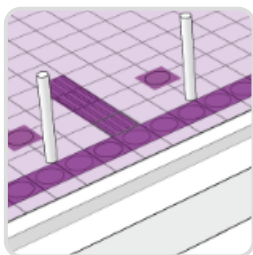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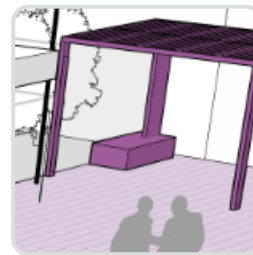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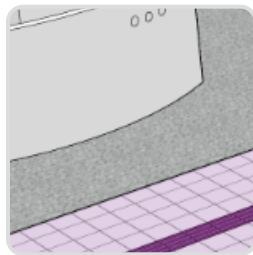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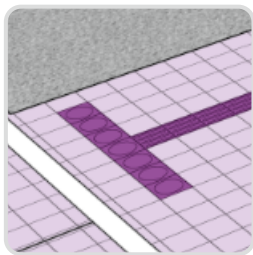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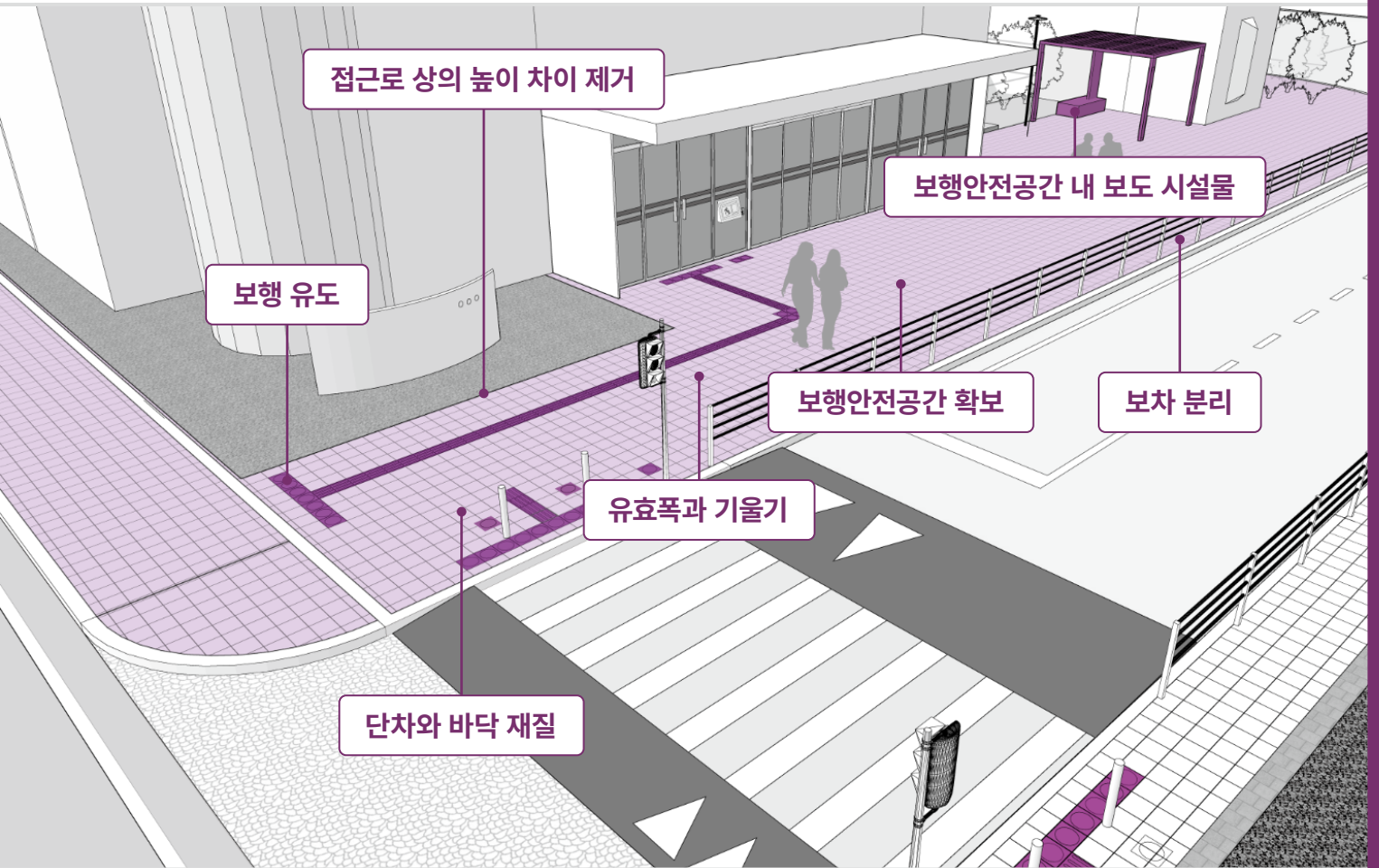
(1)	보행 접근	199
(2)	차량 접근	212
(3)	주출입구(문)	222

### 계획원칙

공공건축물은 누구나 건축물 내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로(대지 경계 및 공지를 포함)에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행 유도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여, 쉽게 인지 가능한 운전자용 안내시설과 적절한 주차구역 및 주차 후 시설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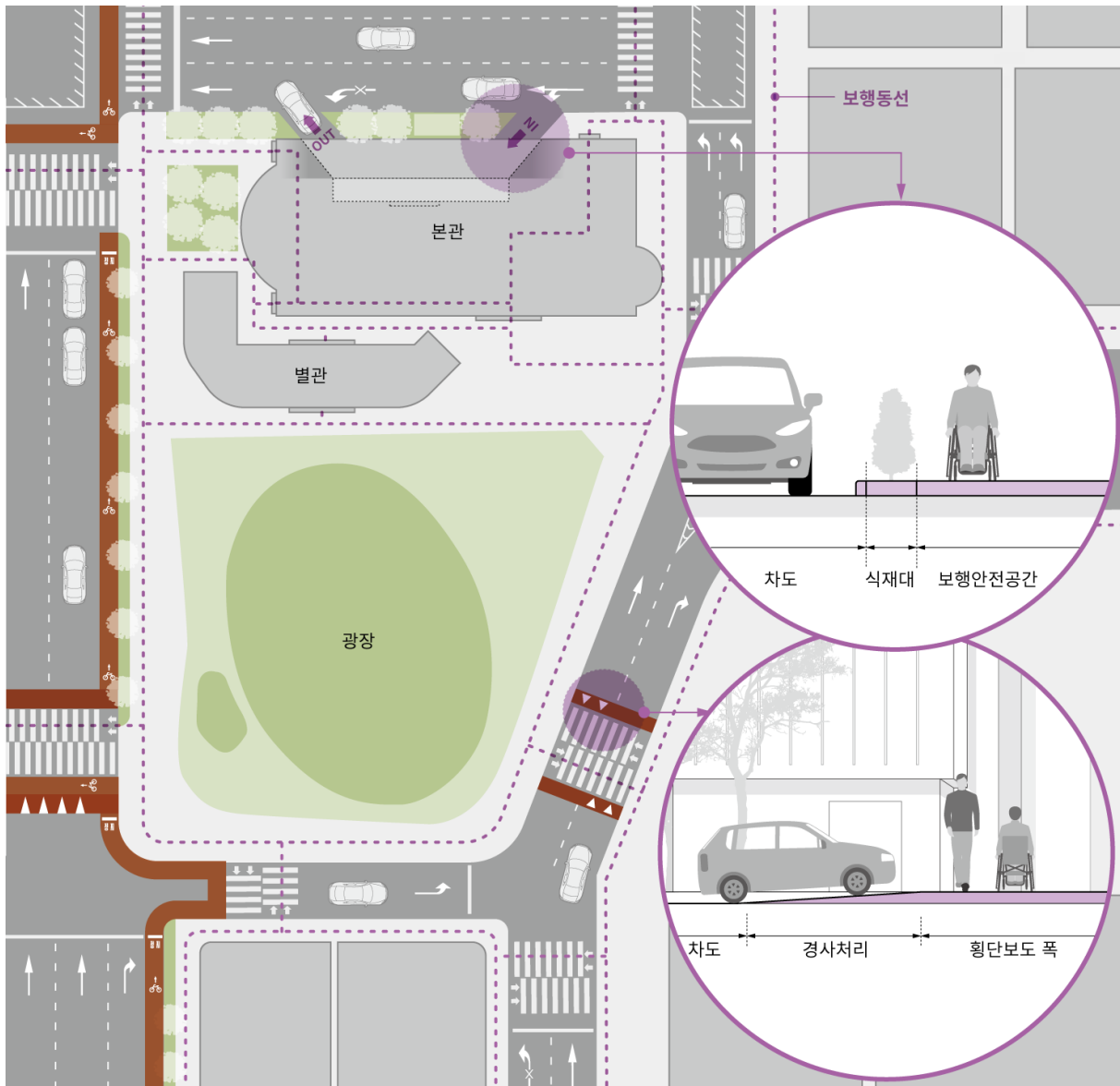
# (1) 보행 접근



## 보행안전공간 확보

대지 경계의 출입구에서부터 건물의 주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출입구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다.

-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보행자 전용 접근로를 계획한다.
- 보행자 출입공간과 차량 출입공간은 완전히 분리하여 보차 교행구간 없이 시설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차 교행구간(횡단보도 등) 발생 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의 보행자 우선의 계획을 적용한다.
- 지형상 불가피하게 부출입구로만 보행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보행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적절한 보행 동선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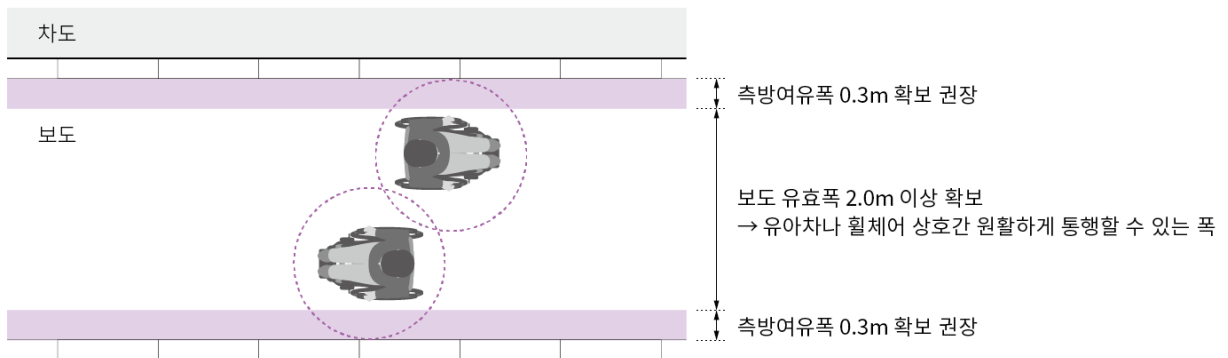
## 유효폭과 기울기

보행안전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혼자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교행이 가능한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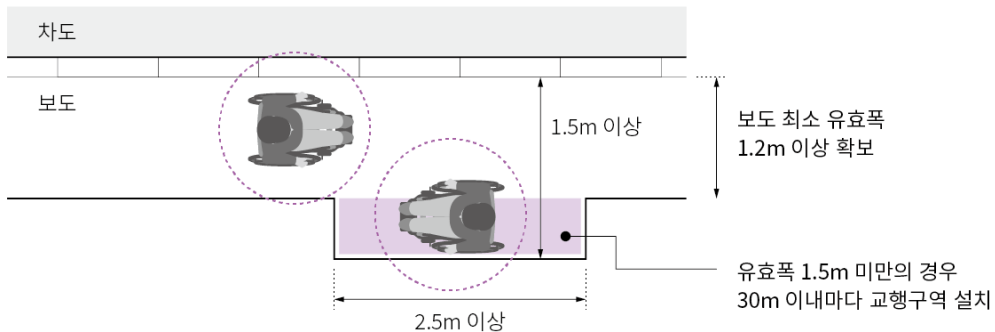
### 유효폭

- 시설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 1.5m 미만의 보도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50m 이내 및 결절(회전) 구간마다 교행 구역을 설치한다.
  - \* 휠체어의 통행을 위한 최소 폭 : 1.2m 이상
  - \* 휠체어와 보행자의 교행에 필요한 폭: 1.5m 이상
  - \* 휠체어 2대의 교행이 가능한 폭 : 2.0m 이상
  - \* 유효폭은 가로 시설물, 연석을 제외한 실제 유효폭을 의미함

#### 보도 유효폭 2.0m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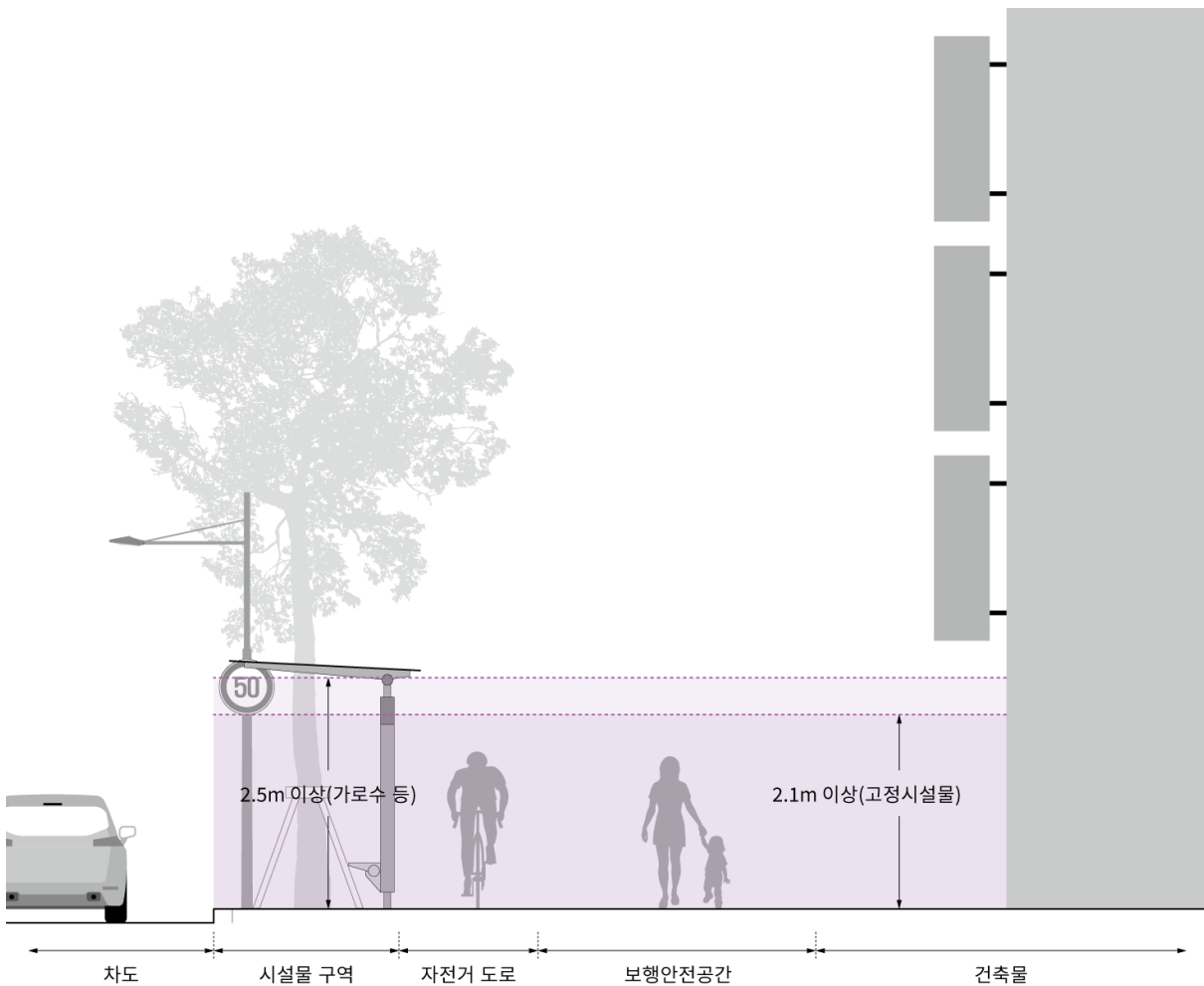
#### 보도 유효폭 1.5m 미만의 경우



### 수직안전높이

- 보행 시 충돌 예방을 위한 수직안전높이를 확보한다.
- 고정 시설물 등은 하단이 바닥에서 최소 2.1m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 등은 바닥에서 2.5m 이상 가지치기가 되도록 한다.
- 키가 큰 사람이나 우산을 쓰고 이동하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바닥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유효 안전높이 확보를 권장한다.
- 유효 안전높이의 확보는 보행안전 구역 및 인접구역(공개공지 및 시설물 구역)까지 포함하여 적용한다.

\* 접근로의 최소 수직안전높이는 2.1m 이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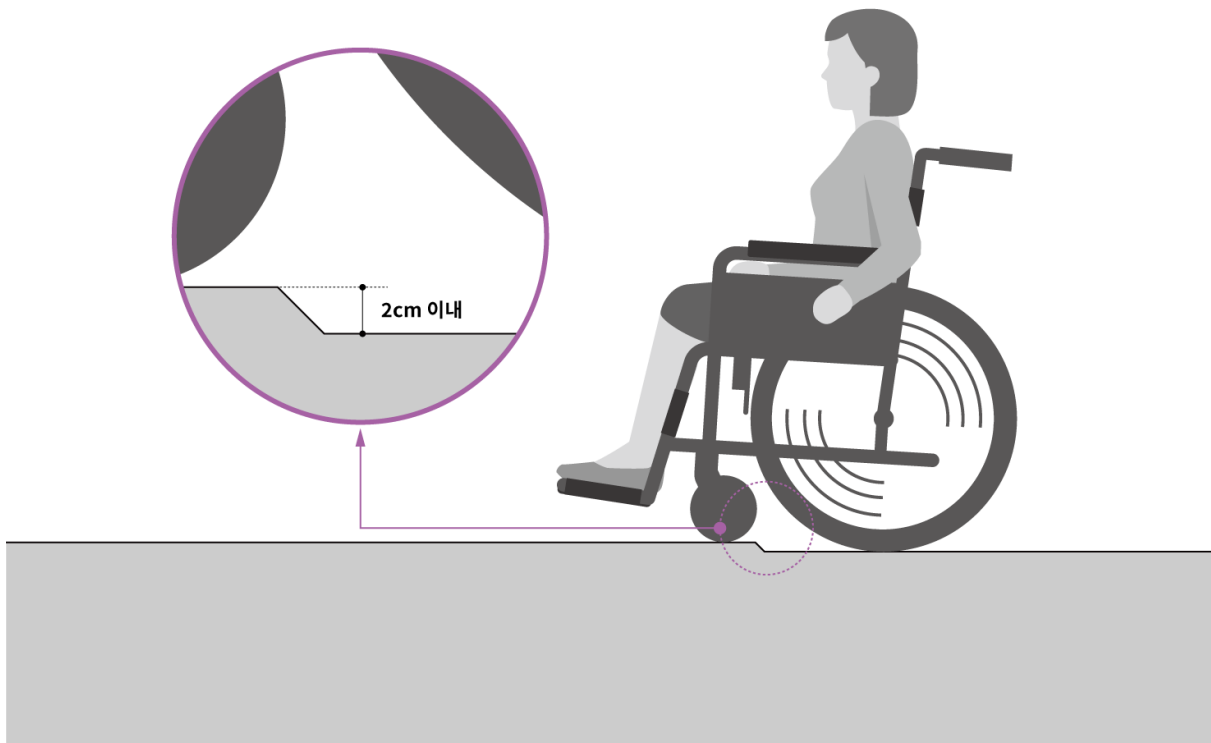
## 단차와 바닥 재질

보행안전공간은 무단차로 평탄하게 하며, 우천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고, 경사 구간인 경우에는 더 높은 미끄럼 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 단차

- 블록 포장, 각종 덮개, 재료 분리 구간과 보행안전공간 바닥과의 경계 등은 무단차로 처리한다.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될 경우에는 진행 방향으로 모따기 처리를 한다.

\* 단차 발생 시 최대 2cm 이내로 경사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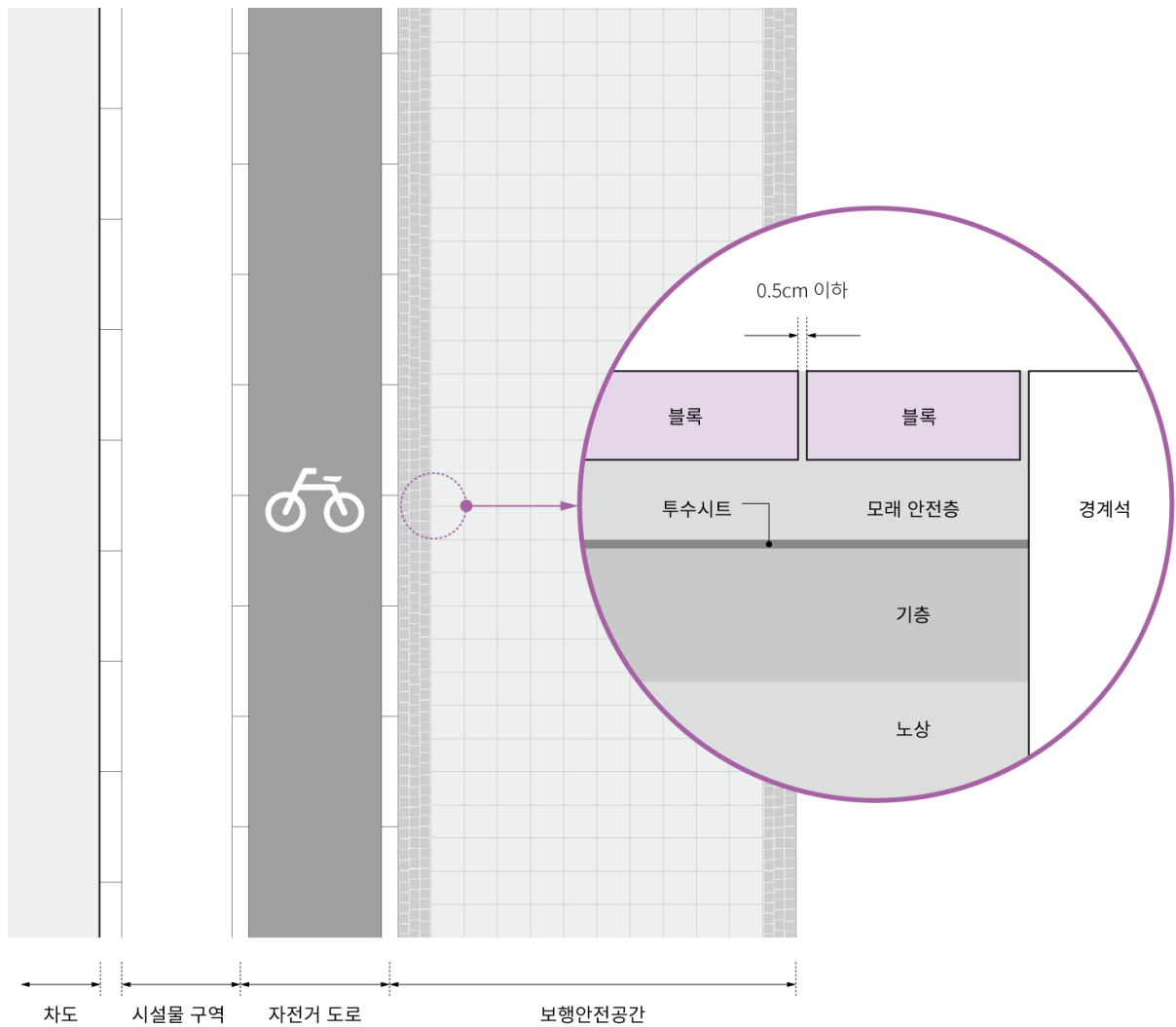


## 바닥 재질

- 연석, 경계석 등을 포함한 보행안전공간 바닥재는 우천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이 평탄하게 마감한다.
- 습윤으로 인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배수가 용이한 투수 블록 등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다.
- 타일, 블록 설치 시 줄눈 및 이음새 등의 간격은 0.5cm 이하로 한다.

\* 미끄럼 방지 성능 확보

- 성능(건조 시): 평지 기준 40BPN, 경사로 기준 45BPN 확보
- 성능(습윤 시): 평지 기준 45BPN, 경사로 기준 50BPN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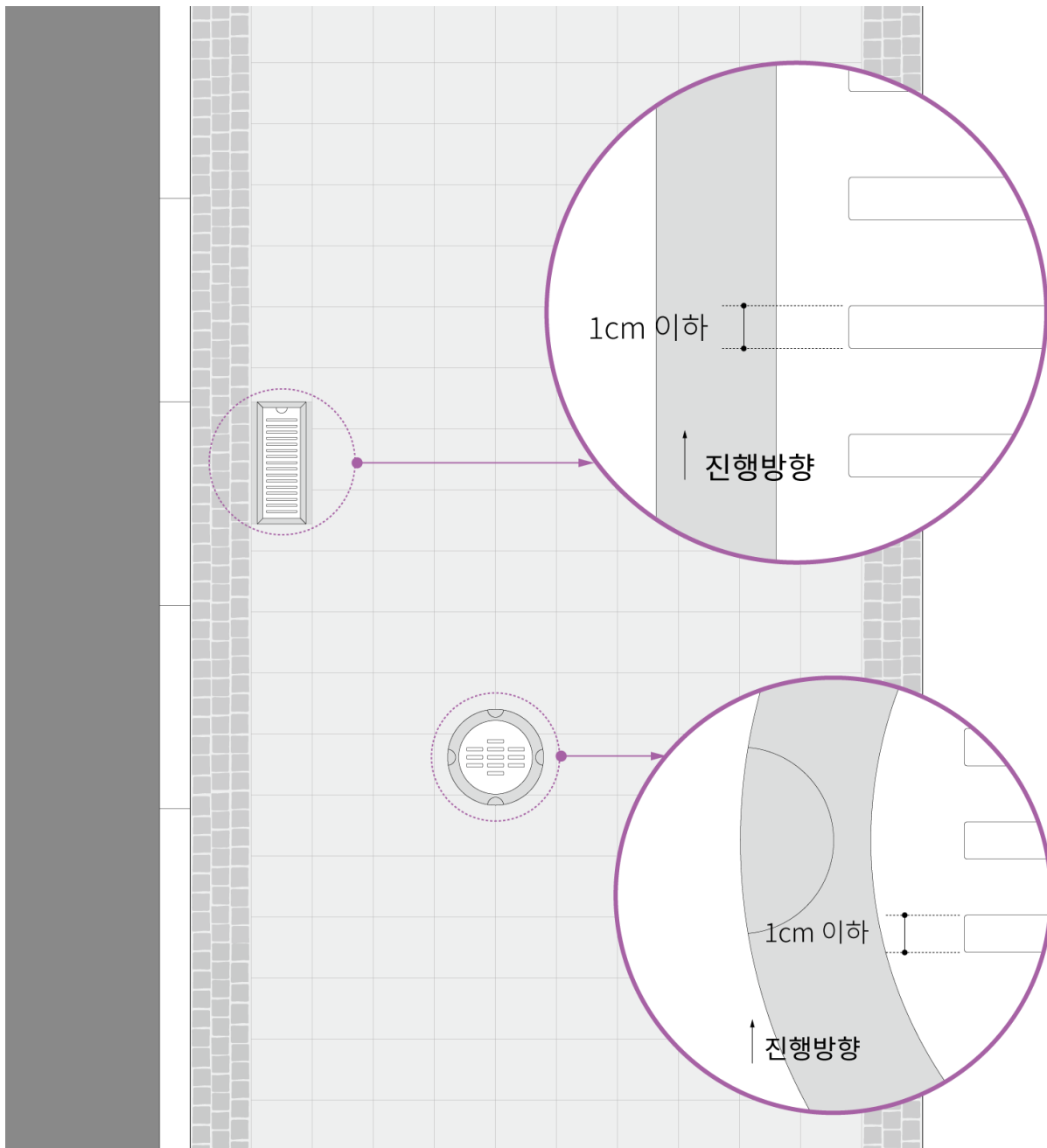


### 맨홀·배수구 덮개 등

- 배수로 덮개 등은 보행안전공간이 아닌 차도나 식재·시설물 구역 등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보행안전공간에 설치할 경우 배수구 틈새 간격을 1cm 이하로 하여 보도와 단차 없이 마감한다.
- 맨홀 덮개 등은 보도와 단차 없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며, 보도 재질과 유사한 재질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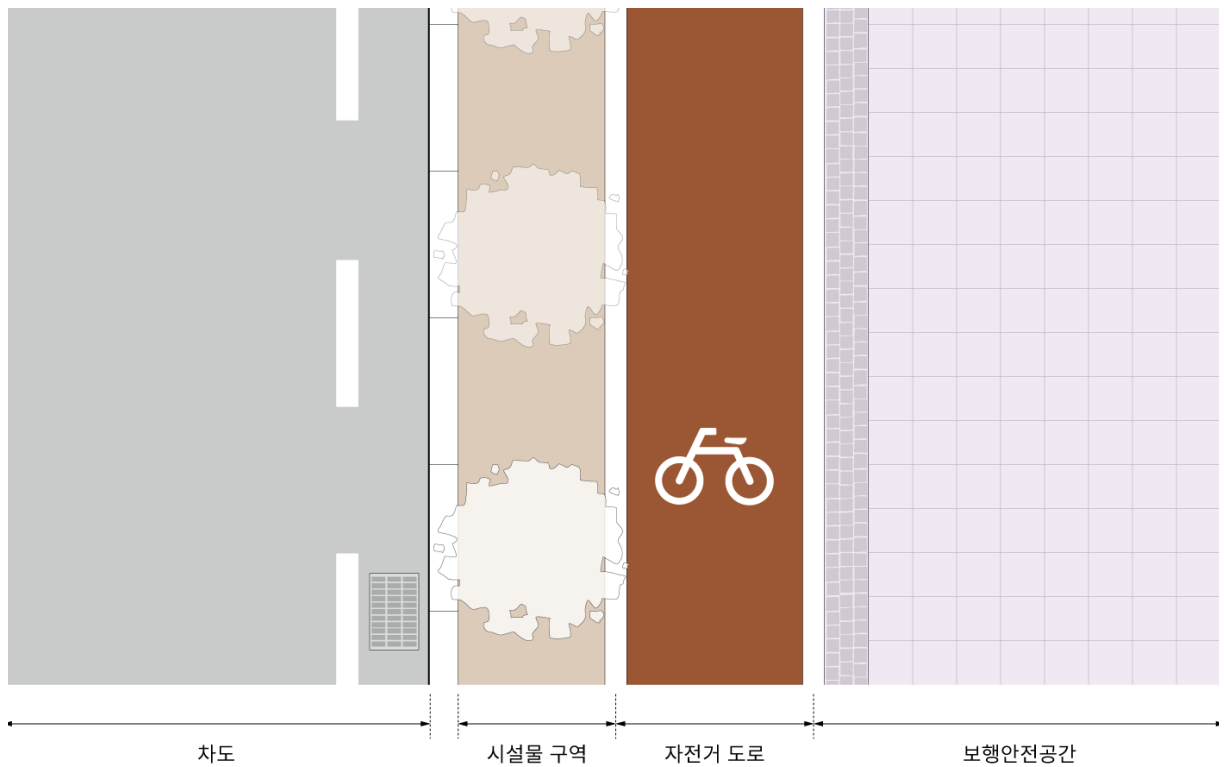
\* 덮개의 틈새, 그레이팅 간격 1cm 이하는 보도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

\*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하는 배수로 덮개의 틈새 간격은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설치



## 바닥재 색상 및 패턴

- 보행안전공간과 그 외 구역(시설물 및 장애물 구역, 자전거 도로, 보차 교행구간 등)은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이 차이 나도록 계획한다.
- 안전 관련 주의·경고를 목적으로 할 경우 마감재 색의 명도는 4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유도·안내 관련 배색을 할 경우 마감재 색의 명도는 3도 이상 차이가 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시·지각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조잡한 패턴의 사용은 지양한다.
  - \* 색상과 패턴 적용 시에는 현장의 조도, 음영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반영하도록 함.
  -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시에는 표면 휘도 LRV(Light Reflectance Value)가 최소 30 이상 차이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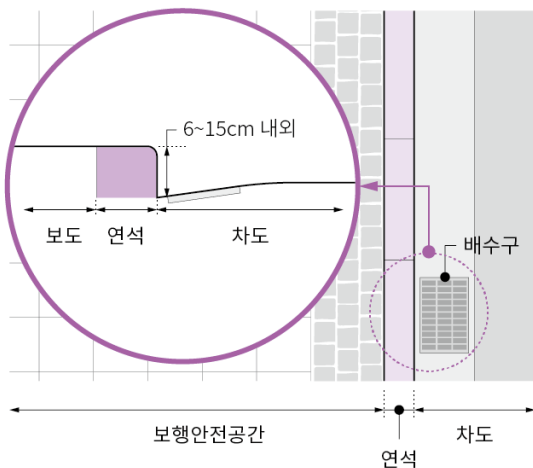


## 보차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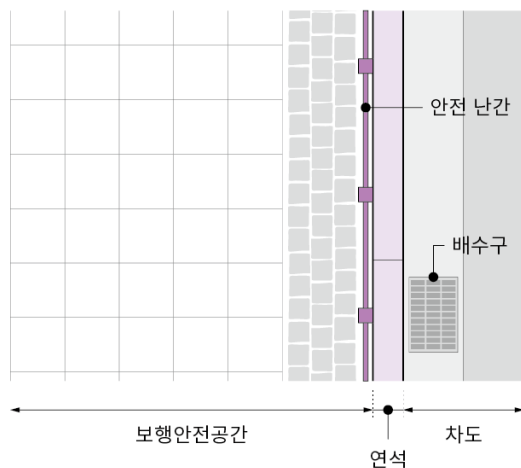
보도와 차도는 완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 상황에 따라 보도와 차도를 연접하여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시설물 구역, 안전 난간, 연석 등으로 물리적 구분을 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성을 확보한다.

- 보도와 차도에 시설물 구역, 안전 난간 등의 완충·분리 공간 설치를 통해 보행안전성을 확보한다.
  - 보도와 차도 구분을 위해 보도 연석(경계석)은 6~15cm 내외 높기로 설치하되, 이때 보도 높이는 연석(경계석)과 같게 설치한다.
  - 연석(경계석)의 질감과 색상은 접근로 등의 색상과 다르게 하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한다.
- \* 시설물 구역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본 지침 '보도-보도 상의 시설물-시설물 구역'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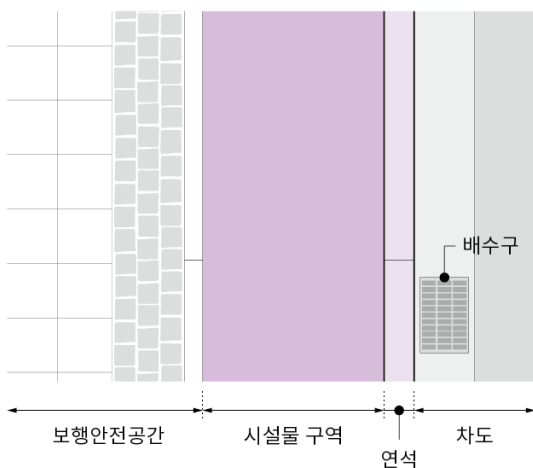
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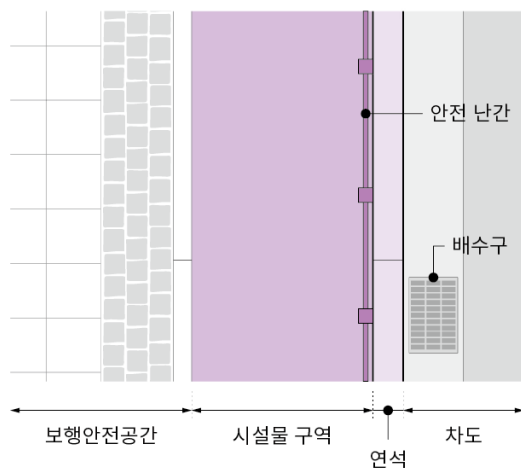
연석+안전 난간



연석+시설물 구역



연석+시설물 구역+안전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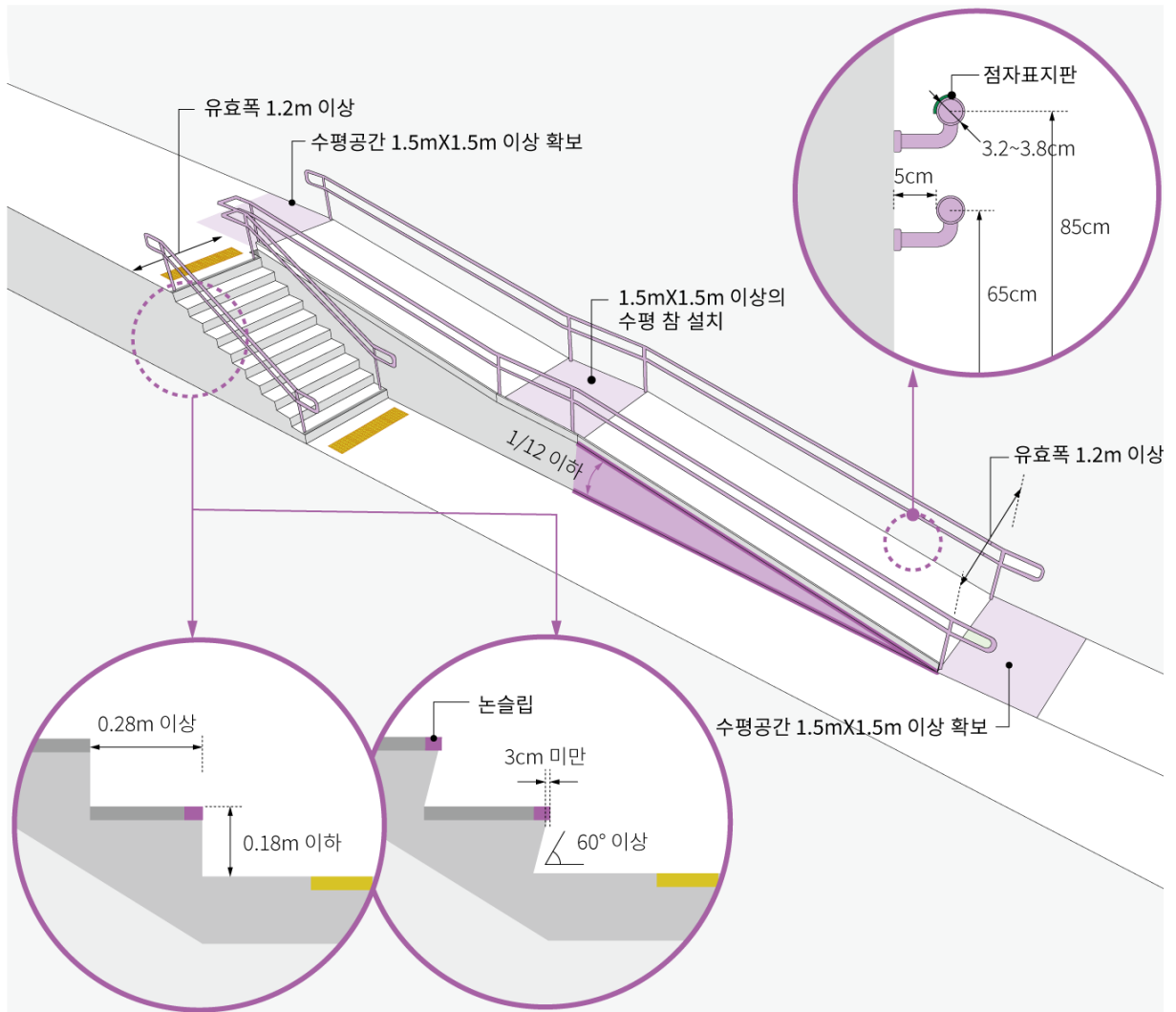
## 접근로 상의 높이 차이 제거

접근로 상에 단차가 존재할 경우,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하고 계단을 함께 설치하여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계단과 경사로

- 계단과 경사로는 유효폭 1.2m 이상, 시작과 끝 지점 1.5m 이상의 수평 공간을 확보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며, 경사로 길이 30m 이내마다 1.5m 이상의 수평참을 설치한다. 단, 높이 차이 1m 이상 등으로 지나치게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1/18 이하의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
- 계단과 경사로 양측에는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 계단과 경사로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본 지침 '공공건축물-내부 이동 공간-수직 이동 공간'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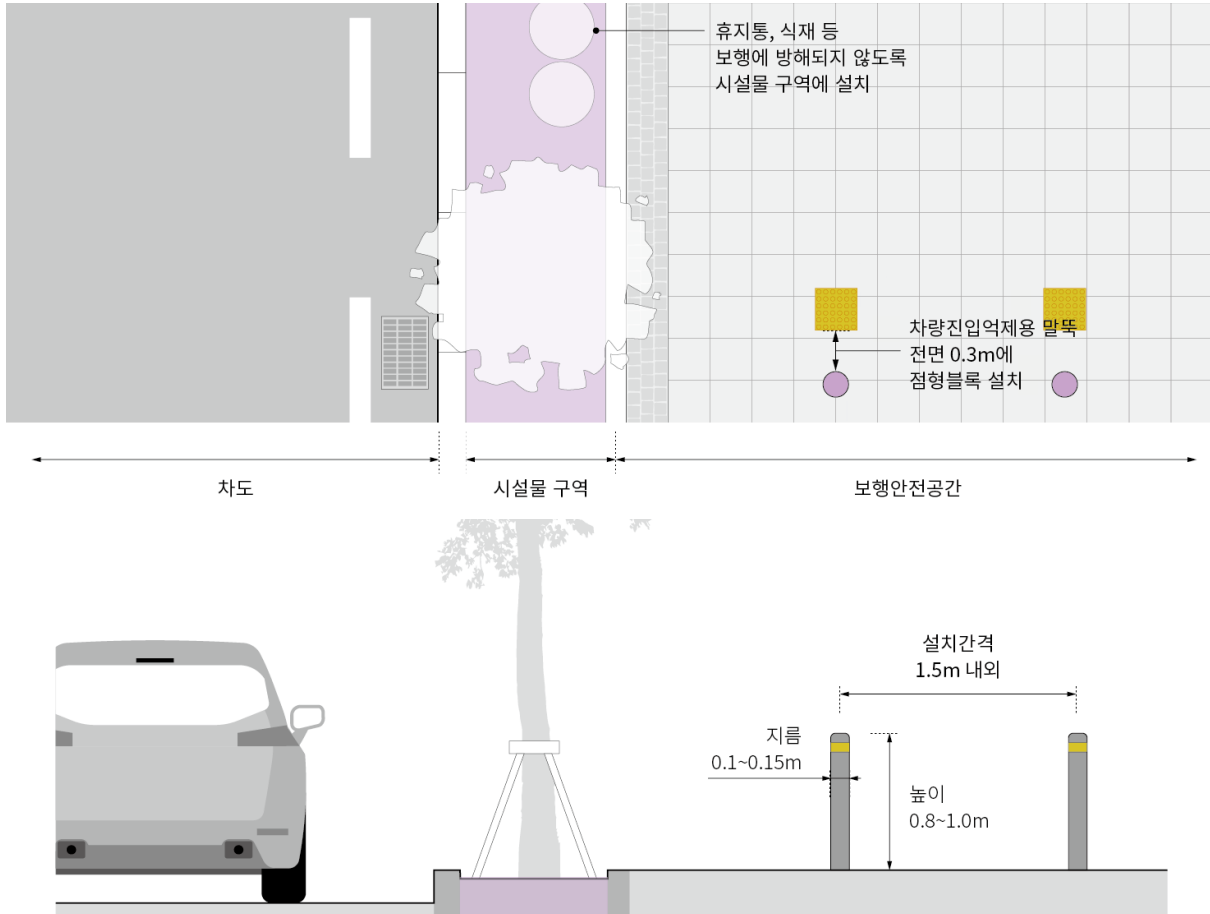


## 보행안전공간 내 보도 시설물

접근로 상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안전공간 이외의 공간에 설치하며,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보도 시설물 설치 방법

- 보도 시설물은 보행안전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접근로의 충분한 유효폭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구역을 조성하여 보도 시설물을 집적 설치한다.
- 보행안전공간이 재질, 색상 등으로 경계 구분 없이 설치된 경우 1.5m 이상의 연속되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여 설치한다.
- 접근로 상의 화분, 휴게의자, 자전거 보관대, 휴지통 등의 보도 시설물과 조경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설치한다.
- 접근로 상에 설치된 독립 지주, 독립 설치된 시설물은 접근 방지 및 충격 완화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접근로 상에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 등을 설치 시에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높이 0.8~1.0m, 지름 0.1~0.15m로 된 제품을 설치한다.
- 그 외 사항은 '보도-보도 상의 시설물 등-시설물 구역'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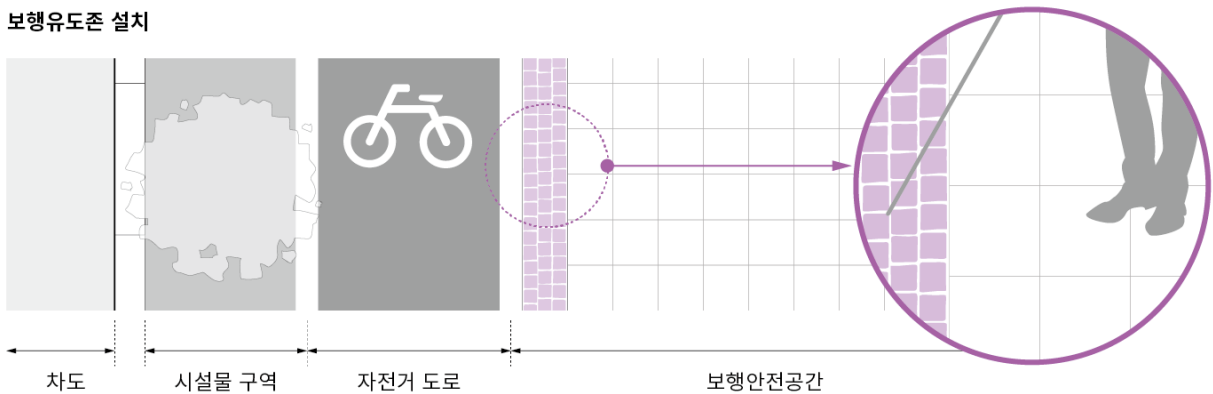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 유도

대지 경계에서부터 건물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을 유도하고, 보행안전공간에는 약시자 등이 보행자 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되 주변과 조화롭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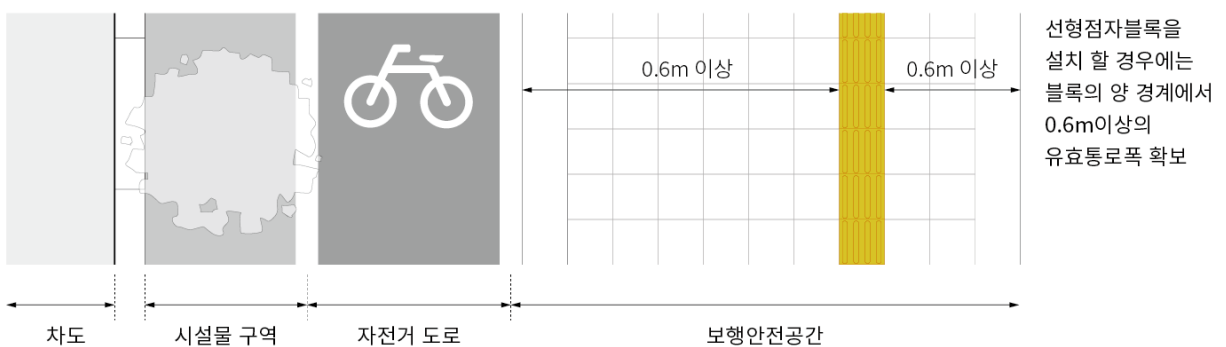
### 점자블록 등

- 접근로 상의 시각장애인 유도는 점자블록(점형/선형)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보행안전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유도용 재질을 사용한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보행 유도는 최단·최적 거리 유도를 원칙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는 최소화한다.
  - 건물 주출입구에 음성 유도 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 \* 접근로에 사감(촉각, 시각, 청각, 후각)을 통해 점자블록 기능 이상의 보행 유도 성능을 갖춘 보행안전공간이 확보된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의 검토협의 하에 선형 블록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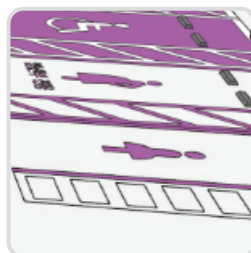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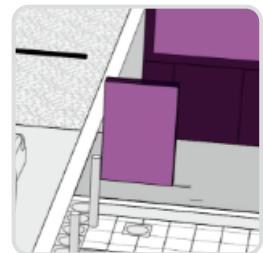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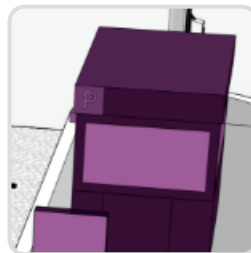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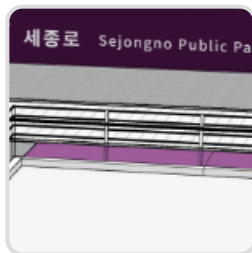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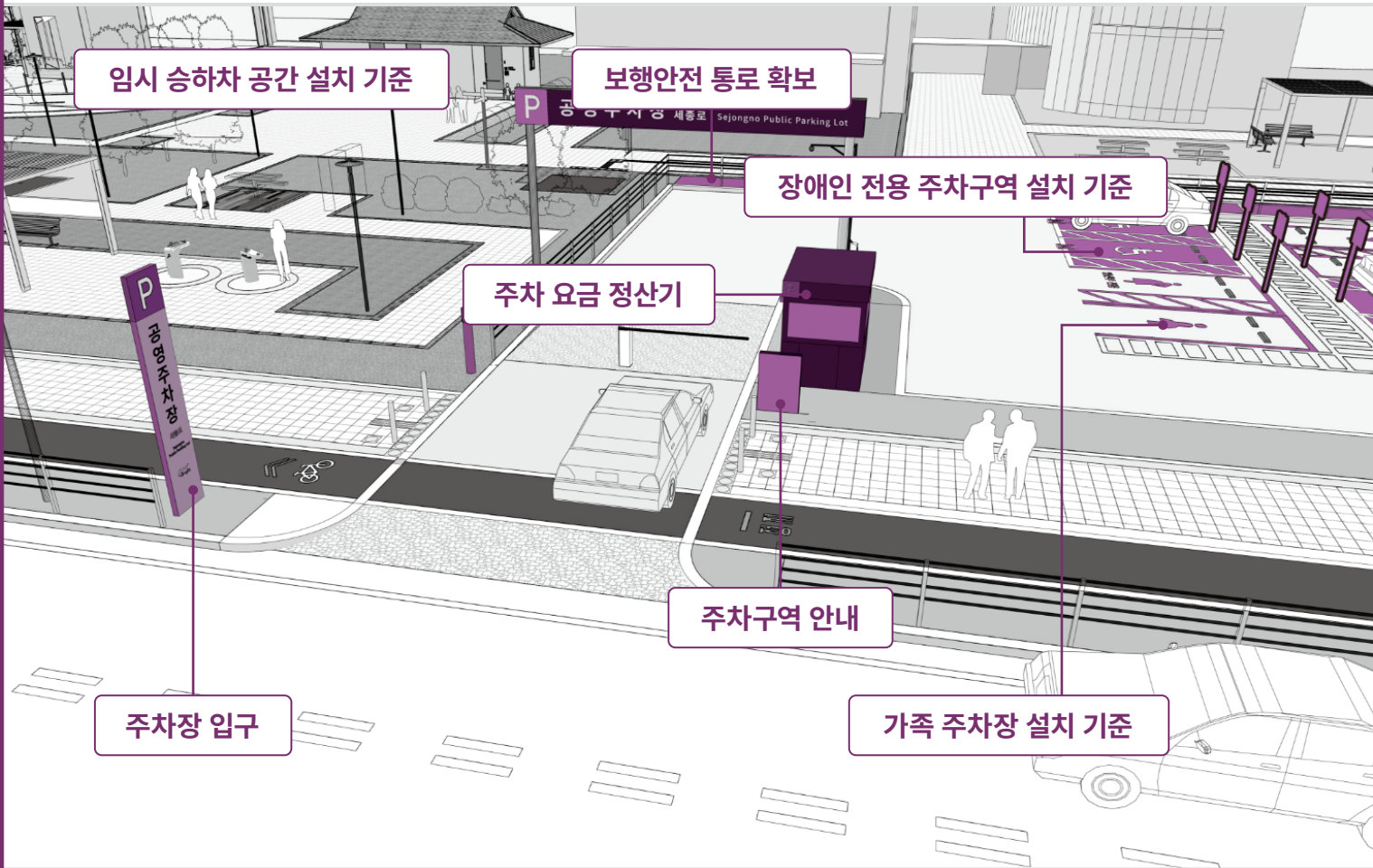
보행유도존 설치



선형점자블록 설치



## (2) 차량 접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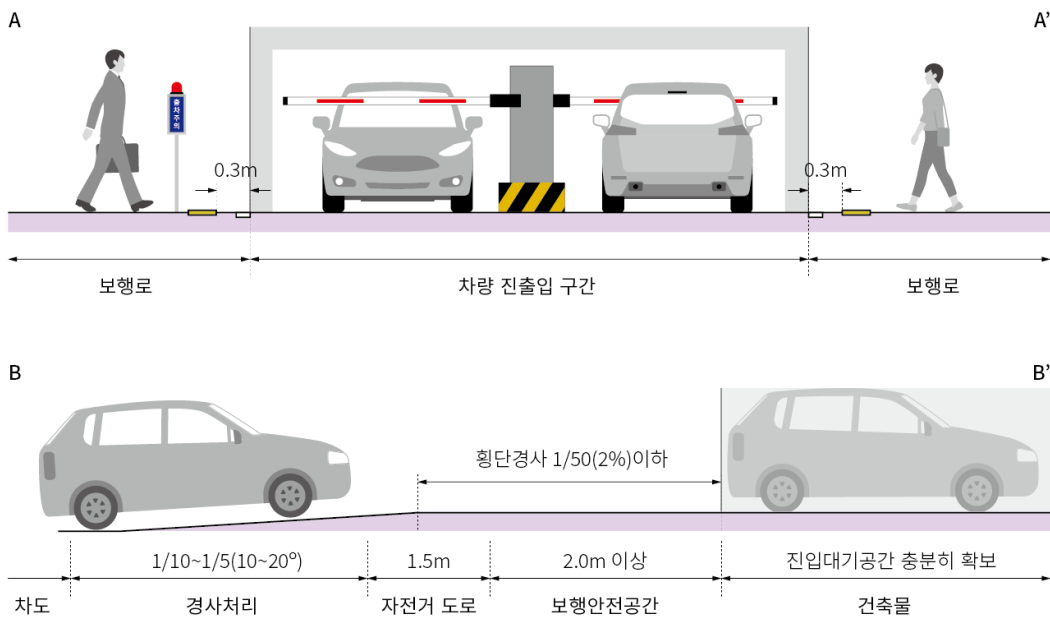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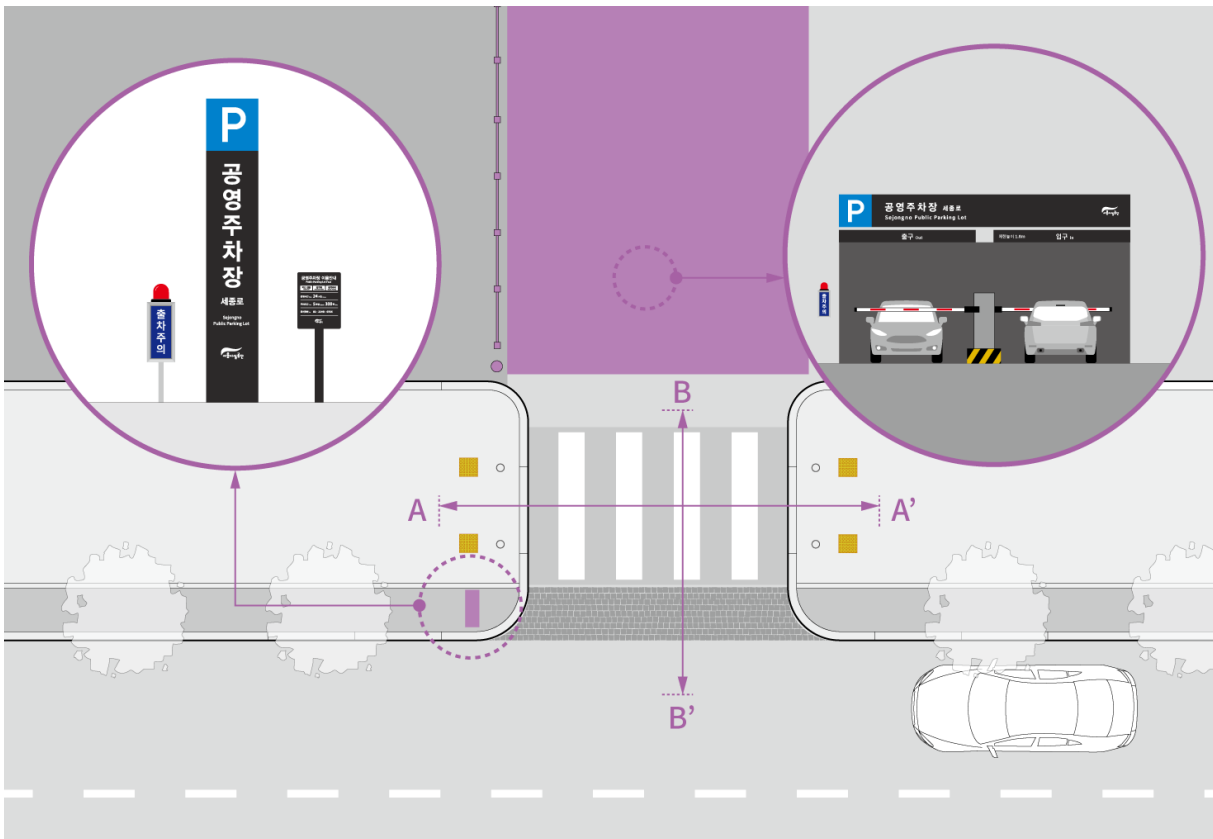
## 주차장 입구 안내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를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여 보행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외부 차도에서 시설의 주차장 입구를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주차장 입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주의·경고시설을 설치한다.

---

### 주차장 입구 안내

-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량 운전자가 차도에서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이용 시설명과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별도의 표지판이 없어도 주차장 입구임을 쉽게 인지 가능한 경우 안내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차량 진출입구 주변 충분한 밝기의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
- 입구의 보행자 횡단구간은 안내 표시나 식재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 출입구 전후에 보행자 주의를 위한 다음의 경고시설을 설치한다.
  - 바닥 마감 재질(색상 차이)의 변화 적용
  - 차량속도 저감시설(바닥 재질 변화,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전후 점등식 바닥 경고 표시, 서행 유도·정지선 표시 등)
  - 보행자가 차량 진출입 인지가 가능한 사각·후방확인용 거울
  - 차량 진출입 시에 보행자가 인지 가능한 음성·음향 및 시각 경보시설



### 설치 위치

- 2면 이상의 차로 및 보도에 대지가 면한 경우 차량 진출입구는 보행량이 적은 지점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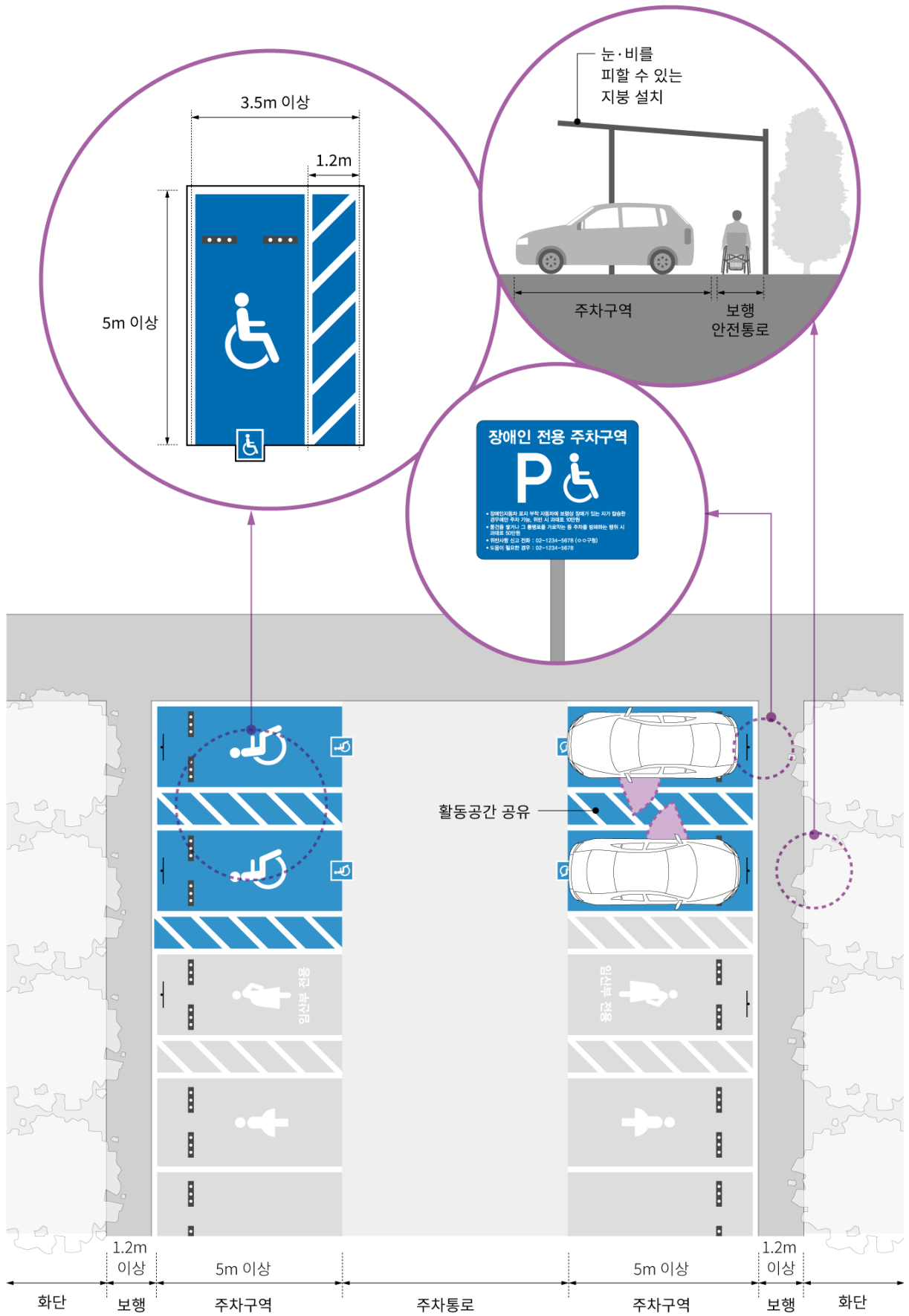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시설의 주요 출입구별, 동별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하여 설치한다.

- 주차구역은 법규정의 설치 비율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설의 출입구가 분산되어 있거나 하나의 주차장에 시설 출입구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하여 1면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 전기차 충전기 이용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소 중 1면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조성하고, 충전기 전후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지붕 등을 설치하여, 우천 시 등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대규모 옥외주차장에는 수관 폭이 넓은 수종을 식재하여 그늘 제공을 권장한다.
- 주차구역을 2면 이상 설치할 경우 연속하여 인접 설치하여 활동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폭 3.5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활동공간 1.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을 표시한다.
- 주차구역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기울기는 종·횡단 1/50 이하로 한다.
- 주차구역에는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리자 호출·도움 벨 설치를 권장한다.
- 주차구역 바닥 및 입식 안내 표시기준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한다.
- 직원용(휠체어 사용자) 전용 주차 공간은 방문자용을 구분하여 별도로 확보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및 입식 안내 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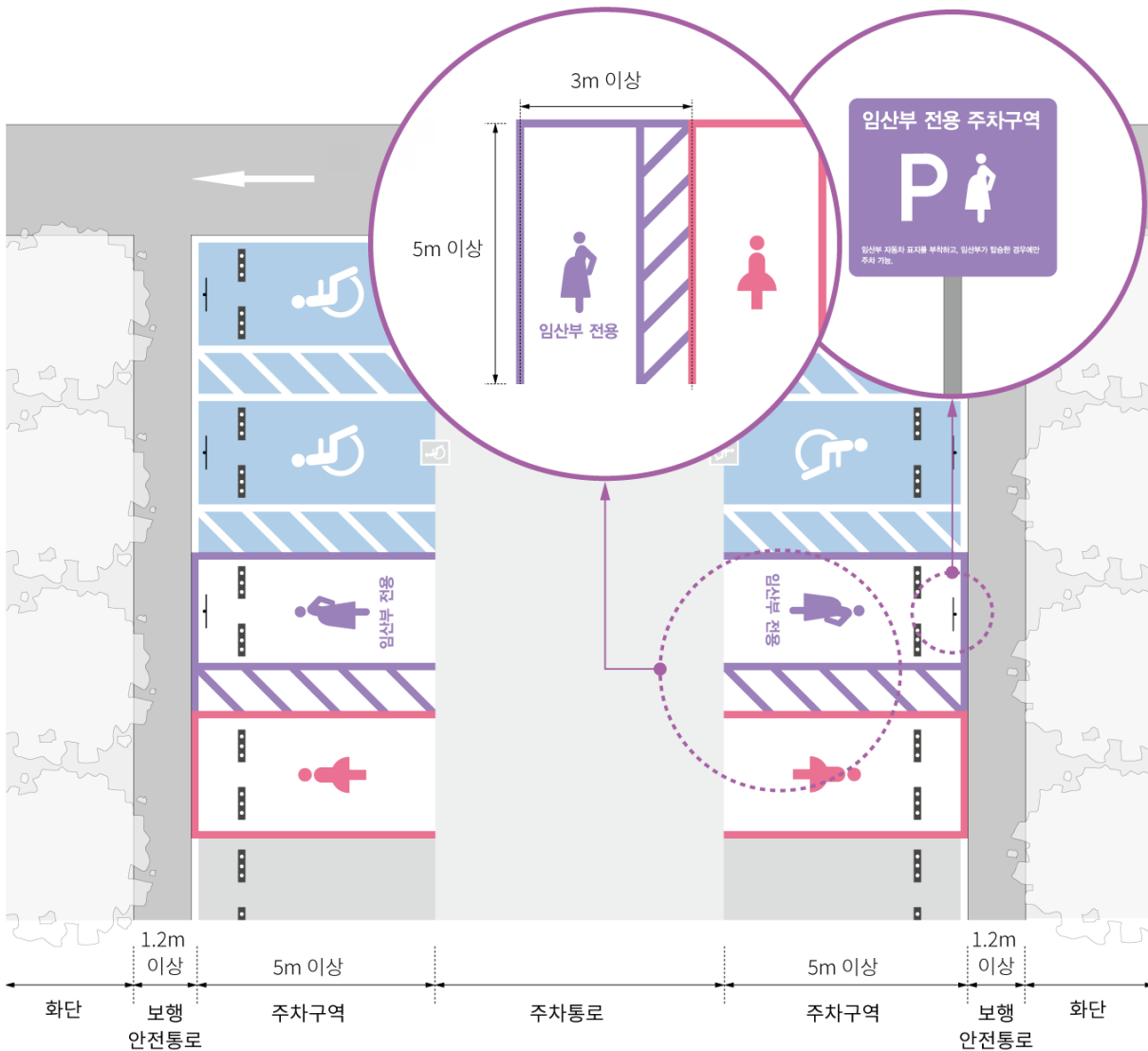




## 가족 주차장 설치 기준

유아차 사용자, 임산부 등을 배려한 가족 주차장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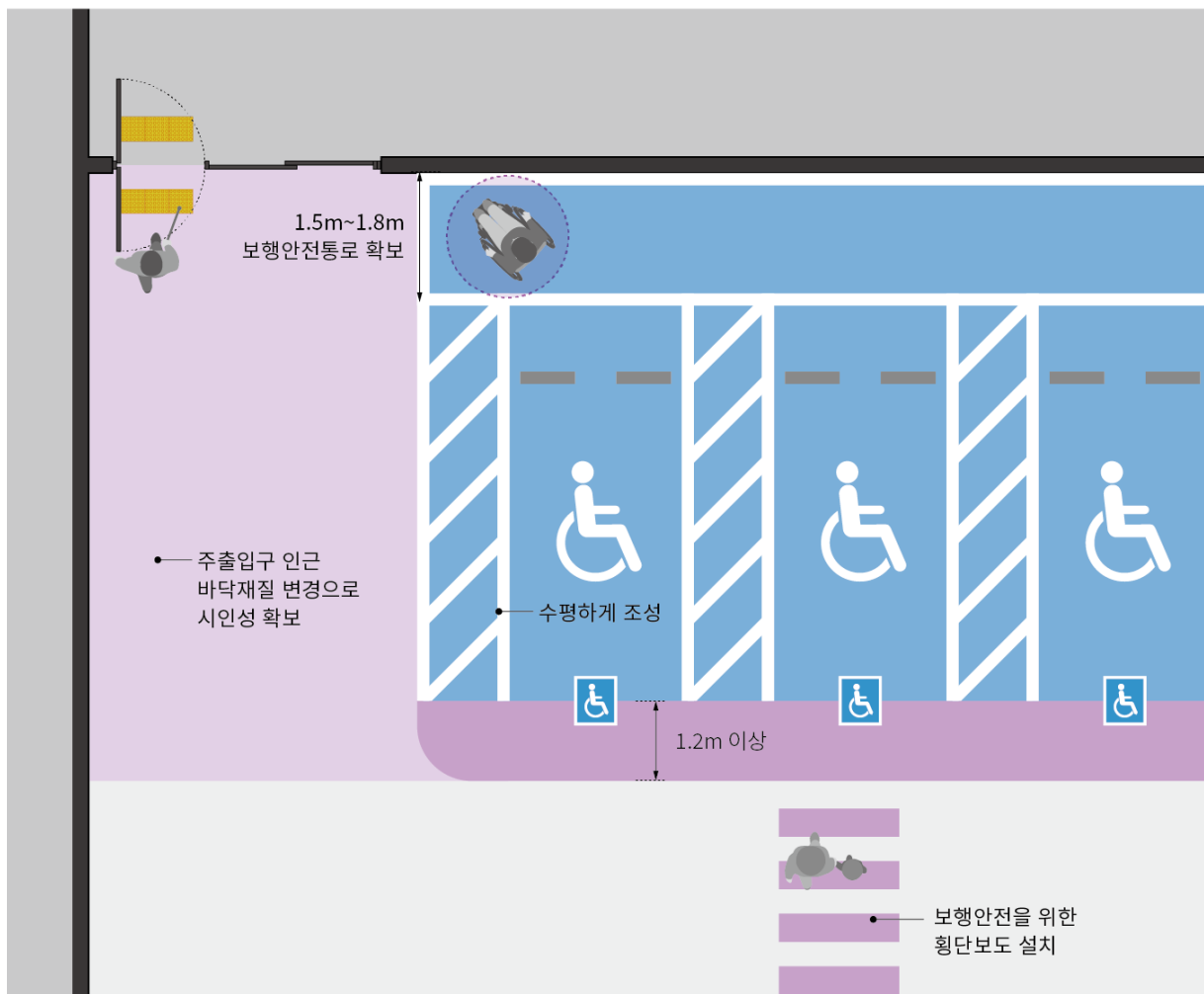
- 가족 주차장 구역은 유아차 사용자, 임산부, 지팡이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폭 3m, 길이 5m 이상을 확보한다.
- 공원의 출입구 또는 공원 내 보행안전공간까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보행안전 통로로 주출입구 또는 보도까지 연결한다.
- 바닥과 입식 안내를 활용하여 주차구역에 대한 적절한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 보행안전 통로 확보

주차구역의 시설 주출입구 또는 이에 연결되는 보도까지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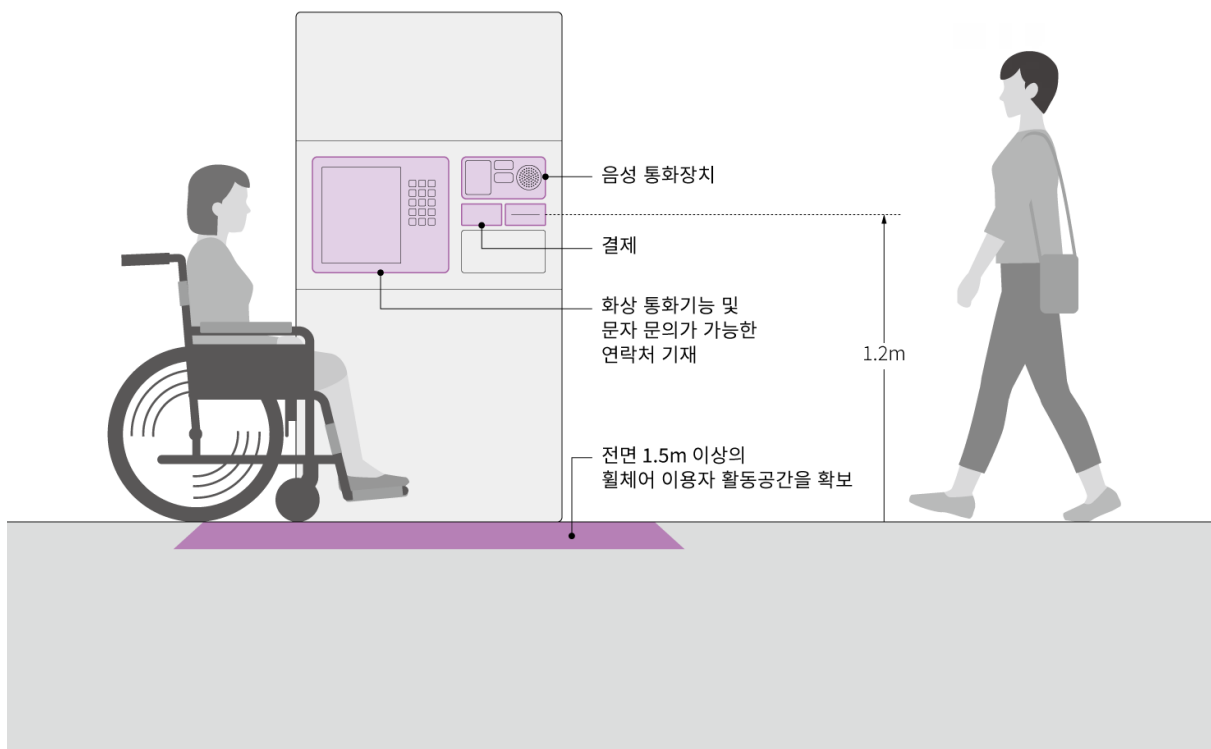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시설의 주출입구 또는 보도까지 차량 교행 없이 연결되도록 보행안전 통로를 확보한다.
- 주차장 내 보행안전 통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단 보행안전 통로와 보도 공간 단차 발생 시에 연결 부위는 1/12 이하로 처리하며, 경사 구간 전후면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 차도와 구분되는 재질/색상으로 마감(명도 차이 3도 이상 권장)
  - 차량 교행구간에는 보행자 횡단구간 표시(고원식 적용, 횡단보도 노면 표시 등)
  - 태양광 발전 관련 시설, 가로수, 전기·통신 관련 지주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 주차 요금 정산기

주차 요금 정산소, 무인 정산기 등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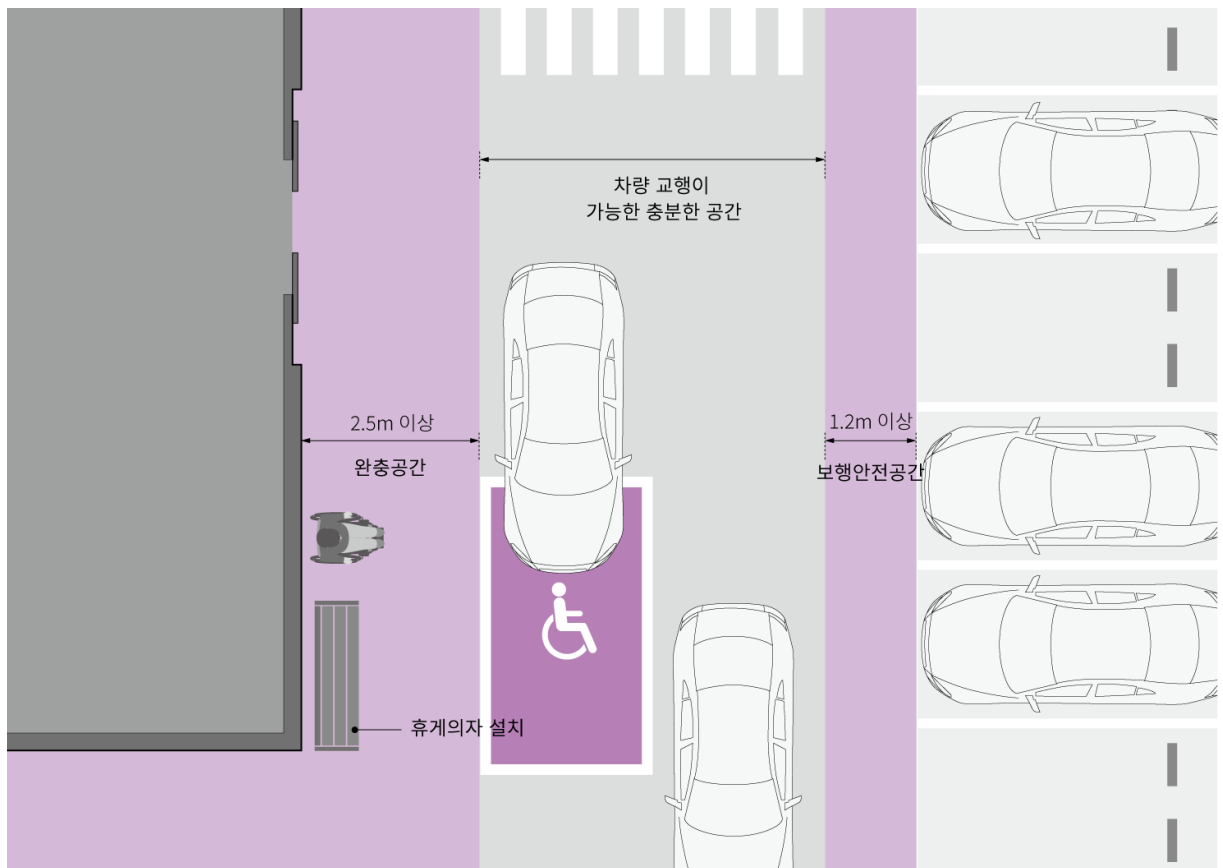
- 무인 정산기는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전면 1.5m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누구나 쉽게 설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정산기 전면 바닥 재질 변화 등의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야간 이용 시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주변 조도를 확보한다.
- 관리 직원 호출 및 통화 설비를 설치하되, 카메라, 통화 장치, 조작 설비 등은 휠체어 사용자, 비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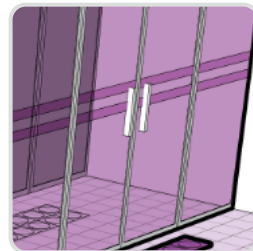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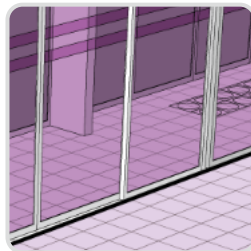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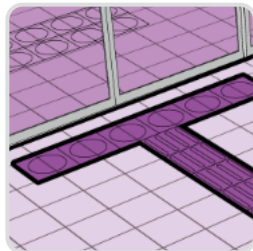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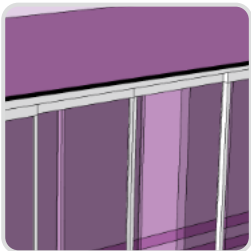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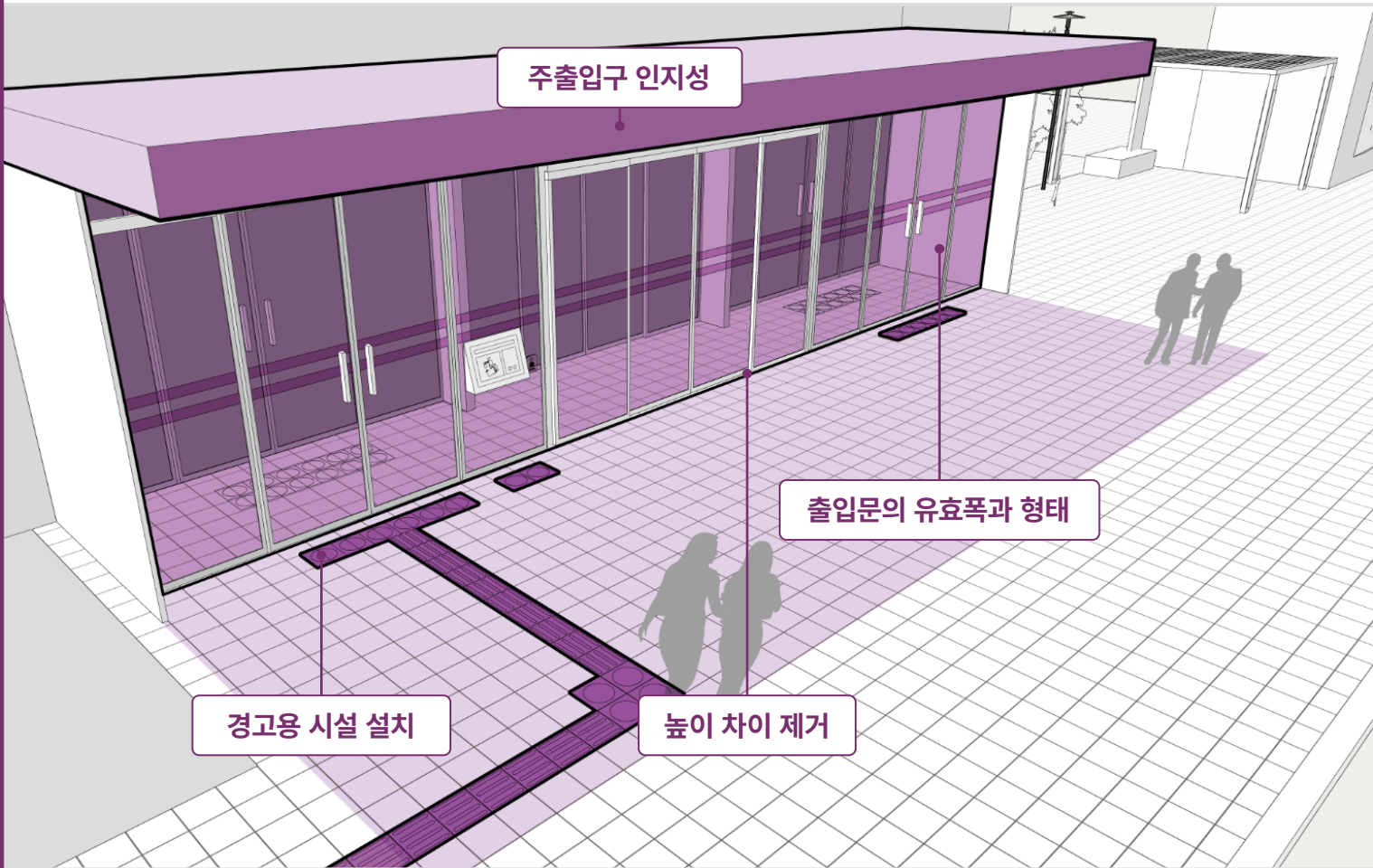
## 임시 승하차 공간 설치 기준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보행안전공간과 연결되는 승하차 공간을 설치한다.

- 승하차 지점 및 대기공간에 지봉을 설치하고, 시설 출입구(문) 사이에 2.5m 이상의 적절한 완충 공간을 설치한다.
- 대기공간에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벤치 등의 휴게의자를 설치한다.
- 소형 버스의 이용을 고려하며, 차량의 정차 및 대기를 고려한 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한다.
- 주출입구에 승하차 지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차장 인근에 승하차 공간을 설치하고 보행안전 통로로 단차 없이 수평 연결한다.



### (3) 주출입구(문)



## 주출입구 인지성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주출입구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형태적,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계획한다.

- 대지 출입구, 주 접근로, 주차장 등에서 주출입구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위치 및 형태를 계획한다.
- 야간에 출입구의 형태 또는 시설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한다. 단, 주변에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높은 조도 확보는 지양한다.



## 높이 차이 제거

주출입구는 보행 접근로에서 무단차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입구 전후면에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출입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하고 수평 활동공간 1.2m 이상을 확보한다. (중·횡단 기울기 1/25 이하)
- 수평 처리로 인한 물 넘침 방지를 위해 우천 시 배수 계획을 수립한다. (수평 활동공간 영역만큼의 캐노피 설치, 출입문 전면 배수 설비 설치 등)
- 보행 접근로와 출입구 전면 활동공간은 무단차 처리한다.
- 불가피하게 건축물 진입층 높이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수직 이동시설의 계단과 경사로 기준을 준수하여 수직 이동시설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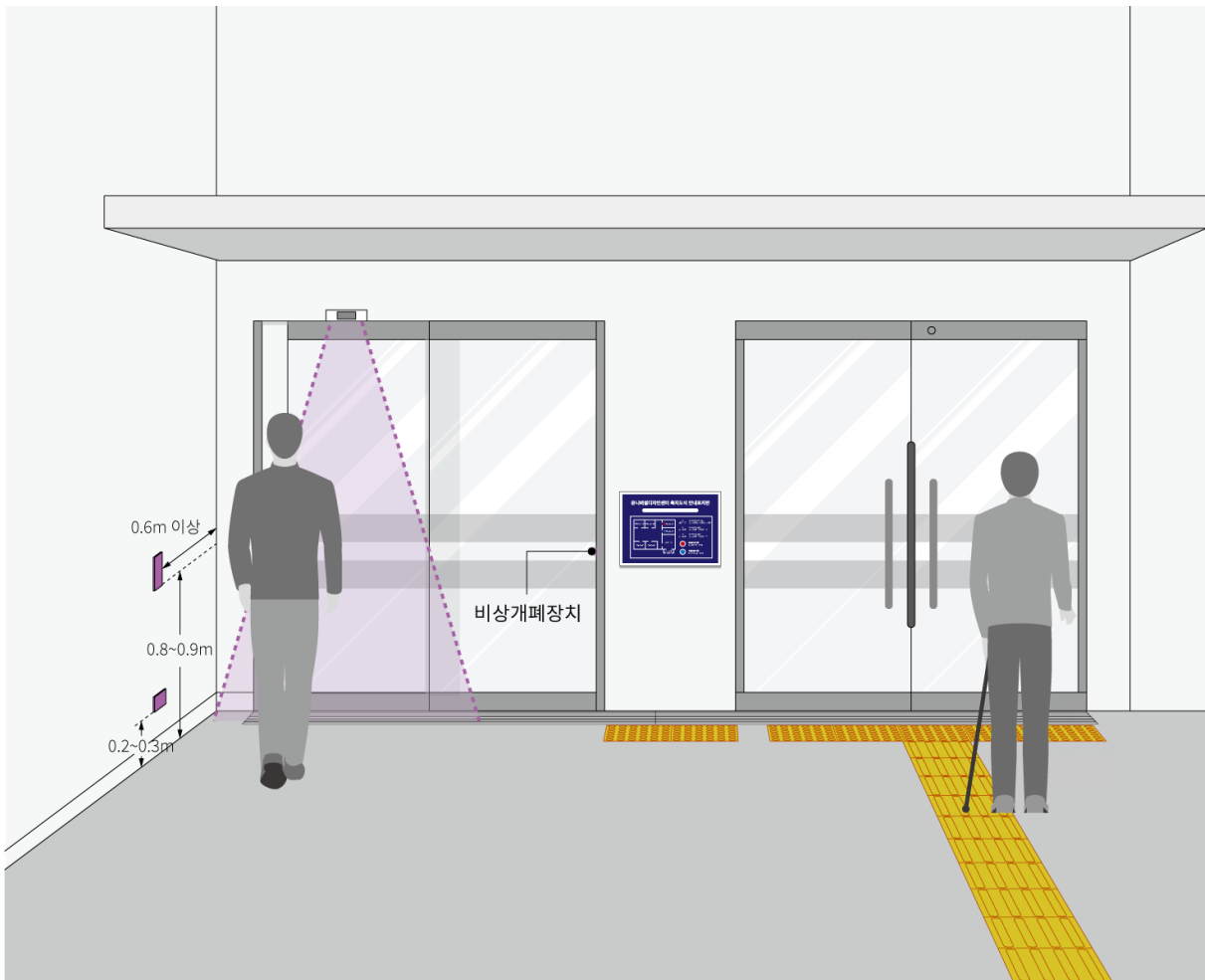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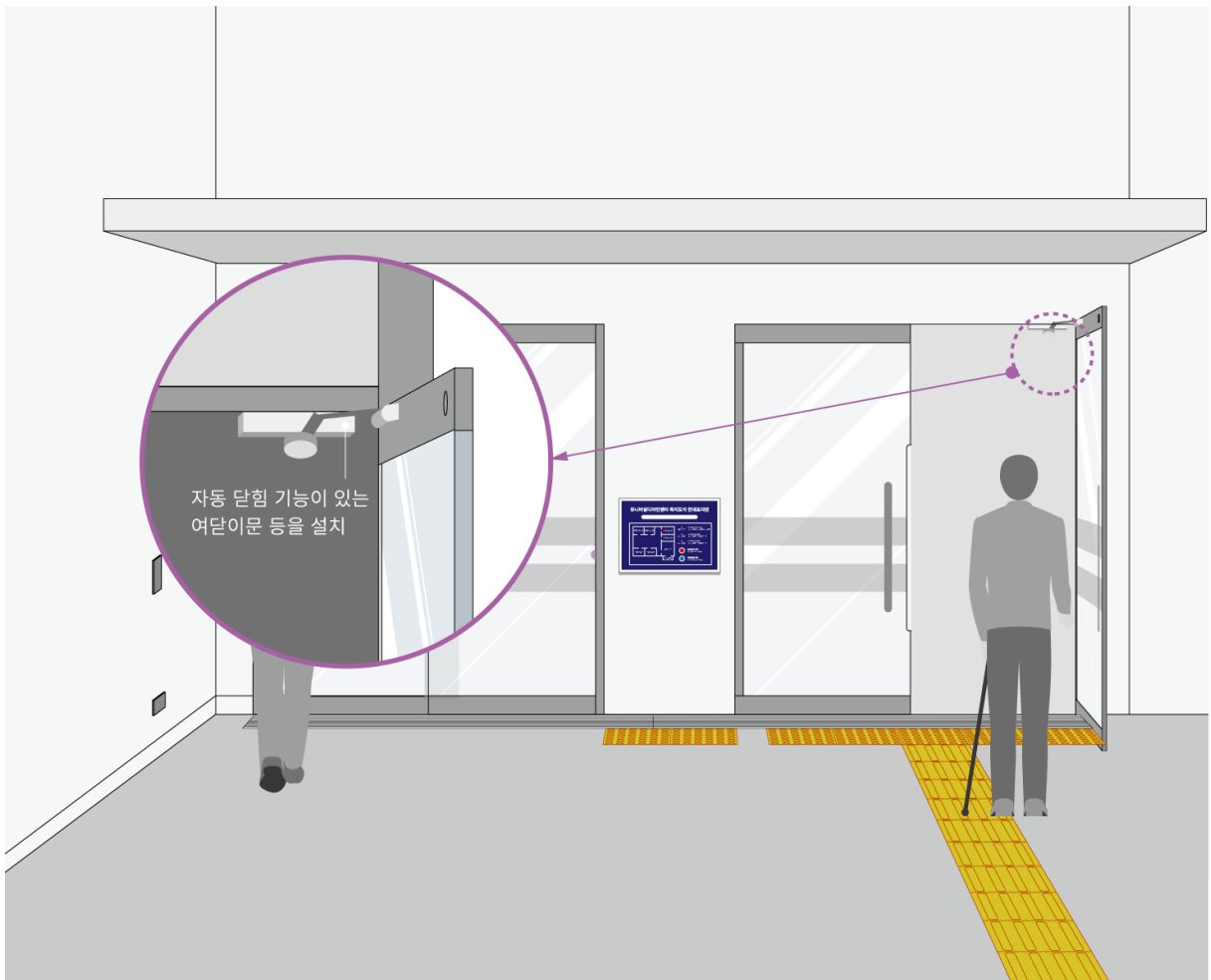
## 자동문 설치 기준

- 출입문의 형태가 자동문인 경우 다음을 준수한다.
  - 넓은 범위를 감지 할 수 있는 센서형 자동문 설치
  - 문의 개방 시간을 충분히 확보
  - 버튼 조작형인 경우 바닥에서 높이 0.9m에 설치하며, 벽 모서리에서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수동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문 등과 병행하여 설치
  - 불가피하게 자동문을 단독 설치할 경우에는 도움 호출 벨 설치 및 비상시 수동 개폐 가능하도록 설치



### 여닫이, 미닫이문 등의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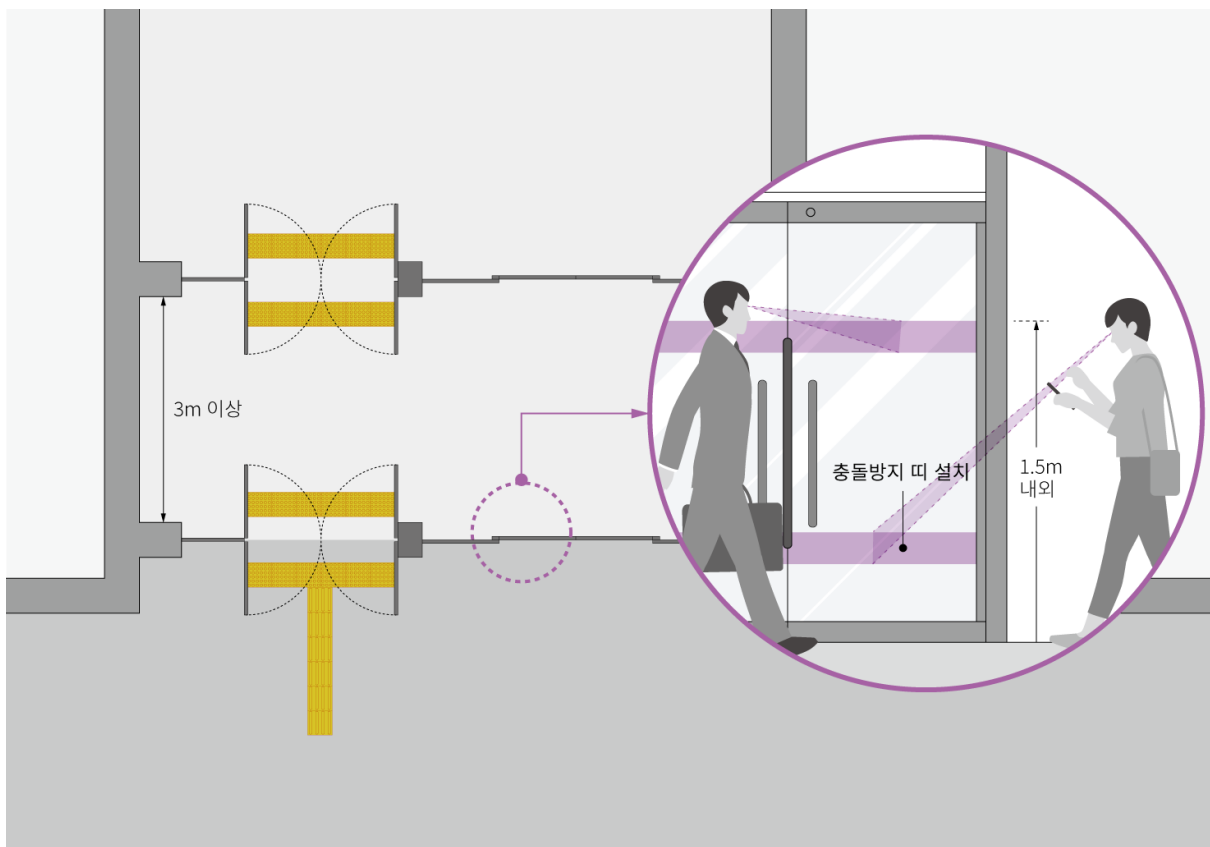
- 출입문의 형태가 여닫이문인 경우 다음을 준수한다.
  - 문 닫힘 시간이 3초 이상 확보된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 여닫이문 등을 설치
  - 문을 열고 닫을 때에 적은 힘으로 조작 가능한 형태로 설치  
(손잡이의 회전, 문의 열고 닫는데 소요되는 힘 고려)
- 출입문의 형태가 미닫이문인 경우 다음을 준수한다.
  -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 설치 금지
  - 문을 열고 닫을 때에 적은 힘으로 조작 가능한 형태로 설치  
(손잡이의 회전, 문의 열고 닫는데 소요되는 힘 고려)
- 회전문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권장하지 않으나,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속도 조절 장치가 내장되거나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형태인 경우에는 설치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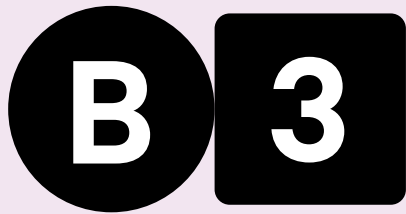


## 경고용 시설 설치

출입문 전후에는 부주의한 사람, 약시자, 시각장애인 등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도·경고시설을 설치한다.

- 출입문 전후 0.3m에 출입문 유효폭만큼의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촉지도식 안내판 등 보행 유도는 안내시설 항목을 참고한다.
- 출입문의 재질이 투명 유리문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돌 방지용 경고시설을 설치한다.
  - 바닥에서 0.5m, 1.5m 높이에 폭 10cm 이상의 충돌 방지 띠 등을 설치
  - 유리문의 배경 및 밝기 차이 등 주변 여건 변화에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두운색과 밝은색이 혼합된 디자인으로 설치
- 기존 시설 등 출입구(문) 전면 1.2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가 어렵고, 출입문이 차도나 주차장과 면한 경우에는 차도 경계부에 안전 난간 설치를 권장한다. 이때 안전 난간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품으로 설치한다.





## 내부 이동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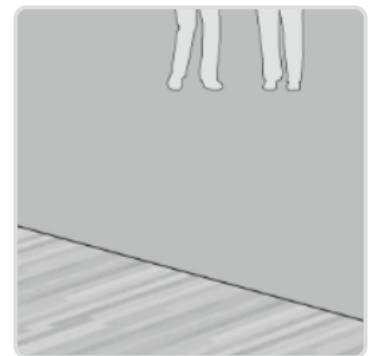
- |     |          |       |
|-----|----------|-------|
| (1) | 로비와 홀    | 2 3 1 |
| (2) | 수평 이동 공간 | 2 3 3 |
| (3) | 수직 이동 공간 | 2 4 1 |

### 계획원칙

건축물 내부 공간은 목적지로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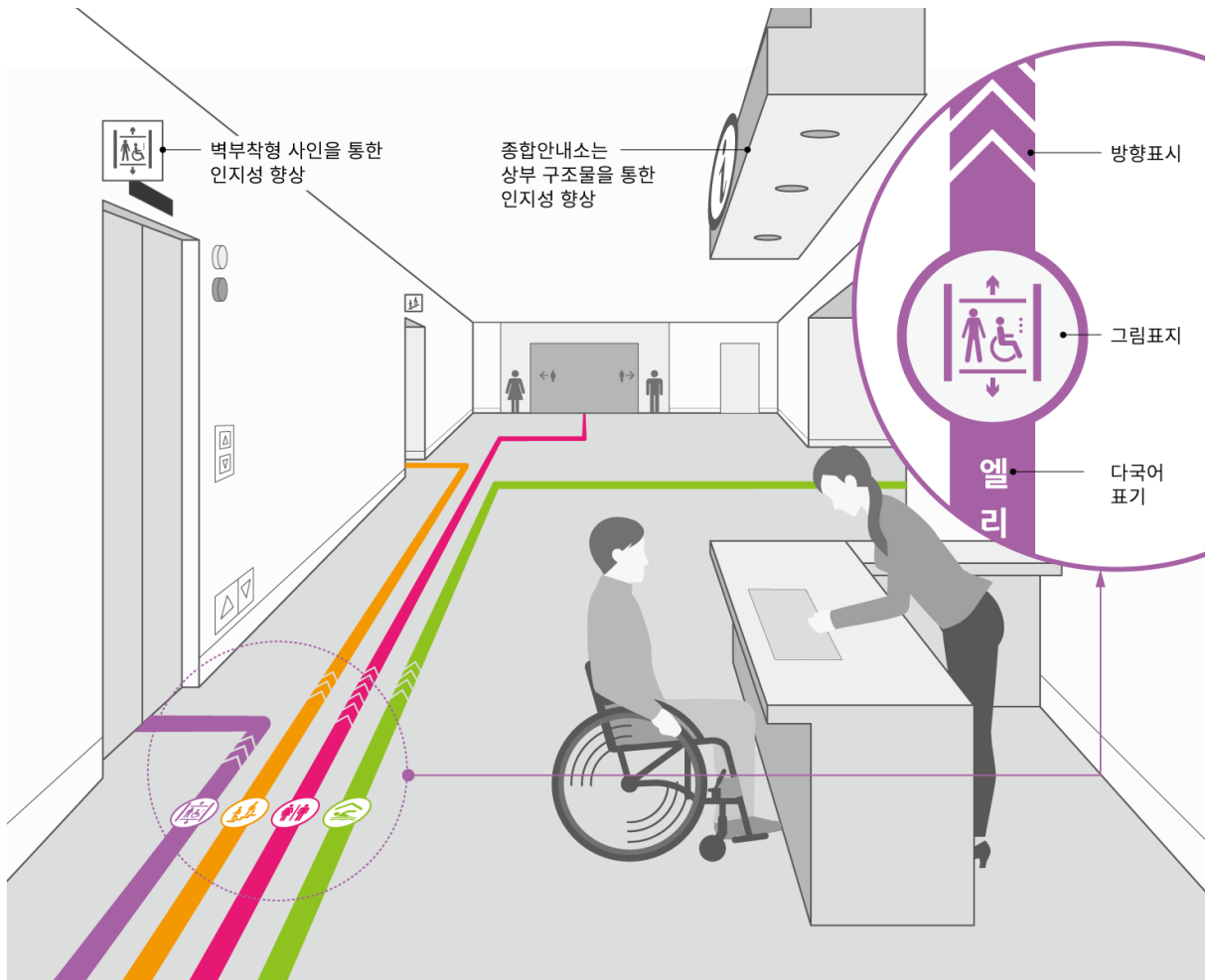
# (1) 로비와 홀



##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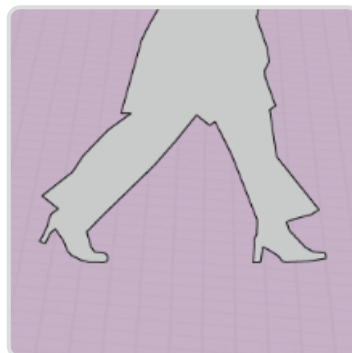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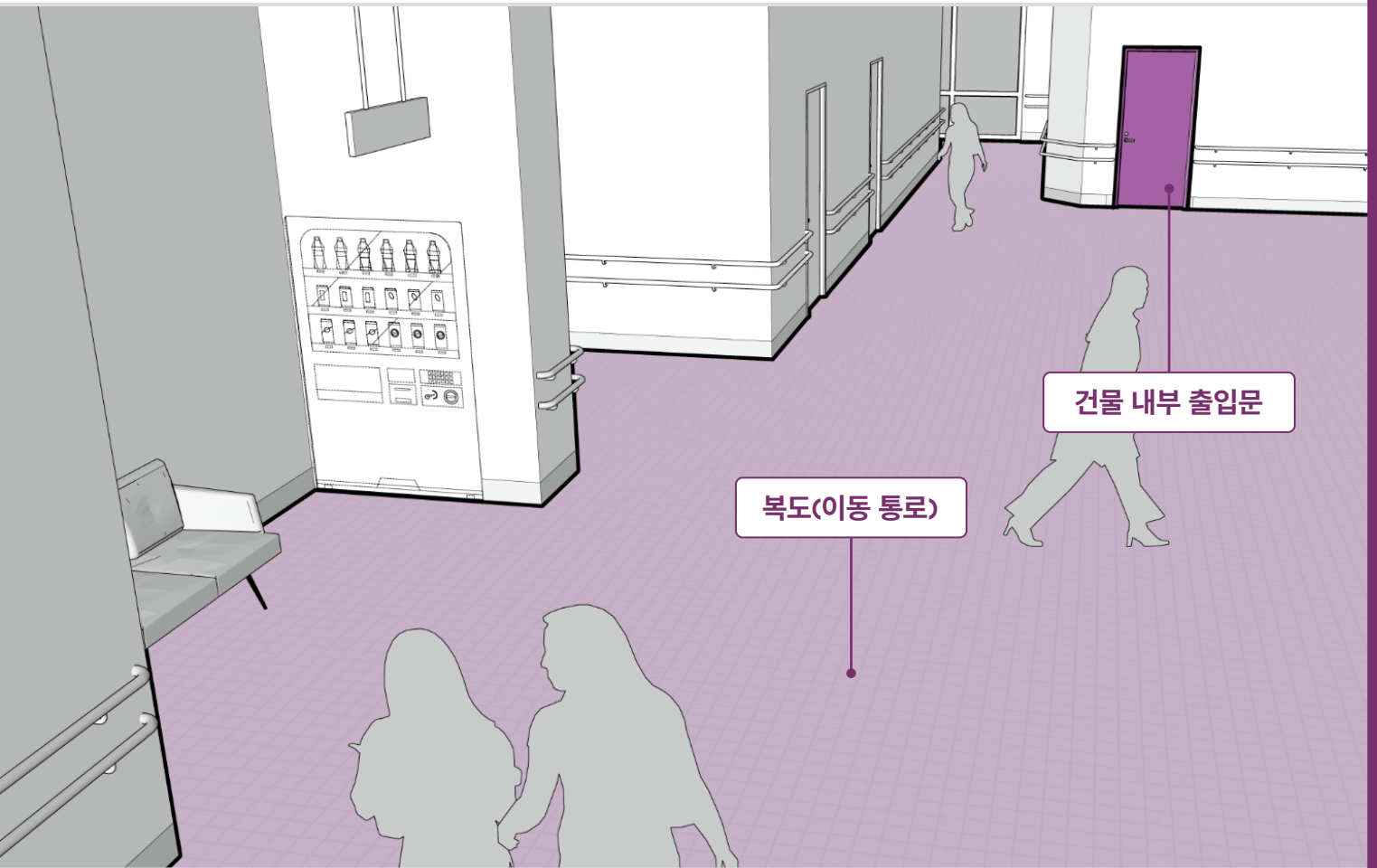
건축물의 주출입구에서 처음 맞이하는 공간으로써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며, 로비나 홀로 진입 시에 주요 수직 이동시설(계단, 승강기 등)과 주요 편의시설(화장실, 안내시설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 로비·홀 진입 시 주요 수직 이동시설(계단, 승강기 등)과 주요 편의시설(화장실, 안내시설 등)이 바로 보이도록 공간을 구성하거나 인지하기 쉬운 방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주출입구와 연결되는 로비와 홀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수직 이동, 편의시설 등)까지 연결하는 보행통로 등은 방향성 갖고 길 찾기가 쉽도록 계획한다.





## (2) 수평 이동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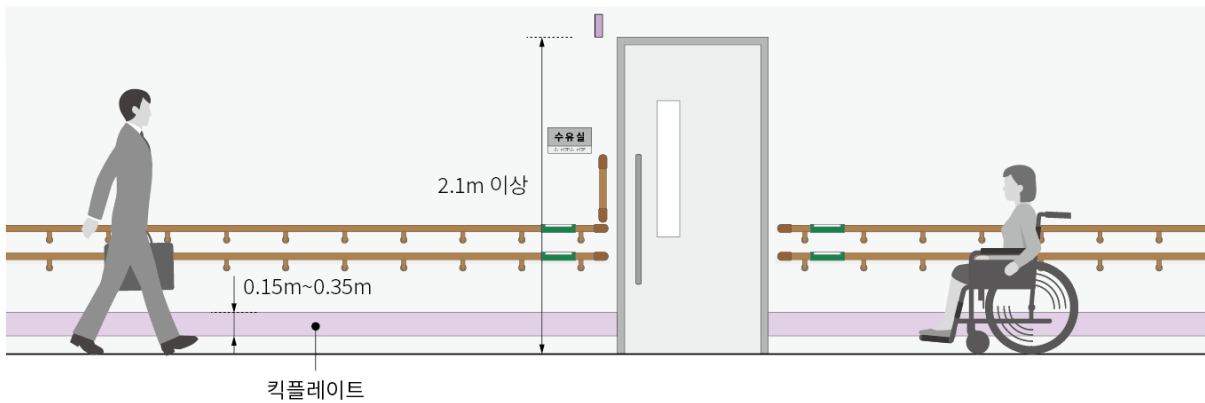
## 복도(이동 통로)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 등의 이동과 회전에 어려움이 없는 충분한 통로 폭을 확보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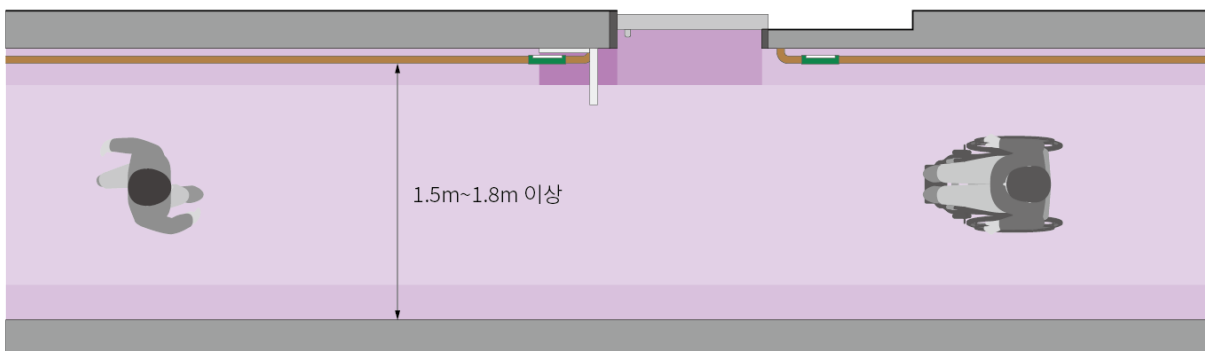
### 구조와 형태

- 복도, 통로, 로비 등의 이동 공간 구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 : 1.5m 이상(일시적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이동하는 시설은 최소 1.8m 이상)
  - 수직안전높이(계단 하부, 벽부/천장형 안내사인 등) : 2.1m 이상
  - 휠체어 사용자 등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인 경우 바닥에서 0.15m~0.35m 내외 높이에 벽면 킥 플레이트 설치
- 통로상 단차나 높이 차이 존재 시 '공공건축물-내부 이동 공간-수직 이동 공간'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수직안전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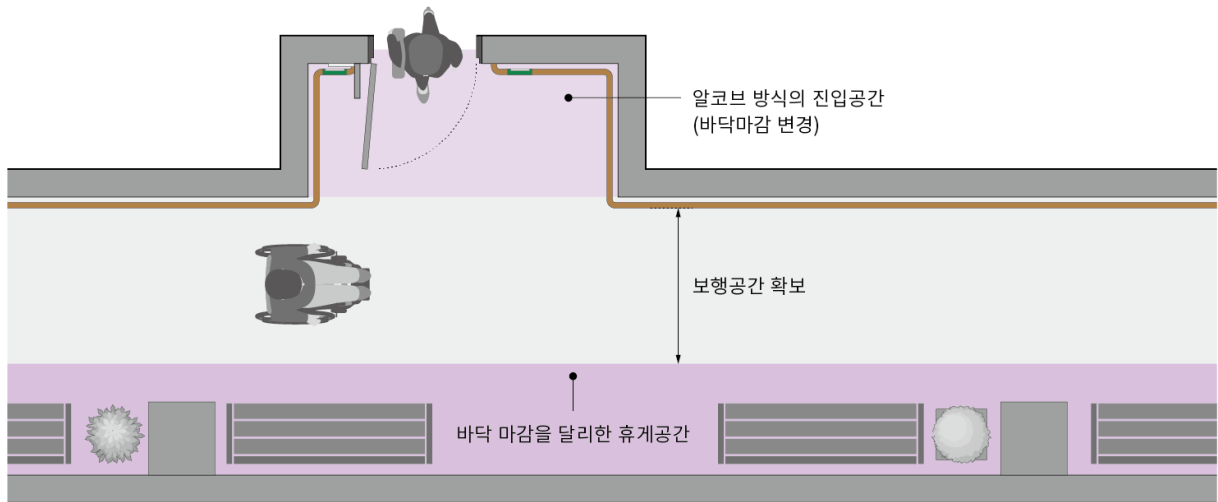
이동통로



## 바닥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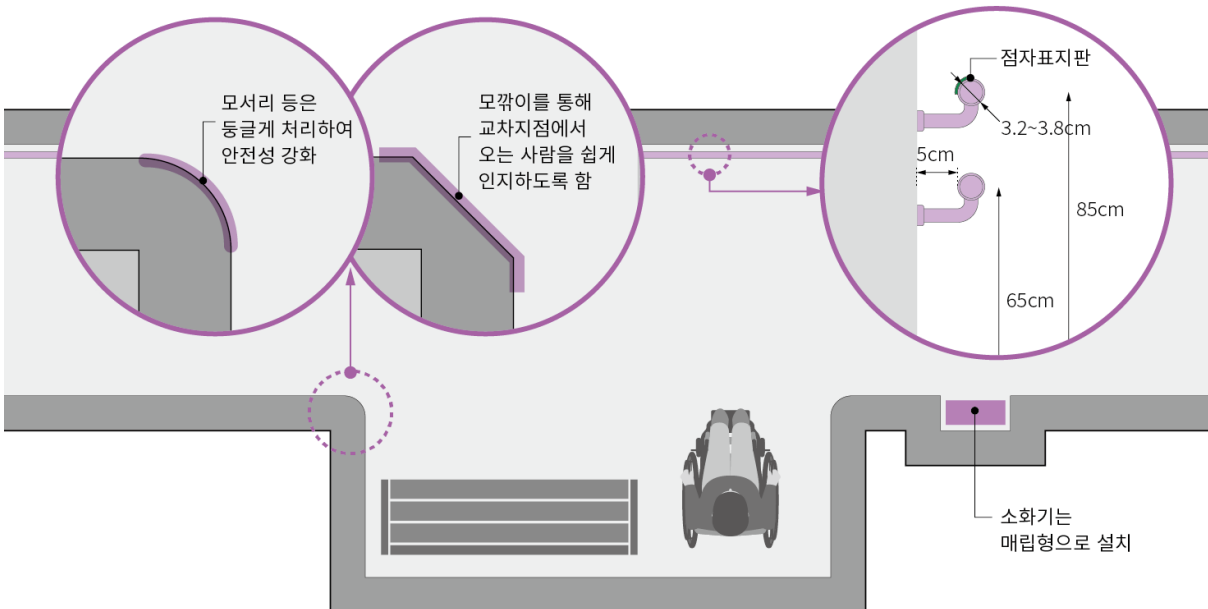
- 통로는 단차 없이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한다.
- 이동 통로 중 외기와 직접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바닥 마감은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석재 잔다듬 이상의 미끄럼 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 특정 공간(각 실 휴게공간 등) 바닥 마감재 패턴을 달리하여 변화감 있는 복도 공간 연출을 권장한다.

\* 실내 바닥 마감재는 습윤 시 C.S.R. 0.4 이상 성능을 확보한 마감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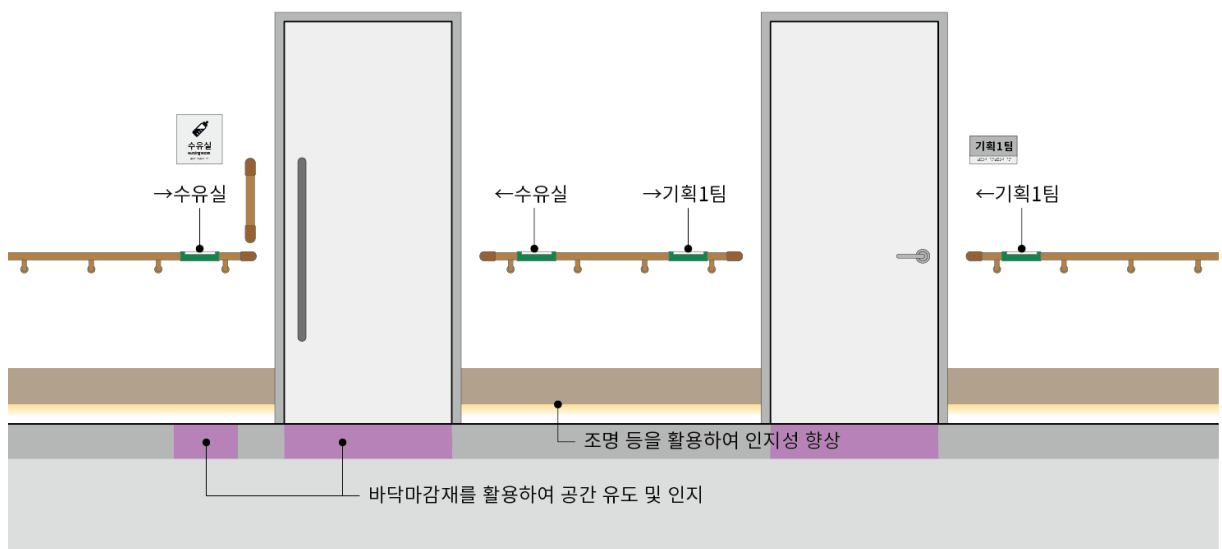
## 안전시설

- 복도 모서리 등을 둥글게 처리한다.
-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낙상 시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울림이 적은 재질로 바닥을 마감한다.
- 음영이 지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되 눈부심 없도록 설치한다. (푯 등, 비상용 조명 장치 등을 이용)
- 통로상 시설물, 고정물은 벽부 매립 혹은 통로 공간 외에 설치한다. (소화기 등)
- 보행 유도 및 신체 지지를 위한 보조 손잡이 설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의료 및 복지시설은 필수 적용)
  - 손잡이는 통로 상에 끊어짐 없이 연속하여 설치
  - 잡기 쉽고 차갑지 않은 촉감으로 쉽게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설치
  - 어린이 사용자가 많은 시설은 손잡이 2단 설치
  - 그 외 법규정 및 세부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
- \* 손잡이 세부 설치 기준
  - 상단 손잡이 높이 0.8~0.9m, 하단 손잡이 높이 0.65m 내외로 설치
  - 손잡이 직경 3.2cm~3.8cm
  - 벽과 손잡이 사이 간격은 5cm 확보
  - 주요실 출입문, 수직 이동시설 시작/끝 지점에 점자 표지판 부착
  - 손잡이 설치 시 신체 하중(성인 남성 1~2인 내외)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 유도 시설

- 주요 방향 전환 구간, 층별 안내(종합, 방향)시설 설치로 보행 동선을 유도한다.
- 시설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다음의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 실별 출입구, 휴게공간 등에 마감재 패턴, 색상 등을 활용한 공간 유도
  - 조경, 음향, 빛 등을 활용하여 공간 인지성 향상 및 보행 유도
  - 통로 손잡이 설치, 바닥/벽 색상 및 재질의 변화로 보행 동선 유도 및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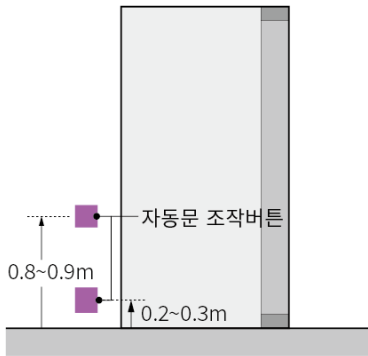
## 건물 내부 출입문

출입문은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과 형태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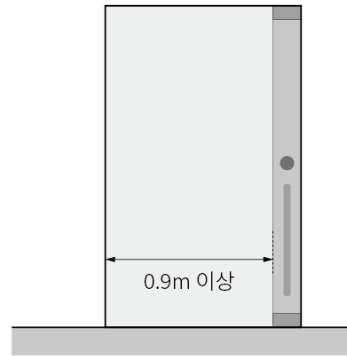
### 유효폭

- 유효폭과 활동공간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 : 0.9m 이상 (문틀, 손잡이, 문 두께를 제외한 순수 유효폭)
  - 날개벽 : 0.6m 이상 (출입문 전후면의 손잡이 방향)
  - 전후면 1.2m 이상 활동공간 확보(출입문 개폐 소요 공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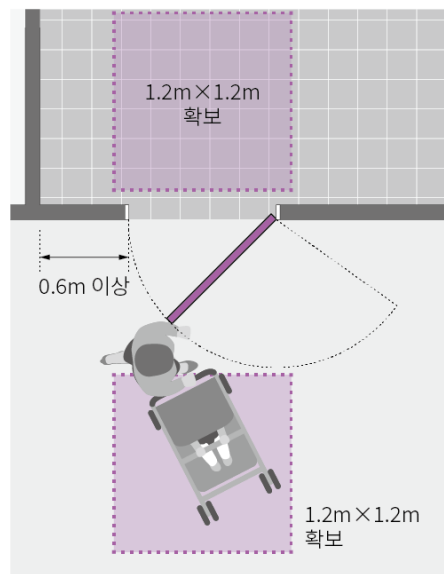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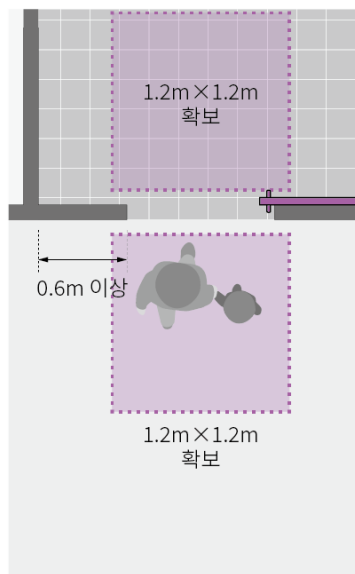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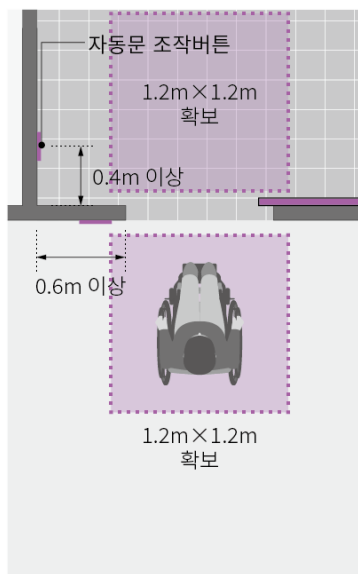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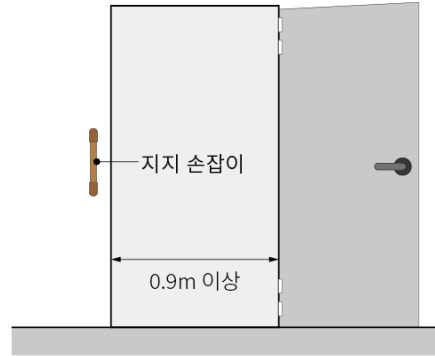
자동문



미닫이



밖여닫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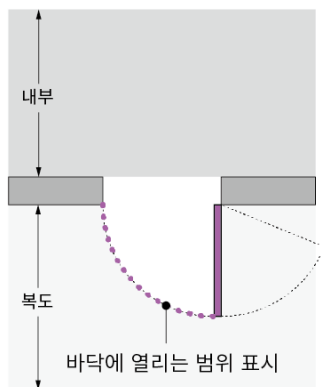


## 구조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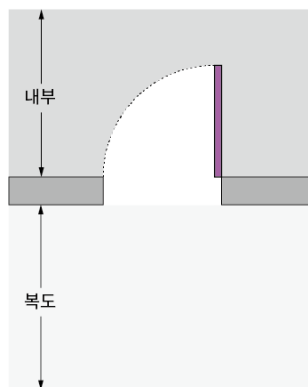
- 출입문의 구조 및 형태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출입문 하부는 홈이나 단차가 없는 형태로 설치(방화문인 경우 단차 2cm 이내로 처리)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알코브, 전면 유효 거리 확보,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 등)
  - 적은 힘으로 편리하게 조작 가능한 자동문, 미닫이문이나 여닫이문을 사용하며, 도어 체크 설치 시 닫힘 시간 3초 이상 확보
  - 민원실 등 통행량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휠체어 사용자 이용 고려)
  - 전면 유리인 경우 충돌 방지 표시 설치
  - 문 반대편의 상황 인지가 가능한 투시 창이 설치된 문의 형태 권장
  -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
- \* 이외 세부 설치 기준은 '공공건축물-접근공간-주출입구(문)'을 참고한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문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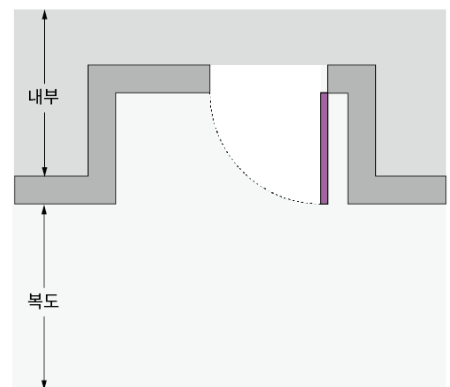
밖여닫이



안여닫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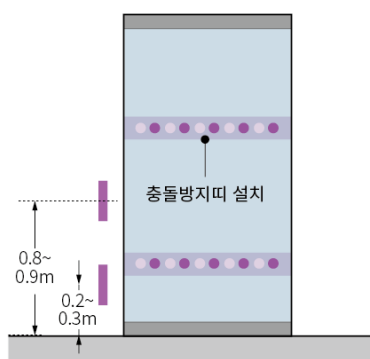


알코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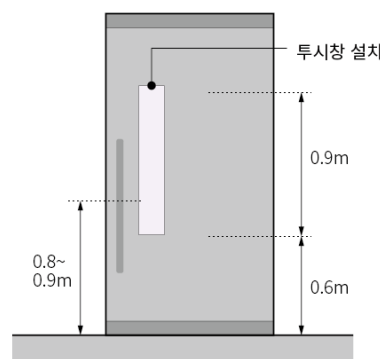


문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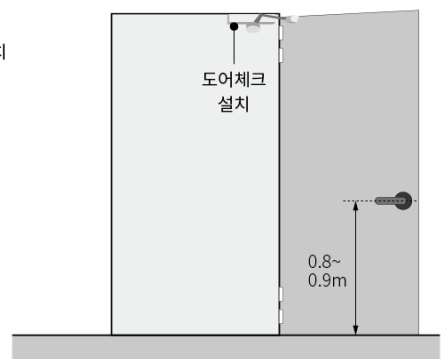
자동문



미닫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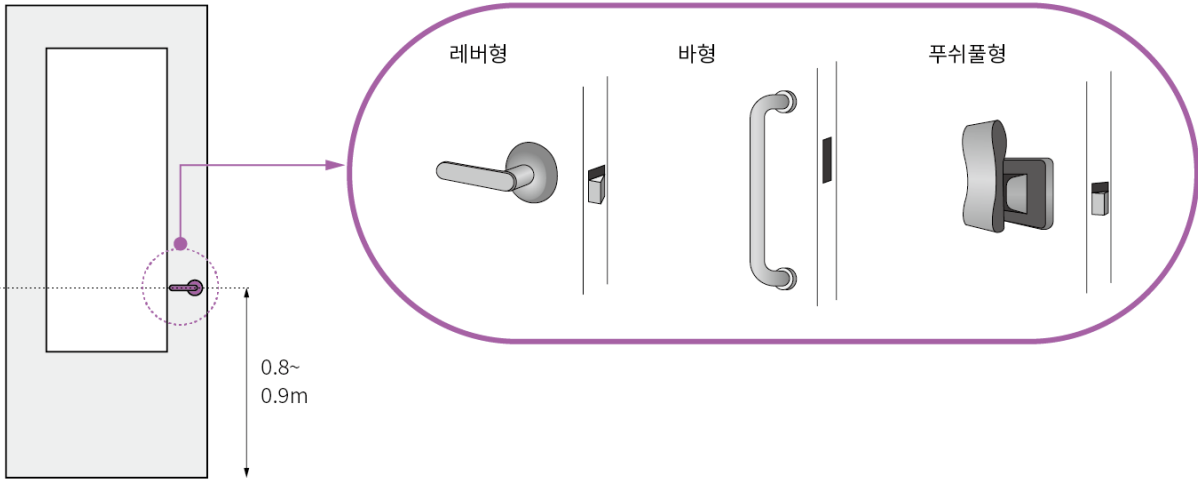
여닫이문



### 문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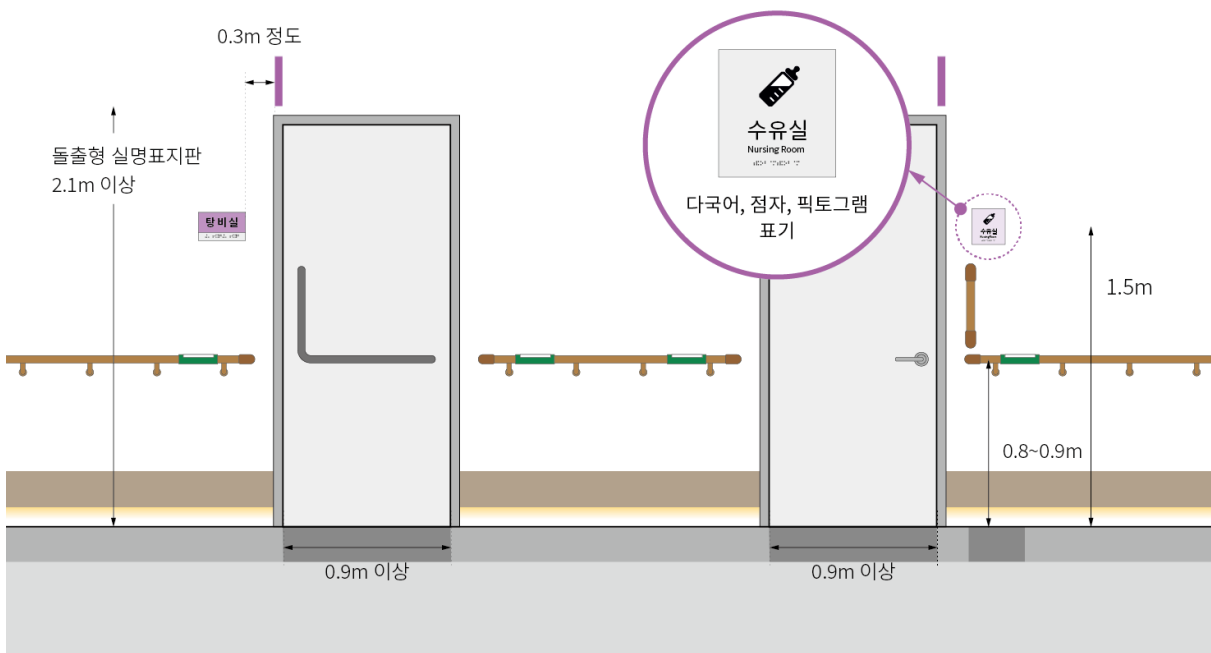
- 문 손잡이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레버형, 돌출 바 형태(수평, 수직) 설치를 권장하며, 잡고 조작하기 편리한 크기와 형태로 설치
  - 문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설치
  - 문 손잡이 조작부 중심은 바닥에서 0.8~0.9m 내외 높이로 설치
  -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 모두의 이용을 고려하여 세로 바형태 설치를 권장함.

문 손잡이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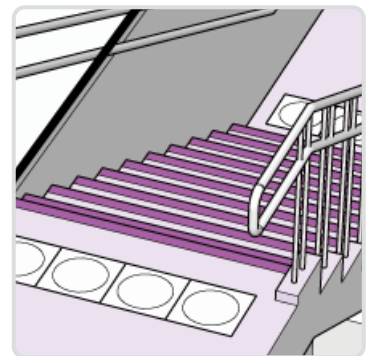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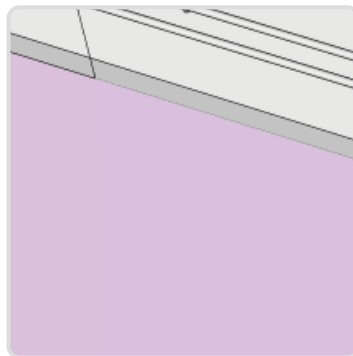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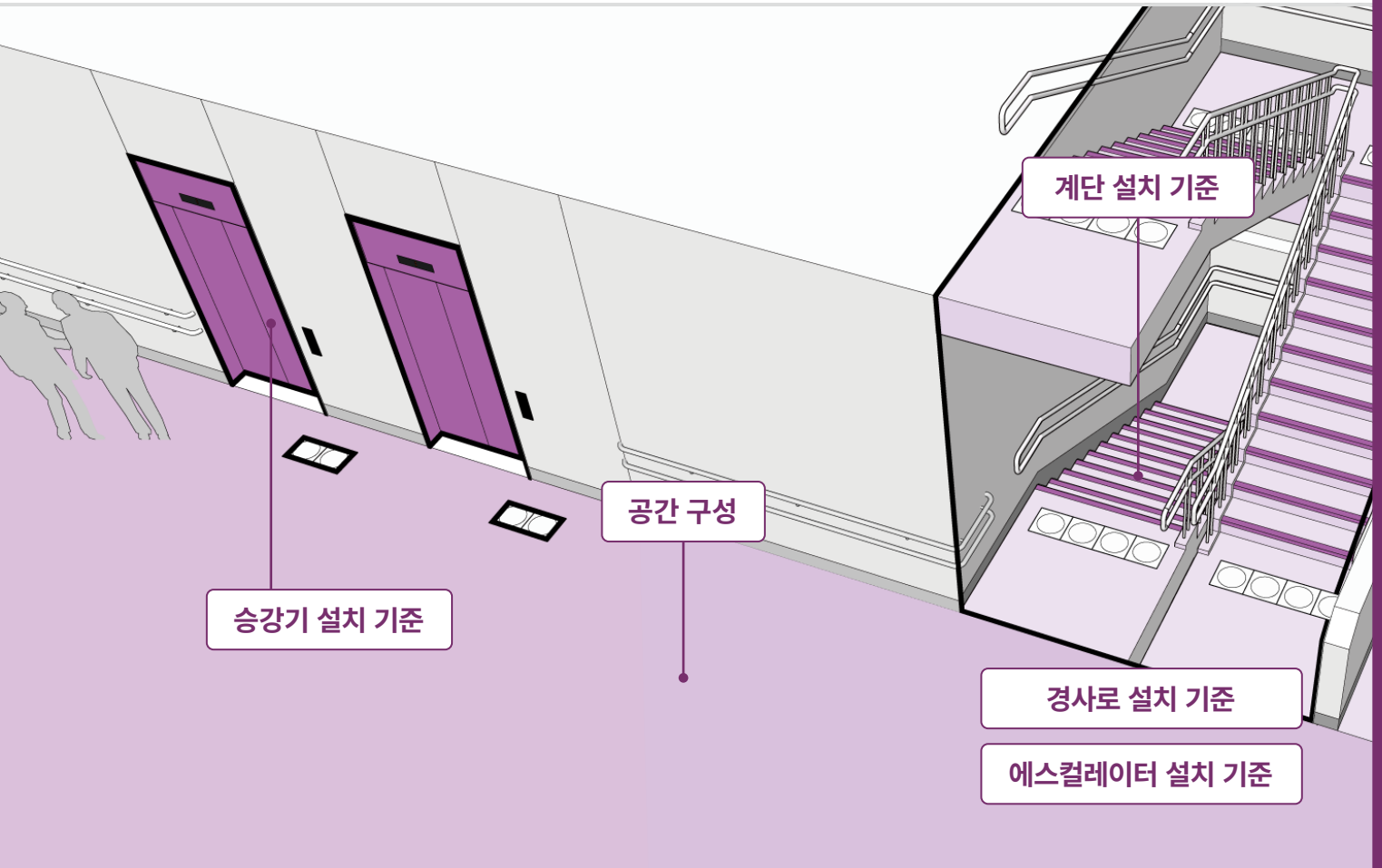
### 인지 및 안내 표시

- 출입문 문틀 또는 문의 색상이 주변의 벽과 구분되어 출입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은 점자 표기, 다국어 안내,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실명 표기한다.





### (3) 수직 이동 공간



## 공간 구성

수직 이동 빈도가 높은 곳에는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계단과 승강기를 병설하여 설치하며, 시설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경사로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 이동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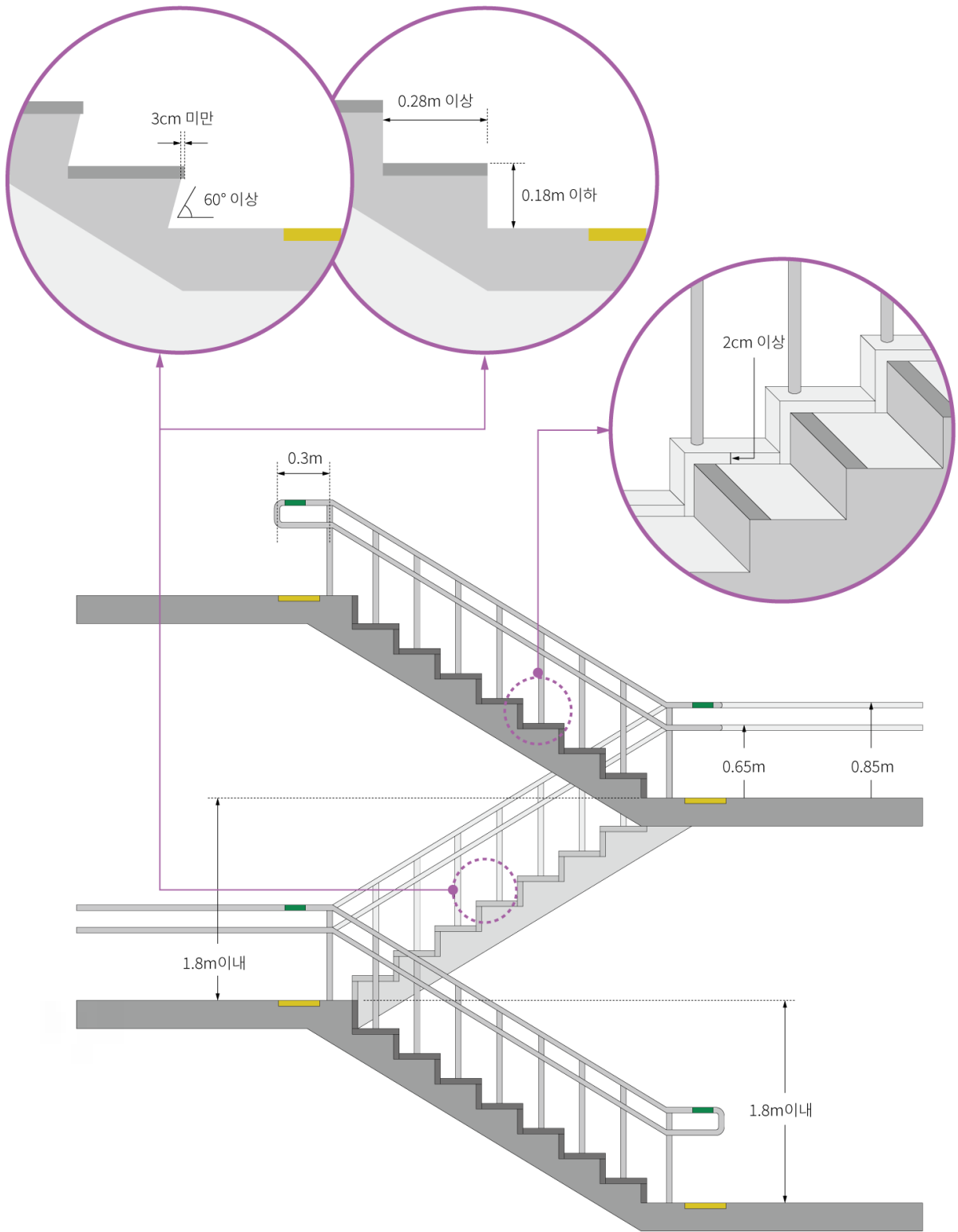
## 계단 설치 기준

계단은 비상시에 피난 동선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만든다. 손잡이와 계단코는 시인성 있게 만들며, 특히 손잡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로 설치한다.

### 유효폭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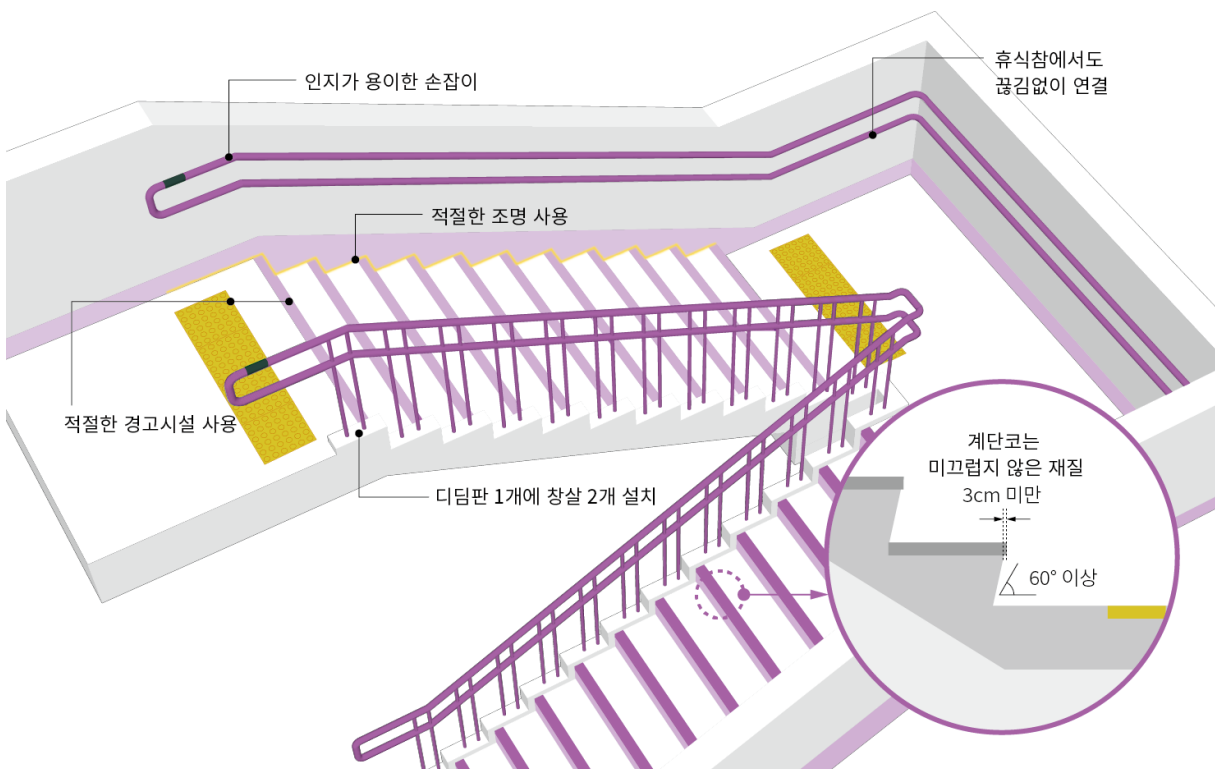
- 계단의 유효폭 등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로비나 홀 등에 설치하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계단은 유효폭 1.5m 이상으로 설치
  - 수평 휴식참 : 계단의 유효폭과 동일 폭원 확보(1.5m 이상 권장)
  - 수직안전높이 2.1m 이상 확보
- 계단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
  - 계단참을 기준으로 상하 계단 수를 동일하게 설치
  - 발이나 지팡이 등이 빠질 위험이 없도록 계단 디딤판 측면 추락 방지 턱을 2cm 이상으로 설치하고 계단 철평면은 막힘 형태로 설치
- 계단의 디딤판과 철평면의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디딤판 0.28m 이상, 철평면 높이 0.18m 이하
  - 어린이가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철평면 높이 0.16m 이하로 설치

\* 계단 철평면, 디딤판 산출 공식 : (철평면 높이\*2)+디딤판 너비=63~65cm



### 바닥 재질 등의 안전시설

- 계단의 바닥 재질과 철편·디딤판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고 적절한 경고시설을 설치(점자블록, 색상, 질감 등 활용)
  - 계단코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세라믹 논슬립 등)로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쉽도록 설치 (돌출 3cm이내, 철편과 디딤판 기울기 60도 이상 확보)
  - 계단은 발 헛디딤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도(150lx 이상)를 확보하고, 철편 및 디딤판과 휴식참의 구분이 쉽도록 설치
- 난간, 손잡이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계단 양측 모두에 설치하며, 휴식참 등에서도 끊어짐 없이 연속 하여 설치
  - 잡기 쉽고 차갑지 않은 촉감으로 쉽게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설치
  - 유효폭 2.5m 이상인 경우 계단 중앙에 손잡이 추가 설치
  - 어린이 사용자가 많은 시설은 손잡이를 2단으로 설치하며, 난간살은 세로형으로 디딤판 하나에 두개의 난간 세로살 설치
  - 추락 위험이 높은 계단 난간 높이는 1.2m 이상, 최상층부 계단의 난간은 1.5m 이상으로 설치
  - 그 외 법규정 및 세부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
- \* 손잡이 세부 설치 기준
  - 상단 손잡이 높이 0.8~0.9m, 하단 손잡이 높이 0.65m 내외로 설치
  - 손잡이 직경 3.2cm~3.8cm
  - 벽과 손잡이 사이 간격은 5cm 확보
  - 주요실 출입문, 수직 이동시설 시작/끝 지점에 점자 표지판 부착
  - 손잡이 설치 시 신체 하중(성인 남성 1~2인 내외)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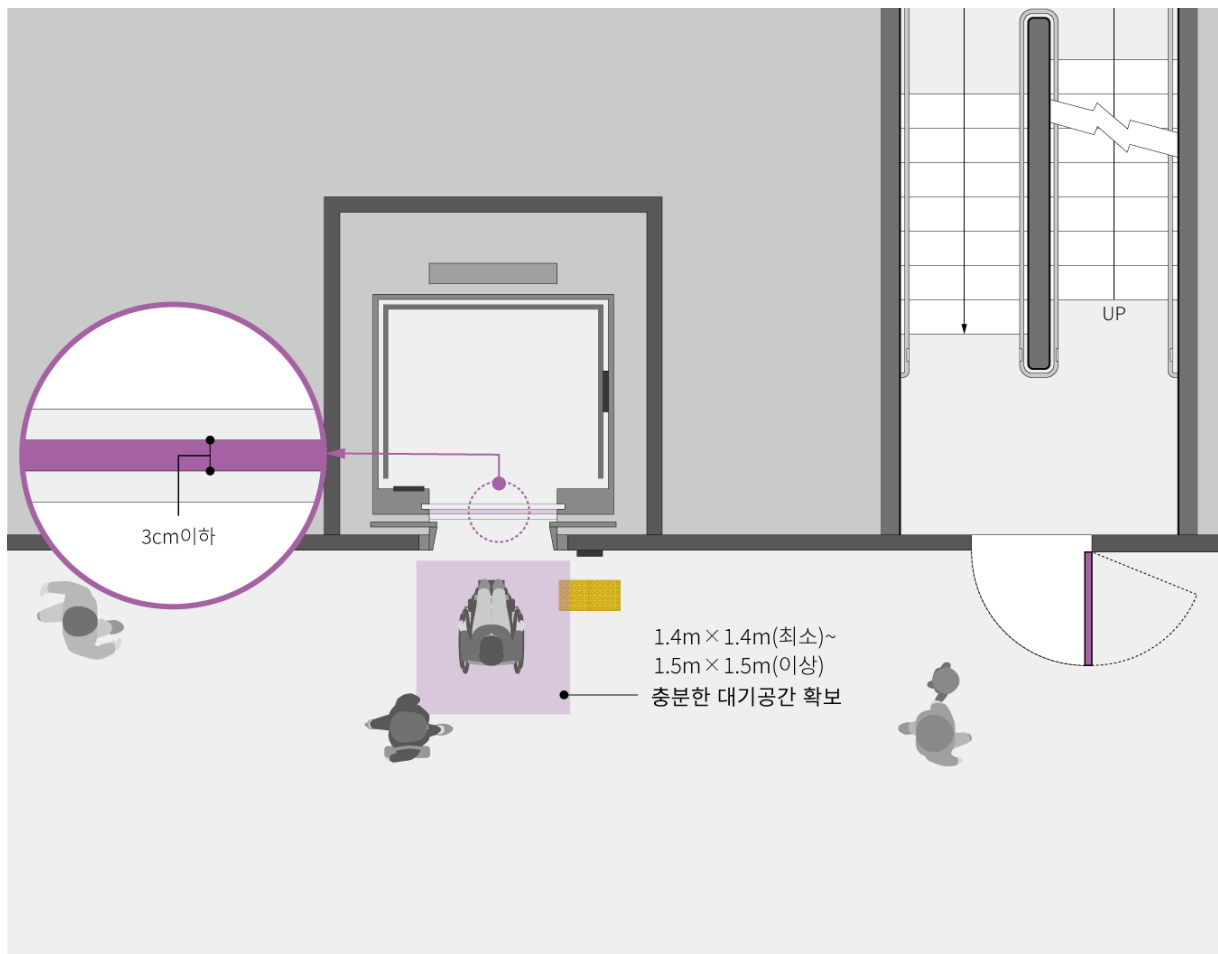
## 승강기 설치 기준

승강기는 층 규모와 관계없이 층간 이동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며,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 설치 장소 및 활동공간

- 승강기는 주출입구 및 각 층에서 인지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가깝고, 누구나 인지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승강기 출입구와 외부 조작반 전면에는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계단실, 통로, 실의 출입문 개폐 공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홀과 승강기 간격은 3cm 이하 및 출입문 되열림 장치를 설치한다.
- 내·외부 조도를 150lx 이상을 확보한다.

\* 승강기 전면 최소 1.4m × 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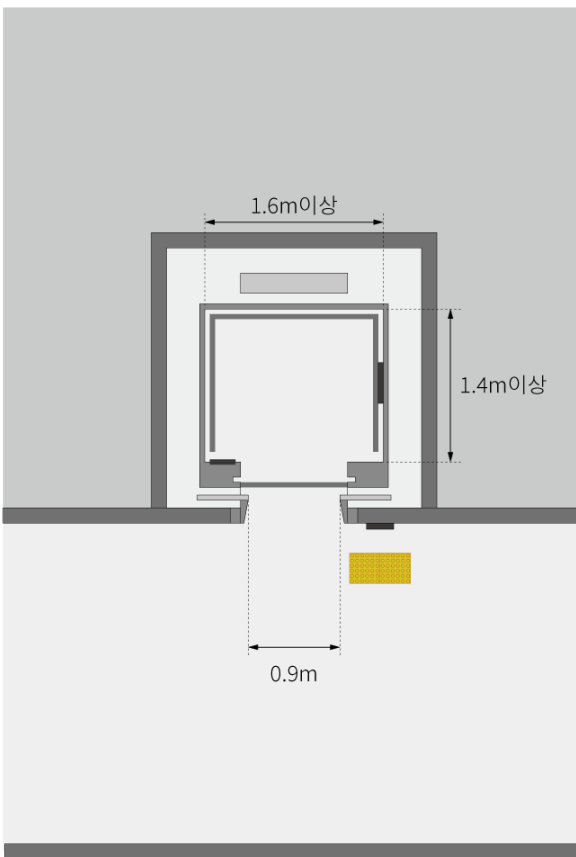


### 승강기 규모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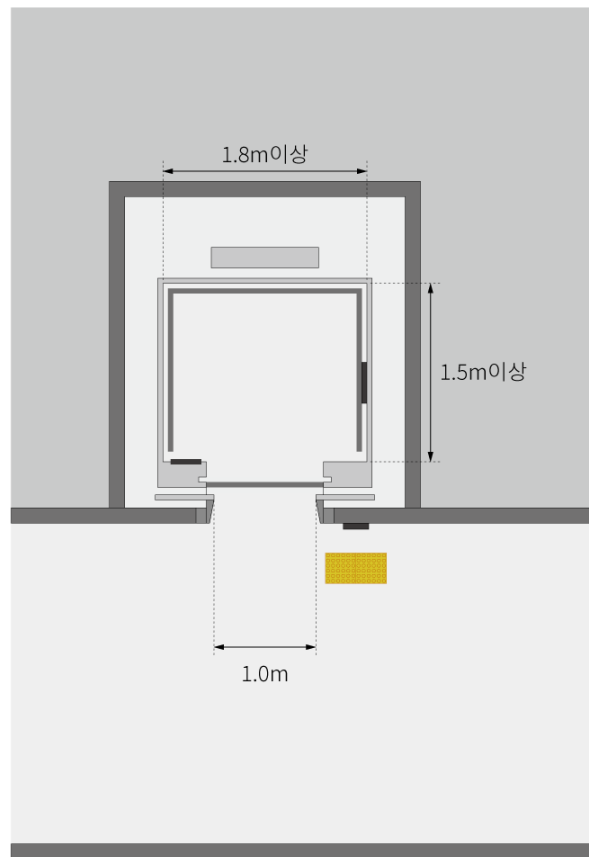
- 승강기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와 동행인 등을 고려하여 1.4m × 1.6m 이상의 내부 활동공간을 확보하되, 다중이용시설은 전동 휠체어 2대 이용을 고려하여 1.5m × 1.8m 이상 (17인승) 확보를 권장한다.
- 출입문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하되, 다중이용시설은 1.0m 이상 확보를 권장한다.
- 승강기는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한 제품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 승강기 카 내부는 최소 1.35m × 1.6m 이상 설치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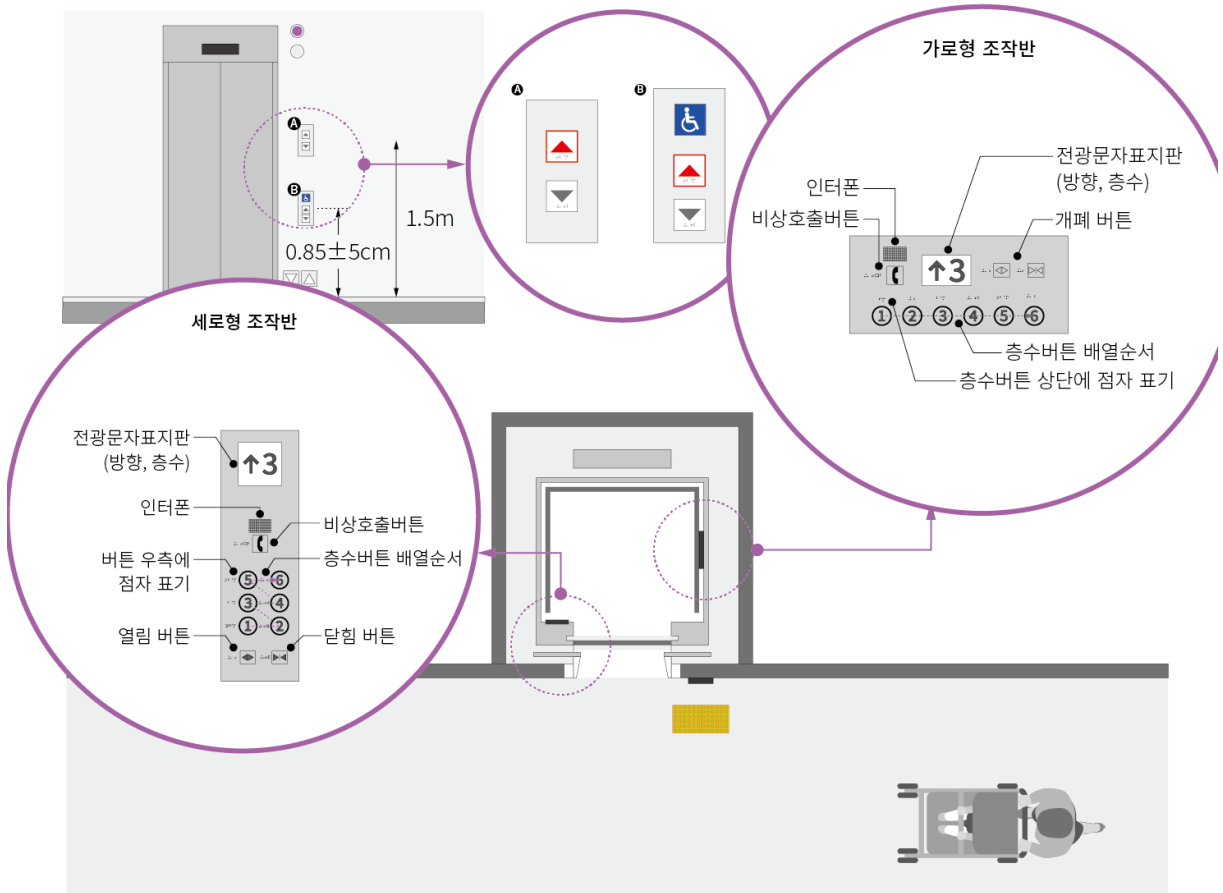


다중이용시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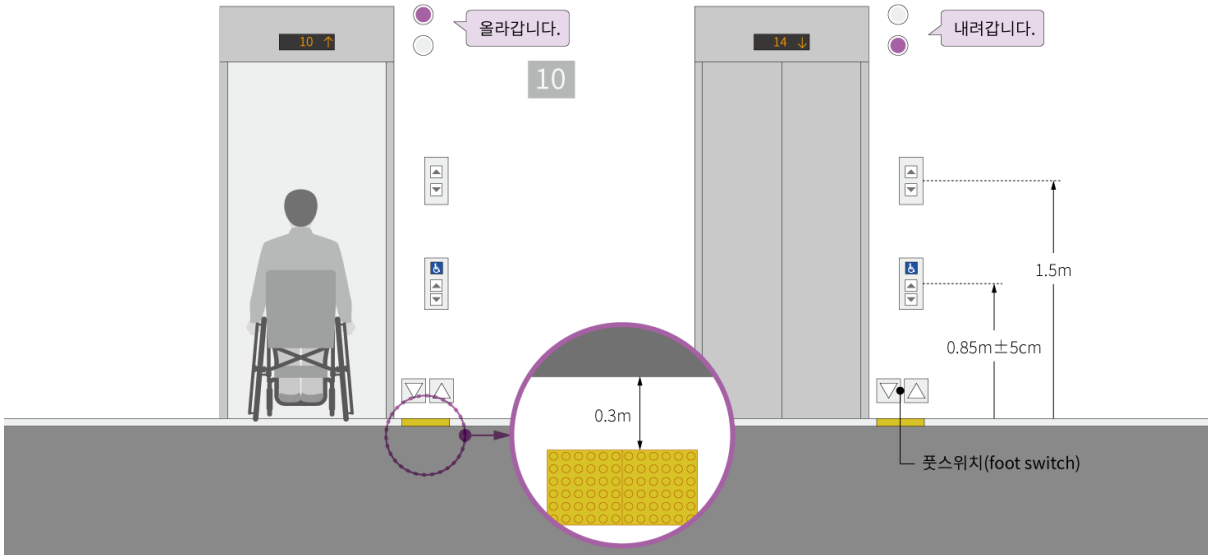
## 조작 설비

- 동일 건물 내 승강기 조작 버튼은 층수별 동일한 위치에 동일 형태로 배치 및 설치한다.
- 승강기를 2대 이상 배치할 때에는 장애인 전용 버튼을 설치하여 다른 승강기와 연동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승강기 내·외부의 조작 및 안내설비는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외국인 등을 배려하여 설치한다.
- 조작 설비 세부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조작 버튼은 성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1.5m 내외, 어린이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0.85m 내외를 설치하며, 하나의 조작 판으로 이용시 0.8~1.2m 이내의 높이에 설치
  - 승강기 조작반은 가로형과 세로형 각각 설치
  - 층수 버튼, 개폐 버튼, 비상 호출 및 상호 통화용 버튼에 점자를 병기
  - 형태 감지가 안 되는 터치형 버튼이 아닌 양각 버튼으로 설치하며,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들어오며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
  - 취소가 가능해야 하며, 두 번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 안내 제공
  - 버튼의 크기는 2cm 이상으로 하며, 주요 층(진입층, 주 이용시설 등)은 색상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설치
- \*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 방향 우측에 가로형으로 조작반 하단의 높이를 바닥에서 0.85m 내외로 설치(유효 바닥 면적이 1.4m × 1.4m 이상인 경우 진입 방향 좌측 설치가능)
- \* 승강기 내부 가로 조작 설비는 밑면이 25° 정도 들어 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된 형태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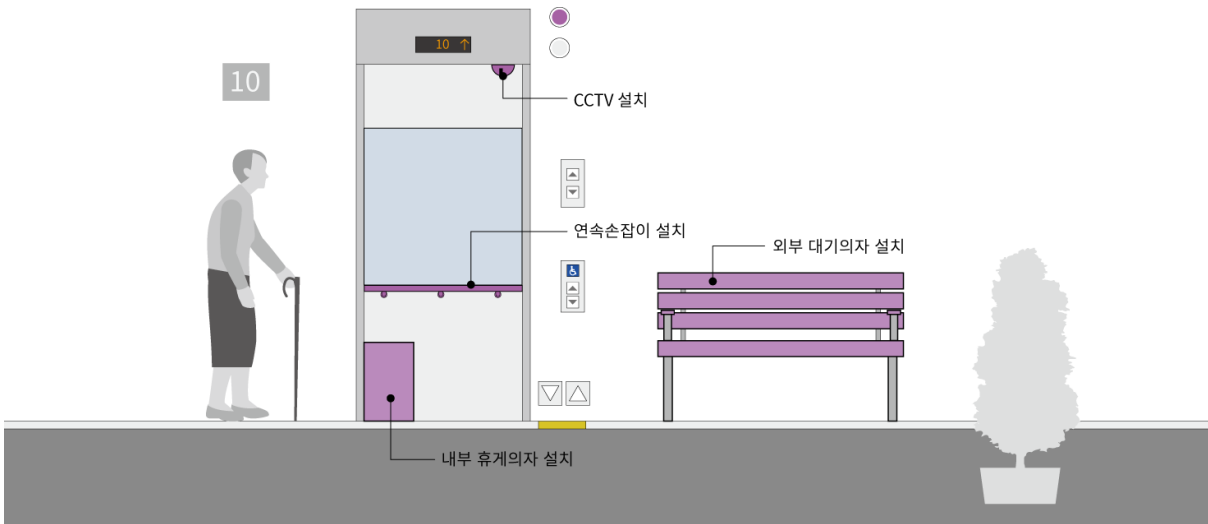
### 유도 안내시설

- 승강기 내·외부에는 시각장애이용 안내시설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승강기 각 층별 외부 조작 버튼 전면 0.3m에 표준형 점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 장치를 설치하며, 승강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 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 신호 장치를 설치한다.
- 층별로 출입문 개폐 위치나 방향이 다르다면 음성으로 출입문의 방향에 대한 안내가 되도록 한다.



### 기타 설비

- 청각 및 시각장애이용 경보시설을 설치한다. (사이렌, 경광등 등)
- 내부에 기준에 적합한 연속 손잡이를 설치한다.
- 승강기 내 CCTV를 설치한다.
- 승강기 로비와 내부에 휴게의자 설치를 권장한다.
- 외부에서 승강기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 출입문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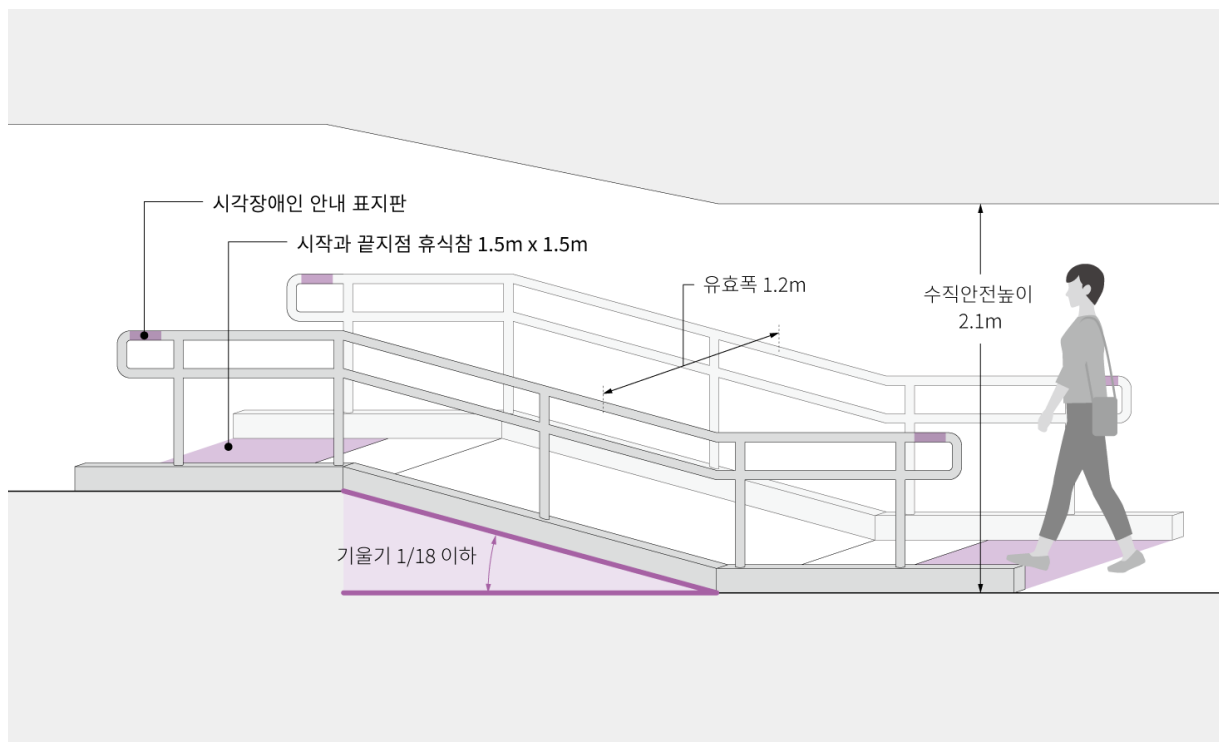


## 경사로 설치 기준

층간 이동 또는 통로상 높이 차이를 제거 하기 위한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 노인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유효폭과 기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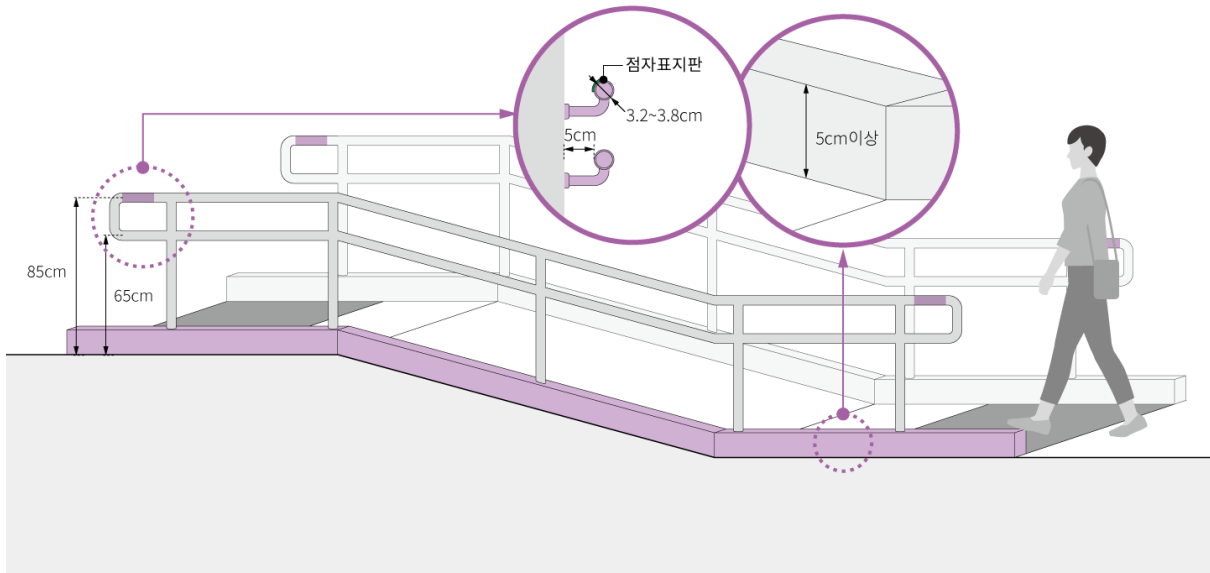
-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한다.
-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은 1.2m 이상, 기울기는 1/18 이하, 횡단 구배는 1/50 이하로 설치
  - 수직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 휴식참을 설치
  - 경사로 시작과 끝지점 및 수평 휴식참은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수직안전높이 2.1m 이상 확보
-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 수평참의 바닥은 경사면과 색상, 재질 차이가 나도록 설치한다.
- 휠체어, 시각장애인 이동 동선은 구분한다. 단, 경사로가 유일한 수직 이동시설인 경우 점자블록 설치 등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바닥 재질 등의 안전시설

- 바닥은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으면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한다.
- 외기에 면한 경우에는 우천, 결빙 시를 고려하여 석재 잔다듬 이상의 미끄럼 방지 성능을 확보하고, 지붕을 설치한다.(또는 바닥 열선 내장을 통해 상시 건조하게 관리되도록 함)
- 층간 이동 등 경사로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수평침 등에 벽면 충격 완화용 매트 부착을 권장한다. 단, 충격 완화 시설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한다.
- 경사로 양측면에는 5cm 이상의 추락 방지 턱 또는 측벽을 설치한다.
- 경사로 양측면에는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손잡이 세부 설치 기준은 계단의 난간, 손잡이 기준을 준용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 0.15m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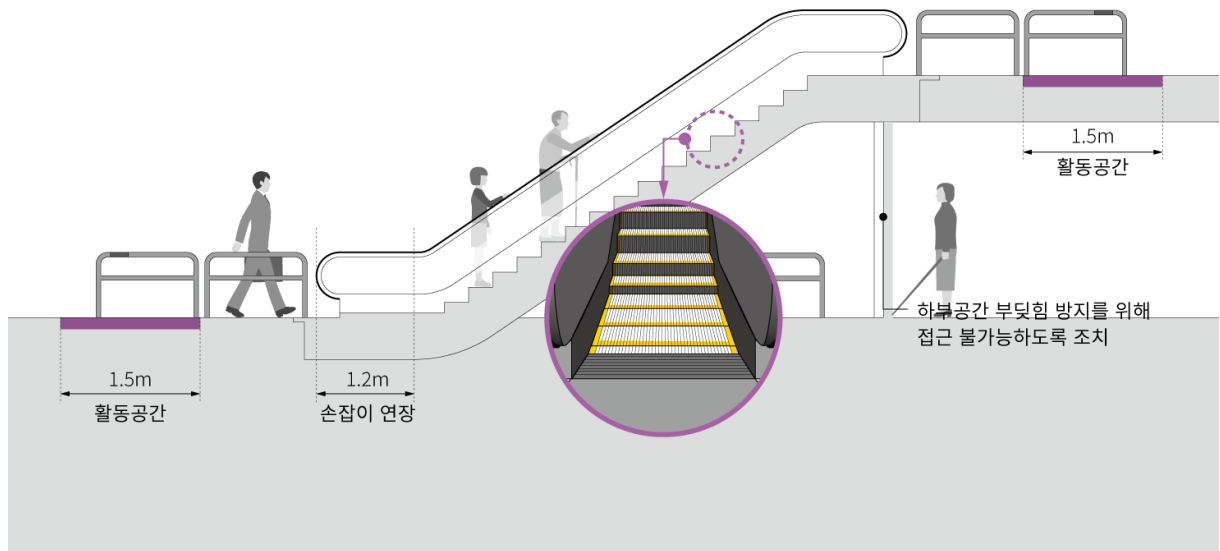


##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

에스컬레이터는 상하층의 이동 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한 설비이지만,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시각장애인, 보행 장애인 등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직 이동 수단이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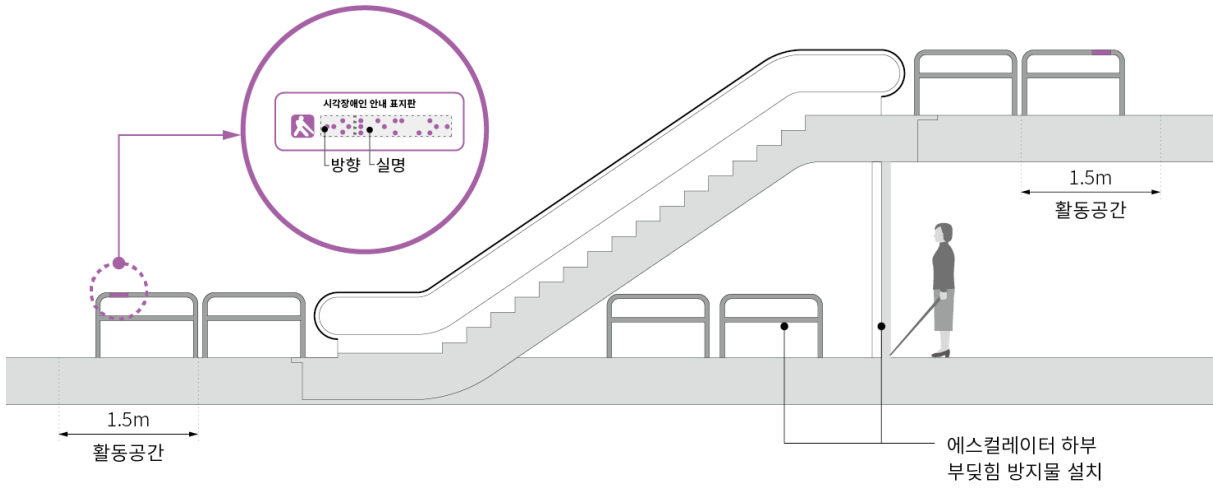
### 유효폭과 구조

- 유효폭 0.8m 이상을 확보하고, E/S 디딤판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손잡이를 설치한다.
- E/S 시작과 끝 지점에는 수평 이동 손잡이를 1.2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 디딤판의 이동 속도는 30m/min 이내로 한다.
- 디딤판 계단코 부분과 E/S 시작과 끝 지점은 색상, 재질 등으로 구분하여 시각적 인지성을 향상시킨다.
- E/S 시작과 끝부분에는 1.5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E/S 설치 시에는 상행과 하행 각 1개소 이상씩 설치한다.



### 고정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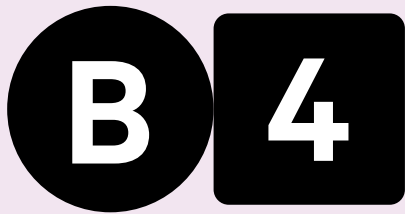
- E/S 수평 이동 손잡이 전면에는 1m 이상의 수평 고정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에 점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이외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계단의 손잡이 기준을 준수한다.



### 안내시설

- E/S의 수평 고정 손잡이 전면에는 E/S 폭만큼 시각장애인 점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E/S의 수평 고정 손잡이 전면에는 운행 방향에 대한 음성안내장치 설치하고, 잘못된 방향으로의 진입 시에 발신되는 음성 경고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위생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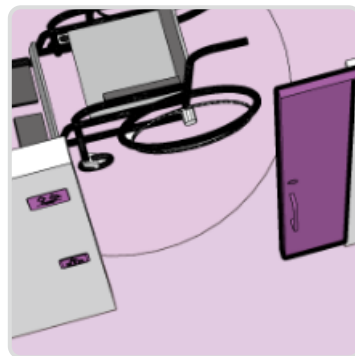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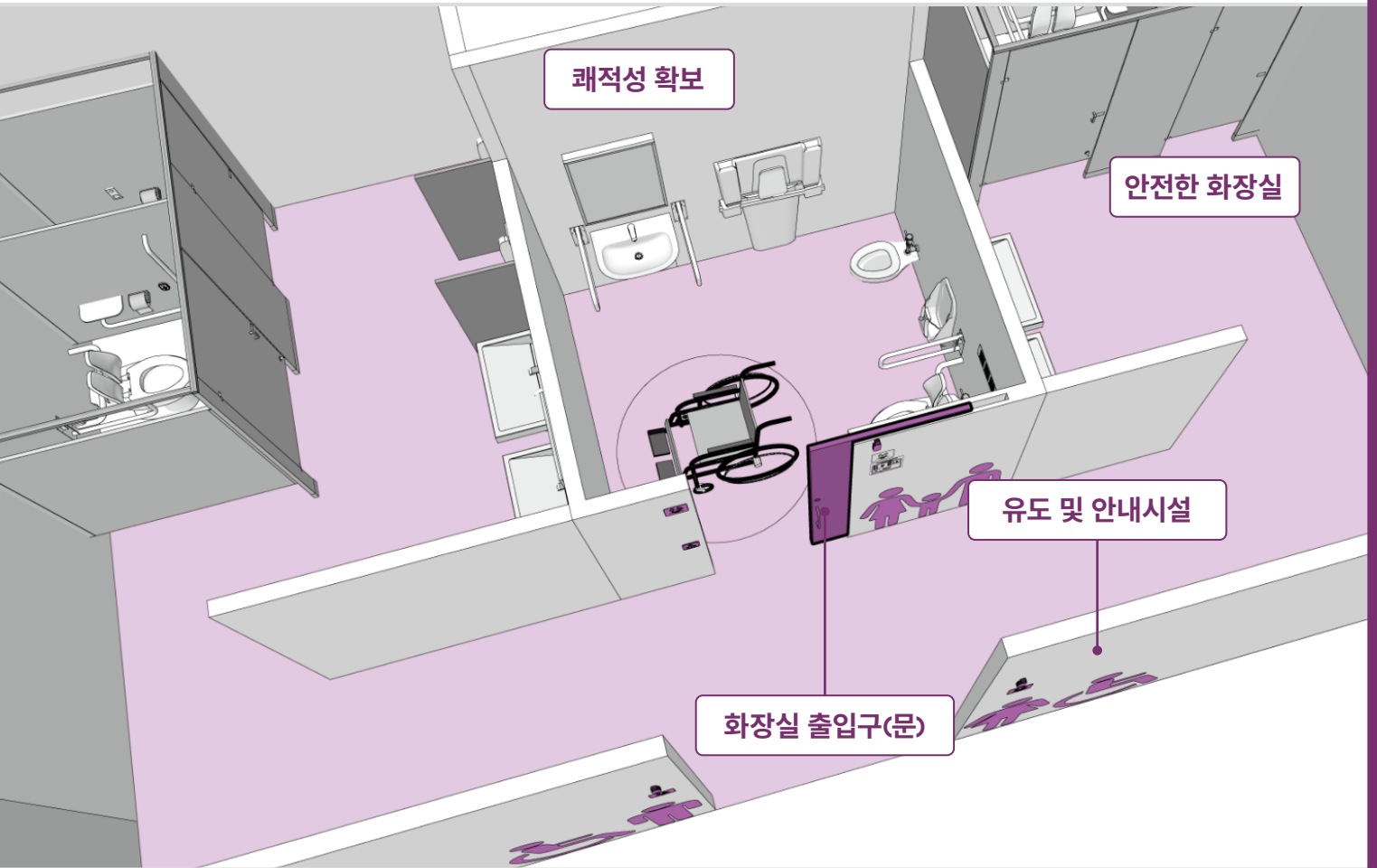
(1)	화장실의 기본 구성	255
(2)	모두를 위한 화장실	262

### 계획원칙

위생시설은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화장실의 기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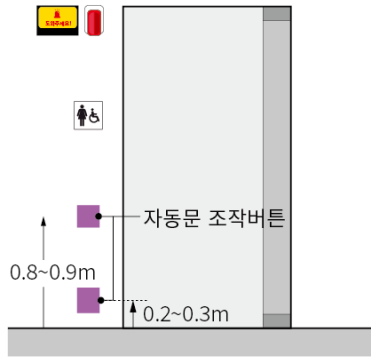
## 화장실 출입구(문)

시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충분한 출입구 공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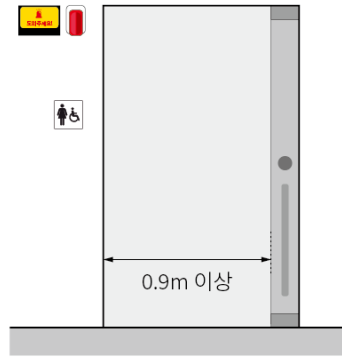
- 출입구는 이동 통로에서 1/24 이하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출입구 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며, 출입문을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한다. 단, 출입구만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공간 기준은 예외로 한다.
- 출입구(문)의 전후면 수평 활동공간은 1.2m 이상을 확보한다. 이때 수평 활동공간은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공간을 말한다.
- 이외의 화장실 출입문은 다음을 참고하여, 화장실 주 사용자 유형에 따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 이동약자를 배려하여 자동문 설치를 우선 검토하며, 자동문 설치 시 자동문 버튼은 손이나 발로 열 수 있도록 위, 아래로 설치
  - 이동 통로와 화장실 내부, 문턱 하부 등은 단차 없이 설치
  - 성별 이용에 따른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출입구의 위치 조정
  - 그 외 사항은 '공공건축물-내부 이동 공간-수평 이동 공간-건물 내부 출입문' 기준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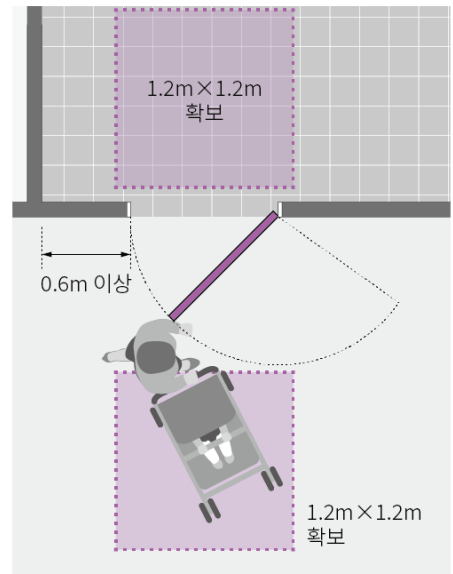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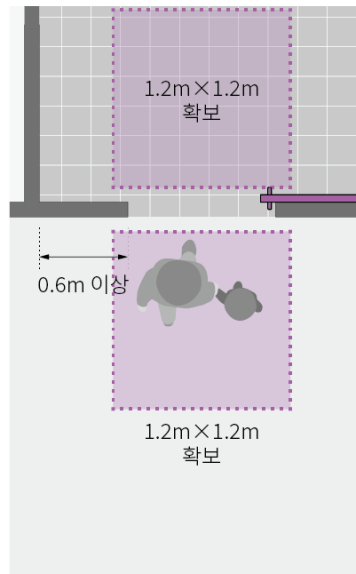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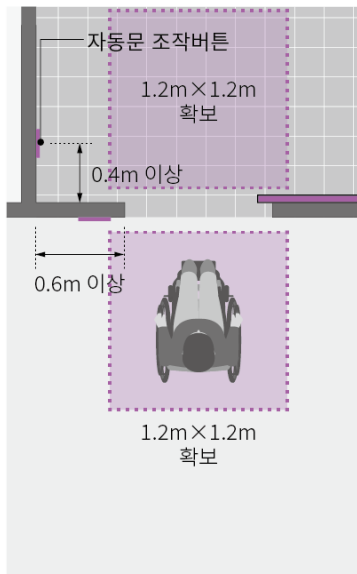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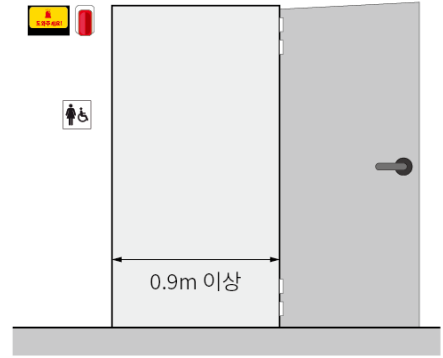
자동문



미닫이



밖여닫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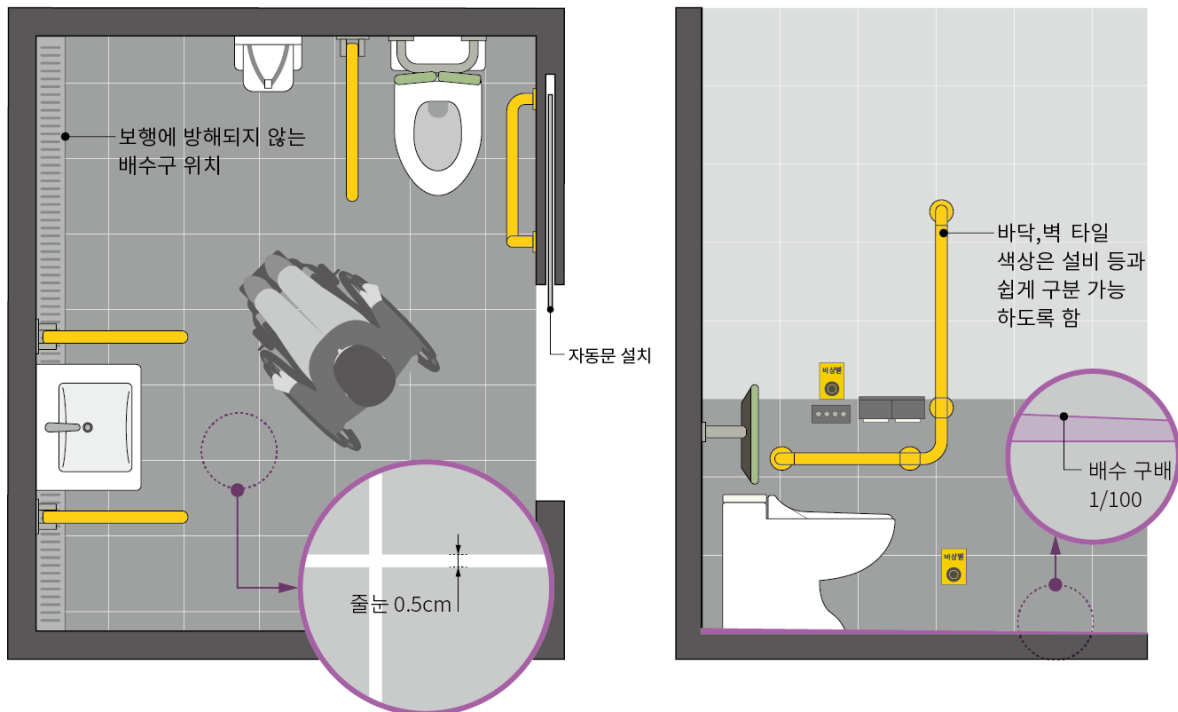
## 안전한 화장실

물을 이용하는 위생시설의 바닥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위급 상황에서 구호 요청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 바닥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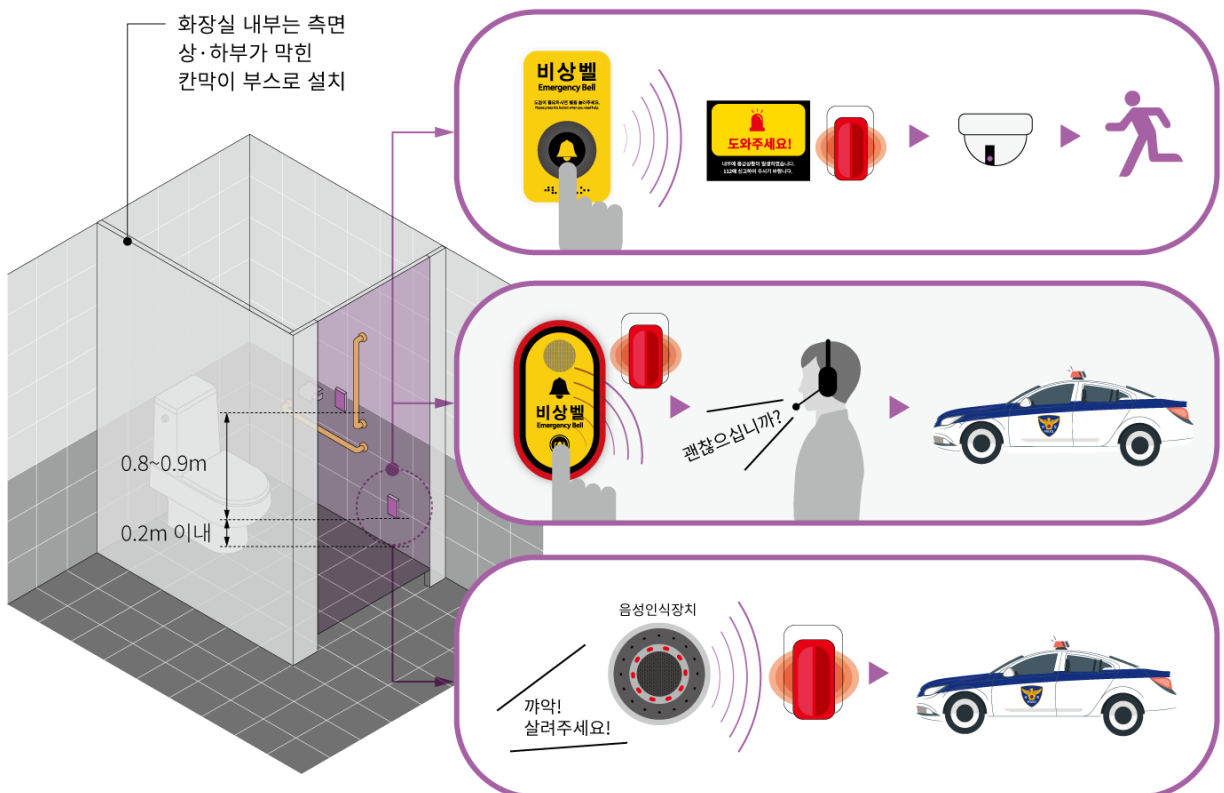
- 바닥 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타일 혹은 판석 마감인 경우에는 0.5cm 이하의 줄눈으로 하고,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 바닥과 벽체의 마감재 색상은 위생 설비, 보조 손잡이, 출입문 등과 쉽게 구분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바닥은 상시 건조가 가능하도록 배수 계획(단, 배수 구배 1/100 이하, 보행 시 장애가 되지 않는 배수구 위치 조정 등)을 수립한다.
- 바닥 마감재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 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실내 바닥 마감재는 습윤 시 C.S.R. 0.4 이상 성능을 확보한 마감재 적용



##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 화장실 접근로 및 출입구에 적정 조도 확보 및 CCTV를 설치한다.
- 화장실 내에 안심 비상벨·비상 통화 장치를 설치하며, 비상벨의 수신반은 관리자의 직접 출동 또는 외부에서의 즉각 인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비상벨 조작반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 세면대 주위, 출입문 주위 등 2곳 이상 설치하되, 0.8~1.2m 내외 높이 및 바닥에 넘어져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단독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또는 비상 통화 장치를 설치하되, 대변기에 앉은 상태 및 바닥에 쓰러진 상태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2곳 이상 설치한다.
- 비상벨 외에 비접촉식 도움 요청 시설(근거리 무선 통신 기반 비콘, 음성 인식 비상벨 등) 설치를 권장한다.
-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내부는 측면 상·하부가 막힌 칸막이 부스로 설치한다. 단, 칸막이 출입문 등 전면은 환기를 위해 위·아래가 뚫린 문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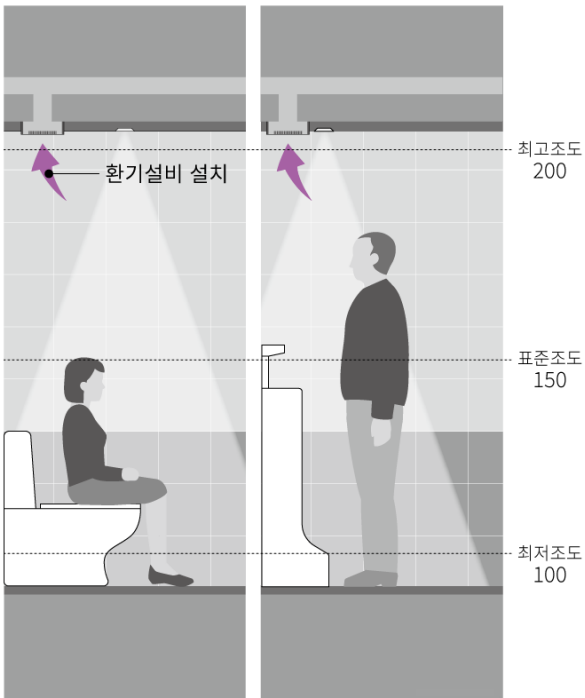
## 쾌적성 확보

다양한 사용자가 심리적·물리적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 및 온도 유지와 환기 성능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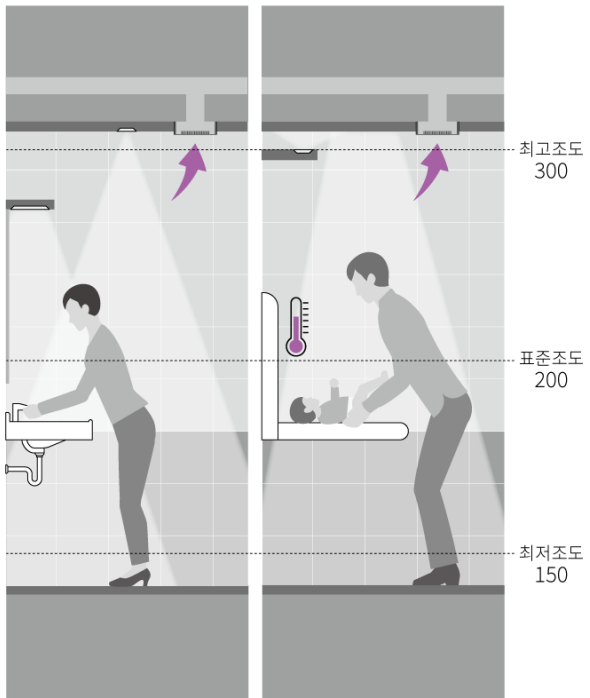
### 조명과 환기

- 조명은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 기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 작업, 세면, 조작 공간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
- 화장실 입구, 통로, 단위 부스, 세면기, 소변기 등에 적합한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이동 및 이용 위치별로 조도를 확보한다.
- 화장실은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상관없이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되도록 하며, 환기 설비를 설치한다.

공간 전반



작업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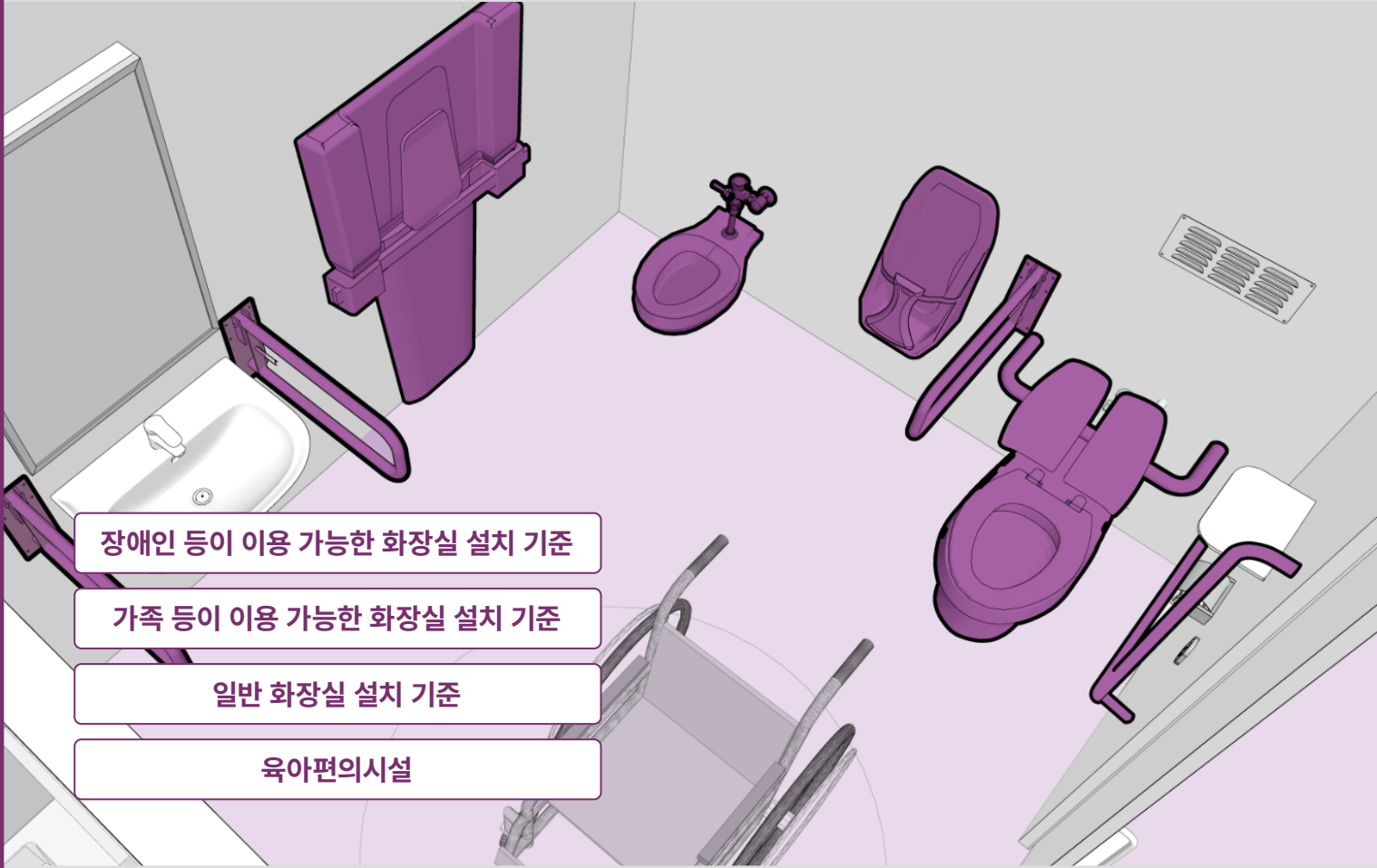
## 유도 및 안내시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복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구 주변 벽, 바닥, 천장 마감재 등을 달리하여 남녀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인다.
- 안내사인은 로비, 보행통로 등 주요 동선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 승강기 홀 등 수직 이동시설의 각 층에 대한 안내판 등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점자를 병기한다.
-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알기 쉬도록 그림문자를 적극 활용한다.
- 위생시설별 기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장애인 이용 가능, 다목적, 다기능 안내, 영유아 동반자 이용 가능 등)시설은 촉지도식 안내판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점자 안내 표지판 전면에는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 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 표지, 화장실 내부를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 표지, 음성 유도 장치 등을 설치한다.



## (2) 모두를 위한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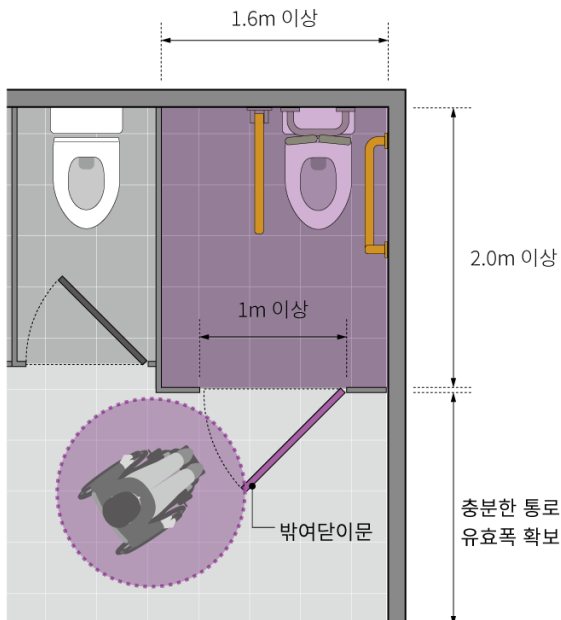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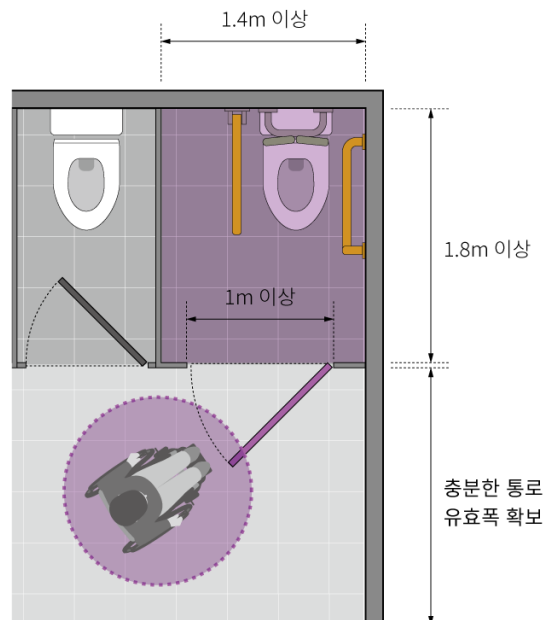
건물의 주 진입층을 포함하여, 각 층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일반 화장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내부 유효 크기를 2m × 2.1m 이상 확보하고,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할 때에는 1.6m × 2.0m 이상 확보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하고, 내부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보조 손잡이, 대변기 등받이, 세정 장치, 비상 호출 장치 등)를 설치
  - 내부에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 설치 및 적절한 안내시설 설치
  - 장애인 이용 가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시설 설치
  - 주 진입층 외에 층별로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여건, 사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한다.

일반화장실 내 설치 시  
2019.9.27. 이후 준공 시



2019.9.27. 이전 준공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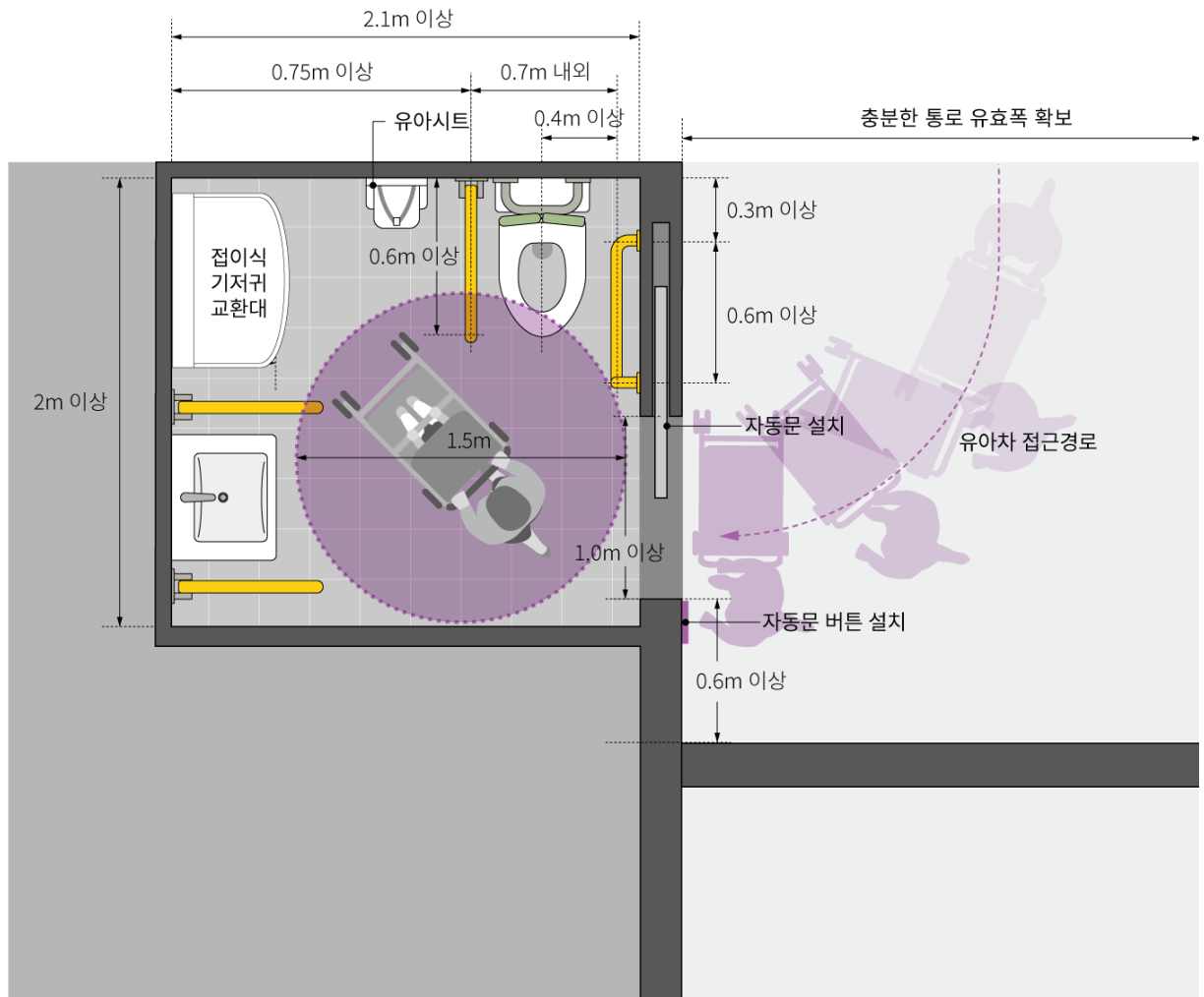


## 가족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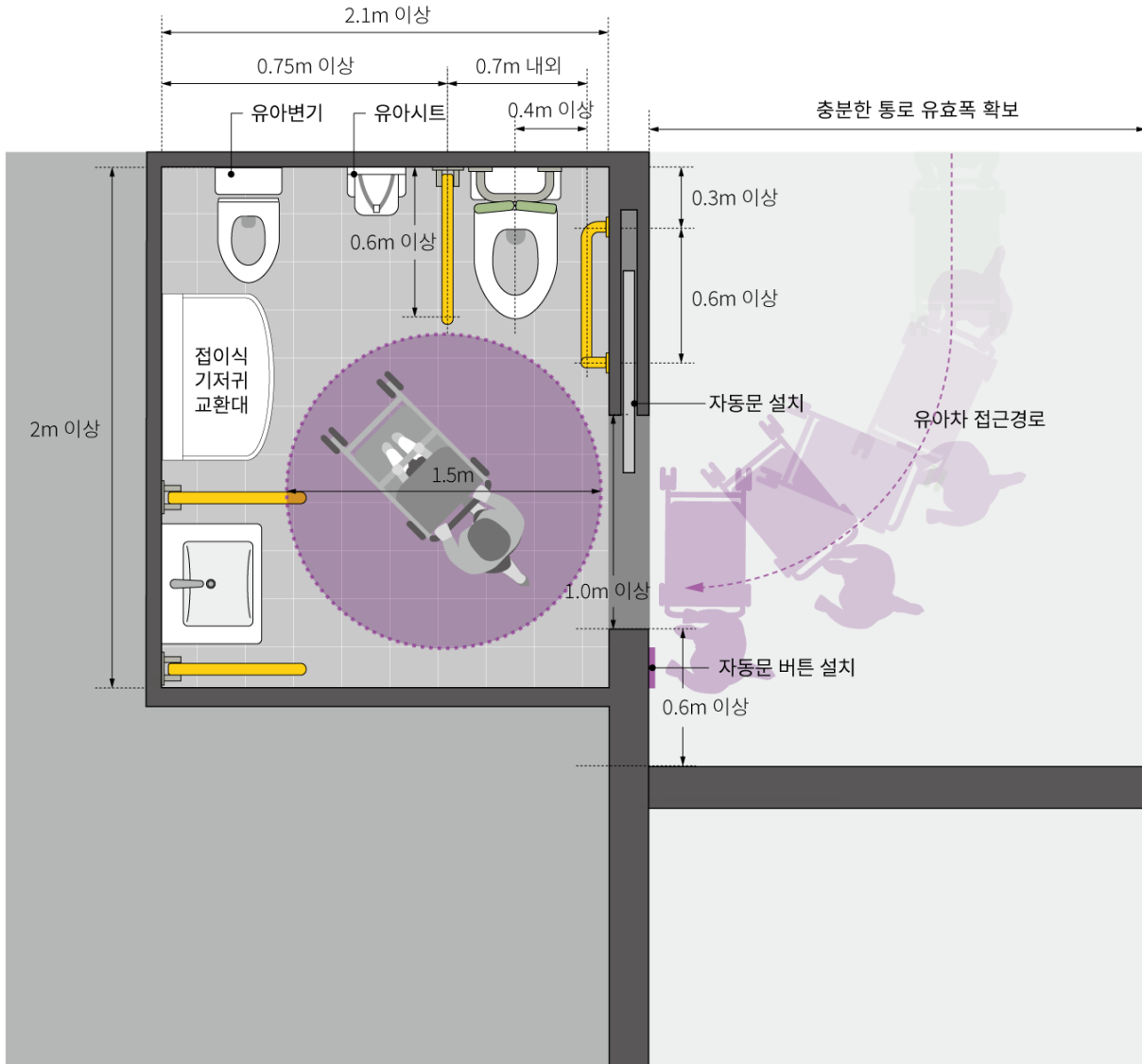
건물 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 외에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주 진입층 또는 시설의 주 이용시설에 위치한 층에 별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화장실 내부 유효 크기 2m × 2.1m 이상 확보
  - 내부에는 휠체어, 유아차 등의 활동공간 확보
  - 남녀 일반 화장실과 다른 별도의 출입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 노인,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시설(간이 샤워, 기저귀 교환대, 유아시트, 보조 손잡이, 어린이용 위생설비 등) 설치
  - 가족 이용 등 다목적에 대한 적절한 안내시설 설치

최소 규격 설치 시



확장 규격 설치 시(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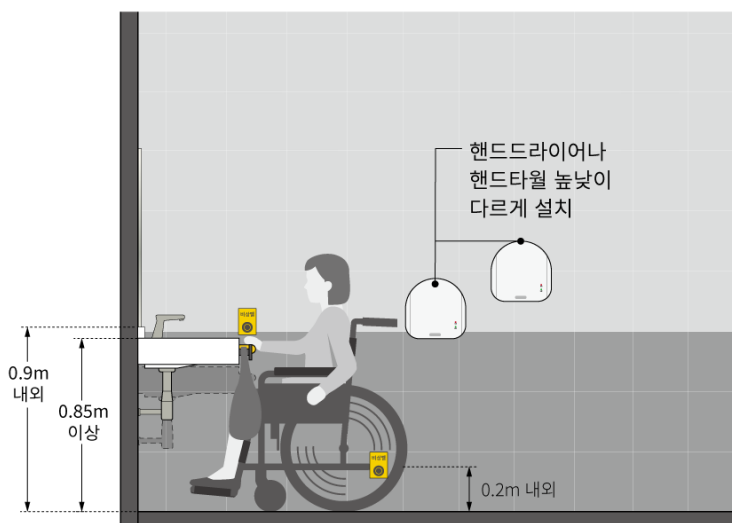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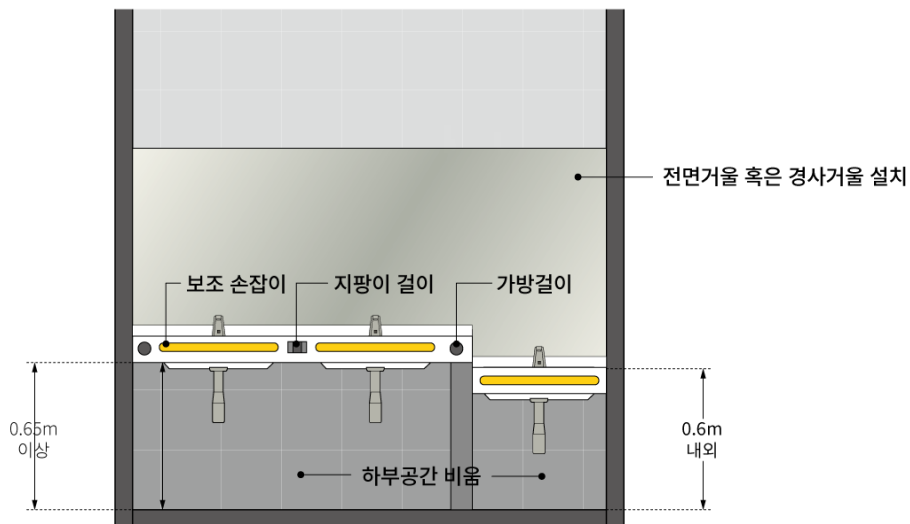
##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

일반 화장실은 시각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및 영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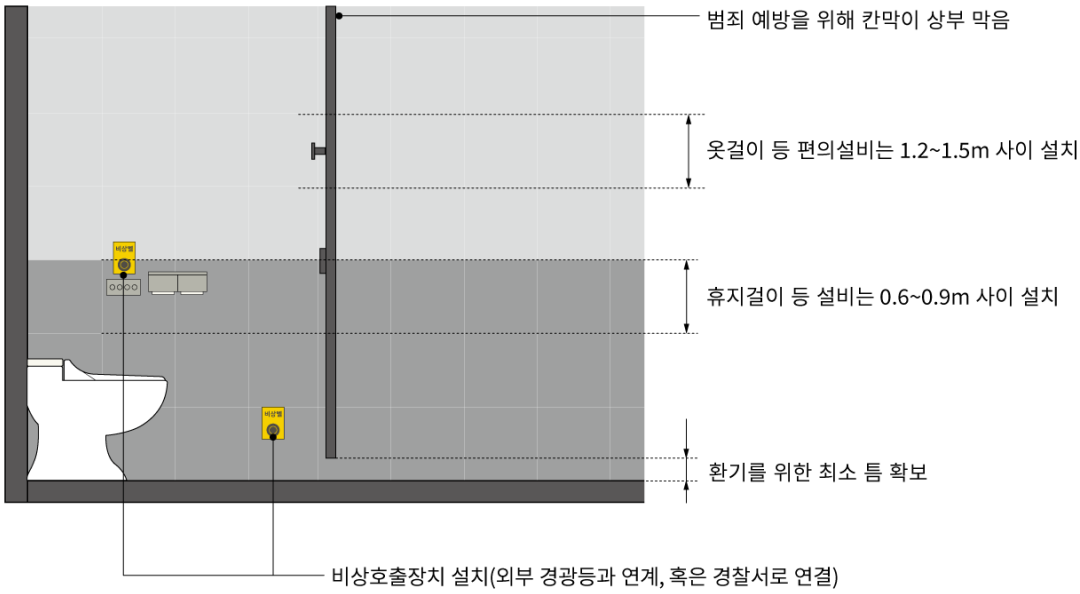
### 화장실의 구조

-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 및 지팡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소변기, 세면대, 보조 손잡이 등)를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도 함께 이용 가능한 세면대로 설치한다.
-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비상 호출 장치와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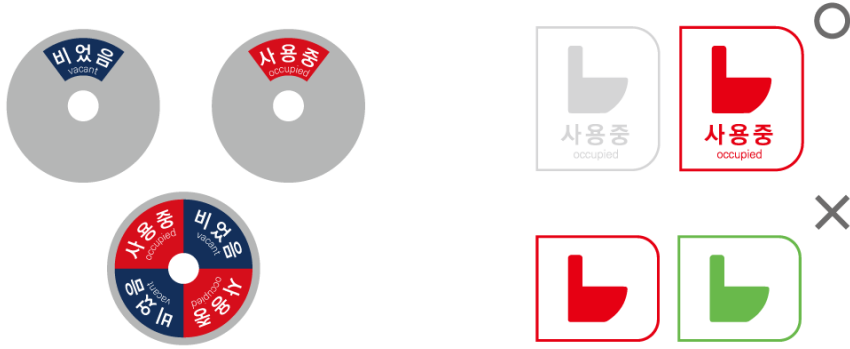
### 일반화장실 세면대의 구조



일반화장실 대변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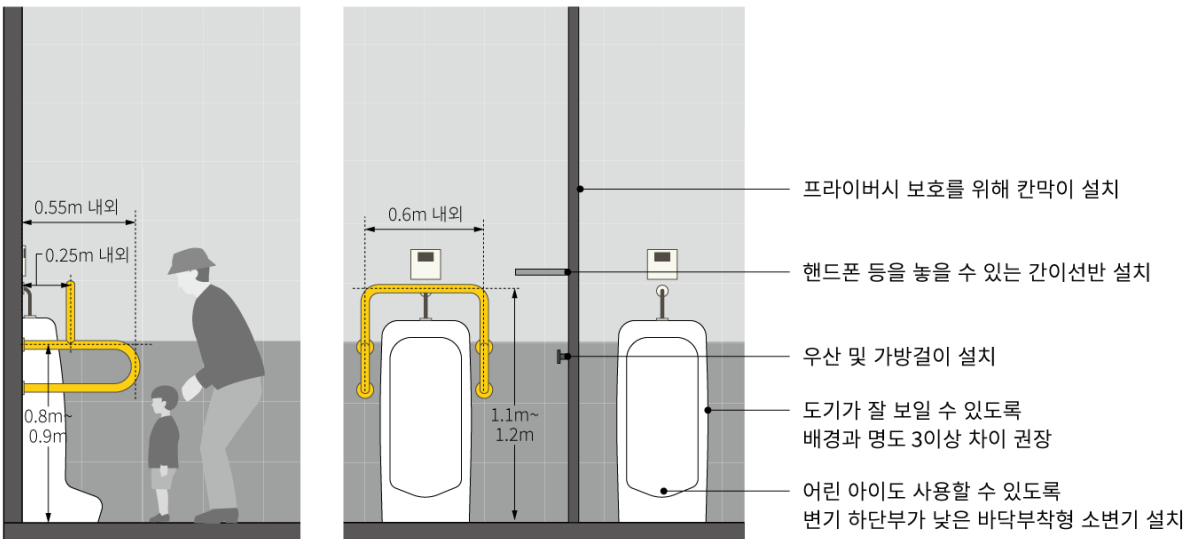
잠금장치 및 사용중 안내



사용중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주어야 하며, 색상 및 문자(다국어 포함)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조명으로 나타낼때도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여, 사용중일 때는 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유도하며, 픽토그램 및 문자(다국어 포함)를 병행 설치

일반화장실 소변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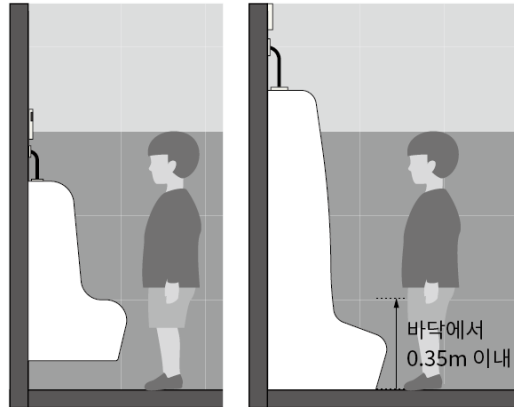
### 어린이 등 영유아 배려시설 설치 기준

- 어린이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세면대, 소변기를 설치한다. 어린이용 소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소변기의 하단 높이를 바닥에서 0.35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어린이 등을 배려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거울 포함)를 남녀 화장실 내부에 각각 설치한다.
- 위의 시설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어린이 대변기의 구조



어린이 소변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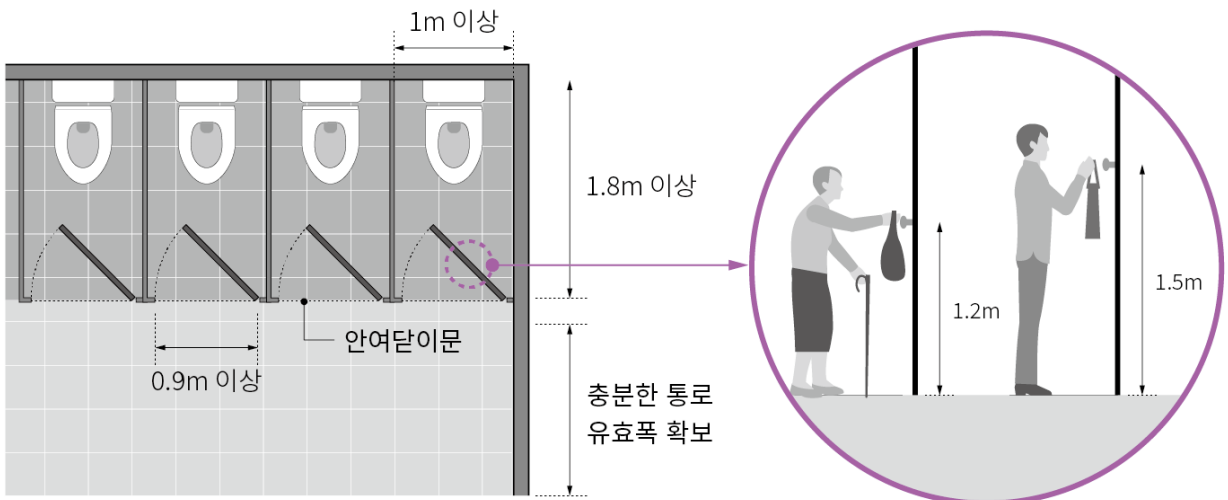


어린이 세면대의 구조



### 다기능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

- 대변기 부스의 면적 폭은 1m 이상, 깊이는 1.8m 이상, 출입문 폭은 0.9m 이상을 확보한다.
- 대변기 부스 내 보조 손잡이, 간이 선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그 외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 육아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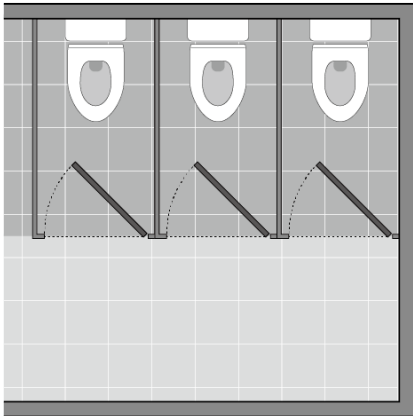
남녀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 유아시트 등의 육아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설치 장소 및 활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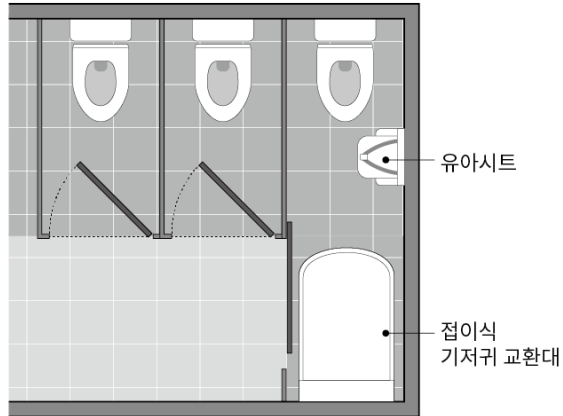
-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남녀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영유아 거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 위의 시설이 별도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 일반화장실 내 육아편의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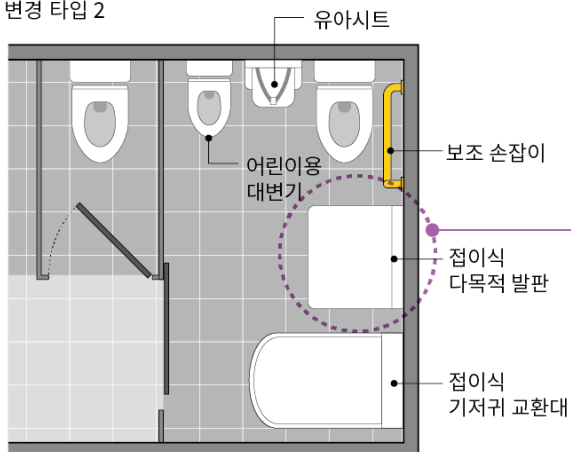
기존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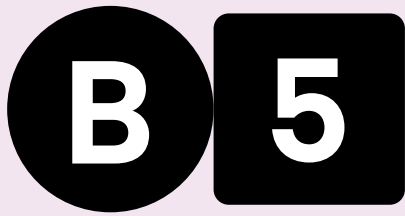


변경 타입 1



변경 타입 2





## 피난 및 대피

### (1) 피난 및 대피 시설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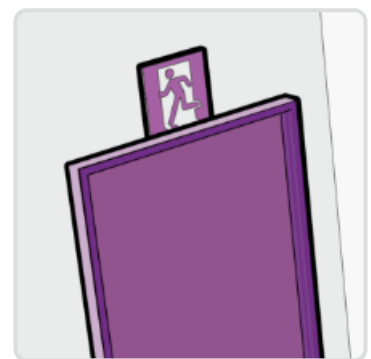
#### 계획원칙

누구나 차별 없는 건물로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빠른 탈출과 구호를 위해 전한 대기가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과 피난·경보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1) 재난 및 대피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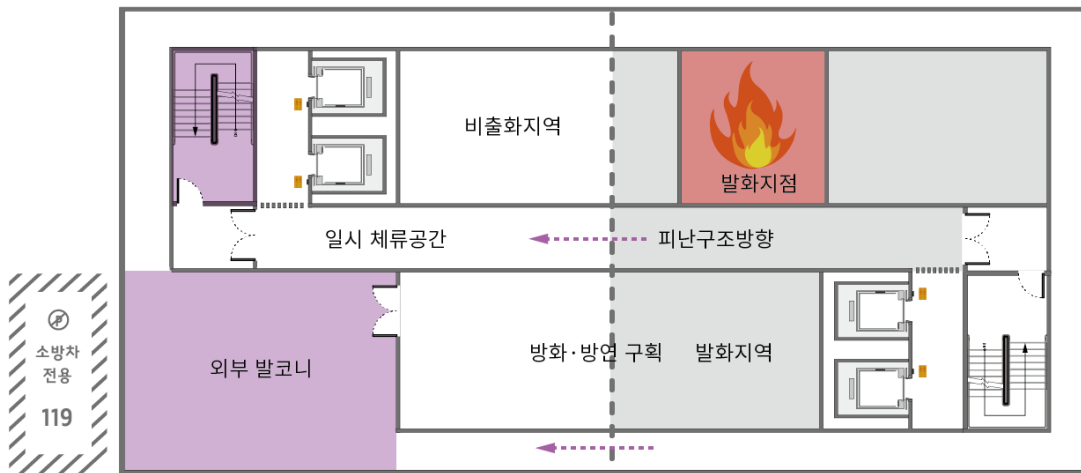
## 피난, 대피 구조 및 시설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위급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거나 구조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 대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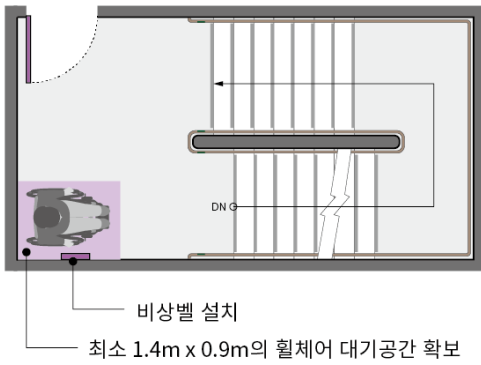
- 건물의 각 층별 소방차 등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고, 피난 대기가 가능한 방화·방연 대피 공간을 확보한다.
- 대피 공간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과 회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구조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이 지상층까지 직접 피난이 가능하도록 승강식 피난기 설치를 권장한다. 이때 승강식 피난기는 휠체어 사용자가 스스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각 층별 주요 실에서 지상층 혹은 피난 대기공간까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자립 보행하여 이동할 수 있는 피난 동선을 확보한다.
-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대지 외부까지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동선을 확보한다.
- 피난 경로상의 바닥, 벽, 기둥, 천장 등은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로 마감하며, 보행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유리는 미쇄 파쇄 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비상 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등 파손 시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 잔재가 남지 않도록 한다.

피난을 위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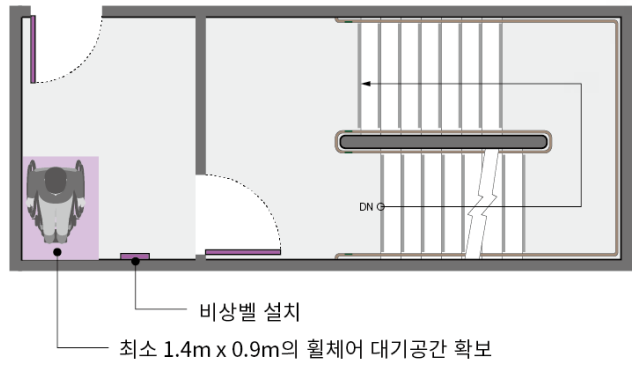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발코니

휠체어 피난을 위한 구호 대기 공간  
피난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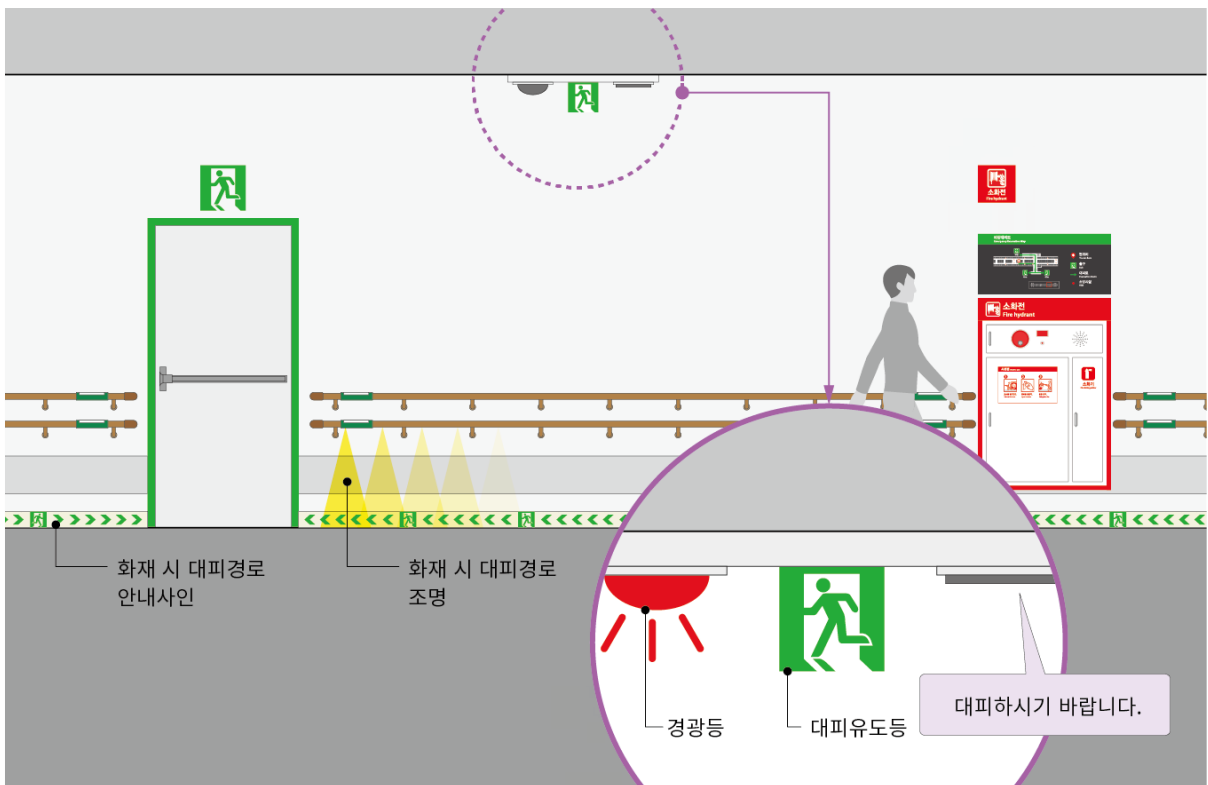
특별 피난계단



### 피난, 경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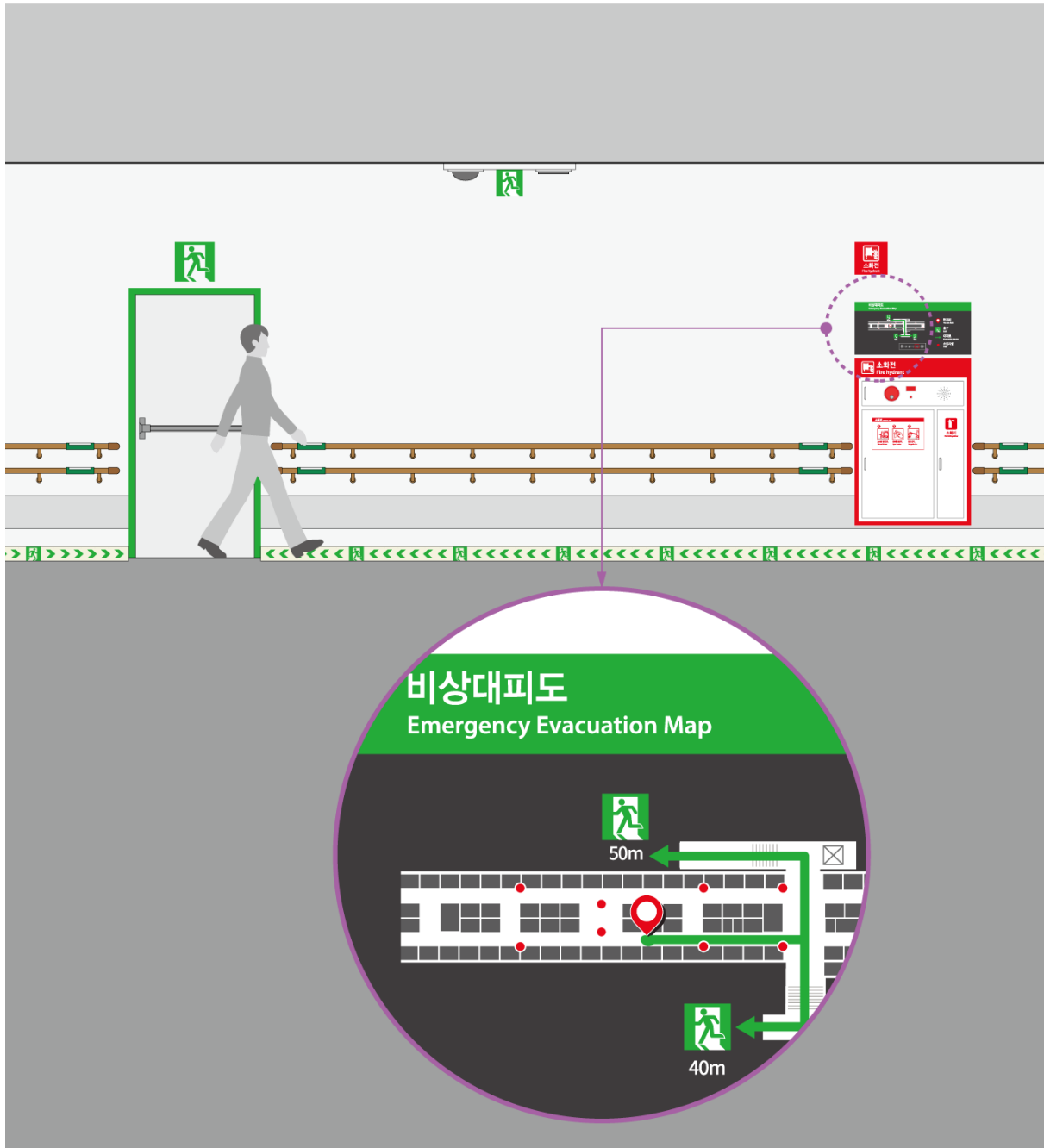
- 피난 동선 및 피난 대기공간 인지를 위한 피난 안내도를 층별로 구비하며,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연기가 가득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쉽게 인지(시각 및 청각 정보) 가능한 피난 안내시설(피난구/통로 유도등, 유도 표지, 유도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등)을 피난 동선상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 비상벨 및 음성 안내 시스템, 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 안내설비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 시·청각 경보는 남녀화장실 내부(장애인 화장실 포함), 샤워 및 탈의실, 수유실 등 별도로 밀폐되어 구획된 공간에 설치한다.
- 피난대기공간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양방향 소통 인터폰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그 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피난, 대피 계획

- 어린이, 노인 이용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은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및 피난 훈련 위한 매뉴얼을 구비한다.
- 공연장 등 관람석이 있는 시설은 비상시 장애인 대피에 대한 책임제 등 인적 서비스 체계를 갖춘다.



# B 6

## 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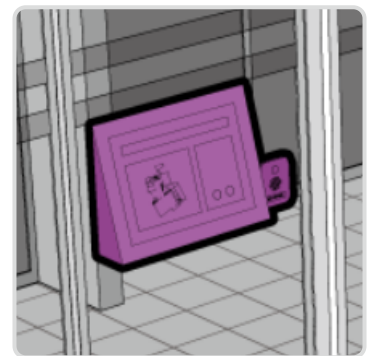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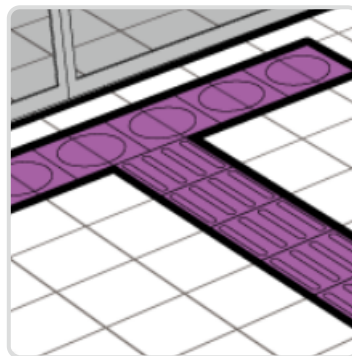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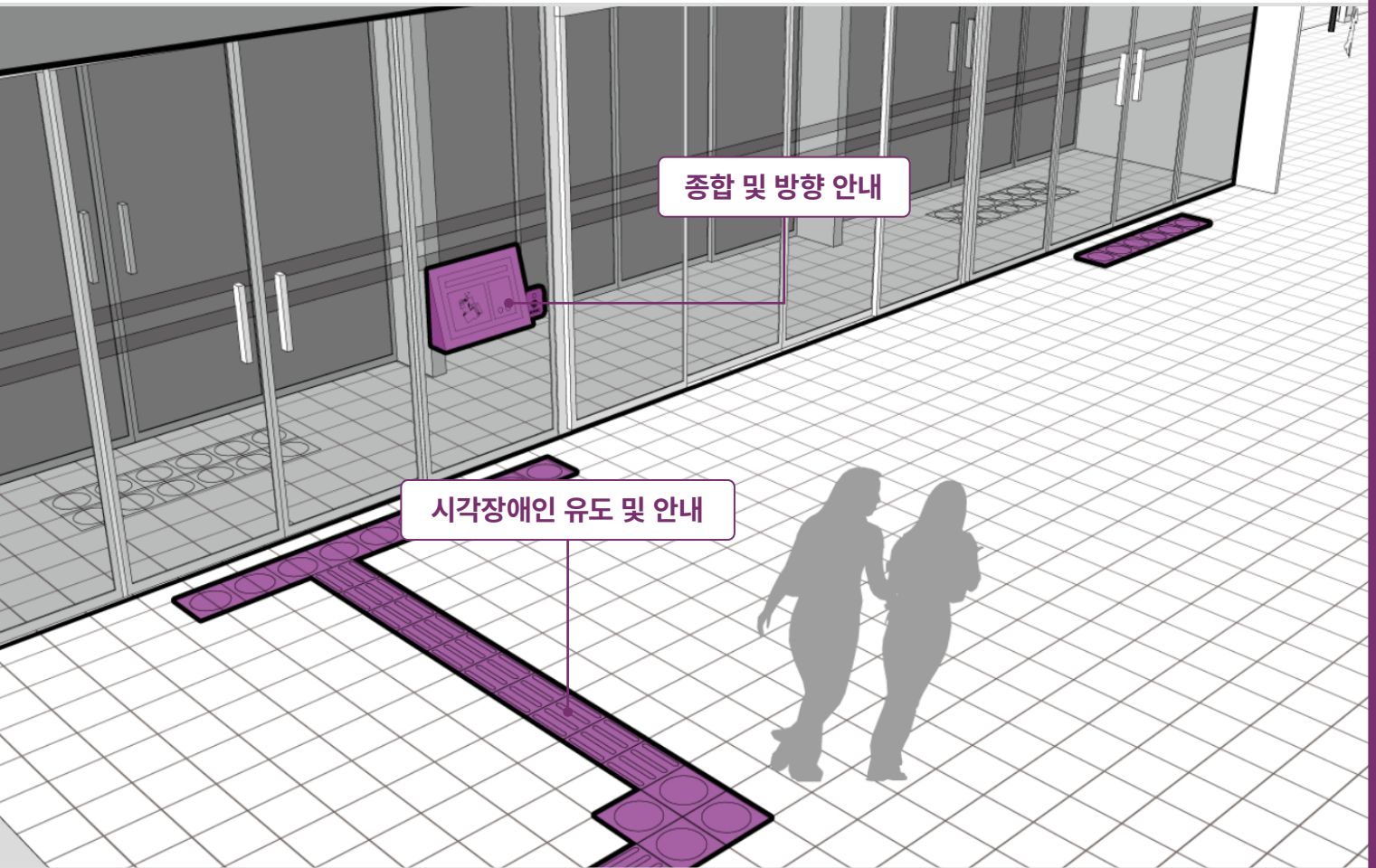
(1)	안내시설	279
(2)	기타 이용시설	284
(3)	기타 이용 설비	295

### 계획원칙

누구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설의 주요기능, 주 이용시설 및 동선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특성별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1) 안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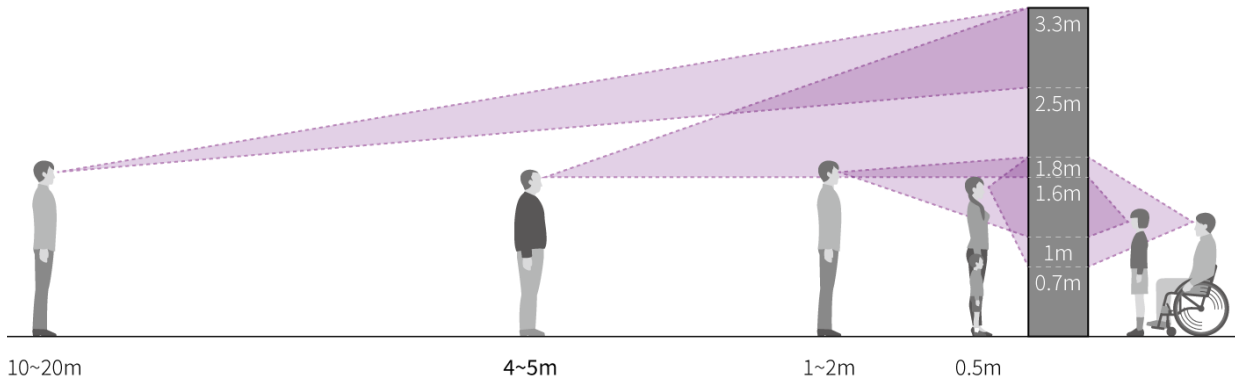
## 종합 및 방향 안내

시설 주출입구에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안내시설을 설치한다. 이때 각 층별 주요 편의시설(수직 이동, 위생시설, 안내시설, 육아편의공간 등)과 주요실에 대한 안내가 되도록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색상, 글자체, 그림, 점자표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안내시설은 접근 가능하고 이해 및 인지하기 쉬운 구조로 시설 입구와 주차장 보행통로 연결 지점 등에 설치한다.
- 종합안내시설은 가독 가능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단,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한다.
- 안내판 중심부는 바닥에서 높이 1.2m 내외에 위치하도록 한다.
-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글자의 크기 1.5cm 이상 및 색 대비 고려)
- 외국인, 문맹자 등을 고려하여 그림과 외국어 등을 병행하여 안내한다. (구분하기 쉬운 색채 대비 활용)
-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정보 등을 표기하고, 야간에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판의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 점자/촉지도/음성안내장치를 함께 설치하며, 안내시설까지 보행 유도를 위한 음성 유도 장치를 설치한다.
-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서체)를 적용한다.
- 이 외 기준의 경우 KS규격 및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우선하여 준용한다.



이용 형태 및 다양한 사용자의 인체 치수를 고려한 정보매체의 적정 높이



이용 형태 및 다양한 이용자의 인체 치수를 고려한 정보매체의 적정 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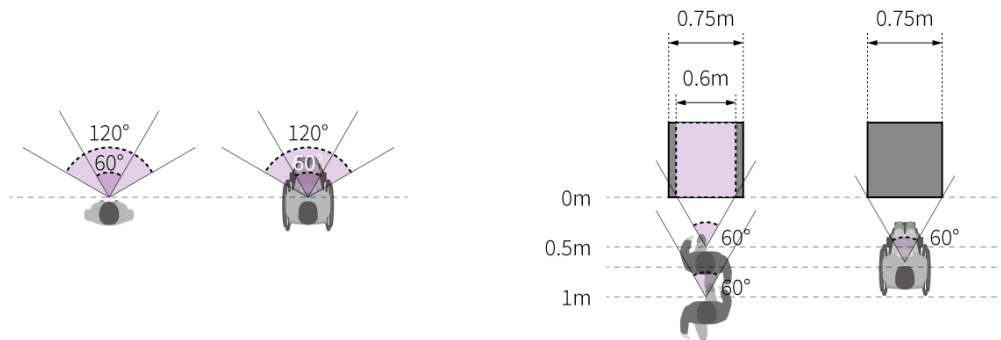


그림 및 외국어 병행 표기

가독성 높은 글꼴 사용

명조체 serif



고딕체 san serif

ㅁㅂㅍ → ㅁㅂㅍ    ㅈㅎ → ㅈㅎ  
 ㅁㅂㅍ → ㅁㅂㅍ    ㅈㅎ → ㅈㅎ

봣봣 → ㅂㅂ    터티 → 터티    CGO → CGO

ㅂㅂ → ㅂㅂ    ㄴㅇ → ㄴㅇ    S38 → S38    111 →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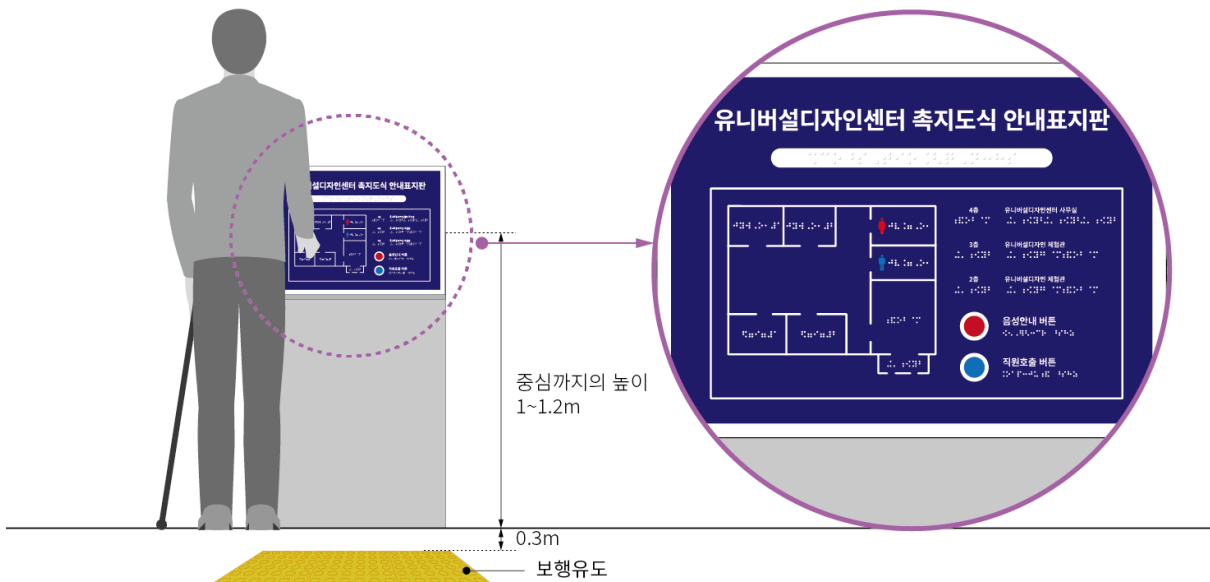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발한 유니버설디자인 서체 '온고딕체'

##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시각장애인의 시설 안내 및 보행 유도를 위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법적 기준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규모가 큰 공간인 경우 실내외 음성 유도 시설 등 별도의 보행 유도 시설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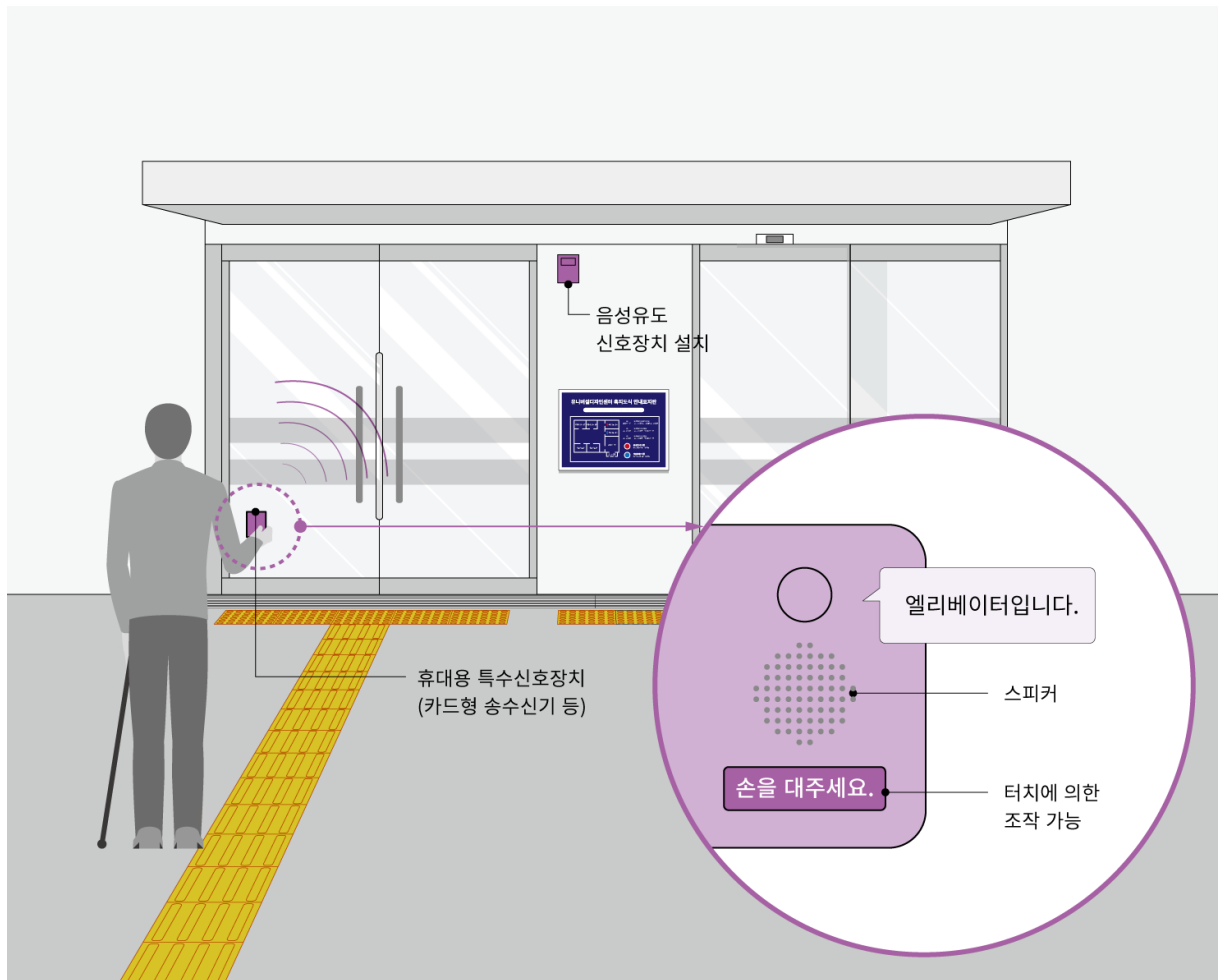
### 점자, 촉지도식 안내

-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점자 혹은 촉지도식 안내판에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
  - 안내판 중심은 바닥에서 1~1.2m 범위에 위치 (단, 수직 형태로 설치 혹은 내용이 많은 경우 바닥에서 1~1.5m에 설치 가능)
  - 주출입구 부근 중 쉽게 접근 가능한 곳, 점자블록을 통한 유도가 용이한 곳, 비나 눈,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는 차양 시설이 있는 곳으로 설치하며 가급적 음성안내장치와 연계 설치
  - 직원 호출 버튼 및 음성 안내를 지원하는 수동식 버튼 추가적으로 병설
  - 지도상에 현 위치가 뚜렷이 표시되도록 도드라지게 설치
  - 시설 배치도는 A3 크기 내외로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 실명 등은 반드시 표기
  - 내마모성 재질, 위생적인 재질로 하며,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
  - 전면 0.3m에 점형 점자블록 3장 설치 및 선형 점자블록으로 유도



## 음성 유도 및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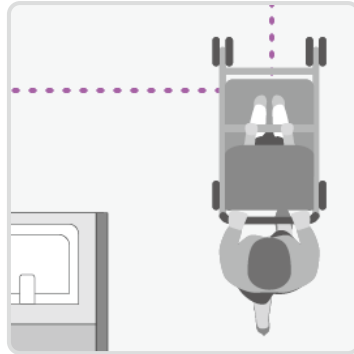
- 음성 유도 및 안내시설 기준은 다음을 준수한다.
  - 대지 경계선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컨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 주출입구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물 주출입구 외부에 설치(필요에 따라 안내데스크 등의 시설 인근에 추가 설치)
  - 상시 개폐되는 문에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 바닥에서 2.1~2.5m 높이에 설치
  - 시설 규모 및 특성 따라 리모컨 수신 거리를 조정하되, 가급적 10m 내외로 조정
  - 소리크기 실내 40dB, 실외 60dB로 10m 이내에서 잘 들리도록 설치
  - 음성 유도 및 안내의 멘트와 문구는 명확하고 간결히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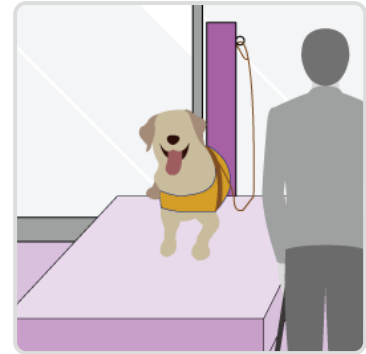
## (2) 기타 이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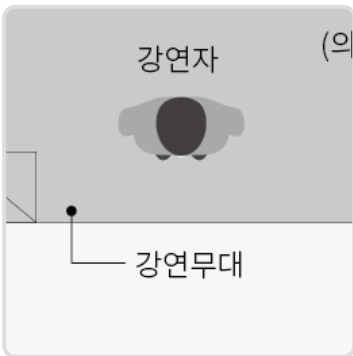
접수대, 안내데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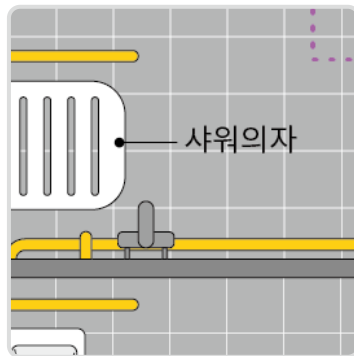
육아편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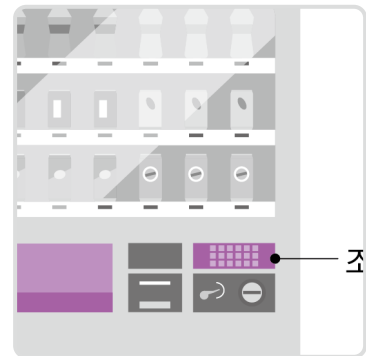
안내견 배려시설



관람석,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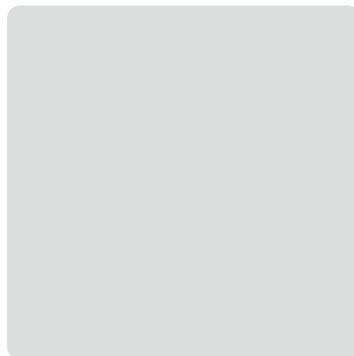
욕실, 샤워실, 탈의실



무인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



장애인, 노인 친화용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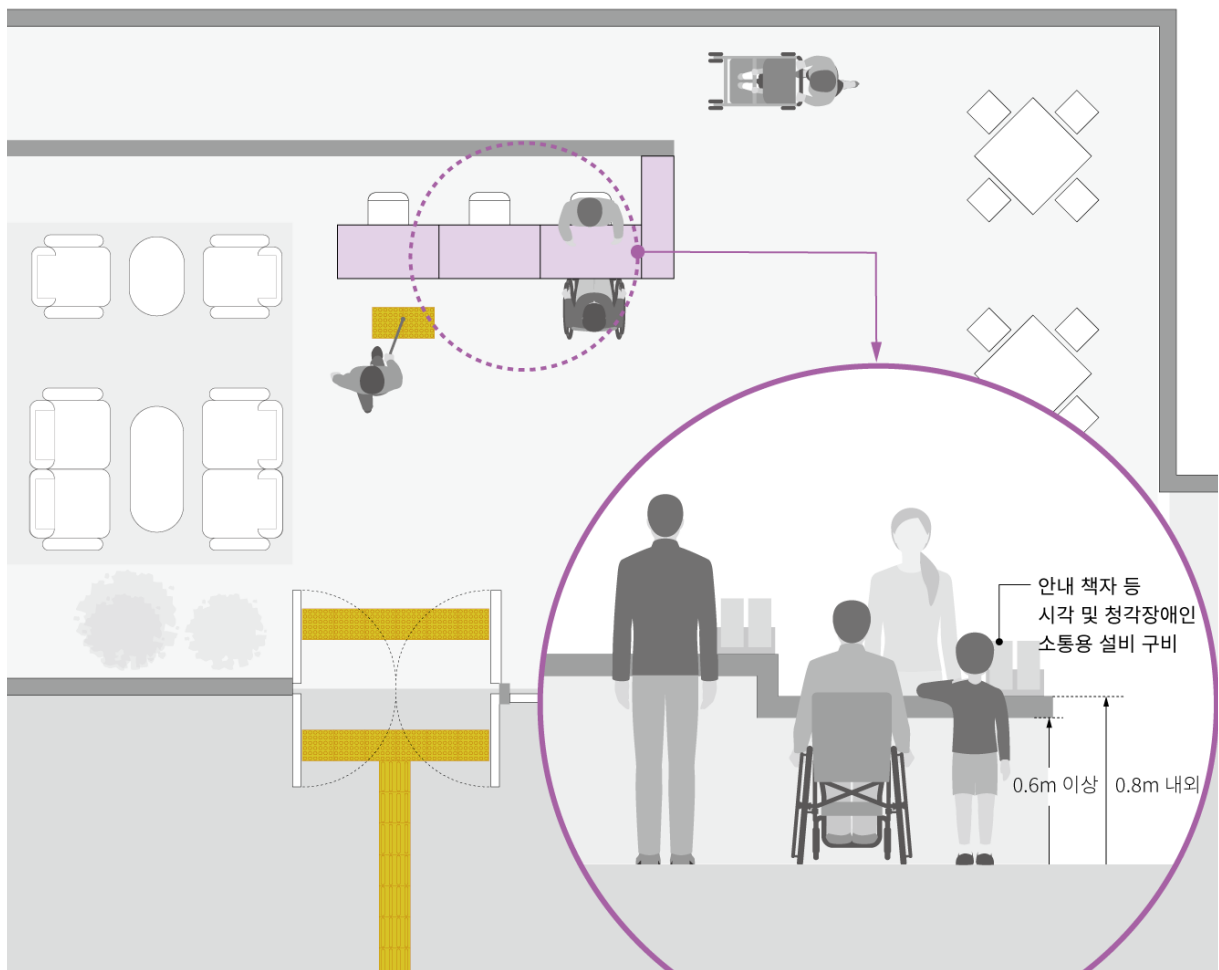


외부 활동공간

## 접수대, 안내데스크

접수대/안내데스크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주출입구에서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사용자별 높이를 고려해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가능한 하부 구조를 고려한다.
- 문서 작성용 선반의 설치 높이는 0.8m 내외로 한다.
- 점자블록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유도한다.
- 시각장애인 시설인 경우 음향/음성 유도 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 우산, 지팡이 걸이대, 가방이나 짐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소통용 도구와 다국어 안내 체계를 구비한다.



## 육아편의공간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 등의 육아편의공간을 설치하며,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 설치 위치 및 접근

-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육아편의공간(수유실)은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육아편의공간(수유실)로 접근하는 통로의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나 유아차의 통행을 고려하여 1.5m 이상을 확보한다.
- 접근로에는 단차나 기울기가 없이 평탄하게 통로가 되도록 한다.
- 통로나 로비 등에서 수유실 내부의 직접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계획에 유의한다.
- 휠체어나 유아차의 출입을 위해 자동문으로 하거나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쉬운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유아차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여유 있게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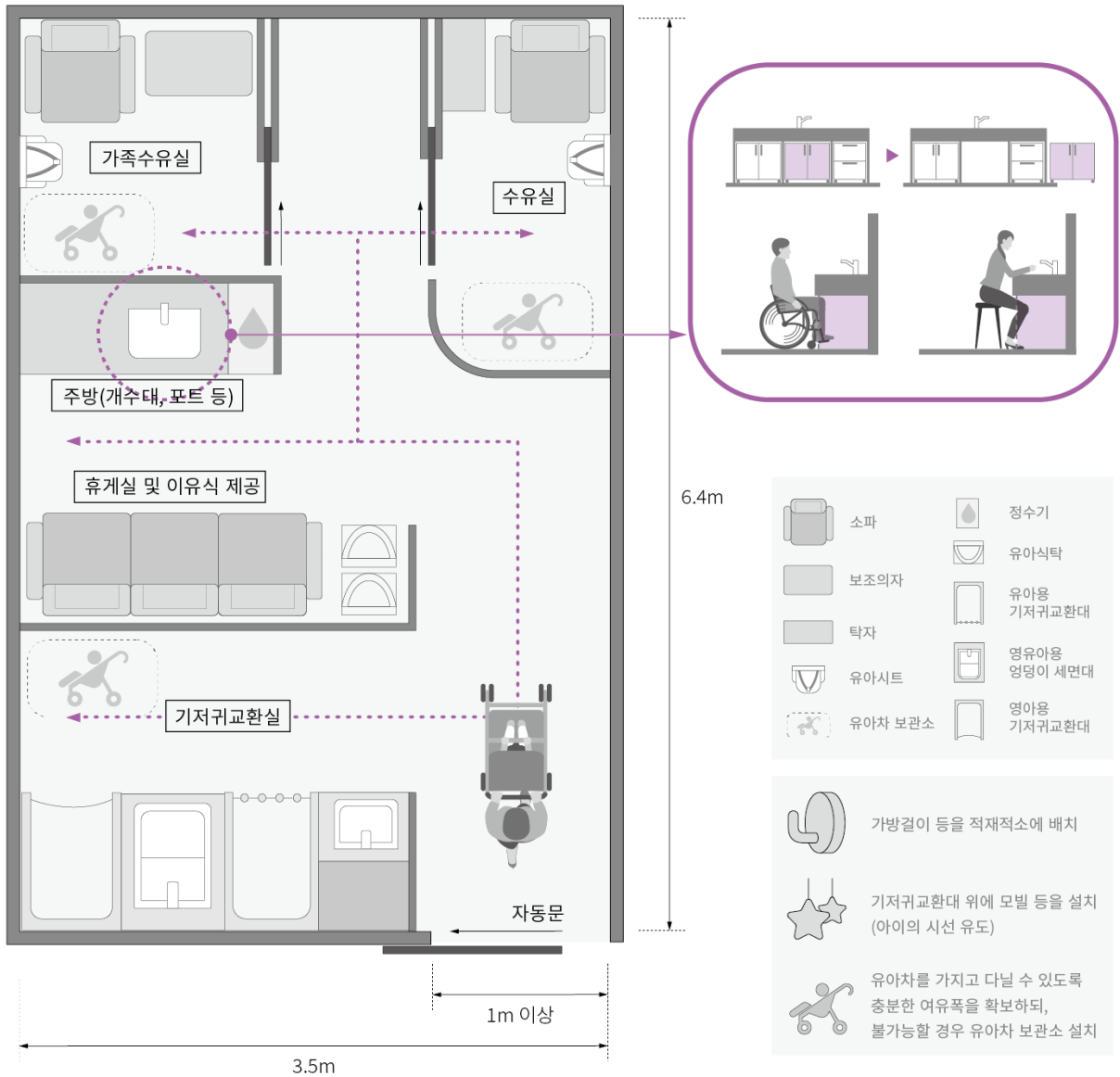
### 내부 시설

- 수유공간과 분리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기저귀 교환 등을 위해 남성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모유 수유공간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독립된 실로 설치한다.
- 세면대, 온수기 등을 둔 선반은 하부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깊이로 한다.
- 시설 내부에 유아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 확보가 어렵다면, 출입문 주변에 유아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편의 설비

- 수유실에는 물을 끓일 수 있는 순간온수기, 전기 포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분유통 소독이 가능한 설비,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선반, 개수대, 기저귀 전용 휴지통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기저귀를 갈아입힐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는 접이식으로 가능하며, 주변에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수유를 위한 아기침대 및 유아시트 등을 설치한다.
- 임산부 등이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수유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 등을 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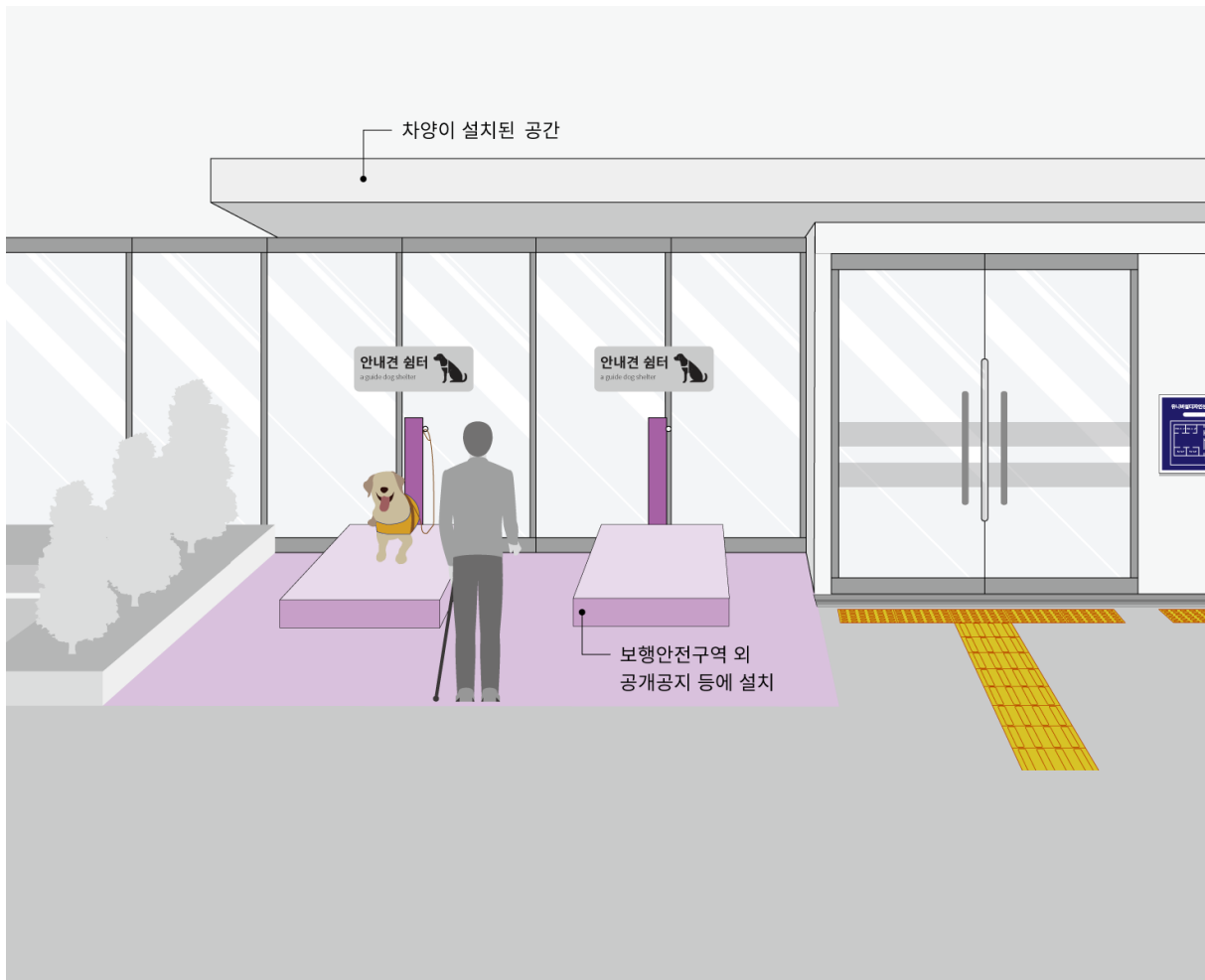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예시



## 안내견 배려시설

건물 내에 맹인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계획 및 설치한다.

- 안내견 친화 시설 운영 정책을 수립한다.
- 관람석 등에는 통로 측의 고정된 좌석 중, 1개소 이상의 좌석은 안내견을 위한 좌석 공간 설치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건물 내 동반이 어려운 경우 건물 내·외부 등에 안내견 대기장소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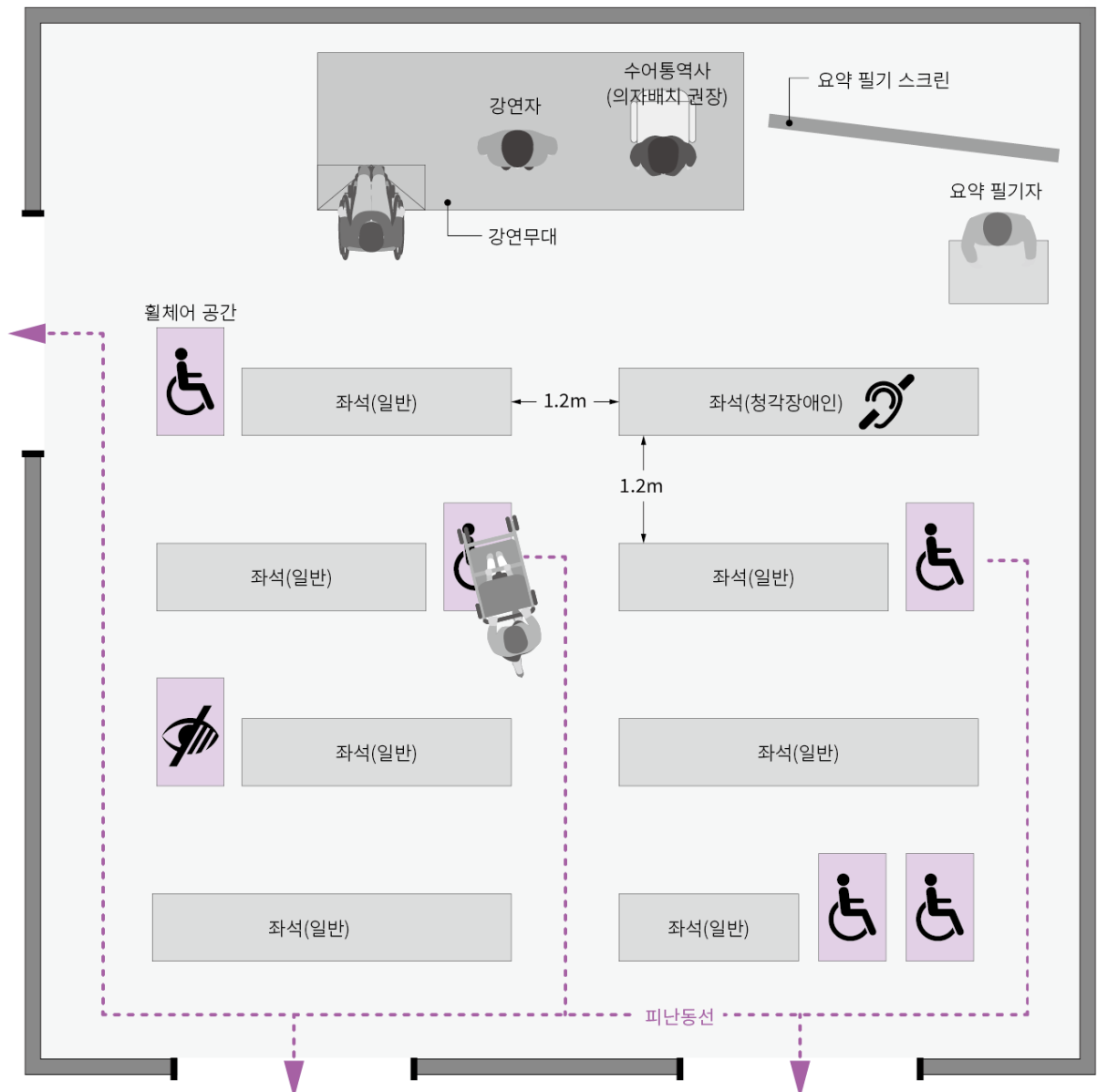


## 관람석, 무대

무대 및 관람석 설치 시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자립하여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동반자와 차별 없이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관람석에 일반적 기준에 적합한 청각 보조 시설을 설치한다.
- 장애인 관련 기준에 적합한 좌석을 확보한다.
- 좌석은 피난 통로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동반자와 함께 관람이 가능하도록 좌석의 구조와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관람석·무대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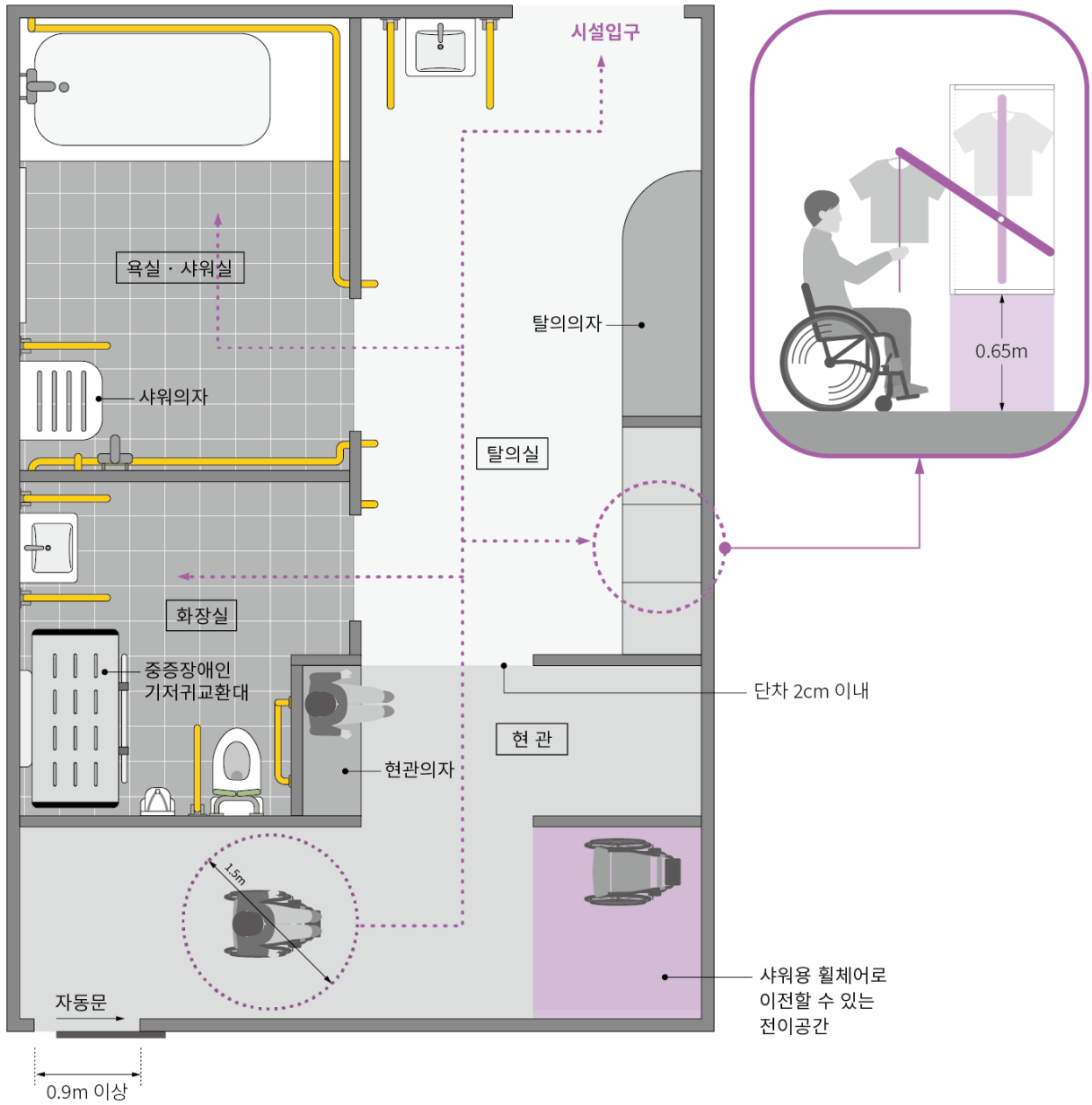
## 욕실, 샤워실, 탈의실

복지시설, 체육시설 내에 설치된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 이동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와 설비를 설치한다. (출입문 유효폭 0.9m 이상, 수전에 점자 표시, 보조 의자 및 보조 손잡이 설치, 적절한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등)
- 내부 단차나 턱은 제거하며(바닥 기울기 1/10 이하), 습윤 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논슬립 재질로 바닥을 마감한다. (C.S.R 0.4 이상 확보)
- 바닥은 상시 건조 상태 유지를 위해 바닥 난방 적용을 고려한다.
- 복지시설은 보조/간병인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샤워실, 욕조 전면의 활동공간 1.8m 이상 확보)
- 안전/보조 손잡이는 습윤 시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및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욕조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고, 바닥에서도 이용 가능한 비상 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 탈의 락커는 하부공간 확보, 잡기 쉬운 손잡이, 조작이 쉬운 잠금장치 등 휠체어 사용자 및 손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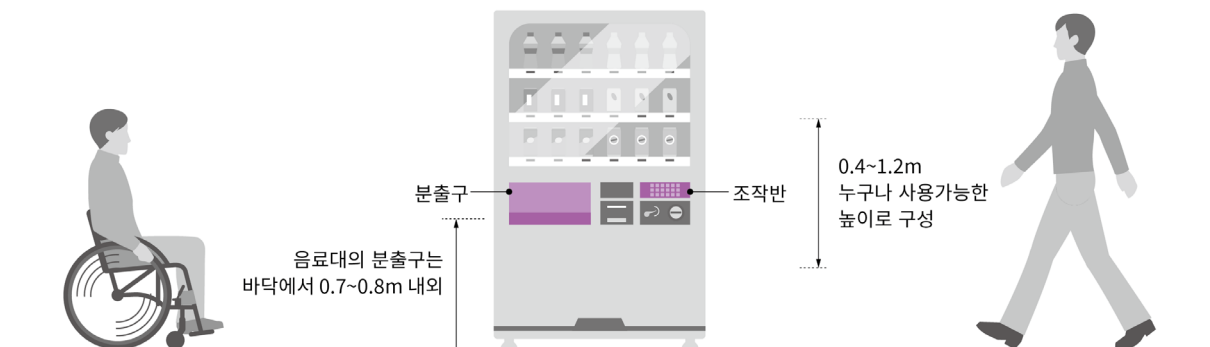
욕실, 샤워실, 탈의실 예시



## 무인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판매기 등을 설치한다.

-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을 배려한 높낮이가 다른 기기를 설치한다.
- 각 시설별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주변 바닥 재질을 달리하거나 점자블록 설치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한다.
- 외국인을 배려한 그림 표지 및 다국어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시·청각 장애인 등의 소통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쉽게 이용 및 인지 가능한 소통용 설비(관리자 통화 등)를 설치한다.
- 야외 설치 시에는 전면 대기공간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한다.
- 판매대, 매표대는 높이 0.7m~0.9m 내외, 바닥에서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하부공간을 확보한다.
- 판매기 등은 동전 투입구, 조작 버튼, 상품 출구 높이를 0.4~1.2m 이하로 한다.
- 음료대는 분출구가 바닥에서 0.7~0.8m 내외가 되도록 한다.
- 이용 및 조작 설비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버튼과 조작 장치로 설치한다.
- 디지털 디스플레이, 터치형 무인 키오스크 등은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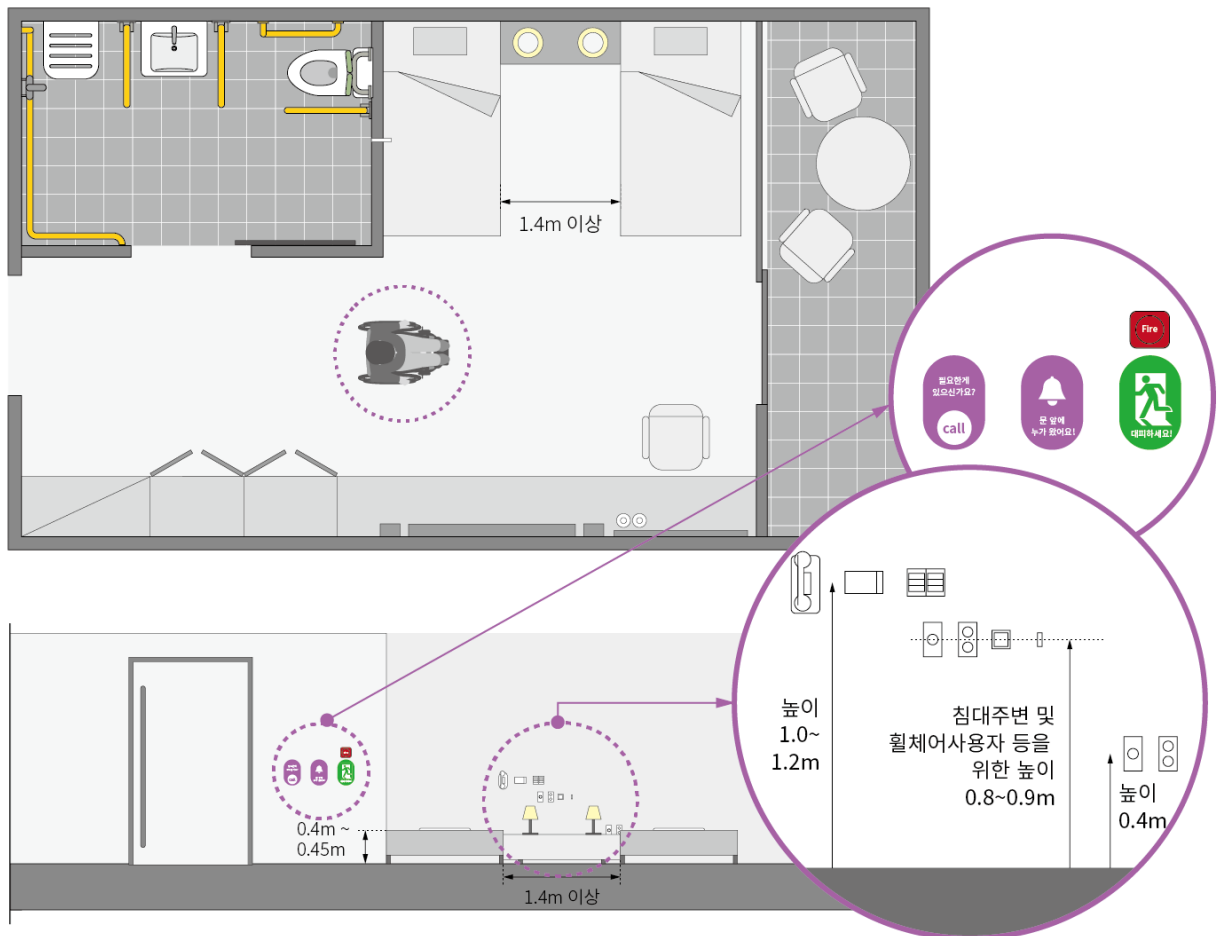


## 장애인, 노인 친화용 객실

장애인 및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객실을 설치한다.

- 전체 객실 수 대비 2% 이상의 객실 수를 확보하고, 전체 등급에 고르게 객실이 분포되도록 한다.
- 일반 객실보다 높은 조도 확보 및 욕실 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 객실 내 수납장 등 조작 용이한 가구/시설로 설치한다.
- 객실 안내시설은 큰 글자로 설치하고, 전화기/조작기 버튼 역시 쉽게 인지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응급 호출 시설(당기는 줄 형태/버튼형) 설치 및 시각 경보(경광등 등) 장치를 설치한다.
- 시청각 장애인을 고려하여 초인 등, 진동 벨 등 다감각 호출 장치를 설치한다.
- 이동 보조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장애인, 노인 친화용 객실 예시



---

## 외부 활동공간

---

구역 내 어린이 놀이공간 및 운동공간, 교류 및 휴게공간 등은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 각 공간 및 시설로 접근 가능하게 설치한다.
- 각 공간 및 시설 설치 시 보행자 등의 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주요 위험지역(교통시설, 잠재적 위험지역 등)과 이격 혹은 난간 등으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 어린이 주 이용시설인 경우 공인된 기관의 관련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시설로 사용한다.
- 각 공간 및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의 동반 이용도 고려하여 계획 및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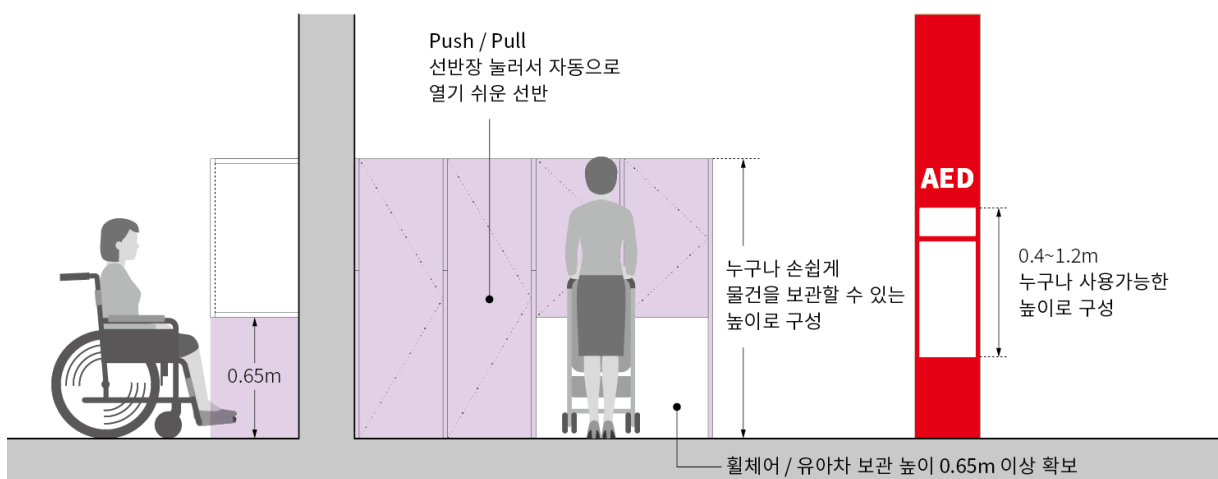
### (3) 기타 이용 설비



#### 기타 이용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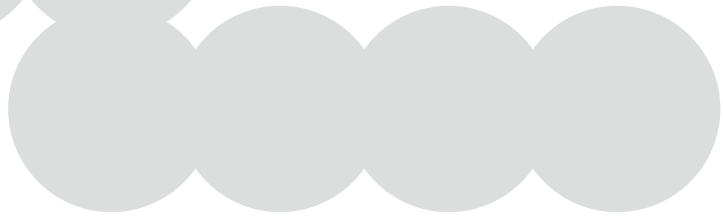
시설 용도별 의무 비치용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 AED, 구급함 등 비치하거나 혹은 응급 시설을 설치한다.
  - 무거운 짐, 유아차 사용자를 위한 락커를 설치한다.
  - 공공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전동 휠체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 휴대폰 충전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 기자재를 구비한다.
- 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 기기, 휠체어, 음성 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통신 중계 서비스 등 수화 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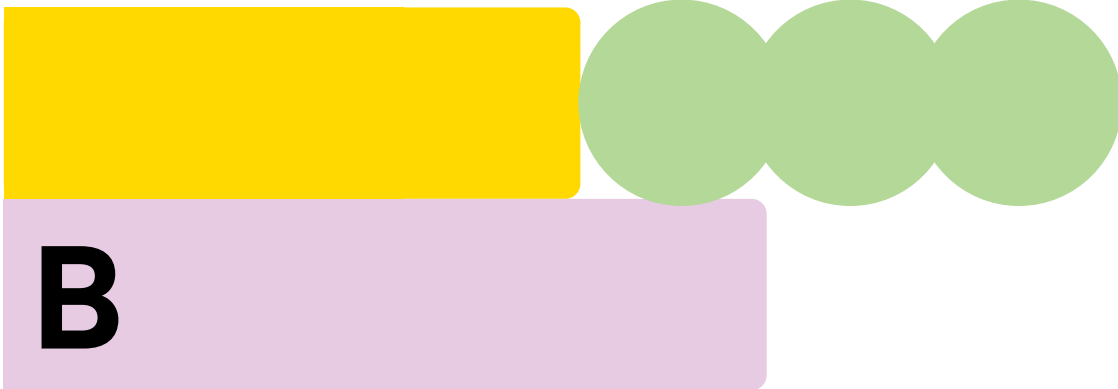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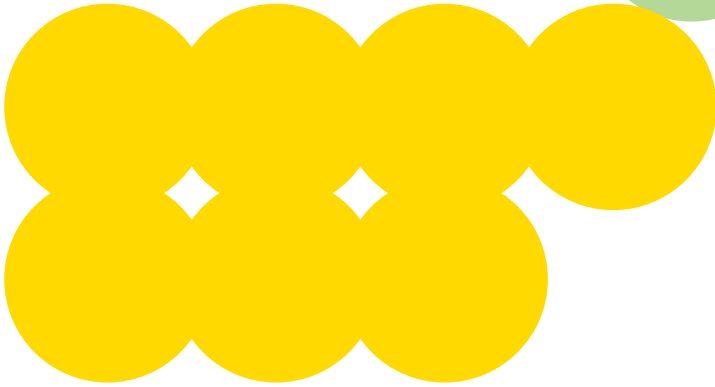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기 획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주용태  
디자인정책과장 최원규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은정호  
유니버설디자인팀 담당 박병규, 정선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집 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정책연구실  
이주형, 박선희, 허송이, 김민수  
발행일 2022년 7월 1일 초판 발행  
책 디자인 사록(SAROK)  
ISBN 979-11-6599-690-1(93650)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무단으로 활용 및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있습니다.

Copyright 202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Universal Design Center All rights reserved.





ISBN 979-11-6599-690-1(93650)

